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Vol.03
October 2015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Vol.03
October 2015
**TRADE
REPORT**
FTA 무역 리포트





Contents

FTA FOCUS

FTA 활용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004

김기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 FTA 활용 목적
- FTA 활용 현황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방안
- 미래를 위한 FTA 활용 지원 대책

FTA 최근 동향

FTA 최근 동향 013

- 관세청 주요 이슈
- 우리나라 FTA 동향
- 해외 FTA 관련 동향

FTA ANALYSIS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분석 050

임병호 |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의 구성
- 한 - 아세안 FTA 협정 개정사항
-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관련 조항
- 역내부가가치기준선택의 유연성관련 조항
- 상호대응세율 적용의 배제관련 조항
- 연도별 관세인하일정의 구체화관련 조항

FTA특혜무역활용통계를 통해 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 현황 113

송경은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 2015년 상반기 對FTA 교역과 활용률
- 산업별 FTA 특혜 수출 동향
- 2015년 상반기 FTA 수출 활용과 시사점

FTA EXPERT

① 전문가 기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중남미의 자동차 통상환경 163

김태년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FTA Trade Report

② 전문가 기고

한 - 중남미 FTA의 확대와 심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및 에콰도르 174

정경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③ 전문가 기고

중남미 4개국의 FTA 현황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183

소정운 | 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한 - 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 해설 194

오수교 관세사 |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209

- FTA 특혜적용 신제품 개발모델(섬유)
- FTA 수출 가능형 모델(가공식품)
- 원산지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델(농산물)
-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신발, 안경)
-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모델(자동차)
- 품목분류 상이 극복모델

FTA 전문인력 e - 채용관 248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원산지 관리사 합격자 수기 254

원산지 관리사 합격자

한 - 중 FTA 관세 혜택 확인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 260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캐나다의 통상 · 통관환경에 대한 이해 263

박정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2015년 상반기) 280

지도로 보는 2015 상반기 특혜 수출입실적 282

FTA와 품목분류

FTA 활용 성공사례

FTA 전문가, 원산지 관리사

활용하기 쉬운 FTA PASS

FTA 100% 활용하기

FTA 지도

FTA 활용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

01 FTA 활용 목적

'08년부터 무역의존도¹⁾가 100%를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을 통하여 발전시켜온 ICT능력에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추가 장착하여 치열한 국제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제조업 중심축인 동아시아(동북아와 동남아)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EU를 연결하는 Hub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 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교역대상 상품(유체물)에 대한 FTA 적용 품목 및 특혜세율의 수준, 그리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집중된다. FTA 협정의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을 분석하면 유망산업의 수출증대나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등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전반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FTA는 체결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실행세율(기본세율, WTO 세율 등)에 예외적으로 FTA 협상에서 약속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당사국의 국민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1) 무역의존도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총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음(통계청, e-나라지표 "무역의존도", 2015.10)

세율의 철폐나 경감을 통한 교역의 활성화는 국경을 초월한 규모의 경제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다.

또한 중국적으로는 건전한 소비를 진작하게 되어 세수가 확대되는 등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FTA를 활용하여 특별히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FTA 특혜 상품(원재료)의 수입자가 기존의 거래 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거나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수시장에 관련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 국내산업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성장동력을 얻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도 활력을 갖게 된다.

즉 FTA로 인하여 산업 가동률이 상승하여 고용이 촉진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

02 FTA 활용 현황

우리나라는 '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11건의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49개국과의 자유무역을 경험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12년 유로존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EFTA 및 아세안과의 FTA 발효시기인 '06~'07년 그리고 EU와 미국 및 페루와의 FTA 발효시기에는 경제성장률과 제조업가동률이 급속하게 회복됨을 볼 수 있다.²⁾

[표 1] 우리나라 FTA 10년간 주요 경제지표

비고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국내총생산		876	920	966	1,043	1,105	1,152	1,265	1,333	1,378	1,430	1,485
수출액	(조원)	335.5	338.6	359	408.8	551.8	547.6	625.3	742.9	776.1	770.1	752.1
수입액		301.9	316.2	351.5	397	551.9	493.7	585	723	737.6	698.9	672.8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	4.9	3.9	5.2	5.5	2.8	0.7	6.5	3.7	2.3	2.9	3.3
제조업가동률		80.0	79.3	79.9	80.1	77.7	74.4	80.3	80.5	78.6	76.5	76.1

2) 다음의 <표 1>은 통계청 'e-나라지표'를 인용하여 가공, 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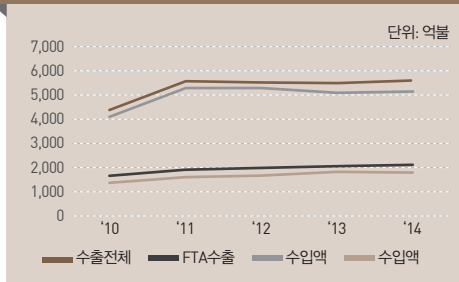
[그림 1]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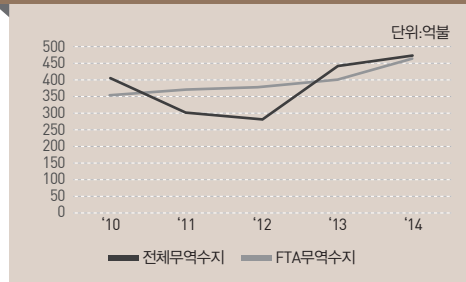
지속적인 수출과 수입의 증가추세는 국내총생산의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와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10년 이후의 우리나라 무역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출입실적이 상승하였으며 무역수지 또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표 2]에서와 같이 FTA 협정국의 교역량 증가세가 전체 교역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흑자의 대부분이 FTA 협정국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³⁾

[표 2] 전체수출입과 FTA협정국과의 수출입 동향 비교



[표 3] 전체무역수지와 FTA협정국과의 무역수지 비교



FTA 협정 국가들과의 교역이 안정적인 신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교역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무역수지 흑자는 FTA 협정국과의 무역이 견인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한-중 FTA가 정식 서명되면서 향후 발효 시에는 단일시장으로는 사상 최대인 13억 인구의 소비시장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중국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이 77%에 달하고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⁴⁾

03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방안

우리나라 기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인력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침제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국가경제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으므로 FTA 또한 중소기업지원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 및 미국을 연결하는 FTA Hub 메커니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FTA 체결 확산과 실효성있는 FTA 활용 방법의 보급이다.

FTA 활용 방법의 보급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지원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FTA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FTA 정책 안내나 거시경제중심의 홍보 보다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한 설명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음의 <표 2>와 <표 3>은 관세청 FTA 포털, 통계청(산업부) 통계자료 인용 기공, 2015.8.10.

4) 헤럴드경제, '한-중 FTA의 열쇠, 중소기업', 2015. 6.

FTA 활용에 따른 혜택은 최종적으로 수입자가 세관당국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게 완제품이나 원재료(중간재)를 제공하는 업체는 당해 수출로 인한 목전의 실익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출물량이나 그에 따른 산업가동률의 상승 등의 FTA 효과에 따라 경제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FT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굴 보급하고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은 향후 지원 필요성이 있고 성장가능한 중소기업 아이템을 타겟으로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중소기업 FTA 활용 모델은 수년 간 추진되어 온 중소기업 예산지원 '관세사 FTA 컨설팅 사업'과 지역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쉽게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FTA 협정은 협상단계부터 당사국의 산업에 기초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염두에 두고 특혜대상이나 세율의 조정 및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상대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적극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의 선정이나 지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FTA 활용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원산지검증을 수출기업이나 이를 조력할 수 있는 관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산지검증은 수출기업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원재료부터 부품 또는 완제품까지의 생산과정 전체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시적인 관세조사 대응 수준을 넘어선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연계된 제조업 및 유통업체 전체가 원산지관리를 위한 기업내부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FTA-PASS 등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 정보의 관리는 방대한 분량의 원산지 증명자료를 기업내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기업들 간 원산지정보를 소통하도록 하여 단절되지 않은 원산지정보관리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내부에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를 고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교육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산하여 안정적인 FTA 활용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FTA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진정성이 담보된 원산지증명서를 FTA특혜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관세당국에게 절감된 관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수입통관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이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면 수입자는 대부분의 경우 절감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입자가 입은 손해는 원산지증빙을 못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수출자 등)에게 고스란히 귀책된다.⁵⁾

원산지정보는 원산지가 증명되어야 하는 제품이나 원자재 등의 수급정보, 회계정보, 생산정보 그리고 원산지정보 등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일상적인 내부정보로서 평상시 관리하여야 안정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하다.

평소에 원산지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원산지증명 요청이 있을 때 급히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은 과도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원산지실무사⁶⁾를 사내에 양성하거나 채용하도록 하여 원산지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FTA 원산지관리 대행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5) 이를 위한 대비로써 공적 원산지증명 보험상품의 개발을 고려해볼만 하다.

6) 원산지실무사는 FTA 특혜 무역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출기업 뿐 아니라 관련 기업도 원산지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및 원산지정보관리,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중소기업 등에서 단순한 원산지관리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자를 원활히 보급하고자 신설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이다. 올 11월에 첫 시험이 시행된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책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동안(FTA 협정국 국내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음) 원산지정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관책임 또는 입증책임이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 관련 유통업자는 모두 원산지 관리 업무를 신설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

04 미래를 위한 FTA 활용 지원 대책

'15년 6월 기준 WTO에서 발표한 RTA 발효건수는 총 398건인데 반해 '06년 이후 오늘까지 217건이 발효되어 전체의 54%가 최근 10년 내에 발효되었다.⁹⁾

TPP(Trans Pacific Partnership)이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광역 FTA는 TPP의 경우 12개국, RCEP은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광역 FTA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특정한 국가 간 원산지증명을 필요로 하는 FTA 활용 환경에서 역내국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원산지증명 환경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미래의 FTA 활용에 있어 관건은 FTA가 확산됨에 따라 연계된 협정 간의 특혜세율과 원산지기준 및 산업환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생산기지 및 수출국을 글로벌하게 구축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양산에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FTA 저변확대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원재료나 중간재를 다양한 역내외국에서 조달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 수출할 수 있는 FTA 활용 기획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7)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기업내부에 원산지입증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에도 반복적인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9)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2015.6

원산지관리사 자격의 목적 중 하나는 FTA 원산지 활용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있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증명업무를 넘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보수집을 국제적인 안목으로 확대하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을 위한 전문지식의 학습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FTA가 더욱 확산되고 보편화되면 제조업 말단에서부터 수출기업에까지 단절되지 않은 원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관리지식은 특성화고교의 전문교과부터 보편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상식수준으로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여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

동서양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서, 또한 FTA를 활용한 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안정적인 원산지증명환경이 제공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증명과 수출자와 관련 기업 모두가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 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하여 지정학적 가치(FTA Hub)를 활용한 세계적인 경쟁우위산업의 확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양산되는 제품의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으로 교역증진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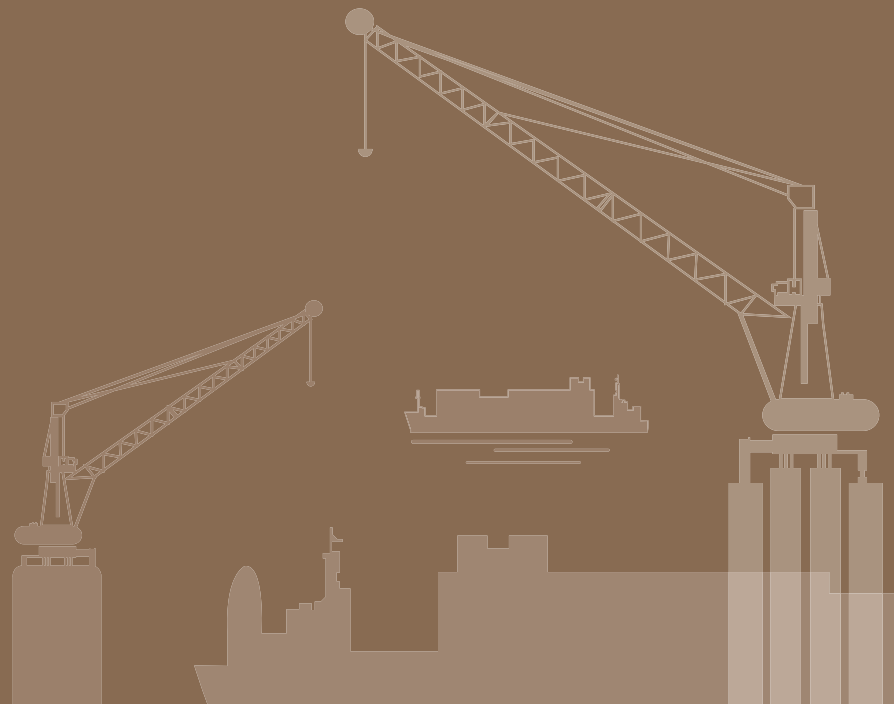
우리 국민 모두가 FTA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게 되고, 기업에서 FTA 원산지관리 능력을 키워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FTA 활용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 원산지관리사는 '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 무역물류관리 분야에 새로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 및 수출입관리와 더불어 채택 분류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FTA The Present Trends

FTA 최근 동향

- 관세청 주요 이슈
- 우리나라 FTA 동향
- 해외 FTA 관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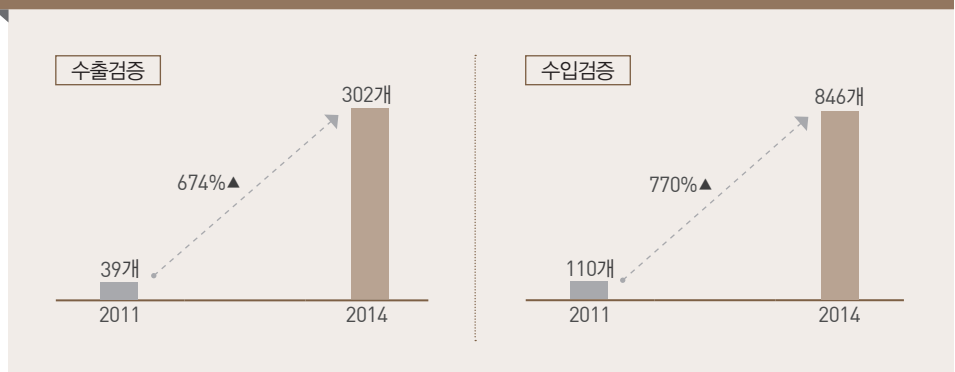
01 관세청 주요 이슈

관세청 2015년 1호 검증동향 제공, 검증 동향 한눈에 (2015.07.02)

(FTA발효 10년)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11개 협정, 총 49개의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FTA 교역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43%에 달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도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즉, 무역 의존도가 75.8%(2014년 기준)인 우리나라에서 FTA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증동향 2015년 1호

그림 : 관세청



최근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전국 5개 도시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15.6.15~6.30)하는 등 원산지검증 지원에 보다 적극

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최근 3년간('12 ~ '14) 우리나라의 수출입 원산지검증 현황을 발표하여 검증 패턴과 주요 유의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FTA협정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검증 중 EU 국가들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체 검증의 81%로 독보적이다.

따라서 EU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방식이므로 사후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필요하며, 검증 요청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관련 산업의 사후 검증 대비가 필요하다.

〈협정별 검증 현황〉

('12 ~ '14)

협정별	EU	아세안	EFTA	미국	터키	기타
검증업체 비율(%)	80.5	13.4	3.6	1.8	0.1	0.6

〈주요 품목별 검증 현황〉

('12 ~ '14)

품목별	전기 전자	섬유 직물	기계	석유 화학	차 부품	플라스틱	철강 금속	기타
검증비중(%)	19	19	13	10	8	7	4	20

* 출처: 관세청 (검증동향 2015년 1호 '최근 3년간 수출검증 현황', 상대국 → 우리나라)

그 외에도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업체를 검증 실시한 사례를 들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원사기준(원사부터 한국산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은 검증 대상으로 빈번하게 선별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원산지 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협정 관세 적용 업무처리 지침 (2015.07.02)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협정관세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지하였다.

이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에서 규정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 범위는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이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의 원산지증빙서류 수정’과 관련하여 수정신고 주체, 기간, 처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원산지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의 경우 처리’와 ‘원산지심사물품에 대한 오류 발견 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참고로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이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수리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원산지증명서 보정요구 및 수입신고 오류에 따른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내용 요약 〉

구분	내용	처리방법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신청(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류 : 수출자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서류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신고 대상 여부 -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을 준용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변경 및 세번변경 등이 있어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경우 -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리하고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류 : 수리 후 분석결과 통보서 등 입증서류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제출서류 확인 - 세번변경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유효성여부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38조의2(보정) 및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을 준용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처리방법
원산지 심사물품에 대한 오류를 발견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의 원산지 심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의 확인 - 협정관세의 적용 •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5 - 가” 내용을 심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사를 하는 세관장은 상기사항 발생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정요구 기간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규칙 제16조제5항) (나)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보정할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미보정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협정규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하거나 검증의뢰

* 출처: 관세청 (세부사항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참조)

**관세청 홈페이지에 '원산지 검증
진행정보 안내 서비스' 구축(2015.07.02)**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납세자(기업)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검증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진행현황을 지난 7월 2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원산지 검증 대상 기업들의 정보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를 활용한 수출입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관세청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14년도 기준으로 약 1,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원산지 검증은 검증절차에 따라 협정 상대국 업체까지 조사해야 하는 등 상당히 긴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검증 대상 업체로서는 검증이 신속히 종결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진행경과에 대해 상당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세청은 방문, 유선문의 등을 통한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검증 진행경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진행정보 안내서비스’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검증 대상 업체들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온라인에서 검증 진행경과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기간, 협정 상대국의 화신기한, 그리고 다음 조사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원산지검증진행내역’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에서 ‘정보제공 → 자사실적 → 원산지검증진행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검증진행정보 조회화면(관세청 홈페이지) 〉

연번	조사대상자	조사진행단계	검증계시일	자료요구기한	결과통지일	검증결과	상대국요청일
01	[Redacted]	국내서면조사	20150318	20150419	20150326	조치종결	상대국회신기한일

**관세청 - 특허청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로
협업 강화(2015.07.13)**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 7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세청·특허청의 한국 상표(이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업의 결과로서 중국세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고,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중국해관총서에 의하면 '14년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 단속에 의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과 특허청의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작년 12월 'K -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2월), K - 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4월~6월)를 연달아 개최하였으며, 외국세관 지적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 및 'K - 브랜드 뉴스레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양 기관은 오늘 열린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인도 사용 할 수 있는

교육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2015.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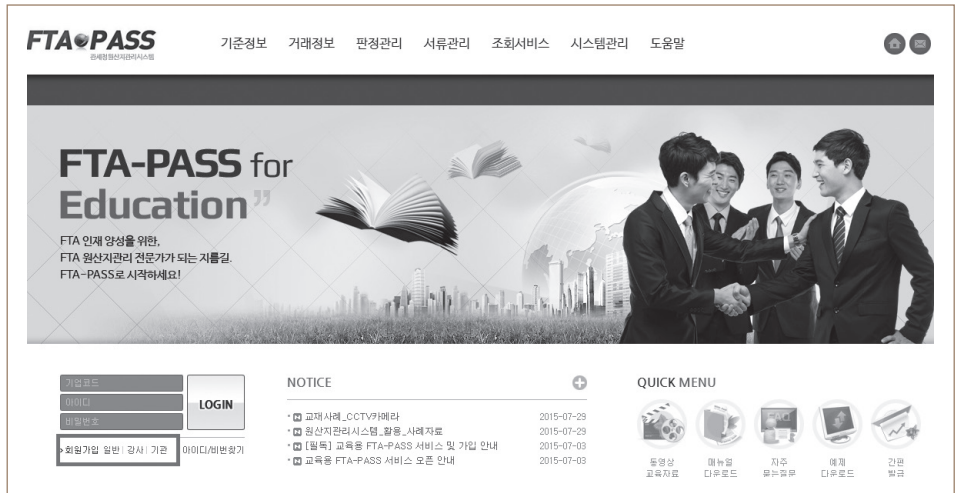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 - PASS*)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용 FTA - PASS'가 개발되었다.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12,585개 기업이 활용 중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개인이라도 교육용 FTA - PASS 홈페이지(<http://edu.ftapas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면, 중소기업 수출 주요업종별 원산지관리 예시를 통하여 가상의 기초자료 입력부터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까지 실습할 수 있다.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FTA - PASS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이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용 FTA - PASS의 보급으로 원산지관리사, 특성화고등학생, 대학생 등 미래에 FTA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업 전에 이 시스템을 활용한 원산지관리기법을 숙지할 수 있고, 앞으로 발효될 한중 FTA의 활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용 FTA - PASS 홈페이지 메인화면 〉



* 문의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 - 481 - 3228 / 국제원산지정보원, 031 - 600 - 0770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품목별 · 유형별 단속 결과 (2015.07.14)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관세청은 주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3개 업체, 1,95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관련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단속수요가 높은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건축자재(철강, 석재, 합판, 판유리 등), 도자제품(위생용품, 식기류 등), 전자담배(액상포함), 유아용품(완구, 유모차 등)

** 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품목별로는 철강재 10건(890억 원), 위생도기 20건(329억 원), 전자담배 43건(311억 원), 합판 7건(168억 원), 석재 23건(149억 원), 유아용품 6건(3억 원) 등을 적발했고,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83건(1,237억 원),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 원), 오인(誤認)표시 12건(91억 원), 손상·변경 1건(1억 원) 등을 적발했다.

〈 주요 적발 사례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오인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중국산·일본산 철제 채널(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	중국산 전자담배 현품에 원산지 표시 없이 배터리에만 'Designed by 업체명 in Korea'로 표시하고, 판매용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여 원산지 오인 유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산 합판에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세면기 밑바닥 등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중국산')하여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중국산 완구세트의 포장에 적정하게 인쇄된 원산지표시 위에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개정 통보(2015.07.16)

지난 7월 16일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 활성화 대책 반영 등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7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침명이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사전확인업무 시행지침』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대상 업체가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재료 또는 최종 물품생산자로 기업유형을 불문하고 확대되었다.

셋째, 복잡한 원산지 유통구조에서도 세관장 확인물품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세관장 확인물품에 대하여 FTA원산지 공인표시와 QR코드를 조합하여 세부정보(승인번호, 공급자, 품명, 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포괄확인기간, 승인세관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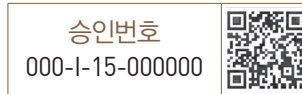
넷째, 민원신청내역과 승인내역 파악이 용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서와 심사결과서를 신청·승인서로 일원화하였다.

다섯째, 신청서류 보관기간 기산일을 세관장 확인승인일자로 조정하였다.

여섯째, 승인 번호체계를 기존 17자리에서 12자리(세관 중복부호 삭제 등)로 개선하였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번호〉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



	세관부호		문서구분		지정연도		지
번호체계	010	-	I	-	15	-	000000

그 외에도 민원신청내역과 승인내역 파악이 용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서와 심사결과서를 신청·승인서로 일원화하여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다.

관세청, FTA전문인력 구인구직...

'FTA e - 채용관' 구축 (2015.07.19)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 아카데미(www.ftaedu.or.kr) 내에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FTA e - 채용관)'을 구축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방 기업, 영세·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FTA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누구든지 이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등록 및 검색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이다.

기업은 '구인메뉴'에서 등록된 구직자를 검색하거나, 채용을 원하는 인재에게 바로 채용 제의를 할 수 있고, 구직자는 '구직메뉴'를 통해 개인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력서를 열람해 본 기업명단의 확인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FTA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FTA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인재들에게는 좋은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FTA 전문인력의 취업을 위해 취업과 고용을 연계하는 일자리연결잡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 FTA 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 메인화면 〉

자유무역협정 활용,

‘자유무역협정 상담사업팀’이 도와드립니다! (2015.07.27)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청이 실시한 ‘FTA 상담 사업’을 통하여 2015년 상반기에 총 28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FTA 상담 사업’이란 ① FTA 활용 종합, ② 원산지 검증 대응, ③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중 하나를 선택해 관세청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한 FTA 활용 지원사업을 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상담 지원을 받은 287개 기업 중 246개 기업은 기존에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사업 이후 이들 중 97%(239개 기업)가 FTA를 활용하게 되었다.

또, 54%(133개 기업)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도 새롭게 지정되어 스스로 원산지 관리도 가능해지고, 앞으로 발효될 한중 FTA의 활용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FTA 활용 의사가 있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된다.

〈‘FTA 상담 사업’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 담당부서〉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 지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인천경기 지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 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0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 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 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FTA 활용 촉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2015.08.24)**

지난 8월 24일 서울세관에서 유럽연합(EU)·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에 주요 관세정책을 소개하고, 관세행정 주요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자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협력증진을 통해 외국기업의 관세행정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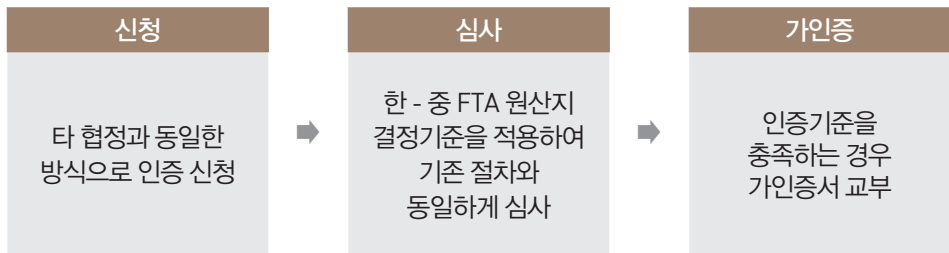
또, 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체결국과의 FTA 이행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매년 개최되는 'FTA 이행 위원회'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 운영 안내 (2015.08.24)

한 - 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제도가 운영된다. 한 - 중 FTA 협정 발효 전에 對 중국 수출기업들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 이들에게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간이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이 발효되어야만 인증이 가능하므로 가(假)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으면 C/O 발급시 첨부서류 생략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효과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한 - 중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모두가 가(假)인증제도 신청 자격이 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는 『신청』 → 『심사』 → 『가인증』의 절차로 운영된다.



※ 참고사항

1. 한 - 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는 협정발효 이후, 對中 수출기업들의 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임
2. 동 인증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한 - 중 FTA 가(假)서명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심사를 완료하였다는 인증서임
3. 한 - 중 FTA 국내비준일 이후,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가(假)인증신청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별 인증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인증심사 없이 곧바로 정식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한국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세미나 개최 (2015.09.01)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국 전문가들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아세안 회원국 세관 및 상무부(원산지검증부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국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전문가와 원산지검증을 담당하는 상무부 전문가가 함께 FTA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 아세안 FTA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2007년 6월 발효된 이후 8주년을 맞고 있는 한국 - 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회원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중소기업의 이해 부족 등으로 수출업체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 한국 - 아세안 FTA 활용률: 36.5%('12) → 36.4%('13) → 37.0%('14)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 1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서울, 부산, 인천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해외 현지 통관단계에서 FTA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 등과 직접 접촉하여 해결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FTA 이행 동향을 시작으로 원산지 발급 시스템, 검증 기법, 관리 프로그램 등의 주제로 아세안 회원국의 다양한 이행 실태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 관세청 블로그 ecustoms.tistory.com

고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과 기업 간 일자리 연계 (2015.09.04)

관세청은 지난 9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고졸성공 취업 대박람회'에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종합상담센터 홍보관 채용관(이하 YES - FTA *관)을 운영하였다.

*YES FTA :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관리 및 기업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관세청의 FTA 지원 사업 브랜드명

'YES - FTA관'에서는 현장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FTA 전문인력과 실제 채용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참가해 1 : 1 현장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에는 에이원·스카이브릿지·신한 등 관세법인, 수출·물류업체 등 20개 업체와 FTA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YES FTA 아카데미'를 수료한 120명의 특성화고교생 등 고졸(예정자 포함) 구직자들이 참가하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FTA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함께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버스 안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내부를 관람하고, 센터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이 행사에서는 FTA 관련 분야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관세청 입사를 위한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청 홍보관'이 운영되고, 여기에는 특성화고교 출신 세관 직원이 참여하여 생생한 취업 경험 전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청년실업해소 및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수출입 실무, 회계실무 지식을 접한 특성화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과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결(잡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 제공 (2015.09.07)

지난 9월 7일부터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혜택 받는 관세액을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 - PASS)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FTA - PASS 홈페이지 (<http://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사용 방법: 『FTA 활용혜택 계산 및 원산지 판정 흐름 보도자료』 참조

서비스를 통해 FTA로 혜택받는 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고,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FTA - PASS에서는 중국의 관세율표, 일반세율, 양허세율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8 / 국제원산지정보원 031-6000-770

관세청, 전자정부 역대 최대 규모

수출(2억 3천만 불) 달성 (2015.09.08)

관세청은 지난 9월 4일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현지 관세청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협정을 맺고, 2억 3천만 불(약 2,7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돈현 차장은 카메룬 정부의 구매 결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이 사업이 카메룬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을 전하고,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3년에 걸쳐 카메룬에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12년 동안 유상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장기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출이 우리 기업은 시스템 구축을, 도입국은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이번 계약은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생애 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친 수출을 달성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관세청은 지난 '12년 탄자니아 시스템 수출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전자정부 수출의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 카메룬 수출로 서아프리카 지역에도 수출기반을 다짐으로써, 중남미의 에콰도르('10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14년)과 함께 대륙별 거점 수출국가의 기반을 완비하게 되었다.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우리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으로 우리 관세제도의 우수성이 담겨 있는 시스템 수출을 통해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우리 기업에게 해외 전자 시스템 구축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품질의 통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15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발효국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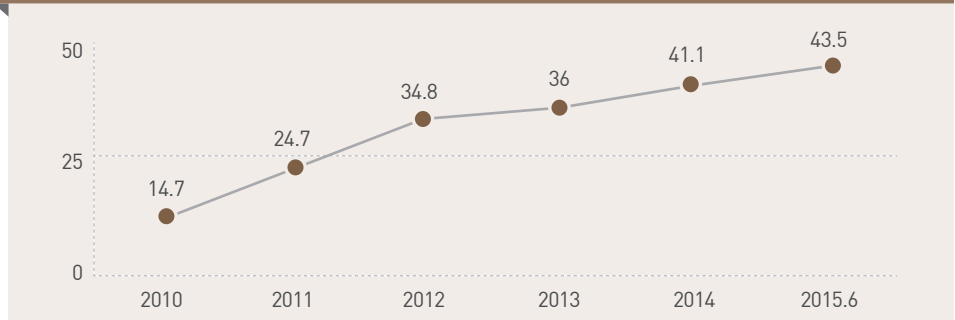
교역 동향 (2015.09.17)

지난 9월 17일 관세청은 '15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을 발표하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5년 상반기 전체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한 가운데, FTA발효국(△6.6%)과의 교역 감소폭이 미발효국(△12.7%)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FTA 발효국은 '15년 7월 기준(11개 협정, 49개국)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43.5%로서, '10년 14.7%에 불과하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호주('14년 12월), 캐나다('15년 1월)와의 FTA 발효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p 증가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앞으로 중국·뉴질랜드와도 FTA가 발효되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3.5% 감소*, 미발효국과는 6.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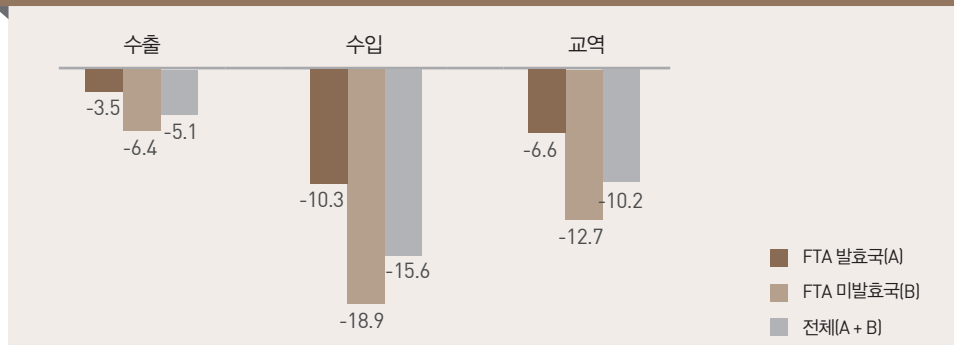
* 아세안(△13.9%, 443 → 381억 불) 미국(5.5%, 339 → 357), EU(△14.7%, 275 → 235) 등

수입의 경우는 전체 수입이 15.6%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3% 감소*, 미발효국과는 18.9% 감소하였다.

* EU(△6.1%, 311 → 292억 불), 아세안(△16.6%, 268 → 223) 미국(△5.0%, 230 → 219) 등

FTA발효국 / 미발효국 수출입 증감률

‘15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9%, 수입 △5.0%)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3.8%, 수입 △17.3%)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감소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FTA 특혜관세 품목 :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한편, 올해 상반기 FTA 수출활용률은 71.3%로, '14년(69.2%)보다 2.1%p 증가했다. 협정별로는 페루(89.8%), EU(86.7%), EFTA(81%), 미국(78.8%)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활용률은 68.2%로 '14년(68.0%)보다 소폭(0.2%p) 증가했다. 관세청은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 수산물까지 확대 (2015.09.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개정 고시하였다.

관세청은 우리 어민이 생산한 물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수협이 발급하는 '물김 구매확인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했다.

그동안 물김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어민은 어업권행사계약서, 수산물 매매기록장* 등을, 물김 구매인은 구매확인서, 매수인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제시해야 했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산물 매매기록장: 출하자, 수량(중량), 구매자 등 표시
**매수인 계산서: 중도매인이 수산물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

이번 조치로 물김 생산자와 구매인(또는 수출자)은 수협에서 발급한 '물김 구매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중 수출 1위 상품인 '김'의 FTA활용 해외수출이 쉬워지고, 특히, 한중 FTA 발효 시 우리나라 김의 중국진출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원산지 간편 인정서류를 수산물 및 축산물 등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02 우리나라 FTA 동향

제12차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2015.08.23)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이 모인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하였다.

*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정식서명 나머지 7개국은 잠정서명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세 법령 공포,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역내부가가치기준 계산 방식 기업별 선택, 사전심사 발급 등 무역원활화 규정을 도입하였고, 한국과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간 상호주의 제도 적용을 중단, 여타 4개국 간 적용 확대를 금지하였다. 또한 각 당사국의 2016.1.1 이후 연도별 관세 인하일정을 첨부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다소 보호주의적인 한 - 아세안 FTA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절차간소화 및 기업 편의증진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의 한 - 아세안 FTA 활용도 대폭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주요내용 〉

구분	현행	개정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명문화	협정상 규정 부재 협정상 규정 도입 • 지금까지 이행위원회 합의를 근거로 인정하여 왔으나, 협정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 제거	
	기업별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 선택 허용	국별 일률적 적용 (우리나라: 공제법) 기업별로 공제법 또는 집적법 중 선택 적용 • 기업별로 유리한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특혜 관세 활용이 용이	
	사전심사 조항 도입	협정상 규정 부재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가 ① 품목코드, ② 관세평가 관련 문의, ③ 원산지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 에 수입前 사전적으로 심사 요청 가능 (가능한 범위 내) • 기업에서 FTA 혜택 향유 가능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인한 후 수출입할 수 있어서 실제 수출입 시 수입국의 특혜관세 거부 또는 추후 관세추징의 우려 해소	
	투명성 규정 보완	GATT 제10조 준용 • 통관 관련 법령 / 정보를 대중에 공개 • 통관 관련 문의처 신설 • 기존 기본적인 투명성 조항에 더하여, 보다 구체화된 통관 관련 정보를 기업에 신속히 제공 가능	
	상호주의 제도 개선	한국과 아세안 5개국 (인니,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이 운영중	• 한국과 아세안 4개국(인니,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간 상호주의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 품목 확대 금지 • 한국과 여타 6개국은 상호주의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
		• 현재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 상호주의 제도를 일부 폐지 및 확대 금지함으로써 한 - 아세안 간 교역 촉진 기대	
양허표 (관세인하 일정) 첨부	협정상 품목 목록만 존재	연도별 · 품목별 세율 명시	
	•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아세안측 세율을 파악할 수 있고, 2024년까지 연도별 적용세율을 적시함으로써 향후각국이 적용할 세율을 명확화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 : www.fta.go.kr,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및 양국 간 경제협력협정 협상 공식 선언식

한 - 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개최 (2015.08.25)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8.25일(화) 에콰도르와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 - 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이하 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에콰도르는 최근 안정적 경제성장 및 중산층 확대*로 인해 내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과는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 규모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향후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다.

또한 석유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향후 플랜트 건설 분야 진출이 유망할 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메르코수르 가입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대(對)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수립한 “신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 전략”에 따라 올해 에콰도르와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대국민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번 에콰도르 장관 방한 계기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SECA가 ①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으로서, ②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으며, 양국은 그간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존 협력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형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FTA 협상과 별도로 “한 - 에콰도르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 -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추진은 박근혜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제1차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세칙(TOR)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 : www.fta.go.kr, 농수산물 수출업계 간담회

부처합동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농수산물 수출업계 간담회” 개최 (2015.08.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지난 8월 26일, 부처합동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촉진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수출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작년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의 경우 34.8% 수준으로, 제조업 수출활용률(제조업 전체, 8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 원인이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농수산물 업계의 특성상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이 가중돼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FTA활용을 통한 농수산물 업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출업계의 FTA 활용의지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낮은 FTA 활용률(24.4%) 높이기 위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품목·국가별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미국(63.7%), 유럽연합(EU)(78.2%) 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낮은 아세안(ASEAN) 지역(0.7%)의 FTA 활용도를 끌어 올리는 한편,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중국으로의 수출확대를 위해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의 대중국 수출 지원 정책을 정비함해 앞으로 한 - 중 FTA 발효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의 다양한 FTA 활용지원정책과 농수산물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agri) 등을 농수산물식품 업계가 잘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는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산업이 FTA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상담·컨설팅, 원산지관리 교육 등 FTA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농수산물식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계기로 농수산물식품 업체의 농수산물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 - agri) 활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수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수출 초보기업의

중국 진출지원 개시 (2015.08.31)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는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 대응하고 수산물의 대(對)중 수출확대를 위해 상해와 청도에 개설한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내 '수출인큐베이터'에 5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홍보·판촉하고 수출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해와 청도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위험을 줄이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출지원센터 내에 '수출 인큐베이터'도 설치했다. 수출 인큐베이터는 중국 시장에 수출을 모색하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위해 통역, 회의실 제공, 법률 및 회계자문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상해, 청도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이 중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 (2015.08.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對중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구성된 ‘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번 간담회는 한 - 중 FTA 비준 절차를 앞두고 對중국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농식품 수출 비상점검 특별팀(TF) 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對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농식품부)’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KREI)’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였다.

농식품부는 10월중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위마이왕(B2C)’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고, 시안(9월), 충칭(11월)에서 ‘프리미엄 한국 농식품 상품전’(K - Food Fair)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위안화 환율하락이 단기적으로 농식품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출 농식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하락의 배경이 된 중국의 경기침체가 오히려 우리 농식품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며,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A업체는 중국의 식품 영양정보, 성분 등 라벨표기 사항이 우리나라 규정과 달라 중소 수출업체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B업체는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외에도 전광판, TV, 인터넷 배너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우리 농식품을 중국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C업체의 경우 중국의 농식품 통관 거부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과 식품성분, 라벨표기 등 농식품 수출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수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식품 관련 법률, 제도, 상품 분석, 홍보 분야의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사업을 도입, 추진키로 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베트남 FTA 활용, 베트남 대표 기업과 파트너링 (2015.09.15)

KOTRA(사장 김재홍)는 연내 한-베 FTA 발효를 앞두고 양국 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자 지난 9월 1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대표 국영·민영기업 17개사를 초청해 '한국-베트남 데이 인 서울(Korea-Vietnam Day In Seoul) 201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일본, EU 등 주요 권역별 수출이 급감하는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을 수출 유망시장으로 재인식하고, 수출부진의 돌파구를 찾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6위 수출시장이었던 베트남은 올해 7월 기준 4위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며 대표적인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베트남 기업은 유통,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등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굴지의 기업들로, 이들 기업의 연매출을 합하면 총 250억 달러(약 30조원)가 넘는다.

한-베 FTA 수혜품목으로 꼽히는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탄 공 그룹(Thanh Cong Group)과 베트남 남북부를 각각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삼코(SAMCO), 비나모(VINAMOTO)가 방한해 국산 자동차부품의 공급 및 공동 제품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이태식 KOTRA 전략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상담회는 초대형 베트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최초의 국내 행사인 만큼 1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수주 및 구매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베 FT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과 베트남 글로벌 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출처 : KOTRA

대미 수출섬유류

생산자정보 등록 안내 (2015.09.18)

한 - 미 FTA 협정문 제4.3조 3항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섬유 및 의류제품을 제조한 국내 생산자의 정보는 미국 세관당국으로 매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미국 세관당국은 제공받은 DB를 검토하여 '생산자정보가 없거나, 수출실적 대비 생산능력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요구 또는 현장 방문조사 등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섬유산업FTA지원센터(www.ftatex.or.kr)는 섬유 생산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한 - 미 FTA역내 공급부족 품목 조사 및 신청지원, 원산지 검증 대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對 미국 수출업체의 섬유류 생산자 정보를 등록 또는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섬유생산정보관리시스템(www.ftatex.or.kr)을 통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 업체는 미국에 섬유 및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이고, 미국 수출 섬유제품의 제조공정을 수행한 국내 생산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절차 : www.ftatex.or.kr 접속 후 '섬유생산정보 관리시스템' 가입 → '협력생산자통보' 메뉴에서 '생산자등록 조회 및 통보' 선택 → 회사명 조회를 통해 ① 생산자 미등록기업인 경우, '미등록기업통보' 작성 or ② 기등록기업인 경우, 우측 '통보' 버튼 클릭 → 통보완료

〈 FTA 섬유 생산정보 관리시스템 가입 메뉴 〉



* 그림 : 섬유산업FTA지원센터

등록 기간은 2015년 10월 30일까지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지원센터(T.02-528-4060)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섬유산업FTA지원센터

**중소중앙회, 한·중미 6개국 FTA 업종별
의견조사 실시 (2015.09.21)**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9월 21일 1차 협상이 예정된 한 - 중미 6개국 FTA와 관련하여 수출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미 6개국* FTA(자유무역협정) 업종별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중미6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수출중소기업의 32.3%가 중미6개국은 FTA 체결시 자사 경영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중미6개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개선(53.6%), 중남미 내수시장 진출기회 확대(44.3%),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22.7%)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류기기·의약업종의 경우 65.4%가 FTA 발효시 경영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응답기업의 53.8%는 중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등 중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TA 체결시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응답한 기업이 58.0%에 달하고 “FTA 발효시 신규진출 희망” 기업도 응답기업의 5.0% 수준에 그쳐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중미6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미6개국과의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미6개국 내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지원(63.3%), 중미6개국 바이어미팅 주선(53.2%), 통관애로 해소(25.3%), 시장·투자 정보제공(19.0%), 규격·인증 상호인정협정 체결(12.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미지역은 지리적으로 멀고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시장정보 접근이 어려워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아직 적은 상황이다”며 “향후 전략업종 중심으로 중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미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한·중미 FTA로

경쟁국 제친다 (2015.09.25)

한·중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중미 지역의 무역관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 교포기업, 바이어 등 주요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종합하고 지난 9월 23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번 FTA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관세인하에 따른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미 6개국*은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품에 관세인하 효과가 주어질 경우 경쟁국에 앞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미 6개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특히 파나마와 과테말라에서는 타이어에 10~15%의 고관세가 붙는데, 한·중미 FTA로 관세인하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최대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 관계자는 “한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격차는 30% 정도인데, 이번 FTA가 체결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품목에서는 경쟁국들이 이미 관세인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FTA가 낮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스타리카의 차부품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시장에서 중국, 멕시코, 미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무관세로 수출 중인데 비해 우리 상품에는 23 ~ 4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경쟁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파나마의 차량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주요 경쟁국인 미국산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산에는 1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 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중미 6개국에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스타리카와, 대만은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와 이미 FTA를 발효했으며, EU 및 미국은 6개국 전체와 FTA를 체결했다.

또한, 이번 FTA의 효과가 특정국과의 경쟁이나 중소기업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미시장에 테이프를 수출 중인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15%에 달하는 관세인하 효과가 있더라도 가격 차이가 현격한 중국산과의 경쟁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3M과의 경쟁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 진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FTA가 체결되면 제품을 제3국에서 생산하는 대기업 보다는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미 6개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중남미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인 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이들 6개국이 신흥 수출 유망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미 6개국으로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은 37억 6,300만 달러, 수입 실적은 1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출처: KOTRA

03 해외 FTA 관련 동향

EU, 베트남과의 FTA

협상 타결 발표 (2015.08.04)

지난 8월 4일 EU는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협상은 2012년 10월 공식 협상 개시 이후 약 2년 반 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이며, 이번 FTA 협상 타결에

따라 베트남은 향후 10년에 걸쳐 99% 이상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2014년 기준으로 양측 교역규모는 283억 유로에 달하는데, EU는 베트남의 2대 교역대상국(1위 : 중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8대 교역대상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4위)이다.

EU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세실리아 말름스트롬(Malmstrom)은 현재 EU의 수출 관련 일자리의 수가 310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베트남과의 FTA로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구 9000만 명에 이르는 거대 시장인 베트남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크게 고무된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FTA가 베트남을 경유해 EU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며, 대 베트남 투자 진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KOTRA

한·중 FTA 시대, 중국 내 지식재산권 중요성 날로 높아져 (2015.08.11)

중국 국가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2014년 지식재산권법에 출원된 발명특허는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2만8,000건으로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2015년 상반기 중국 내 발명특허 수리 건수를 성(省)별로 살펴보면 4만4,678건의 발명특허를 수리한 장쑤성이 1위를 차지했고, 3만2,439건으로 광둥성이 2위, 2만9,325건으로 베이징 3위, 2만2,714건으로 저장성이 4위, 2만1,918건으로 산둥성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법에서 《2014년 전국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업무 요점 및 각 지역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중점 업무 총집》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표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한국 중소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식재산권 전쟁 시대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며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정책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지적재산권 전략 강요를 수립했다. 2020년까지 지적재산권 수준이 높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이며, 또한 국가 지적재산권 심층 전략 행동 계획과 2015년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실시 계획을 통해 최근까지도 지적재산권 중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중국 내 한국 수출기업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도와줄 IP데스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설립될 시안 IP데스크를 활용한다면 중국 서북지역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서북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KOTRA

EU 경제영토, 아프리카 동부(EAC)까지

확대 예상 (2015.09.04)

EAC와 EU의 EPA(경제동반자협정)는 2007년 말 개시되었고, 2009년 7월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EAC 회원국에 불리한 협상내용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지연된 바 있다. 특히 2014년 9월 30일 협상기간 만료로 인해 EAC 국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원예품목(최대 수출국 : 케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EAC(East African Community :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5개국)

EU는 저개발국가의 경제, 무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EPA 체결로 예상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관세철폐, 시장 개방, 물자와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 초석 제공 ② 시장 확대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 촉진 및 무역창출 효과 ③ 관세제도, 절차 개선 및 품질기준 향상으로 경제블록 간 경제 활성화 계기이다.

한편, EU 측 제안은 비상호적이고 차등 특혜적인 무역협약이라는 지적이 있고, EAC가 단순 원자재 공급지나 유럽 제품을 위한 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양자간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EAC는 동아프리카 최대의 시장이며, 관세동맹을 체결한 지역경제블록으로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EU와의 EPA 체결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것임에 대비해 우리 기업도 시장 선점을 위한 활발한 현지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출처 : EU, ACP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중국 실용신안제도, 우리 기업도 적극 활용해야(2015.09.15)

중국은 2012년 처음으로 '중국 실용신안제도 발전현황'을 발표, 1985년 중국 특허법 제정 이후 실용신안에 대한 별도 보고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보고에는 1997년 실용신안 출원건이 처음으로 5만 건을 초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00년 중국의 실용신안 특허 출원량은 세계 실용신안 출원 총량의 42%를 차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 중국은 세계 출원 총량의 83%를 차지했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은 전리법* 제정 이후 3차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2008년 동일한 출원자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실용신안과 발명 특허를 동시에 출원 가능한 '이중출원'을 허용하였다.

*전리법 : 우리나라로 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을 총칭하는 용어

중국의 전리법에서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생성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이라고 규정했다. 즉 '작은 발명, 작은 창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특허출원보다는 단기성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는 실용신안 출원이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중국 내 실용신안 출원은 일본이 2009년 328건에서 3,009건, 미국도 720건에서 1,705건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134건에서 344건에 그쳤다.

따라서, 대 중국 수출 1위인 한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중국 내 지재권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중국 진출 전 지재권 권리 확보를 통해 지재권 경쟁력 확보 및 중국 현지 및 기타 경쟁기업 견제수단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무조건 특허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중국 내 '이중출원'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기술에 따라 시간 및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실용신안 출원을 권고한다.

*출처: KOTRA

TPP 협상 타결...

12개국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지대 (2015.10.06)

미국과 일본, 여타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지난 10월 5일(미 현지시간) 타결됐다.

거의 8년 동안 진행된 협상 타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 나라를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TPP 협상의 타결은 이를 주도해온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획기적인 대외 정책 업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미 의회에 이번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특히 대선주자들의 이해 충돌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12개국은 TPP 합의에 따라 향후 수천여 수입 관세와 국제무역 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며 단일한 기업 지적재산권 규정 마련과 공산주의 베트남 등에서의 인터넷 개방, 야생동물 밀거래 및 환경 오염용 척결 등에 나선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별다른 영향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조기 비준을 추진하며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TPP 활용과 쌀과 소, 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시장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일본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공할 전망이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직접적인 협상 대

상국은 아니지만 향후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국제무역연구원,

TPP가 섬유·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5.10.06)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이 TPP에 가입 시 섬유·의류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가입 이전에 이미 투자 진출을 한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6일 공개한 'TPP가 섬유·의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섬유·의류에 대한 고관세 철폐가 예상됨에 따라, 베트남을 핵심축으로 TPP 내 섬유·의류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Global Supply Chain)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TPP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대만 등 TPP 역외국의 베트남 내 업스트림(Upstream)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역내 일관생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의류 수출은 40.9%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우위를 점했지만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베트남이 선전하고 있다. 섬유·의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직물(44.4%)로, 주로 봉제업이 발달한 베트남 등 이 수입국이며 중국과 한국에서 이를 조달한다.

베트남은 TPP 참여국 중 역내 최대 의류 수출국이고, 베트남은 원사 / 원단 생산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의 섬유·의류 소재를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서 조달한다. 보고서는 TPP 참여국 내에서 섬유·의류산업은 베트남의 직물 수입을 통해 봉제 과정을 거쳐 미국·일본 등 거대 소비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베트남이 중국과 한국에서 직물을 조달해 재단·봉제·염색을 한 뒤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향후 가격경쟁력이 크게 작용하는 섬유·의류산업에서 저인건비와 TPP 관세효과에 힘입어 최대 의류 수출국인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단
기적으로는 베트남을 대미·대일 수출의 생산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나라 섬유산업의 공동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슈퍼 섬유·산업용 섬유 기술 강화와
R&D(디자인)에 주력하는 등의 노력으로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정부 TPP 발효까지 최소 1~2년, 당장의 수출 영향 크지 않을 것(2015.10.07)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7일 “TPP 타결 후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시장규모는
42.7%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점
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지만 발효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타결 자체로 당장
의 영향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관세 2.5%)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시 전품
목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TPP 가입으로 우리의 FTA로 인한 시장선점효과(상대국 관세인하)가 없어질 것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 향유할 수 있다”고 해
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TPP에 참여하겠다는 입
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
률’(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칠 필요
가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미 신(新) 통상로드맵, 신 FTA추진전략에서 언급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FTA ANALYSIS

FTA 협정분석

① FTA 협정분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분석

② FTA 산업분석

FTA특혜무역활용통계를 통해 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 현황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분석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1 들어가며

한 - 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된 우리나라의 네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로서는 제 2의 경제권과의 FTA체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초기에 발효된 FTA협정으로서 한 - 미 FTA 및 한 - EU FTA협정과 비교하여 우리기업의 현실 및 관세행정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발효 이후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제무역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의 타결은 정체 상태에 있던 WTO 도하라운드의 숨통이 트이게 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상품무역협정의 일부로서 지난 2001년 이후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14년 만에 탄생한 도하라운드(Doha Round)의 실질적인 첫 결과물이다. 무역원활화협정으로 WTO 협정이 개정되면서 WTO협정을 근거로 탄생한 FTA 협정은 동 개정사항을 수용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협정문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자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부당국은 2013년 6월부터 약 2년간 상품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결국 양국은 2015년 5월 제12차 이행위원회에서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 개정의정서 문안을 확정하였고, 8월 한 -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제3차 개정의 정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금번 한 - 아세안 FTA협정문 개정으로 내용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및 관세당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개정되는 한 - 아세안 FTA 개정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 - 아세안 FTA 협정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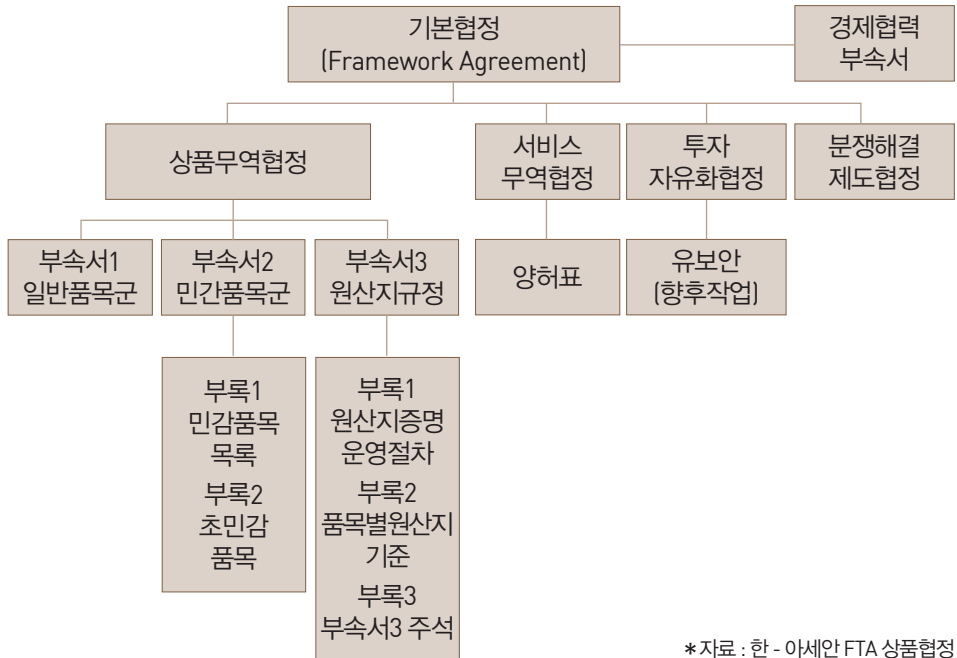
- '04.11월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 선언
- 2006.8.24 상품협정 서명(태국은 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하였으나, 2007.12월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 2010.1.1 한 - 태국간 상품협정 발효)
- '07년 상품협정, '09년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순차적 발효(상품분야의 경우 일반품목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모두 90%) 및 민감품목(10%)으로 나누어 일반품목은 '12년*까지 관세철폐) 다만, 베트남('18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20년)의 경우 예외 인정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2차례 이행위원회 및 4차례 임시위원회 개최
 - 제1차 이행위원회(2009.10.12 - 14, 서울)
 - 제2차 이행위원회(2010.3.10 - 12, 필리핀)
 - 제3차 이행위원회(2010.7.28 - 30, 캄보디아)
 - 임시이행위원회(2010.12.9 - 10, 아세안 사무국)
 - 제4차 이행위원회(2011.3.9 - 11, 서울)
 - 제5차 이행위원회(2011.6.13 - 16, 베트남)
 - 이행위원회 특별회의(2011.12.20 - 21, 인도네시아)
 - 제6차 이행위원회(2012.2.28.- 3.1, 라오스)
 - 제7차 이행위원회(2012.7.10.- 11, 아세안 사무국)
 - 제8차 이행위원회(2013.6.25 - 27, 서울)
 -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2013.9.16 - 17, 서울)
 - 제9차 이행위원회(2014.4.26 - 28, 인도네시아)
 - 제10차 이행위원회(2014.7.14 - 16, 서울)
 - 이행위원회 추가자유화 특별회의(2014.11.17 - 18, 아세안 사무국)
 - 제11차 이행위원회(2015.1.27 - 29, 태국)
 - 제12차 이행위원회(2015.5.12 - 14, 서울)

02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의 구성¹⁾

일반적으로 FTA협정문은 각 당사국의 산업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상품무역을 중요시하는 국가간에는 상품무역협정이 중요시되지만, 서비스·투자가 중요한 경우라면 상품못지 않게 서비스·투자관련 조항도 비중있게 합의된다.²⁾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FTA는 상품관련 조항이, 선진국과의 FTA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투자 및 기타 관련 조항도 중요시된다.

한 - 아세안 FTA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 개발도상국과의 FTA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상품무역협정이 가장 비중이 있다. 서비스·투자 협정도 별도로 존재하나, 이는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의 구성〉



*자료 :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

1) 이하 '협정'이란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을 말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상품무역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서비스협정이나 투자협정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예를 들어 한 - 미 FTA의 경우 한 - 아세안 FTA와 같은 세부 협정문은 없으며 제1장이 일반적 정의, 제2장이 상품, 제11장이 투자, 이외 서비스와 관련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미 양 당사국이 상호 주고 받은 서한도 협정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WTO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 많다. 한 - 아세안 FTA협정문은 기본협정문과 함께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자유화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의 5개 세부 협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8월 한 - 아세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상품무역협정에 관한 것으로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가 협정 본문에 추가된다. 동 개정 의정서는 상품무역협정 본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2016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인정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03 한 - 아세안 FTA 협정 개정사항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내용은 크게 WTO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역내부가가치제도의 개선,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로 요약된다.

① WTO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2014년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되면서 WTO회원국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인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였으며, 양자간 협정인 FTA협정도 이를 준수하도록 개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개도국과의 FTA협정인 한 - 아세안 FTA협정은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수용하면서 개정되는 부분이 많다. 무역원활화협정이 FTA협정문의 개정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금번 한-아세안 FTA 개정안의 모든 내용이 무역원활화에 관련한 것은 아니다.

〈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

조항	개정안 (2016. 1. 1 발효)
<p>제1조 (협정 제4조의 개정)</p>	<p>협정 제4조 투명성,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94년도 GATT 제10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의 시의 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원활히 할 것이다. 3. 당사국들은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사안들을 제외하고,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모든 관세 행정 절차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한다.
<p>제2조 (협정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p>	<p>협정 제4조의2 사전심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국은 자국 각각의 법령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 조의 제2항가호에 기술된 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 및 /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질의사항 및 /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서명으로 제공한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전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생략) 3. 제2항다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사전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신청에서 제기된 질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생략) 5.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심사 일부터 3년간 또는 각 당사국 각각의 법령 또는 행정적 결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동안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그 심사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적용한다. 6.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생략) 7. 당사국이 소급적으로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심사가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8. 수입자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대우가 사전심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세 행정기관 및 /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그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그 사전심사가 기초로 한 사실 및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9.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모든 비밀 요건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자국의 사전심사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조항	개정안 (2016. 1. 1 발효)
제2조 (협정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	협정 제4조의3 문의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관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이행당사자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제4조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5조제1항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가. 인쇄된 형태로(각주 : 인쇄된 형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나. A4 크기 용지에 다. 첨부된 양식[첨부1](이하 “AK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그리고 라. 영어로 작성

② 역내부가가치제도의 개선

역내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의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계산방식, 기준가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 아세안 FTA는 특이하게도 역내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식을 협정문에서 정하지 않고,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여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수출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계산방식 변경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역내부가가치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이 포함되었다.

조항	개정안 (2016. 1. 1 발효)
제3조 (협정 부속서3 제4조제2항 각주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RVC 산업법 중에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는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 선택된 RVC산정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의 모든 검증은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용한 방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③ 상호주의제도의 개선

한 - 아세안 FTA에는 '상호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대응세율'제도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협정문에는 없는 것으로서, 일반품목·민감품목으로 구성된 한 - 아세안 FTA의 특징적인 관세양허방식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 - 아세안 FTA의 상호주의 제도는 FTA의 기본취지인 관세양허 및 자유무역과는 다소 동떨어진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항	개정안 (2016. 1. 1 발효)
<p>제5조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 개정)</p>	<p>협정 부속서2 제7항</p> <p>7.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당사국에 의하여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p> <p>(1)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퍼센트 또는 그 미만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통보하였다.</p> <p>(2)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으로 한다.</p> <p>(3) 제(2)목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율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p> <p>(4)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은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p>제6조 (협정 부속서 2에 새로운 제7항의2를 삽입하는 개정)</p>	<p>협정 부속서2 제7항의 2 7의2.</p> <p>가. 이 부속서 제7항 및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관세율 대우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이행위원회에 보고된다.</p> <p>[각주 :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권리는 이 의정서가 한국과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양자적으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한국과 라오스 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한국과 미얀마 간, 한국과 싱가포르 간,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에 영구적으로 포기된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한국과 필리핀 간,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관세품목의 수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가되지 아니한다.]</p>

조항	개정안 (2016. 1. 1 발효)
제6조 (협정 부속서 2에 새로운 제7항의2를 삽입하는 개정)	나. 가호에 언급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출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1에서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그 관세품목에 대한 해당 수입 당사국의 관세 양허를 향유한다.

④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구체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은 대부분 유사한 관세인하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준세율(어느 연도의 MFN세율로 할 것인가)을 정하고 양허방식(몇 년에 걸쳐 철폐할 것인가)을 정한 후, 품목에 따라 기준세율과 양허방식을 표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 - 아세안 FTA의 민감품목 관세인하는 단지 '몇~몇 %의 관세로 인하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인하세율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협정세율은 각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매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을 협정문에 직접 삽입하기로 하였다.

조항	개정안 (2016. 1. 1 발효)
제7조 (협정 부속서 1 제8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1 제8항 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
제8조 (협정 부속서 2 제8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2 제8항 8. 각 당사국은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이 부속서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인하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
제9조 (협정 부속서 2의 부록1 및 2를 삭제하고 새로운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을 삽입하는 개정)	협정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 관세 인하 및 / 또는 철폐 일정 1. 브루나이다루살람 2. 캄보디아 3. 인도네시아 4. 한국 5. 라오스 6. 말레이시아 7. 미얀마 8. 필리핀 9. 싱가포르 10. 태국 11. 베트남

04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관련 조항

① 무역원활화협정이란

무역원활화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이하 WTO 협정)’ 부속서 1의 일부이다. WTO협정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교역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방면의 합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부속서(Annex)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속서 1가는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며, 이를 다시 세분화 한 것이 GATT협정, 농업협정 등 각 개별 협정이다.

WTO회원국들은 2001년부터 약 14년간 합의를 거쳐, 2014년 비로소 무역원활화 협정 최종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WTO협정문 부속서 1가의 맨 마지막에 추가되었다. 이로서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3개의 분야별 협정문은 무역원활화 협정을 추가하여 총 14개가 되었다.

〈WTO 협정의 구조〉

본문	부속서	세부협정명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WTO협정)	부속서 1	<p>가. 상품에 관한 다자간 협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농업에 관한 협정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 1994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p>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p> <p>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p>

〈WTO 협정의 구조〉

본문	부속서	세부협정명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WTO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제도 - 민간항공기 협정 - 정부조달 협정 - 국제 낙농 협정 - 국제 우육 협정

* 자료 : WTO협정을 참조하여 직접작성

1) 무역원활화협정의 도입배경

‘무역원활화’라는 단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제가 WTO다자간 협상의 공식의제에 오르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각 국가의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원활화에 대한 연구는 WTO출범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는 GATT협정과 8차례의 무역라운드로 전 세계 관세장벽이 상당수준 낮아진 때였다. UNCTAD에 의하면 1932년에는 세계(단순)관세율이 59%였으나 2001년 기준 선진국 산업별 수입가중 평균 관세율은 3.1%, 개발도상국의 산업별 수입가중평균관세율은 11.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국제교역에 따르는 각종 거래비용의 규모는 국제교역 총 금액의 약 2~15%로 추정되고 있었다.³⁾

이에 따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활발히 이어 나아갔다. 특히 2001년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 11월에 카타르에서 개최된 4차 각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유효한 자국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 개발도상국에게는 무역원활화협정의 논의는 매우 큰 부담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무역원활화협정의 합의에 앞서 선진국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선진국은 이를 수용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의 본문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3) 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관세청.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지원을 약속한다는 전제조건으로 2014년 무역원활화협정이 타결되었다. 이로써 2001년 도하에서 시작한 뉴라운드 성과는 관세의 인하보다는 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개선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2) 무역원활화협정의 목적

무역원활화협정은 WTO회원국 간 무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추가된 협정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의 목적은 협정의 전문에서 볼 수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전문

회원국들은... 통과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GATT 1994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화하고 개선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를 통하여 설립된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및 수출보조금 등의 이슈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무역원활화 협정은 WTO회원국 간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1994 GATT협정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무역원활화협정은 GATT 협정 제5조, 제8조,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 GATT 제5조 (통과의 자유)
- GATT 제8조 (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 GATT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GATT제5조는 통과의 자유, 제8조는 수입과 수출에 관한 수수료 및 절차, 제10조는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다. GATT협정 중에서 '무역의 원활화'와 관련된 조항은 이외에도 여러 조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위의 3개 조항이라 할 수 있겠다.

〈 무역원활화 협정 조항별 관련 GATT 협정 〉

무역원활화 협정		구체화	관련된 GATT 협정		
제1절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	제10조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			
	제3조	사전심사			
	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			
	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제6조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규율	←	제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 수수료 및 절차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제8조	국경 기관 협력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제11조	통과의 자유	←	제5조	통과의 자유
	제12조	세관 협력			
제2절	제13조	일반원칙	무역원활화 협정 전반에 유효		
	제14조	규정의 유형			
	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			
	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			
	제17조	조기경보 메커니즘 : B유형 및 C유형 규정 이행일의 연장			
	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			
	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3절	제23조			
제24조		최종규정			

GATT에서 5조, 8조, 10조의 3개 조항을 두면서도 또 무역원활화 협정을 합의한 이유는 GATT 각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GATT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조항은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각 WTO회원국이 적절히 '무역의 원활화'를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음은 GATT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본문이다.

〈예시 : GATT 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1994년도 GATT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1.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으로서 상품의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것,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율에 관한 것, 수입,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불 이전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 또는 상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진열, 가공, 혼합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지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국제 무역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서 체약국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다른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공표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며 기타 방법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인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비밀정보의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체약국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서, 확립된 통일적 관행에 의하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또는 기타 과징금률을 증가하거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지불이전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정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각 체약국은 특히 관세사항에 관한 행정상의 조치를 즉시 검토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중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동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를 유지하고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는 행정상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수입업자가 공소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상급의 재판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또한 전기 기관의 행위를 규율한다. 다만, 동 기관의 중앙행정관청은 그 결정이 확립된 법의 원칙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동 문제의 심사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시 : GATT 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c) 본항(b)의 규정은 본 협정일자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한 절차로서 행정상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완전히 또는 정식으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행정상의 조치의 목적과 공평한 심사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폐지 또는 대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본(c)의 요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 절차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체약국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GATT 제10조의 주요한 내용은 법률 및 규칙의 신속한 공표이다. 무역과 관련한 법률은 수출입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통해서 수출입 당사자가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받아 수출입 비용을 낮추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제10조는 무역규칙을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GATT 제10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총 5개 조항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제1조(정보의 공표 및 이용가능성) : 제1조는 공표의 대상,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한 정보의 대상, 질의처 설치의무, 통보의무 등을 규정
- 제2조(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 : 제2조는 의견제시 기회 및 발효 전 정보 공표의무, 이해당사자 간의 정기적 협의 규정의무 등을 규정
- 제3조(사전심사) : 제3조는 사전심사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 유효 기간, 구속력, 공표대상 및 사전심사 대상 등을 규정
- 제4조(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 : 제4조는 세관의 행정적 결정에 대한 수출입자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각종 구제방안에 대한 규정
- 제5조(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 제5조는 회원국이 국경 통제를 위해서 취하는 제도에 대한 통보, 지침 등을 적절히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

3)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WTO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이란 2014년 WTO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말한다. WTO는 다자간 협의체제이므로 동 협정의 개정안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WTO회원국은 무역원활화협정의 개정안을 자국법으로 수용하여 협정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WTO의 구속력은 WTO가 다른 국제기구와 차별화된 특징이기도 하다. WTO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

② WTO 무역원활화 규정과 한-아세안 FTA와의 관계

1) 모든 WTO회원국을 구속

무역원활화 협정 제24조(최종규정) 제2항에서는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이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모든 WTO회원국들은 동 협정의 규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WTO회원국인 우리나라 역시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관련법인 관세법과 기타 법률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 한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거나 선진국들의 일정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측면이 존재한다.

2) FTA협정에의 반영 필요

무역원활화협정의 합의사항은 WTO회원국간에 체결된 FTA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FTA협정의 개방수준이 무역원활화협정에 비하여 낮은 경우에 한하며, FTA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면 무역원활화협정의 반영은 불필요할 것이다.

FTA협정은 WTO의 다자간 협상에서 진전되지 못한 부분을 수용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WTO에서 합의한 자유화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나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인정, 노동 및 자본의 이동 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며, WTO의 기준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GATT 제24조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GATT 제24조 적용영역,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4. 체약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의 경제 간에 보다 더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켜 무역의 자유를 증대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또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이 동구성영역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데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영역과 기타 체약국 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FTA협정은 양자간 합의이므로 체결국마다 자유화 수준이 각기 다르다. WTO에서 이르지 못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합의한 협정이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만 FTA형식을 가지고 있고 WTO보다 소폭 상향된 자유도를 가지는 FTA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FTA든지 WTO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WTO가 더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에 합의한다면 각 회원국이 체결한 FTA 역시 이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14년 무역원활화협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무역규칙의 공표나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 금지, 통과와 자유 등은 일부 선진화된 FTA에서 이미 반영되어 체결 및 발효가 된 경우도 있어 협정에 따라서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수준의 자유화를 가지는 FTA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에 발맞추어 자유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한 - 아세안 FTA가 이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 중 개발도상국과의 FTA로 분류되는 한 - 아세안 FTA는 한 - 미 FTA나 한 - EU FTA에 비하여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WTO무역원활화 협정의 내용을 한 - 아세안 FTA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모든 내용이 FTA협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나,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 사전심사제도의 도입,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활용 등 FTA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은 협정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한 - 아세안 협정이 어떻게 무역원활화 협정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③ 한 - 아세안 FTA 무역원활화 개정 내용

한 - 아세안 FTA 개정안 중에서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부분은 협정문의 제4조(투명성), 제4조의 2(사전심사), 제4조의 3(문의처), 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원산지증명서)이다. 이들

조항은 무역비용을 낮추기 위한 비관세장벽의 일부를 제거하는 조항으로서 정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표하고, 사전심사를 통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문화한 것이다.

GATT협정	구체화	무역 원활화협정	반영	한 - 아세안 FTA	주요 내용
제10조	➡	제1조	➡	제4조	투명성, 통관절차 및 역원활화
		제3조	➡	제4조의 2	사전심사제도 도입
제8조	➡	제1조 제3항	➡	제4조의 3	문의처 신설
		제10조	➡	부속서3 부록1 제5조제1항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1) 투명성,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협정문 제4조)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무역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출입자는 정보를 활용하여 무역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한 - 아세안 FTA 협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기존 제4조는 1개의 조항이었으나, 개정 후 제4조에는 3개의 항목으로 항목 수가 증가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정 조항별 관련 GATT 협정〉

현행	개정안
협정 제4조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협정 제4조 투명성,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 1994년도 GATT 제10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의 시의 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원활히 할 것이다. 3. 당사국들은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사안들을 제외하고,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모든 관세 행정 절차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한다.

한 - 아세안 FTA 협정 제4조는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1994년 도 GATT 제10조'를 준용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10조의 준용과 함께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추가하였다.

1.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의 공표 및 전파
2.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모든 관세 행정 절차의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공표

GATT 제10조의 투명성과 관련한 내용은 무역원활화협정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한 - 아세안 FTA 협정에 반영되었다. 다만 한 - 아세안 FTA협정문의 표현은 무역원활화협정의 일부 내용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 - 아세안 협정문에서 '제10조는 ...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역원활화협정을 참고해야 한다. 협정문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 - 아세안 FTA 개정안 제4조제2항관련(공표 및 전파)

한 - 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규정하였다. 특히 제4조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관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로 규정하였는데 이것만 보아서는 어떠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어떤 사항을 공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무역원활화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제2항 〉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제2항

2.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의 시의 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원활히 할 것이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1항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
1. 공표
1.1 각 회원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1 Publication
1.1 Each Member shall promptly publish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a non-discriminatory and easily accessible manner in order to enable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become acquainted with them:

〈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제2항 〉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1항	
가.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 지점 절차를 포함하는) 수입, 수출 및 통과절차와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a)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ort, airport, and other entry-point procedures), and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 실행 세율	(b) applied rates of duties and tax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다.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정부기관을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 부과금	(c) fees and charges imposed by or for governmental agencies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라. 관세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d) rules for the classification or valuation of products for customs purposes;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	(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rulings of general application relating to rules of origin;
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f) import, export or transit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g) penalty provisions for breaches of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	(h)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자.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i) agreements or parts thereof with any country or countries relating to importation, exportation, or transit; and
차. 관세 할당 운영 관련 절차	(j) procedur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of tariff quotas.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정보의 공표에 대해서 의무화하면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대상은 위의 ‘가’에서 ‘차’까지의 사항으로서 수출입과 관련된 서류양식이나 세율, 수수료, 행정결정사례, 벌칙규정 등 실제 수출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수출입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에서도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 **제1.1항의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의 표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문구는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공표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무역원활화 협정 제1조의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 - 아세안 FTA 개정안 제4조제3항관련(인터넷·인쇄물을 통한 공표)**

무역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통관관련 법령이 책자로만 인쇄되어 정부기관에만 배치되어 있다면, 수출입자는 통관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수시로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 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정보공개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는 법령 및 규정들을 인터넷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2항(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에서도 인터넷 또는 인쇄물에 의한 정보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세안 각 회원국들은 무역관련 정보들을 공표할 때 인터넷 또는 인쇄물의 형태로 공표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문서를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회원국 개발도상국 중에는 아직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았거나 보급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국가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인터넷 보급을 무조건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라는 단서를 달아 개발도상국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였다.

한 - 아세안 FTA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공표매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가능한 한 인터넷을 이용한 공표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사용되는 언어로서 WTO공식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공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제3항〉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제3항

3. 당사국들은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사안들을 제외하고,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모든 관세 행정 절차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한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2항

2.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2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Internet

2.1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이를 갱신한다.

2.1 Each Member shall make available, and update to the extent possible and as appropriate, the following through the internet: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포함하여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 단계를 알려주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의 설명(각 회원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언급할 재량을 가진다.)

(a) a description¹ of its procedures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including procedures for appeal or review, that informs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f the practical steps needed for importation, exportation, and transit;

나. 그 회원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 회원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 회원국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b) the forms and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ation into, exportation from, or transit through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다. 질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

(c) contact information on its enquiry point(s).

2.2 실행 가능한 경우, 제2.1항가호에 언급된 설명은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중 하나라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2 Whenever practicable, the descrip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2.1(a) shall also be made available in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WTO.

2.3 회원국은 관련 무역관련 법규와 제1.1항에 언급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역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2.3 Members are encouraged to make available further trade-related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including relevant trade-related legislation and other items referred to in paragraph 1.1.

2) 사전심사제도의 도입(협정문 제4조의2)

한 - 아세안 FTA협정문에 새로 도입된 제4조의2는 사전심사에 관한 조항이다. FTA활용에 있어서 수출입자는 해당 수출입물품이 FTA 적용대상물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심사라고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문에는 이 사전심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 - 아세안 FTA와 한 - EFTA FTA만이 이 사전심사 조항이 없었다.⁴⁾ 그러나 금번 상품무역협정의 개정으로 한 - 아세안 FTA에서도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사전심사제도의 도입)〉

현행	개정안
(신설)	<p>협정 제4조의 2 사전심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국은 자국 각각의 법령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 조의 제2항 가호에 기술된 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 및 /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질의사항 및 /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서명으로 제공한다. 2.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전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생략) 3. 제2항다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사전심사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신청에서 제기된 질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생략) 5.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심사일부터 3년간 또는 각 당사국 각각의 법령 또는 행정적 결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동안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그 심사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적용한다. 6. 사국은 그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생략) 7. 당사국이 소급적으로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심사가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8. 수입자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대우가 사전심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세 행정기관 및 /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그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그 사전심사가 기초로 한 사실 및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4) 동 협정은 관세법 제23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2에 따라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사전심사제도의 도입)〉

현행	개정안
(신설)	9.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모든 비밀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자국의 사전심사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한 - 아세안 FTA 협정 사전심사 조항은 대부분 무역원활화 협정과 일치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전심사의 대상

개정된 한 - 아세안 FTA 협정을 통하여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 - 아세안 FTA 협정 사전심사의 대상은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원산지이다. 이들 3개 사전심사의 대상은 FTA의 활용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무역원활화 협정에서 정한 사전심사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차이점은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외에도 관세감면대상, 관세할당 및 기타 사전심사서 발급이 필요한 사항 등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심사서 발급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평가의 경우 무역원활화협정에서는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서 회원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적용에 대하여 사전심사서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WTO와 한 - 아세안 FTA 사전심사대상 비교〉

대상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WTO 무역원활화협정
품목분류	○	○
관세평가	○	△
원산지	○	○
관세감면	×	△
관세할당	×	△

※ ○: 가능, △: 권고, ×: 불가

■ 사전심사 절차·요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통관절차를 감안하여 절차·요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각 회원국은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요건'과 발급까지의 기한 및 유효기간을 공표한다고 규정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개정안에서도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무역원활화 협정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절차, 정보제공 절차, 추가정보 제공절차, 신청 후 발급까지의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 사전심사 거부 사유

사전심사의 거부는 관세당국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다. 관세당국이 신청자의 사전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역원활화 협정과 한 - 아세안 FTA 협정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어떤 정부기관, 불복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신청자의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 어떤 불복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사전심사서 유효기간

사전심사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원산지는 발급 이후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물품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고 시의 물품과 실제 통관되는 물품이 달라지거나, 법령의 개정 및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단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반면, 한 - 아세안 FTA에서는 '그 심사일로부터 3년 또는 각 당사국 법령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이라고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WTO와 한 - 아세안 FTA 사전심사대상 비교〉

대상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WTO 무역원활화협정
사전심사서 유효기간	심사일로부터 3년 또는 각 당사국 법령에 명시된 기간	합리적인 기간

주의할 것은 WTO 부속서1에 포함된 '원산지협정'에서도 사전심사조항이 있으며 동 협정에서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조항에서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심사결정기간은 150일이다. 그러나 WTO원산지협정은 비특혜 원산지에 국한되어 적용되므로 FTA협정인 한 - 아세안 FTA 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전심사서의 공개

사전심사서를 공개하면 신청자와 동일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이를 참고하여 중복되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관세행정을 효율화시키고, 수출입자의 FTA활용관련 비용을 감소시킨다. 무역원활화 협정과 한 - 아세안 FTA 개정안에서 동일하게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심사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의2〉

한아세안 FTA 개정안 제4조의 2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3항

제3조 사전심사	ARTICLE 3 : ADVANCE RULINGS
<p>1. 각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서면 요청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정한 기한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거부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p>	<p>1. Each Member shall issue an advance ruling in a reasonable, time-bound manner to the applicant that has submitted a written request containing all necessary information. If a Member declines to issue an advance ruling, it shall promptly notify the applicant in writing,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p>
<p>2. 신청서에 제기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신청인에 대한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p> <p>가. 정부기관,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인의 사건으로 이미 계류 중인 경우, 또는</p> <p>나.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p>	<p>2. A Member may decline to issue an advance ruling to the applicant where the question raised in the application:</p> <p>(a) is already pending in the applicant's case before any governmental agency, appellate tribunal, or court; or</p> <p>(b) has already been decided by any appellate tribunal or court.</p>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의2〉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3항	
<p>3.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의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발급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다.</p>	<p>3. The advance ruling shall be vali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its issuance unless the law, facts, or circumstances supporting that ruling have changed.</p>
<p>4.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해당심사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p>	<p>4. Where the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the advance ruling, it shall provide written notice to the applicant setting out the relevant facts and the basis for its decision. Where a Member revokes, modifies, or invalidates advance rulings with retroactive effect, it may only do so where the ruling was based on incomplete, incorrect,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p>
<p>5. 어느 한 회원국이 발급한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를 청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 해당 회원국은 사전심사가 그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p>	<p>5. An advance ruling issued by a Member shall be binding on that Member in respect of the applicant that sought it. The Member may provide that the advance ruling is binding on the applicant.</p>
<p>6. 각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p> <p>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형식을 포함한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요건</p> <p>나. 사전심사서가 발급될 때까지의 기한, 그리고</p> <p>다. 해당 사전심사의 유효기간</p>	<p>6. Each Member shall publish, at a minimum:</p> <p>(a) the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for an advance ruling, including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and the format;</p> <p>(b) the time period by which it will issue an advance ruling; and</p> <p>(c)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the advance ruling is valid.</p>
<p>7. 각 회원국은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공한다.</p>	<p>7. Each Member shall provide, upon written request of an applicant, a review of the advance ruling or the decision to revoke, modify, or invalidate the advance ruling.</p>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의2〉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3항

<p>8. 각 회원국은 상업적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전 심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p>	<p>8. Each Member shall endeavour to make publicly available any information on advance rulings which it considers to be of significant interest to other interested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protect commercially confidential information.</p>
<p>9. 정의 및 범위</p> <p>가. 사전심사서는 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시 그 상품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우를 적시한다.</p> <p>(1)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p> <p>(2) 상품의 원산지</p> <p>나. 가호에 정의된 사전심사서에 더하여, 회원국은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p> <p>(1) 특정한 일련의 사실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그리고 그 적용</p> <p>(2)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 요건의 적용 가능성</p> <p>(3) 관세 할당을 포함하여 할당에 대한 회원국 요건의 적용, 그리고</p> <p>(4) 회원국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p> <p>다.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p>	<p>9. Definitions and scope:</p> <p>(a) An advance ruling is a written decision provided by a Member to the applicant prior to the importation of a good covered by the application that sets forth the treatment that the Member shall provide to the good at the time of importation with regard to:</p> <p>(i) the good's tariff classification; and</p> <p>(ii) the origin of the good</p> <p>(b) In addition to the advance rulings defined in subparagraph (a), Members are encouraged to provide advance rulings on:</p> <p>(i) the appropriate method or criteria, and the application thereof,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a particular set of facts;</p> <p>(ii) the applicability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relief 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p> <p>(iii) the application of the Member's requirements for quotas, including tariff quotas; and</p> <p>(iv) any additional matters for which a Member considers it appropriate to issue an advance ruling.</p> <p>(c) An applicant is an exporter, importer or any person with a justifiable cause or a representative thereof.</p>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의2〉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3항	
<p>라. 회원국은 신청인이 자국 영역 내에 법정대리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요건은, 중소기업의 특정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사전심사 신청 자격을 가진 인의 범주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p>	<p>(d) A Member may require that the applicant have legal representation or registration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possible, such requirements shall not restrict the categories of persons eligible to apply for advance rulings,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or the specific need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requirements shall be clear and transparent and not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p>

3) 문의처 신설(협정문 제4조의3)

한 - 아세안 FTA 협정의 개정으로 제4조의3이 신설되었다. 동 조항은 문의처의 신설에 관한 것으로서 관세 및 무역사안과 관련한 하나의 문의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의절차는 인터넷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WTO와 한 - 아세안 FTA 사전심사대상 비교〉

현행	개정안
(신설)	<p>협정 제4조의3</p> <p>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관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이행당사자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p>

한 - 아세안 FTA 협정문 개정안은 크게 다음의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을 위한 문의처

한-아세안 FTA협정문 문의처 조항신설은 수출입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조항이다. 과거 관세와 무역에 관한 다양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나 유관기관은 상대국 정부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응답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수출입업체의 경우 상대국의 통관절차나 관세와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는 곳은 없었으며, 어디까지나 국내의 수출입 대행자를 통한 간접적인 정보확인이 가능할 뿐이었다. 특히 수출입대행자를 포함한 정보확인은 무역비용을 수반하므로, 자본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FTA협정의 숫자가 많아지고 협정별로 통관절차나 원산지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자들은 FTA의 활용이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FTA의 활용이 단순한 관세의 절감목적이 아니라, 경쟁사들과의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비용을 치러가면서 FTA를 활용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심지어 FTA활용으로 인한 혜택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에도 FTA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대비하여 무역원활화 협정에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의처를 신설하고, 질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이에 응대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 아세안을 대표하는 문의처

문의처 신설 조항은 특히 다수의 국가가 연합하여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지역경제 체제에 더욱 효과가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3.2항에서는 '공통 절차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통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 제4조의3에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10개의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인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질의처의 부재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원산지증명서 서명·인장 인정여부의 경우 각 국가별로 증명서의 인정여부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었다. 아세안 10개국은 각각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에 따라 통관절차 및 특혜적용을 이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문의처 조항의 신설로 1개 이상의 문의처를 통하여 FTA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 또는 인쇄물 형태의 문의

문의처를 신설한 후에 문의방식을 인터넷이나 인쇄물 형태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의 방법을 간단하게 하고, 문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제3항〉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제4조의3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관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이행당사자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



무역원활화협정 제1조 제3항

3. 질의처

- 3.1 각 회원국은 제1.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1.1항가호에 언급된 필요 양식 및 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한다.
- 3.2 관세 동맹 회원국 또는 지역 통합에 관여하는 회원국은 제3.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통 절차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통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할 수 있다.
- 3.3 회원국은 질의 답변과 필요 양식 및 서류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된다. 만일 요구하는 경우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금액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
- 3.4 질의처는 각 회원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질의에 답하고 양식과 서류를 제공한다. 그러한 기간은 요청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Enquiry Points

- 3.1 Each Member shall, within its available resources, establish or maintain one or more enquiry points to answer reasonable enquiries of governments, tra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on matters covered by paragraph 1.1 and to provide the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1(a).
- 3.2 Members of a customs union or involved in regional integration may establish or maintain common enquiry points at the regional level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paragraph 3.1 for common procedures.
- 3.3 Members are encouraged not to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for answering enquiries and providing required forms and documents. If any, Members shall limit the amount of their fees and charges to the approximate cost of services rendered.
- 3.4 The enquiry points shall answer enquiries and provide the forms and documents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set by each Member, which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r complexity of the request.

4)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

한 - 아세안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발급기관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수입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급’은 과거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수기로 작성한 후, 인장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재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하여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인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발급방식이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왔다.

한 - 아세안 FTA 협정문 개정으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각주에 규정된 조항으로서 직접, 수기로 발급된 것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원활화협정의 제10조(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를 수용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한 것이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종이서류뿐만 아니라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 정부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국은 원본서류 대신 전자서류를 수용해야 한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

현행	개정안
<p>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5조제1항</p> <p>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p>	<p>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5조제1항</p> <p>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p> <p>가. 인쇄된 형태로(각주 : 인쇄된 형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p> <p>나. A4 크기 용지에</p> <p>다. 첨부된 양식[첨부1](이하 “AK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그리고</p> <p>라. 영어로 작성</p>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모든 통관과 관련한 서류를 전자적 서류(paperless)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원산지증명서 인정조항이 우리나라의 수출 통관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인정은 특히 한 - 아세안 FTA에서 발생하는 통관문제과 깊은 관련이 있다. 아세안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전히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통관업무 관행을 고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혜적용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지연 〉

- 협정명 및 상대국 : 한 - ASEAN FTA (베트남)
- 해결 세관 : 서울 세관
- 애로 발생
 - 수출자는 서울세관에서 한 - 아세안 FTA C/O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제공하였으나 베트남 세관에서 전자발급 C/O는 불인정
 - 자필 서명된 서류원본만을 인정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
 - 우리 시스템상 수출자의 서명을 등록한 경우, C/O 발급 시 함께 출력되어 나오므로 수정 불가능
- 문제 해결
 - 서울세관에서 한 - 아세안 FTA 협정문 및 이행위원회 합의상 전산발급도 가능하다는 점을 베트남 세관에 제시하여 해결

* 자료 : 해외 FTA활용애로 해결 사례집 (2012.11)

사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 -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개정을 통하여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 인터넷 발급 C/O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 동 조항을 활용하여 신속히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5조제1항〉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1 제5조제1항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인쇄된 형태로(각주 : 인쇄된 형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 나. A4 크기 용지에
 - 다. 첨부된 양식[첨부1](이하 “AK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그리고
 - 라. 영어로 작성



무역원활화협정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2. 사본의 수용

- 2.1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에 요구되는 근거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2.2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다른 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원본서류 대신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한다.
- 2.3 회원국은 수입 요건으로 수출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2 Acceptance of Copies

- 2.1 Each Member shall, where appropriate, endeavour to accept paper or electronic copies of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for import, export, or transit formalities.
- 2.2 Where a government agency of a Member already holds the original of such a document, any other agency of that Member shall accept a paper or electronic copy, where applicable, from the agency holding the original in lieu of the original document.
- 2.3 A Member shall not require an original or copy of export declarations submit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Member as a requirement for importation.

4 시사점

WTO의 출범과 다수의 FTA협정체결로 인하여 현재에는 관세나 쿼터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반면, FTA협정별로 다른 통관절차나 원산지규정 등 행정적 규제에 따른 새로운 무역장벽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합의되었으며, 전 세계 회원국들에 의하여 준수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무역원활화협정으로 무역거래비용이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⁵⁾ FTA협정 역시 WTO의 틀 안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을 성실히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무역원활화 이슈는 과거 교토협약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이것이 구속력을 가진 WTO에서 합의되었다는 점이다. 세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WCO의 교토협약과는 달리 WTO협정의 개정은 전 관련부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05 역내부가가치기준선택의 유연성관련 조항

한 - 아세안 FTA 부속서 3 제4조2항 각주의 개정은 역내부가가치기준의 선택 시 수출입자에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한 - 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역내부가가치기준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산출방식의 결정은 각국 관세당국이 정하며, 해당 국가의 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원산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으로 인하여 수출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집적법이나 공제법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부가가치기준

1) 부가가치기준이란

부가가치기준이란 FTA 협정에서 원산지 판정의 목적상 불완전생산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중의 하나이다. '부가가치 (Value added)'란 개개의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하여 부가(附加)한 가치이다. 해당물품의 총 부가가치 중 FTA 체결 당사국 내에서 일정기준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면, 체결상대국을 원산국으로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2) 부가가치기준의 종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 중 부가가치기준의 종류는 협정에 따라 ① 공제법 · 집적법 ② MC법 ③ 순원가법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5) Economi-st (2013)

미주				유럽			아시아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EU	EFTA	터키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	MC	MC	MC	집적법 공제법	공제법	공제법

공제법 (Build - Down Method) 및 집적법 (Build - Up Method) 은 미주권과 아시아권 FTA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부가가치 기준이다. 특히 미주권 협정에서는 공제법과 집적법 모두 사용 가능하며, 아시아권 협정 중 한 - 인도와 한 - 싱가포르 협정에서는 공제법만이 사용가능하다.

• 공제법

$$\frac{\text{상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의 가격 (VNM)}}{\text{상품가격}} \times 100 =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RVC)}$$

공제법은 상품가격⁶⁾에서 비원산지재료가격을 제외한 부분을 역내부가가치로 보는 산출 방법이다. 공제법 하에서는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소비된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관비, 이윤, 수출당사국 국내 운송비 등까지도 모두 역내부가가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집적법

$$\frac{\text{원산지재료의 가격 (VOM)}}{\text{상품가격}} \times 100 = \text{역내부가가치비율 (RVC)}$$

6) 한 - 아세안 FTA에서 상품가격은 FOB가격이다.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본선 인도 가격을 말한다.

집적법은 상품가격에서 원산지재료 가격만을 역내부가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집적법 역시 공제법과 마찬가지로 유럽권 FTA를 제외한 대부분의 협정에 적용된다. 공제법에서 원산지 부가가치로 인정하던 체약당사국에서의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관비, 이윤, 수출당사국 국내운송비 등은 원산지 부가가치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원산지재료의 가격만이 역내부가가치에 산입된다.

3) 아세안 역내부가가치기준의 특징

한 - 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다른 협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원산지지위를 획득한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재료의 가격은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가격, 국내에서 조달한 경우에는 조달한 가격 등으로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등의 관련증빙서류에 표시된 가격이다.

그러나, 한 - 아세안 FTA 집적법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VOM means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which includes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direct labour cost, direct overhead cost, transportation cost and profit).⁷⁾ 즉, 재료비 뿐만 아니라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운임 및 이윤도 원산지 재료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한 - 아세안 FTA와 기타 협정의 원산지 재료의 가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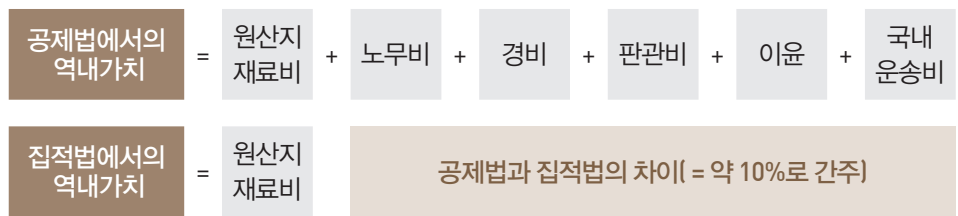
	한 - 미, 한 - 칠레, 한 - 페루, 한 - 콜롬비아	한 - 아세안 FTA
원산지재료의 가격	원산지재료비	원산지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운송비 + 이윤
부가가치기준 산정시 필요 데이터	상품가격(FOB), 원산지 재료가격	상품가격(FOB),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운송비, 이윤

*자료 : 직접 작성

7)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3 제4조제2항

한 - 아세안 FTA의 이러한 특징은 집적법과 공제법간의 차이를 상당부분 감소시킨다. 공제법은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만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내가치비율로 간주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원산지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판관비, 이윤, 국내운송비를 역내가치로 본다.

한 - 아세안 FTA를 제외한 다른 협정의 집적법은 오직 원산지재료비만을 역내가치로 본다. 따라서 이들 협정에서 공제법과 집적법의 차이는 노무비와 경비, 판관비, 이윤, 국내운송비가 되며, 이러한 차이를 일반적으로 10% 수준으로 보아 원산지결정기준을 두었다.



다음은 한 - 미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중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다. 적용가능한 역내가치비율 중 집적법은 35퍼센트 이상 또는 공제법 4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하여 집적법과 공제법간 약 10%의 차이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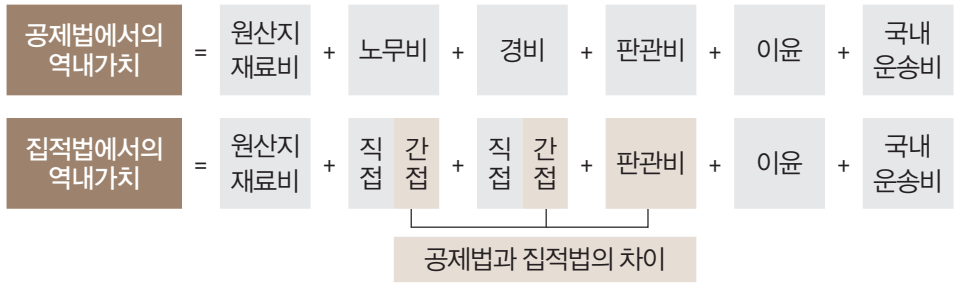
예시 : 한 - 미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제8481.80호)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그러나 한 - 아세안 FTA에서 집적법은 원산지재료비 뿐만 아니라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 운송비, 이윤까지 포함하므로 집적법과 공제법 간의 기타 FTA협정과 비교하여 차이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 아세안 FTA하에서 집적법과 공제법의 차이는 간접노무비와 간접경비 그리고 판관비이다.



2 개정사항

1) 산정기준 결정의 주체: 당사국 →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재 한 - 아세안 FTA 역내부가가치기준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선택은 수출입 당사자가 아닌 해당 국가에서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제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국에 통보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은 공제법만을 사용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세안 국가의 경우에도 각 개별국에서 직접 결정하여 체약상대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한-아세안 FTA상의 집적법 특성으로 인하여 공제법과 집적법의 실질적인 차이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관세당국차원에서 집적법과 공제법을 직접 결정할 만한 실익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관세당국에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개별 업체들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이유로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제법과 집적법 두 가지 방법 중 수출자가 직접 계산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2) 산정기준의 통보

역내가치비율 산정기준의 주체가 당사국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바뀌면서 부가가치 기준의 산정기준 결정을 위한 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당사국의 모든 수출자가 일률적으로 하나의 산정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최소 6개월 전에 상대국

에 통보를 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산정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결정된 산정기준은 동일 회계연도 동안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개정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역내부가가치기준 적용방법)〉

현행	개정안
<p>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 제4조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제2항 RVC계산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p> <p>각주 당사국들에게 RVC의 계산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이 집적법이던 공제법이던지 융통성이 부여된다.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한다. 계산 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방식의 채택하기 적어도 6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 검증은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p>	<p>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 협정 부속서3 제4조제2항 각주의 개정 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새로운 각주로 대체되어 개정된다.</p> <p>각주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RVC 산정법 중에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는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 선택된 RVC 산정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p> <p>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의 모든 검증은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용한 방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p>

③ 시사점 : 기업의 특성에 따른 공제법과 직접법 선택 전략

한 - 아세안 FTA 역내가치비율에서 수출자가 집적법과 공제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수출자는 두 가지 산출방식 중에서 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 - 아세안 FTA에서는 집적법보다 공제법이 유리하다. 첫째, 역내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공제법이 더 많으며, 둘째, 산출방식도 더욱 간편하다.

1)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역내가치비율 인정

한 - 아세안 FTA 역내가치비율의 특징 중 하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공제법과 집적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한 - 아세안 FTA 협정문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제8482.10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482.1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한 - 아세안 FTA 부속서3에서는 역내가치비율의 집적법과 공제법의 산출방식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단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가격의 40% 이상인 것'으로만 규정하여, 그것이 집적법이든 공제법이든 상관없이 역내가치비율이 40%이상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 아세안 FTA에서는 집적법과 공제법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 - 아세안 FTA 공제법과 집적법 비교 그림과 같이 공제법에서는 노무비와 경비, 판관비를 모두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 보지만, 집적법에서는 간접노무비와 간접경비, 그리고 판관비는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한다면, 한 - 아세안 FTA활용자는 공제법이 집적법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제법은 역내에서 발생한 노무비와 경비, 판관비를 모두 역내가치로 보나, 집적법은 그렇지 않다. 특히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이 큰 경우에는 공제법과 집적법을 사용한 역내가치비율의 차이가 클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집적법 대신 공제법을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2) 자료입수의 용이성

공제법은 집적법보다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을 위한 자료입수가 더욱 용이하다. 이러한 사실은 각 산출방법에 필요한 값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적법은 원산지재료비를 구한 후, 다시 상품가격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원산지재료비란 재료비와 함께 노무비와 경비 등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증빙서류 등으로 알 수 있는 재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무비와 경비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된다. 공장에 투입된

전체 노무비와 경비 중에서 특혜세율 적용분에 대한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산정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제법은 간단하다. 비원산지재료가격만 알면 되기 때문이다. 비원산지재료는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신고필증의 가격을 사용하면 된다.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이 비원산지재료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가격을 비원산지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산정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06 상호대응세율 적용의 배제관련 조항

한 - 아세안 FTA협정문 부속서2 제7항의 2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어 오던 상호대응세율이 폐지되거나 상호대응세율적용 품목을 증가할 수 없게 되었다. 상호대응세율이 폐지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상호대응세율적용 품목을 증가하지 않기로 합의한 국가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다. 먼저 상호대응세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상호대응세율

1) 상호대응세율이란

상호대응세율제도란 일정 조건하 상대국에서 자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상대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을 '상호대응세율(the reciprocal tariff rate)'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FTA협정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포함한다. 여기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란 자국 MFN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인하 또는 철폐를 말한다. 회원국 간의 경제수준격차가 큰 한-아세안 FTA에서는 물품을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를 유보하거나 제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자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하여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였으나 상대국에서는 민감품목으로 하여 관세인하 유보·제한하는 경우, 양 당사국의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 자국에서는 상대국 물품 수입시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상대국에서는

민감품목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높은 관세(MFN)를 부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 아세안 FTA에서는 상호대응세율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일정부분 시정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자국은 일반품목, 상대국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국도 상대국이 부여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호대응세율은 의무가 아니며 일종의 권리이므로 당사국은 FTA협정에서 합의한 양허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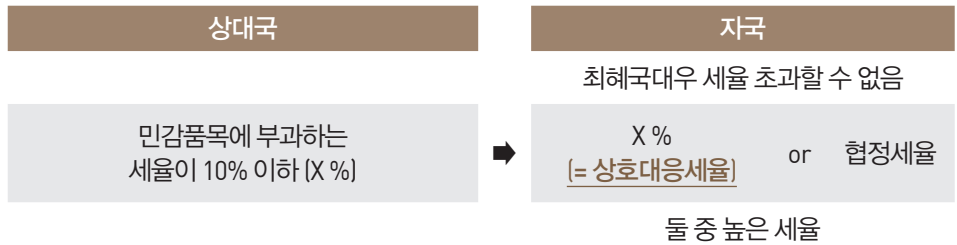
2)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요건

한 - 아세안 FTA의 상호대응세율은 관세율을 상호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이루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상호대응세율은 단지 양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이며, 한쪽 당사국의 일방적인 특혜부여를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활용된다. 최혜국대우세율은 FTA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세율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대응세율은 최혜국대우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자국 기준)

- ①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자국에서는 일반품목군에 배치하였으나, 상대국에서는 민감품목군에 배치할 것
- ② 상대국에서 자국 수출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일 것
- ③ ②의 세율이 자국의 최혜국대우세율(MFN)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국'은 FTA 협정관세율 대신 ②의 세율을 상호대응세율로서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상호대응세율이 협정관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개정사항

1) 문구의 수정

한 - 아세안 FTA협정의 개정으로 상호대응세율과 관련한 협정문 조항의 문구 일부가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의 수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영문을 보다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제7항 중에서 수정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언어	조항	현재	개정안	
국문본	제7항(1)	... at 10% or below ...	10% 또는 그 이하	10퍼센트 또는 그 미만
	제7항(1)	given notification to that effect to the other Parties ...	당사국에 그러한 취지로 통보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통보
	제7항(4)	an importing Party from whom reciprocity is sought.	상호주의가 요청되는 수입당사국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당사국
	제7항(4)	... shall in no case exceed the applied MFN rate ...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영문본	제7항(3)	재량에 따라	at is discretion	on its discretion

2) 상호대응세율 적용의 포기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개정으로 상호대응세율의 적용이 포기되거나 향후 적용품목이 제한된다. 이로써 한 - 아세안 FTA 특징이었던 상호대응세율제도는 국가에 따라 폐지되거나 더 이상 적용품목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상호대응세율의 포기)〉

현행	개정안
<p>(신설)</p>	<p>협정 부속서2 제7항의 2 7의2.</p> <p>가. 이 부속서 제7항 및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관세율 대우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이행위원회에 보고된다.</p> <p><small>(각주 :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권리는 이 의정서가 한국과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양자적으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한국과 라오스 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한국과 미얀마 간, 한국과 싱가포르 간,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에 영구적으로 포기된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한국과 필리핀 간,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관세품목의 수는 2014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증가되지 아니한다.)</small></p> <p>나. 가호에 언급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출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1에서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그 관세품목에 대한 해당 수입 당사국의 관세 양허를 향유한다.</p>

개정안에서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 ‘상호주의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규정한다. 그동안 상호주의는 FTA협정의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관세인하 및 철폐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동 개정안을 통하여 일부국가에서는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상호대응세율품목을 증가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와 적용품목의 증가를 제한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p>상호대응세율 포기 (2016년 1월 1일 기준)</p>	<p>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p>
<p>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 증가제한 (2014년 1월 1일 기준)</p>	<p>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p>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상호대응세율)〉

현행	개정안
<p>협정 부속서2 제7항</p> <p>7.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상호적 관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p> <p>1)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 또는 그 이하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취지로 통보되어야 한다.</p>	<p>협정 부속서2 제7항</p> <p>7.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당사국에 의하여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p> <p>1)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퍼센트 또는 그 미만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통보하였다.</p> <p>(각주 : 당사국들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개정된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 규정된 통보 절차를 준수한다. 이 주해는 이행위원회에서 추가로 개정될 수 있다.)</p>
<p>(2)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이어야 한다.</p>	<p>(2)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으로 한다.</p>
<p>(3)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율 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p>	<p>(3) 제(2)목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율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p>
<p>(4)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가 요청되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은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p>

③ 시사점 : 한 - 아세안 FTA협정의 선진화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제도의 개정은 한 - 아세안 FTA협정이 선진화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선진화'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의미하는 협정으로의 이행으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 중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협정에는 대표적으로 한-아세안 FTA협정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과의 FTA협정은 선진국과의 FTA협정에 비하여 개방수준이 낮다. 한 - 아세안 FTA는 선진국형 FTA에 비하여 관세양허율이 낮고, 서비스·투자와 관련한 개방도 높지 않으며, 상품무역의 개방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부속서는 선진국형 FTA에는 없는 한 - 아세안 FTA의 특징인데 이는 주로 FTA의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상호세율제도도 한 - 아세안 FTA협정의 낮은 개방도를 의미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방식은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으로 구분되는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상호대응세율은 이에 더하여 상품무역 개방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의 발효로 국가간 개방도가 높아지고, 보호산업에서도 개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이러한 장해물들은 하나씩 제거되고 있다. 상호대응세율제도가 없어지면 양국간의 관세는 FTA협정의 양허스케줄대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양허비중이 높아지고 철폐율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FTA에 보다 가까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연도별 관세인하일정의 구체화관련 조항

일반적으로 FTA협정에는 관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허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협정별로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언제 몇%의 세율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 - 아세안 FTA협정문은 구체적인 세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정문만으로는 양허일정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의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었다. 협정문 자체에 관세양허스케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정보교환 없이도 구체적인 세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① 관세인하방식

1)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문에서의 일반적인 관세인하방식

먼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문에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관세인하 방식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FTA인 한 - 미 FTA와 한 - EU FTA, 그리고 최근에 타결된 한 - 중 FTA를 중심으로 관세인하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 - 미 FTA의 경우

한 - 미 FTA의 관세인하방식은 협정문의 제2장(상품)의 부속서 나에 규정되어 있다.

〈한 - 미 FTA 관세인하방식〉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부속서 2-나	관세철폐 : 양국공통 단계별 양허유형 (A~K)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단계별 양허유형 L, M, N, O, P, Q, T, U, V, W, X, Y, Z 추가
	미합중국 관세양허표	단계별 양허유형 R, S 추가	

한 - 미 FTA협정의 관세인하방식은 양국이 기준세율에서 품목별 양허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의 기준세율은 최혜국세율(MFN세율)이며 양허유형은 우리나라와 미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양허유형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별양허유형으로 나뉜다.

관세율 적용방식은 먼저 해당물품의 기준세율을 확인한 후에 품목에 따른 양허유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연도별로 인하되는 관세율 정보는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세율에 양허유형을 적용하여 직접 관세율을 산출해야 한다. 한-미 FTA의 단계별 양허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부속서 2 - 나 관세철폐

단계별 양허유형 E

당시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준세율이 8%인 어떠한 품목이 양허유형 E에 해당한다면, 동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이행 4년차	이행 5년차	이행 6년차
6.7	5.3	4	2.7	1.3	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한 - EU FTA의 경우

한 - EU FTA의 관세양허방식은 한 - EU FTA 협정문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포함된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한 - EU FTA 관세인하방식〉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 - 가	관세 철폐 - 양국공동 단계별 양허유형 (0, 2, 3, 5, 6, 7, 10, 12, 13, 15, 18, 20, 10-A, 10-B, 12-A, 16-A, S-A, S-B, E, X)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유럽연합 당사자 관세양허표
	부속서 2 - 나	전자제품
	부속서 2 - 다	자동차 및 부품
	부속서 2 -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 - 마	화학물질

한 - EU FTA협정의 관세인하방식은 한 - 미 FTA 관세인하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양 당사국이 기준세율에서 각 품목의 양허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의 기준세율은 최혜국세율이며 양허유형은 공통양허유형은 우리나라와 EU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 - 미 FTA와의 차이점은 한-EU에서는 우리나라와 EU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허유형은 없다는 것이다. 관세율 적용 방식은 해당물품의 기준세율을 확인한 후에 품목에 따

른 양허유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율이 된다. 한 - 미 FTA와 동일하게 연도별 관세율은 직접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직접 계산해야 한다. 한 - EU FTA의 단계별 양허 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부속서 2 - 가 관세철폐
 단계별 양허유형 5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준세율이 8%인 어떠한 품목이 양허유형 5에 해당한다면, 동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이행 4년차	이행 5년차	이행 6년차
6.7	5.3	4	2.7	1.3	0

■ 한 - 중 FTA의 경우

한 - 중 FTA의 관세인하방식은 협정문의 제2장(상품)의 부속서 2 - 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규정되어 있다.

〈한 - 중 FTA 관세인하방식〉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 - 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양국공통 단계별 양허유형 0, 5, 10, 10 - A, 15, 20, PR - 10, PR - 20, PR - 30, E	
		한국 관세양허표	단계별 양허유형 20 - A, 20 - B, PR - 1, PR - 130 추가
		중국 관세양허표	단계별 양허유형 15 - A, PR - 8, PR - 15, PR - 35, PR - 50 추가

한 - 중 FTA협정의 관세인하방식은 양국이 기준세율에서 각 품목의 양허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인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허유형은 한 - 미 FTA와 유사하게 공동양허유형과 국가별양허유형으로 나뉜다. 적용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먼저 해당물품의 기준세율을 확인한 후에 품목에 따른 양허유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율이 된다.

한 - 미 FTA, 한 - EU FTA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양허된 관세율표는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세율에 양허유형을 적용하여 직접 관세율을 산출해야 한다. 한 - 중 FTA의 단계별 양허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단계별 양허유형 5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준세율이 8%인 어떠한 품목이 양허유형 5에 해당한다면, 동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이행 4년차	이행 5년차
6.4	4.8	3.2	1.6	0

2) 아세안 관세인하방식 및 특징

한 - 아세안 FTA 협정의 관세인하방식은 상품무역협정의 부속서 1과 부속서 2에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1은 일반품목군(NT ; Normal Track)에 대한 양허스케줄이며, 부속서 2는 민감품목군(SL ; Sensitive List)에 대한 양허스케줄이다.

〈한 - 아세안 FTA 관세인하방식〉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	일반품목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
		- 한국과 동남아시아연합 6개국(2010년까지 0%로 인하)
		- 베트남(2016년까지 0%로 인하)
	부속서 2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2018년까지 0%로 인하)
		일반민감품목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
		- 한국과 동남아시아연합 6개국(2016년까지 0~5%로 인하)
		- 베트남(2021년까지 0~5%로 인하)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2024년까지 0~5%로 인하)
		- 부록 1 민감품목 목록(국가별)
		초민감품목군 관세 인하 및 철폐방식
- 양허유형 A, B, C, D, E		
-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양허유형별, 국가별)		

■ 일반품목군 양허스케줄

한 - 아세안 FTA 부속서 1에 포함되는 일반품목군의 양허스케줄은 앞에서 살펴본 한 - 미 FTA 등과 달리 최혜국대우세율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인하된 세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최혜국대우세율의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품목은 표기된 연도까지 세율을 인하하고 최종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 이러한 관세양허방식은 FTA 발효에 따라 관세율이 어느 수준으로 인하되는지 직접 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X \geq 20\%$	20	13	10	5	0
$15\% \leq X < 20\%$	15	10	8	5	0
$10\% \leq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leq 5\%$	관세인상금지			0	0

*자료 : 한-아세안 FTA 협정문

■ 일반민감품목 양허스케줄

한-아세안 FTA 부속서 2에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민감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며, 관세양허방식도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일반민감품목의 문제점은 정확한 연도별 양허세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민감품목은 국가별로 인하 방식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까지 20%로, 2016년까지 0 - 5%까지로 인하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 발효는 2007년인데, 협정문에는 단지 '2012년까지 20%로 인하한다'고 규정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규정되지 않고 있다.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3.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과 한국은 각각의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대 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

일반민감품목의 연도별 세율은 매년 협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각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에 체약상대국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일반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스케줄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실제 특혜관세 적용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 초민감품목 양허스케줄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도 일반민감품목의 양허방식과 비슷하다. 초민감품목은 부속서 2의 부록1에 표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초민감품목은 먼저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룹별로 당사국들의 양허방식을 달리 규정하였다. 예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A그룹에 적용되는 관세인하방식은 아래와 같다.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4.

(1) A그룹(50% 관세율 상한을 적용하는 관세품목)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6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한다. 베트남은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1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A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24년 1월 1일까지 50% 이하로 인하한다.

우리나라의 초민감품목 양허방식은 부록 2에 나열된 물품에 대하여 2016년까지 50% 이하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민감품목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몇%의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규정되지 않고 있다. 2016년에도 50%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율은 확인할 수가 없다.

② 개정사항

한 - 아세안 FTA협정문 관세인하일정관련 개정사항은 ‘국가별 연도에 따른 관세철폐일정 구체화’와 ‘통보의무의 삭제’로 요약될 수 있다.

1) 국가별 연도에 따른 관세철폐일정 구체화

현재 한 - 아세안 FTA 협정의 관세양허방식은 구체적인 세율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별로 품목별 / 연도별 양허스케줄을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협정문 개정안에 따라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에 포함되는 관세양허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한 - 아세안 FTA 양허스케줄(협정문 포함) (예시)〉

품목번호	품명	기준 세율	양허 유형	'16	'17	'18	'19	'20
01	산동물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01012	말							

〈우리나라의 한 - 아세안 FTA 양허스케줄(협정문 포함) (예시)〉

품목번호	품명	기준 세율	양허 유형	'16	'17	'18	'19	'20
010121	번식용의 것							
0101211000	농가사육용의 것	8	NT*	0	0	0	0	0
0101219000	기타	8	NT	0	0	0	0	0

* NT: Normal Track(일반양허품목)

2) 통보의무 삭제

현재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에 따르면 회원국은 관세양허스케줄을 '늦지 않게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보의무는 협정문에 구체적 양허스케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협정문의 개정에 따라 양허스케줄이 직접 협정문에 삽입되어 더 이상 상대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통보한다'는 조항은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로 개정되었다.

또한 민감품목리스트의 경우 부록 1과 2에 표 형식으로 나열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양허스케줄이 포함되었으므로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관세인하 스케줄 구체화)〉

현행	개정안
<p>협정 부속서 1 제8항</p> <p>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라 해당 관세품목의 관세철폐 계획과 함께 그 관세품목에 대해 당해 당사국의 의무가 개시되는 날보다 늦지 않게 <u>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u></p>	<p>협정 부속서 1 제8항</p> <p>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u>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u></p>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안 (관세인하 스케줄 구체화)〉

현행	개정안
<p>협정 부속서 2 제8항</p> <p>8. 각 당사국에 의해 이 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에 기초하여 민감품목군내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은 부록 1 및 2에 각각 기재된다.</p>	<p>협정 부속서 2 제8항</p> <p>8. 각 당사국은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이 부속서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인하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p>
<p>[신설]</p>	<p>협정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 관세 인하 및 / 또는 철폐 일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브루나이다루살람 2. 캄보디아 3. 인도네시아 4. 한국 5. 라오스 6. 말레이시아 7. 미얀마 8. 필리핀 9. 싱가포르 10. 태국 11. 베트남

③ 시사점 : 세율확인 용이

한 - 아세안 FTA 협정문의 개정으로 각 국가의 품목별 양허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에 포함된 양허일정은 매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체결된 한 - 호주 FTA나 한-캐나다 FTA의 양허표와 비교해 보아도 더욱 손쉽게 양허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양허일정표의 삽입은 직간접적으로 교역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협정문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이 양허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적용세율은 어느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손쉽게 양허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FTA활용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착오 등으로 실행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관세의 환급 또는 수정 및 경정 등으로 불필요한 관세행정비용과 세액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 양허표의 개정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08 나가며

WTO의 출범 이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도하라운드(Doha Round)는 민감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농산물 수출보조금과 농산물 세이프가드, 서비스 산업별 시장개방 문제 등 다자간 협상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이슈들이 포함되어 논의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다자간 협상이 어려워지자 국가들은 양자간 협상으로 눈을 돌렸고, 곧 전 세계는 FTA를 하나 둘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FTA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초기협상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협정문을 만들었으나, 국가의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추가적으로 개방할 여력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을 협정문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협정문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 아세안 FTA는 협정문의 개정 필요성이 높은 협정이다. 회원국 간 경제적 수준 차이가 커,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았던 한 - 아세안 FTA는 WTO와 유사한 측면이 많았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협정에는 WTO협정을 그대로 가져온 조항도 있어, 추가 합의에 따라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금번 개정으로 한 - 아세안 FTA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선진국형 FTA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역원활화협정의 반영, 관세양허스케줄, 상호대응세율제도의 폐지 등은 선진국형 FTA협정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협정문 개정의 필요성은 한 - 아세안 FTA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FTA수출입 활용률 분석을 통하여, FTA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협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FTA협정문은 양자 간 협상의 산물이므로 개정의 가능성도 높으며, 여력도 충분하므로, 우리나라는 신규 FTA의 체결과 더불어 기존 협정의 개정을 통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구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제1조 (협정 제4조의 개정)	협정 제4조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준용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협정 제4조 투명성,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1. 1994년도 GATT 제10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각의 법령에 따라 관세 사안에 관한 법령 및 규제 정보, 결정과 심사의 시의 적절한 공표 및 전파를 원활히 할 것이다. 3. 당사국들은 그 성격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법률 집행 절차 및 내부 운영 지침·사안들을 제외하고,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거나 집행 가능한 모든 법령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모든 관세 행정 절차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공표한다.
제2조 (협정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	(신설)	협정 제4조의2 사전심사 10. 각 당사국은 자국 각각의 법령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 조의 제2항가호에 기술된 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관세 행정기관 및 /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을 통하여 품목분류,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대한 협정」(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질의사항 및 / 또는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서명으로 제공한다.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구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p>제2조 (협정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p>	<p>(신설)</p>	<p>11.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전심사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생략)</p> <p>12. 제2항다호에 따라 요청된 추가 정보가 특정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사전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p> <p>13. 당사국은 신청에서 제기된 질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자에 대한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생략)</p> <p>14.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심사일부부터 3년간 또는 각 당사국 각각의 법령 또는 행정적 결정에 명시된 그 밖의 기간 동안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그 심사에 기술된 상품의 모든 수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적용한다.</p> <p>15.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생략)</p> <p>16. 당사국이 소급적으로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심사가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p>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규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제2조 (협정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삽입하는 개정)	(신설)	<p>17. 수입자가 수입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대우가 사전심사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세 행정기관 및 / 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그 수입의 사실 및 상황이 그 사전심사가 기초로 한 사실 및 상황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p> <p>18. 각 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모든 비밀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품목분류에 관한 자국의 사전 심사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p>
	(신설)	<p>협정 제4조의3 문의처</p> <p>각 당사국은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관세와 관련하여,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무역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이행 당사자로부터의 문의를 다루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하고, 그러한 문의를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및 / 또는 인쇄물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한다.</p>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구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제3조 (협정부속서3 제4조 제2항 각주의 개정)	<p>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p> <p>당사국들에게 RVC의 계산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것이 집적법이던 공제법이던지 융통성이 부여된다.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한다. 계산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방식의 채택하기 적어도 6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검증은 수출 당사국이 사용한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p>	<p>협정 부속서 3 제4조제2항 각주</p> <p>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RVC 산업법 중에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받는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 선택된 RVC 산정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수입 당사국에 의한 RVC의 모든 검증은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사용한 방법에 기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p>
제4조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 제1항의 개정)	<p>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p> <p>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p>	<p>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제1항</p> <p>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과 같다.</p> <p>가. 인쇄된 형태로</p> <p>[각주 : 인쇄된 형태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p> <p>나. A4 크기 용지에</p> <p>다. 첨부된 양식[첨부1][이하 “AK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그리고</p> <p>라. 영어로 작성</p>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구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p>제5조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 개정]</p>	<p>협정 부속서2 제7항</p> <p>7.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상호적 관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국에 의해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p> <p>(1) 수출 당사국에 의해 E 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 또는 그 이하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국에 그러한 취지로 통보되어야 한다.</p> <p>(2)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이어야 한다.</p> <p>(3)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율 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p>	<p>협정 부속서2 제7항</p> <p>7.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대우는, 그 동일 관세품목이 수입당사국에 의하여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경우,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p> <p>(1)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E그룹이 아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은 10퍼센트 또는 그 미만이어야 하며, 수출 당사국은 상호주의를 향유하기 위하여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통보하였다.</p> <p>(2)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은 그 수출 당사국 관세품목의 관세율 또는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의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으로 한다.</p> <p>(3) 제(2)목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은 그 일반품목군 관세율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율보다 낮더라도 재량에 따라 일반품목군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p>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구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제5조 (협정 부속서 2 제7항의 개정)	(4) 수출 당사국에 의해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주의 관세는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가 요청되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은 어떤 경우에도 상호주의를 요청받는 수입 당사국의 동일한 관세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 (협정 부속서 2에 새로운 제7항 의2를 삽입 하는 개정)	(신설)	<p>협정 부속서2 제7항의 2 7의2.</p> <p>가. 이 부속서 제7항 및 「상호주의에 관한 주해」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관세율 대우에 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자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는 이행위원회에 보고된다.</p> <p>(각주 :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권리는 이 의정서가 한국과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양자적으로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한국과 라오스 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한국과 미얀마 간, 한국과 싱가포르 간,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에 영구적으로 포기된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한국과 필리핀 간,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의 경우,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관세품목의 수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증가되지 아니한다.)</p> <p>나. 가호에 언급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출 당사국은 협정 부속서1에서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그 관세품목에 대한 해당 수입 당사국의 관세 양허를 향유한다.</p>

[부록] 한 -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개정 (신구 비교표)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2016. 1. 1)
제7조 (협정 부속서 1 제8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1 제8항 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라 해당 관세품목의 관세철폐 계획과 함께 그 관세품목에 대해 당해 당사국의 의무가 개시되는 날보다 늦지 않게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협정 부속서 1 제8항 8. 각 당사국은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제5항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철폐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
제8조 (협정 부속서 2 제8항의 개정)	협정 부속서 2 제8항 8. 각 당사국에 의해 이 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에 기초하여 민감품목군 내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은 부록 1 및 2에 각각 기재된다.	협정 부속서 2 제8항 8. 각 당사국은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자국의 관세품목을 이 부속서에 따른 각 관세품목의 관세인하 일정과 함께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에 구체화한다.
제9조 (협정 부속서 2의 부록1 및 2를 삭제하고 새로운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을 삽입하는 개정)	[신설]	협정 부속서 1 및 2의 통합부록 관세인하 및 / 또는 철폐 일정 1. 브루나이다루살람 2. 캄보디아 3. 인도네시아 4. 한국 5. 라오스 6. 말레이시아 7. 미얀마 8. 필리핀 9. 싱가포르 10. 태국 11. 베트남

FTA특혜무역활용통계를 통해 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 현황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01 들어가며

• 2015년 상반기 對FTA 교역비중은 43.5%로, 전년 동기대비 5.46%p. 증가 시현

우리나라는 2015년 1월을 한-캐나다 FTA의 발효로서 시작하고 있으며, 이로서 49개국과의 FTA를 발효, FTA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FTA 교역국과의 비중은 2009년 11.5%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6월 말 기준 43.5%로 절반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역구조가 인근 주변국인 중국, 일본의 30.4%로 그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중·일과 더불어 주요국과의 FTA가 우리나라 교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6	2015.6	
FTA	수출	406	711	1,457	2,044	2,163	2,417	1,181	1,212
	수입	385	597	1,204	1,666	1,710	1,993	895	923
	교역액	791	1,308	2,662	3,710	3,873	4,411	2,077	2,134
전체	수출	3,635	4,664	5,552	5,479	5,596	5,727	2,832	2,686
	수입	3,231	4,252	5,244	5,196	5,156	5,255	2,633	2,224
	교역액	6,866	8,916	10,796	10,675	10,752	10,982	5,465	4,910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11.5%	14.7%	24.7%	34.8%	36.0%	40.2%	38.0%	43.5%	

*연도별 실제 발효국가 기준
 자료: 무역협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표 2] 우리나라의 FTA 발효일자와 교역 비중

구분	발효	교역 비중
한 - 칠레 FTA	2004.04.01	0.7%
한 - 싱가포르 FTA	2006.03.02	2.4%
한 - EFTA FTA	2006.09.01	1.5%
한 - ASEAN FTA	2007.06.01	12.3%
한 - 인도 CEPA	2010.01.01	1.7%
한 - EU FTA	2011.07.01	10.7%
한 - 페루 FTA	2011.08.01	0.3%
한 - 미 FTA	2012.03.15	11.7%
한 - 터키 FTA	2013.05.01	0.7%
한 - 호주 FTA	2014.12.12	2.9%
한 - 캐나다 FTA	2015.01.01	0.9%

*교역비중은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산됨

이와 같은 FTA의 확대는 기업, 산업 협회, FTA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정보 수요를 높인다.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는 효과적 FTA 활용 지원정책을 위해 FTA 무역 환경에서 FTA 활용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에 의하여, 최근 통계청 고시 제2014 - 211호를 통해 FTA특혜무역활용통계의 작성이 승인되었으며 본격적으로 FTA 협정별, 품목별 수출입 활용률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 FTA 활용률이란?

FTA 상품협정에서 FTA 활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FTA 활용률'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¹⁾ 해당 식은 FTA 체결국 간의 교역 가운데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교역액 중, 실제로 FTA 혜택을 받은 교역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text{활용률(\%)} = \frac{\sum_{\substack{\text{P=상대국,} \\ \text{s=품목}}} \text{실제특혜관세를 받은 } M_{p,s}}{\sum_{\substack{\text{P=상대국,} \\ \text{s=품목}}} \text{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 M_{p,s}} \times 100$$

M은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의미함

위의 식에 의거하여, FTA 활용률 도출 공식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FTA 수입활용률은 FTA 혜택 대상품목의 총수입 중 특혜관세적용신고 수입의 비중을, 수출활용률은 FTA 혜택(대상)품목의 총수출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의 비중을 의미한다.

본 글은 FTA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FTA 수출 활용률'을 최근 개시한 FTA특혜무역활용통계, 즉 21개 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2015년 상반기 對FTA 교역과 활용률

① 對FTA 수출

- 2015년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對FTA국 수출은 -3.5%로 감소, 전체 수출감소율 -5.2%보다 감소 수준 저조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2,686억불로 전년대비 -5.2% 감소하였고, 對FTA 체결국 수출 역시 1,212억불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다.

이처럼 수출부진이라는 무역환경 하에 對FTA 수출도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출의 감소보다는 낮은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김한성 외, 2009,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3〉과 같이 우리나라 2015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미국, 호주, EFTA 등 3개 국가군에서 만 증가가 확인된다.

상위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FTA 국가는 EFTA(372.6%) > 호주(21.9%) > 미국(5.5%) 순으로 나타난 반면 수출 감소를 보인 국가는 칠레(-18.2%), EU(-14.7%), ASEAN(-14.0%), 터키(-7.7%), 캐나다(-5.2%), 인도(-4.6%), 페루(-3.9%) 순이었다. 특히 유럽은 유로존의 현지 경기 회복 지연과 더불어 양적완화 기조로 원화 대비 엔화 및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 실적

(단위: 억불, %)

구분	2014년 1~6월	2015년 1~6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감률
ASEAN	443	381	-14.0
미국	339	357	5.5
EU	275	235	-14.7
인도(인디아)	63	60	-4.6
호주	49	59	21.9
EFTA	10	48	372.6
터키	33	31	-7.7
캐나다	26	25	-5.2
칠레	11	9	-18.2
페루	7	7	-3.9
對FTA 소계	1,256	1,212	-3.5
對세계 총계	2,832	2,686	-5.2

*FTA 소계는 2015년 6월 말 발효 기준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② 對FTA 수입

- 2015년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對FTA국 수입은 -10.3%로 감소, 전체 수입감소율 -15.5%보다 감소 수준 저조

2015년 상반기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23억불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입 감소율 -15.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상반기 전반적인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對FTA 체결국과의 교역 감소율이 對세계 교역실적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수입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터키(23.1%) > 칠레(8.9%) 등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입 감소율을 보인 국가는 호주(-20.7%) > 캐나다(-20.6%) > 페루(-19.1%) > 인도(-16.8%) > ASEAN(-16.6%)로 대부분 경제권에서의 수입 감소가 수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FTA 체결국가와의 수입 실적

(단위: 억불, %)

구분	2014년 1~6월	2015년 1~6월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감률
ASEAN	268	223	-16.6
미국	230	219	-4.9
EU	311	292	-6.1
인도(인디아)	27	22	-16.8
호주	106	84	-20.7
EFTA	28	27	-4.0
터키	3	4	23.1
캐나다	27	22	-20.6
칠레	23	25	8.9
페루	7	6	-19.1
對FTA 소계	1,029	923	-10.3
對세계 총계	2,633	2,224	-15.5

* FTA 소계는 2015년 6월 말 발효 기준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③ 對FTA 수지

2015년 상반기 FTA 체결국과의 무역수지는 289억불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3.1억불 증가한 수준이다. 아세안, EU, 칠레, 터키 등의 국가에서 무역적자 악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적자규모가 큰 국가는 호주로 25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원 수입에 집중된 호주 적자교역의 특징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히려 무역적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전년 동기 -57억불보다는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對EFTA, 對캐나다의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적자에서 2015년 상반기 흑자로 전환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對미 무역흑자폭은 139억불로 전년 동기보다 30억불 증가하였다. 이는 對FTA 무역흑자 가운데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보다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 혹은 무역의 확대보다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최근 WTO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주요 67개국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인 교역 부진이 확인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교역부진의 여파로 수입 감소에 의해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는 소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우려되고 있다.

[표 5]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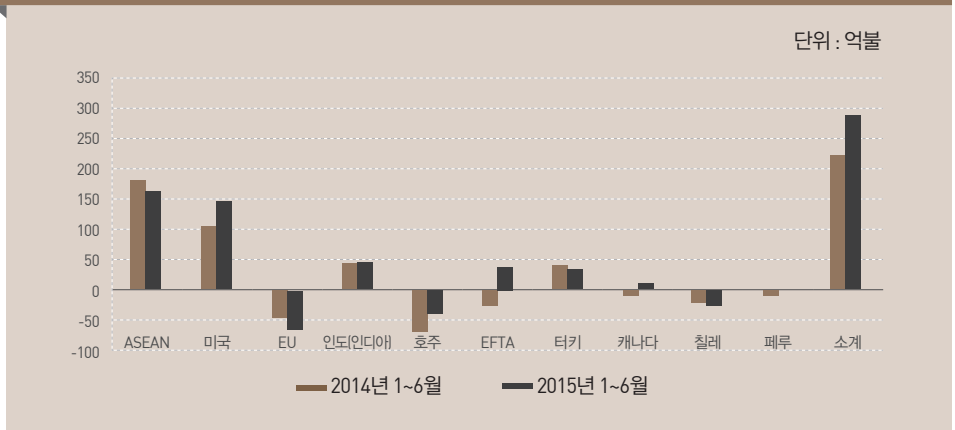
구분	2014년 1~6월	2015년 1~6월	증감폭
ASEAN	176	158	-17.8
미국	109	139	30.0
EU	-36	-57	-21.6
인도(인디아)	36	38	1.6
호주	-57	-25	32.7
EFTA	-18	22	39.1
터키	30	27	-3.2
캐나다	-1	3	4.2
칠레	-11	-16	-4.1
페루	0	1	1.1
소계	227	289	61.9
총계	199	462	263.1

* FTA 소계는 2015년 6월말 발효 기준
 자료 :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4 FTA 활용률

- 2015년 상반기 FTA 특혜대상 수출입품목은 전년 동기대비 4.1% 감소한 991억불 수준

[그림 1]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표 6] 對FTA 발효국 교역 : FTA 특혜 / 비특혜

(단위: 억불, %)

구분	2014년 1~6월			2015년 1~6월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교역	증감률
FTA 발효국	1,256	1,029	2,285	1,212	-3.5	923	-10.3	2,135	-6.6
FTA 특혜품목	449	584	1,033	436	-2.9	555	-5.0	991	-4.1
FTA 비특혜품목	807	445	1,252	776	-3.8	368	-17.3	1,144	-8.6

* 관세청 보도자료(2015.9.17.)

[표 6]은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교역이다.²⁾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對FTA 특혜대상 수출실적은 436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9% 감소한 반면, 비특혜 수출실적은 776억불로 3.8% 감소하여 비특혜대상 수출이 특혜대상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입 역시, FTA 특혜대상 수입실적은 55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5.0% 감소하였으나, 비특혜 수입실적은 368억원으로 17.8%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FTA가 우리나라의 수출입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동 수치는 기관발급인 아세안과 페루는 제외한 실적으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 **협정별 FTA 활용률 : 수출 71.3%(2.1% ↑), 수입 68.2%(0.2% ↑)**

2015년 상반기 FTA 활용률은 수출은 71.3%, 수입은 68.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0.2% 증가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교역부진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은 상승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정별 FTA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페루(89.8%), EU(86.7%), EFTA(81%), 미국(78.8%)과의 FTA는 높은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0.3%), 인도(62.1%)는 낮게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칠레(98.8%), 페루(91.1%) 등 중남미권 국가의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자재 등 비교적 원산지 충족이 용이한 1차 산품에 집중된 교역 구조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은 수출 활용률이 각각 86.7%, 78.8%, 수입 활용률은 68.5%, 67.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수출 부문에서 FTA 활용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된 결과다. 수입의 경우 수입원재료를 가공·조립·제조한 상품의 경우, FTA 협정에서 특혜 향유를 위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이 모든 품목에서 가능한 부문은 아닌바, 수출보다 낮은 수입 활용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그 산업분야와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표 7] 협정별 FTA 활용률

(단위 : %)

구분	2014년(A)		2015년 6월(B)		증감폭(B - A)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칠레	80.5	98.3	78.6	98.8	△1.9	0.5
EFTA	79.6	41.6	81.0	40.8	1.4	△0.8
아세안	37.0	73.8	40.3	71.5	3.3	△2.3
인도	56.3	67.0	62.1	71.3	5.8	4.3
EU	85.3	66.8	86.7	68.5	1.4	1.7
페루	90.5	89.2	89.8	91.1	△0.7	1.9
미국	76.2	66.0	78.8	67.8	2.6	1.8
터키	72.7	64.4	77.8	67.7	5.1	3.3
FTA 전체	69.2	68.0	71.3	68.2	2.1	0.2

* 관세청 보도자료(2015.9.17.)
 (수출활용률) 수출신고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액 / 특혜관세 품목 수출액
 (수입활용률) 실제 특혜관세 적용된 수입액 / 특혜관세 품목 수입액

03 산업별 FTA 특혜 수출 동향³⁾ : 21개 부를 중심으로

① 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 물품(제17부)

2015년 상반기 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 물품 FTA 활용수출액⁴⁾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2.7%) > 미국(26.1%) > 캐나다(10.5%) > 호주(9.6%) > 칠레(4.9%) > 터키(3.3%) > 페루(2.2%) > EFTA(0.7%)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68.8%로 두 개 국가 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8] 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 물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4,617	56.2	4,047	42.7
미국	2,401	29.2	2,478	26.1
캐나다	0	0.0	993	10.5
호주	0	0.0	913	9.6
칠레	646	7.9	469	4.9
터키	257	3.1	313	3.3
페루	251	3.1	208	2.2
EFTA	50	0.6	68	0.7
총합계	8,221	100.0	9,489	100.0

• 한-EU FTA : FTA 활용률 94%의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우선 제17부(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물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7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2.7%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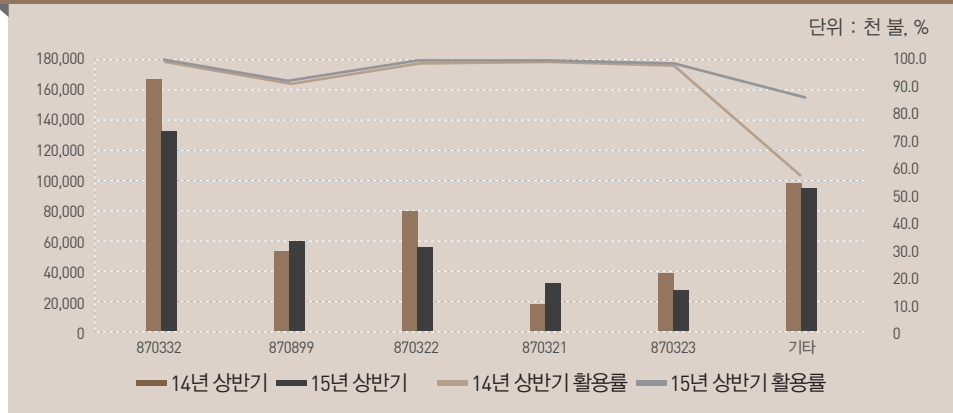
[그림 2]와 같이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703.32,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승용차(압축점화식)'으로 제17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3) 수출의 경우 기관발급인 아세안과 인도는 제외하고 분석함

4) FTA 대상 C/O 발급 금액을 의미. 이하 같음

약 33.1%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8708.99, ‘기타(자동차부품)’⁵⁾이 15.4%, HS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승용차(불꽃점화식)’ 12.9%, HS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불꽃점화식)’ 7.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對EU 제17부의 류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HS	품목명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것(압축점화식)
870899	기타(자동차부품)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불꽃점화식)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불꽃점화식)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불꽃점화식)

• 한-미 FTA: 자동차부품의 FTA 활용 비중이 전체의 46.4%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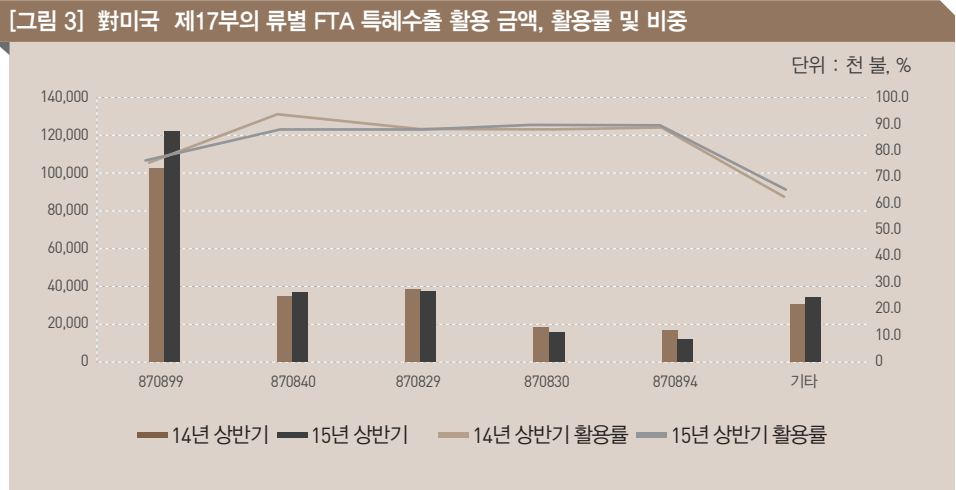
제17부(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물품)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17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6.1%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708.99, ‘기타(자동차부품)’으로 제 17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46.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15.3%, HS 8708.29, ‘기타’ 15.1%, 순으로 나타났다.

5) HS 6단위로 품목을 표기할 경우, 상위 품목분류가 누락되어 품목명을 인식하기 어려움(예, 기타). 따라서 해당 품목의 MTI 6단위 품목을 괄호로 표시하여 품목명 인식도를 높임. 이하 같음

제17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2%가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HS 8703.99 '기타(자동차부품)'과 HS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1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2.9%로 전년대비 1.2%p. 증가하였다. 활용률 주요 상승 품목은 HS 8708.99, '기타(자동차부품)'으로 전년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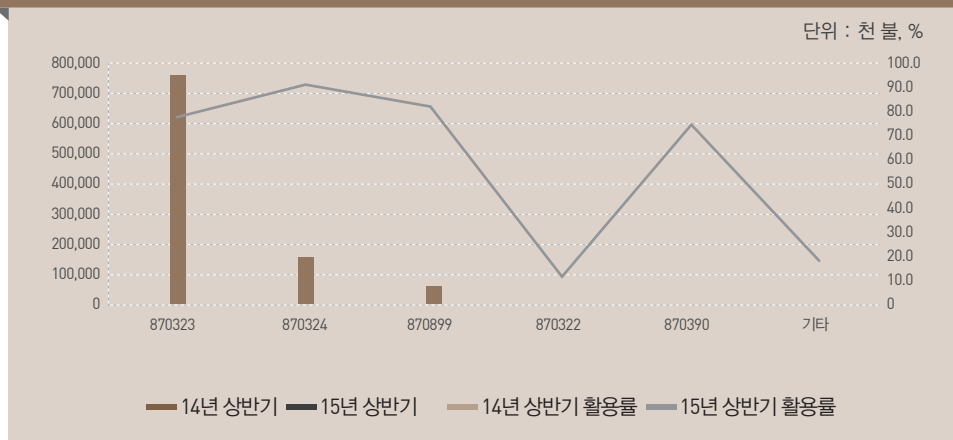
HS	품목명
870899	기타(자동차 부품)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70829	기타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70894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column) · 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한-캐나다 FTA : 불꽃 점화식 차량 FTA 활용의 76.1% 점유

2015년 1월 발효된 한-캐나다 FTA는 제17부(차량 등 수송기기 관련물품)의 3위 FTA 활용수출 국가이다.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17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0.5%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對캐나다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불꽃점화식)'으로 제17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대부분인 약 76.1%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불꽃점화식)'이 15.3%, HS 8708.99, '기타 자동차부품' 6.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對캐나다 제1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4.9%로 제17부 평균치인 87.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캐나다 FTA는 신규 발효 협정으로 향후 활용률의 추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對캐나다 제17부의 류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HS	품목명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를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70899	기타(자동차 부품)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것
870390	기타

② 기계류와 전자기기 등(제16부)

2015년 상반기 기계류와 전자기기 등 제16부 품목의 FTA 활용수출액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5.7%) > EU(43.6%) > 터키(6.1%) > 호주(2.2%) > 칠레(1.5%) > 캐나다(0.6%) > 페루(0.3%) > EFTA(0.1%)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9.2%로 17부와 마찬가지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16부(기계류와 전자기기 등)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2,390	43.4	2,565	45.7
EU	2,590	47.1	2,449	43.6
터키	387	7.0	341	6.1
호주	0	0.0	123	2.2
칠레	96	1.7	84	1.5
캐나다	0	0.0	34	0.6
페루	30	0.5	15	0.3
EFTA	9	0.2	8	0.1
총합계	5,501	100.0	5,619	100.0

• 한 - 미 FTA : FTA 활용수출금액 전년 동기대비 7.3%가 증가, 상위 5대 물품 중 변압기 전년동기대비 5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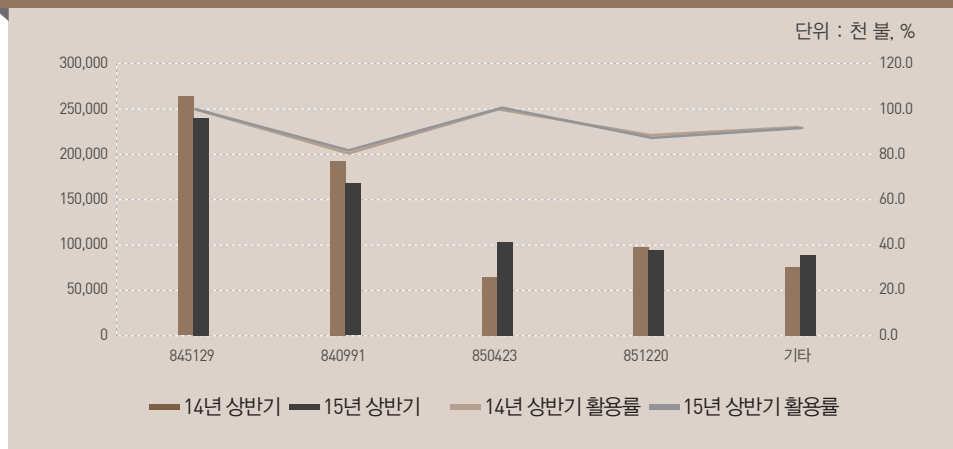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6부(기계류와 전자기기 등)의 1위 FTA 활용수출은 45.7%를 점유한 한 - 미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EU FTA의 점유율이 43.6%로 미국과 EU가 양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년 동기의 경우 對EU FTA 활용 수출액이 2,590백만불로 1위였으나, 2015년에 그 순위가 역전되었다.

[그림 5]와 같이 제16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451.29, '기타'로 섬유기계류이다. HS 8451.29는 對미 제16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9.2%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이 6.6%, HS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변압기)'이 4.3%, HS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가 3.5%, HS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3.5% 순으로 나타났다.

제16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7.3%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8504.23, 변압기와 HS 8413.30, 펌프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16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4%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다. 활용률 주요 상승 품목은 HS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로 전년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對미국 제16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845129	기타(섬유기계류)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850423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변압기)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

• 한 - EU FTA : 제16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5%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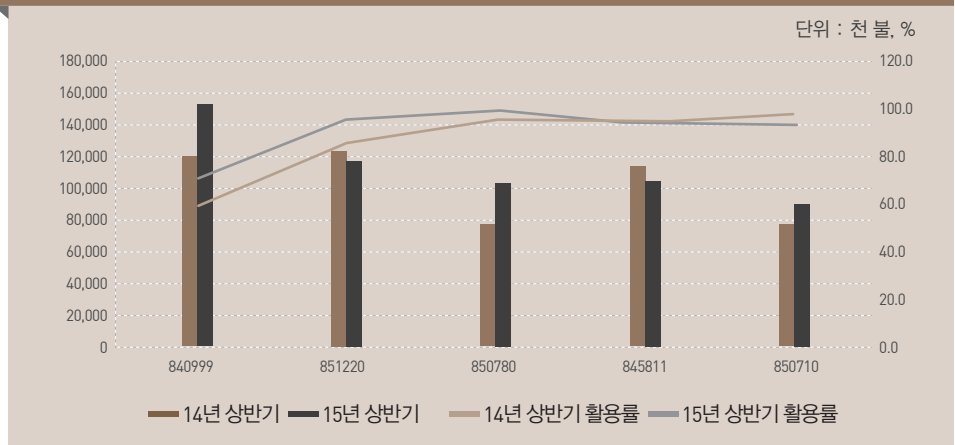
제16부(기계류와 전자기기 등)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16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3.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6]과 같이 제16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409.99, '기타'로 자동차, 철도, 선박 등의 엔진 및 부품이다. HS 8409.99는 제16부 對EU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이 4.8%, HS 8507.80 '그 밖의 축전지'이 4.3%, HS 8458.11, '수치제어식(금속절삭가공기계)'가 4.3%, HS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3.7% 순으로 나타났다.

제16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5%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8409.99(자동차, 철도, 선박 등의 엔진 및 부품)와 HS 8507.80(그 밖의 축전지), HS 8507.10(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EU 제16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1.2%로 전년대비 3.1%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 중 HS 8507.10(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활용률 증가가 나타났다.

[그림 6] 對EU 제16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840999	기타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850780	그 밖의 축전지
845811	수치제어식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 축전지

• 한 - 터키 FTA :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77.9%로 전년대비 24.7%p. 상승. 원동기, 엔진, 냉장고 등 FTA 활용 수출금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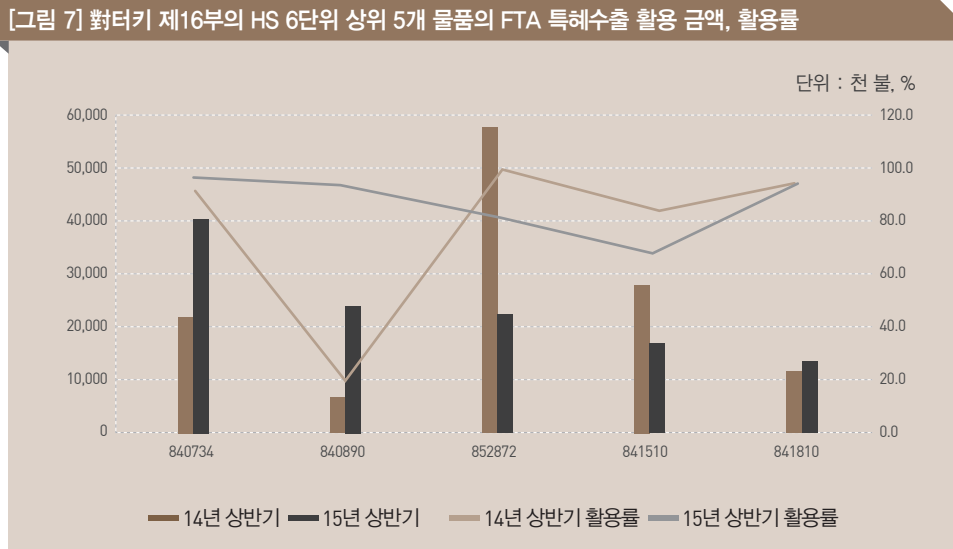
제16부(기계류와 전자기기 등)의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16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6.1%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제16부의 對터키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로 원동기이다. HS 8407.34는 제16부 對터키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1.8%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8408.90, '그 밖의 엔진'이 7.3%, HS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등 컬러 TV가 6.8%, HS 8415.10, ‘창형이나 벽형’의 에어컨 및 공기조절기가 5.0%, HS 8418.10 ‘냉장고·냉동고’ 4.0% 순으로 나타났다.

제16부의 對터키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2.1%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8407.34(원동기)와 HS 8408.90(그 밖의 엔진), HS 8418.10(냉장고·냉동고)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터키 제16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7.9%로 전년대비 24.7%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 중 활용률 상승 품목은 HS 8408.90(그 밖의 엔진) 로 전년보다 7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품목명
840999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851220	그 밖의 엔진
850780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845811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8507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③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제7부)

2015년 상반기 제7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1.3%) > EU(39.0%) > 터키(12.5%) > 호주(2.5%) > 칠레(2.3%) > 캐나다(2.3%) > EFTA(0.3%) > 페루(0.2%)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0.3%로 나타났다.

[표 10] 제7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1,366	34.8	1,519	41.3
EU	1,797	45.8	1,437	39.0
터키	636	16.2	461	12.5
호주	0	0.0	91	2.5
칠레	99	2.5	84	2.3
캐나다	0	0.0	68	1.9
EFTA	17	0.4	13	0.3
페루	9	0.2	8	0.2
총합계	3,924	100.0	3,6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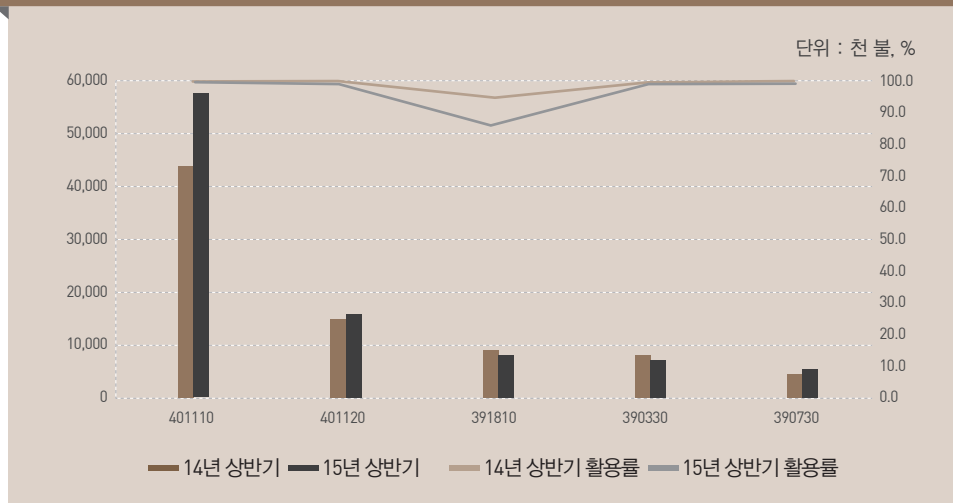
• 한 - 미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1.2%가 증가,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4011.10(승용차용 타이어)와 HS 3907.30(에폭시수지) 등 증가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7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은 41.3%를 점유한 한 - 미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對미 FTA 활용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1,366백만불에서 11.2% 증가한 1,519백만불을 기록하였다.

[그림 8]와 같이 제7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타이어이다. HS 4011.10(승용차용 타이어)은 對미 제16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37.2%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동일한 타이어류인 HS 4011.20, '버스용 · 화물차용'이 9.6%, HS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플라스틱갈개 및 벽피복)'이 4.4%, HS 3903.30,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 공중합체(ABS)'가 3.6%, HS 3907.30 '에폭시수지' 3.1% 순으로 나타났다.

제7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1.2%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4011.10(승용차용 타이어)와 HS 3907.30(에폭시수지)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4.8%로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플라스틱갈개 및 벽피복)'의 활용률이 93.8%(14.상반기)에서 84.8%(15.상반기)로 다소 감소한 가운데 이외 물품은 전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8] 對미국 제7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0330	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 공중합체(ABS)
390730	에폭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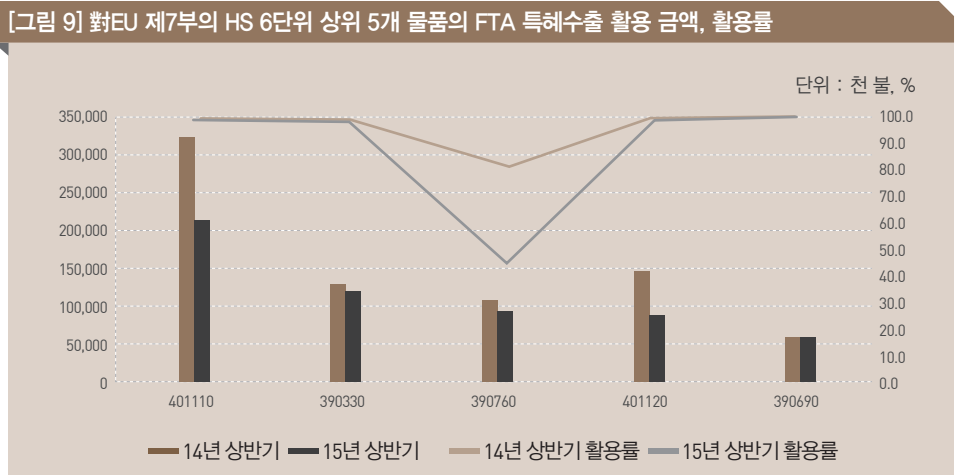
• 한 - EU FTA : 제7부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0.0%가 감소

제7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7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9.0%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9]와 같이 제7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타이어이다. HS 4011.10는 제7부 對EU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5.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가 8.1%, HS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6.4%, HS 4011.20, ‘버스용·화물차용(타이어)’가 5.9%, HS 3906.90 ‘기타(합성수지)’ 4.4% 순으로 나타났다.

제7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0.0%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3906.90 ‘기타(합성수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對EU 제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0.6%로 전년대비 3.1%p. 증가하였다. 특히 상위 5대 물품 중 HS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활용률이 47.8%(‘14.상반기’)에서 79.0%(‘15. 상반기’)로 크게 증가하였다.



HS	품목명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01120	버스용·화물차용
39069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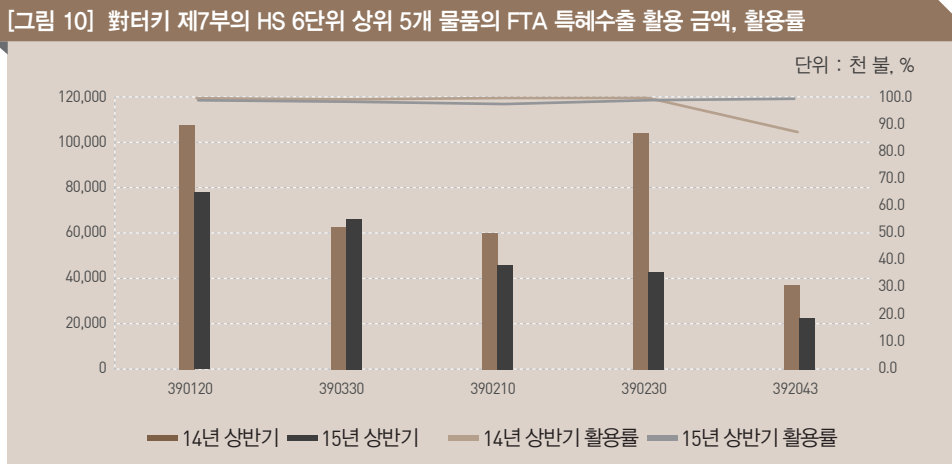
• 한-터키 FTA : FTA 활용수출금액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3.0%로 전년대비 0.2%p. 증가

제7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7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0]와 같이 제7부의 對터키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이다. HS 3901.20은 제7부 對터키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6.5%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이 14.4%, HS 3902.10 ‘폴리프로필렌’이 10.5%, HS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이 9.1%, HS 3902.43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 4.9% 순으로 나타났다.

제7부의 對터키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7.6%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중 HS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터키 제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3.0%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 중 활용률 상승 품목은 HS 3902.43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로 전년보다 1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품목명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390210	폴리프로필렌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392043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④ 광물성 생산품(제5부)

2015년 상반기 제5부 광물성 생산품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97.9%) > EU(1.1%) > 칠레(0.7%) > 터키(0.3%) 순으로 나타났다. 對미국 점유율이 97.9%로 집중되어 있다.

[표 11] 제7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1,033	97.4	1,567	97.9
EU	14	1.3	18	1.1
칠레	7	0.7	11	0.7
터키	7	0.7	4	0.3
총합계	1,061	100.0	1,601	100.0

- 한-미 FTA: FTA 활용수출금액 전년 동기대비 51.8%가 증가, 기타 석유제품 1개 품목이 98.6%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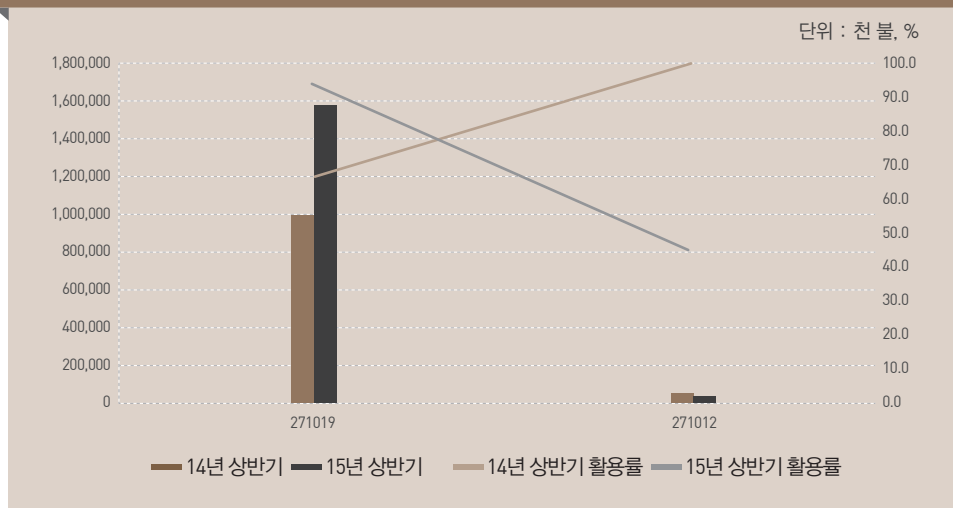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5부(광물성 생산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은 97.9%를 점유한 한-미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11]과 같이 제5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2710.19, '기타'석유제품이다. HS 2710.19은 對미 제5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98.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동일한 석유제품인 HS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 1.4%로 나타났다.

제5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51.8%가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2.7%로 전년대비 23.7%p. 증가하였다.

[그림 11] 對미국 제5부의 HS 6단위 상위 2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271019	기타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⑤ 비(卑)금속과 제품(제15부)

2015년 상반기 제15부(비(卑)금속과 제품)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5.0%) > EU(31.4%) > 호주(11.9%) > 터키(8.7%) > 칠레(2.0%) > 캐나다(0.8%) > EFTA(0.3%) > 페루(0.1%)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은 76.4%이다.

[표 12] 제15부(비금속과 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590	50.2	679	45.0
EU	459	39.0	473	31.4
호주	0	0.0	179	11.9
터키	72	6.1	131	8.7
칠레	51	4.4	29	2.0
캐나다	0	0.0	12	0.8
EFTA	4	0.4	4	0.3
페루	1	0.1	1	0.1
총합계	1,177	100.0	1,509	100.0

• 한 - 미 FTA : FTA 활용수출금액 HS 7801.10(정제한 납)와 HS 7202.19 ‘기타(망간철)’ 등이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5부(비금속과 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은 45.0%를 점유한 한 - 미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 EU FTA의 점유율이 31.4%로 제15부 역시 미국과 EU가 양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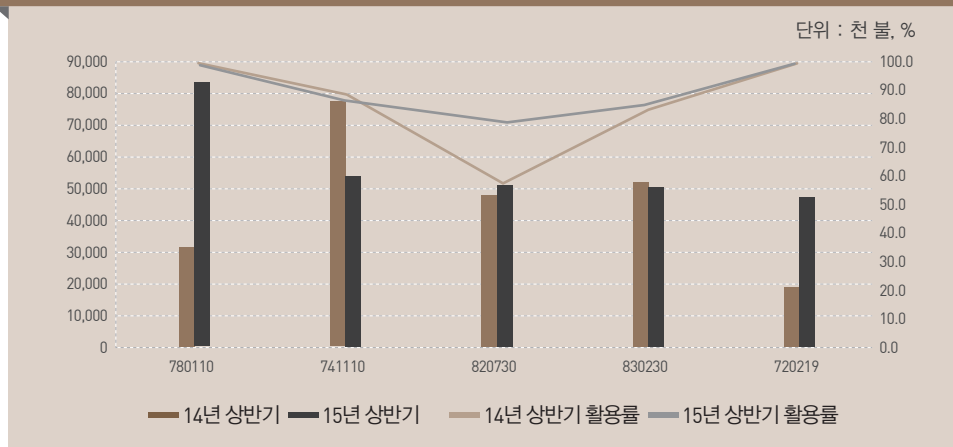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對미 FTA 활용수출은 전년 동기 590백만불에서 15.0% 증가한 679백만불을 기록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제15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7801.10, ‘정제한 납’이다. HS 7801.10은 對미 제15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2.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8.1%, HS 8207.30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가 7.7%, HS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7.5%, HS 7202.19 ‘기타(망간철)’이 6.6% 순으로 나타났다.

제15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7801.10(정제한 납)와 HS 7202.19 '기타(망간철)' 등이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對미 제15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6.9%로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8207.30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의 활용률이 59.1%(14.상반기)에서 76.7%(15.상반기)로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림 12] 對미국 제15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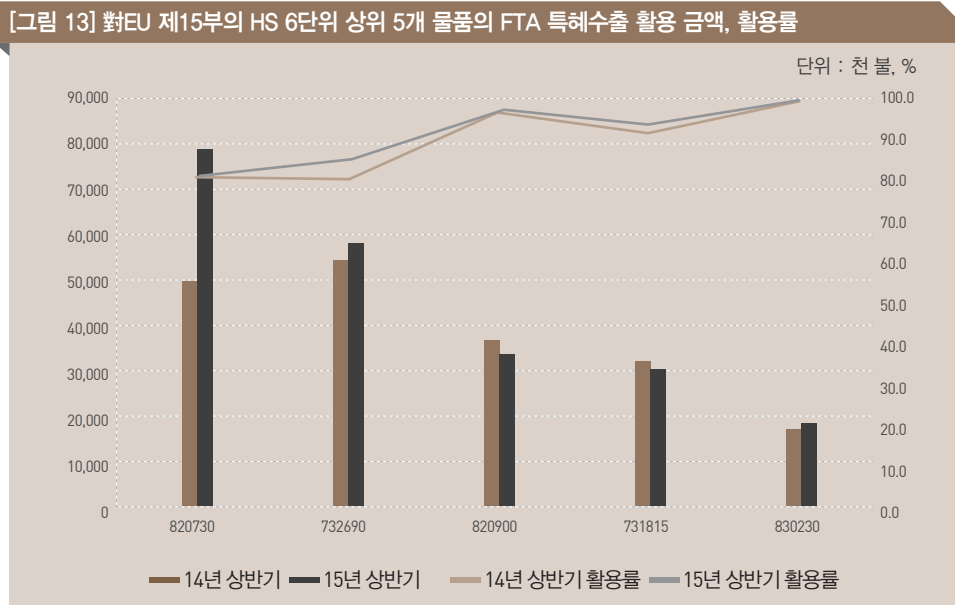
HS	품목명
780110	정제한 납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820730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720219	기타

• 한 - EU FTA : HS 8207.30,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져, 활용률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
제15부(비금속과 제품)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5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1.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3]과 같이 제15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8207.30, '프레싱 (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이다. HS 8207.30은 제 15부 對EU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6.5%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7326.90, '기 타'가 12.2%, HS 8209.00 '공구용 판 · 봉 · 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 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7.2%, HS 7318.15, '그 밖의 스크루 (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가 6.5%, HS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 순으로 나타났다.

제15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8207.30,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 구'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EU 제15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1.8%로 전년대비 2.9%p. 증 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활용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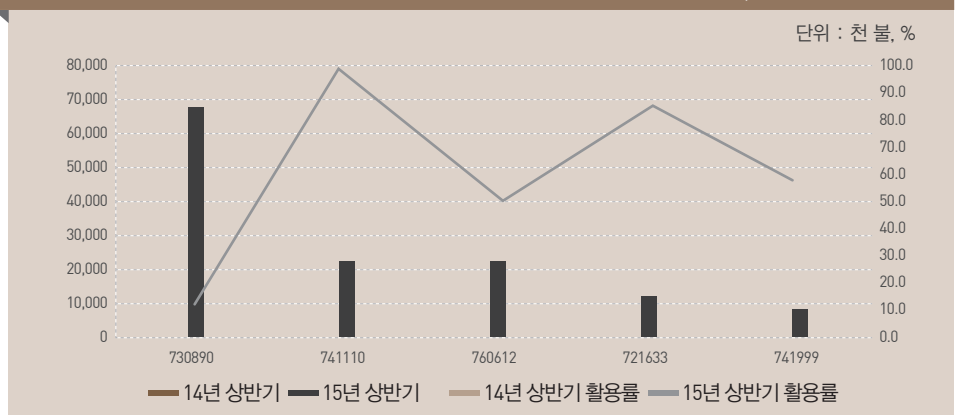
HS	품목명
820730	프레스(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공구
732690	기타
820900	공구용 판 · 봉 · 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 ·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한 - 호주 FTA : 제15부 1위 품목인 HS 7308.90, '기타'철구조물은 활용률 12.9%에 불과
 2014년 12월 발효된 한 - 호주 FTA는 제15부(비금속과 제품)의 3위 FTA 활용수출을 협
 정이다.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15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4]와 같이 對호주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7308.90, '기타'철구조물로 제15
 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37.8%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12.9%, HS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12.8%, HS 7216.33, '에이치
 (H)형강' 6.1%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對호주 제17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24.7%로 제15부 평균치인
 60.4%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제15부 1위 품목인 HS 7308.90, '기타' 철구조물은
 활용률이 12.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4] 對호주 제15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730890	기타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21633	에이치(H)형강
741999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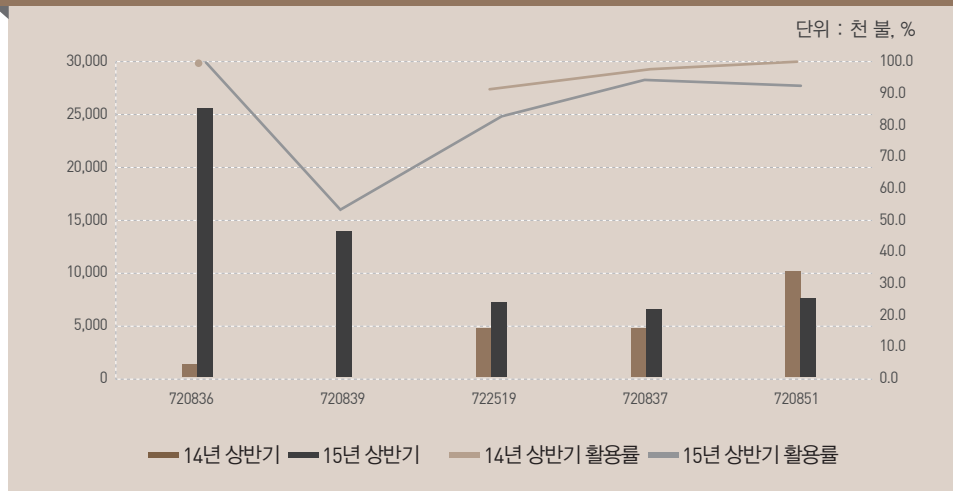
• 한-터키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3.3% 급증

제15부(비금속과 제품)의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5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8.7%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5]와 같이 제15부의 對터키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7208.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열연강판)’이다. HS 7208.36은 제15부 對터키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9.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7208.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열연강판)’이 10.4%, HS 7225.19 ‘기타’전기강판이 5.5%, HS 7208.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열연강판)’이 5.2%, HS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중후판)’5.2% 순으로 나타났다.

제15부의 對터키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3.3%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중 HS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중후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對터키 제15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6.1%로 전년대비 15.7%p. 증가하였다.

[그림 15] 對터키 제15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720836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20839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722519	기타
720837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720851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⑥ 화학공업 생산품(제6부)

2015년 상반기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52.1%) > 미국(25.1%) > 터키(16.8%) > 호주(3.1%) > 칠레(1.2%) > EFTA(0.7%) > 페루(0.5%) > 캐나다(0.4%) 순으로 나타난다. 對EU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제6부(화학공업 생산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571	55.2	615	52.1
미국	252	24.4	297	25.1
터키	183	17.7	199	16.8
호주	0	0.0	37	3.1
칠레	18	1.7	15	1.2
EFTA	8	0.8	9	0.7
페루	2	0.2	6	0.5
캐나다	0	0.0	5	0.4
총합계	1,033	100.0	1,182	100.0

• 한 - EU FTA : HS 2917.36(테레프탈산과 그 염)의 활용률이 39.5%('14.상반기)에서 55.7%('15.상반기)로 활용금액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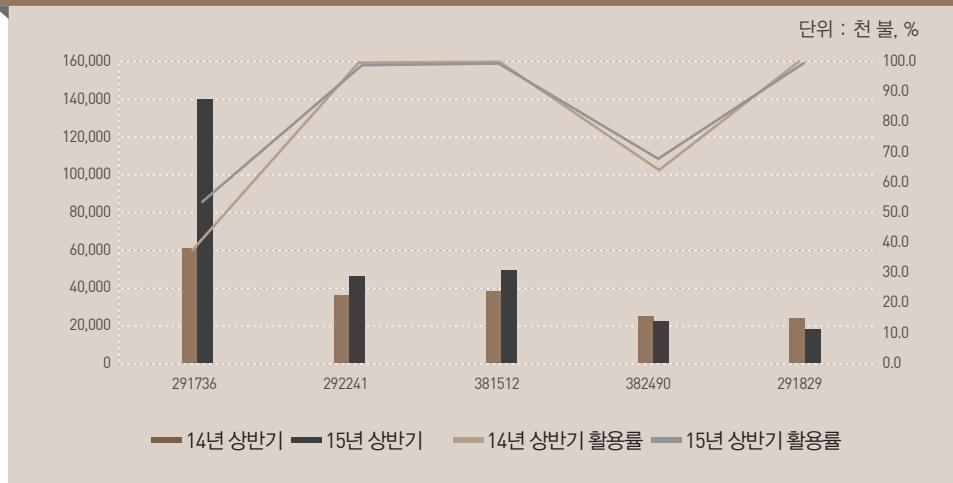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6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은 52.1%를 점유한 한-EU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16]과 같이 제6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이다. HS 2917.36은 對EU 제6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2.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이 8.6%, HS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이 8.5%, HS 3824.90, '기타(화학공업제품)'가 3.5%, HS 2918.29 '기타(정밀화학원료)' 3.0% 순으로 나타났다.

제6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7.8%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2917.36(테레프탈산과 그 염), HS 2922.41(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HS 3815.12(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EU 제6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7%로 전년대비 4.4%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2917.36(테레프탈산과 그 염)의 활용률이 39.5%(‘14.상반기)에서 55.7%(‘15.상반기)로 활용금액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림 16] 對EU 제6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382490	기타
291829	기타

- 한 - 미 FTA : HS 3826.00, ‘바이오티셀과 그 혼합물’의 활용률이 52.7%(‘14.상반기)에서 100.0%(‘15.상반기)로 큰 폭으로 증가, FTA 활용 수출액도 동반 증가
제6부(화학공업생산물)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6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5.1%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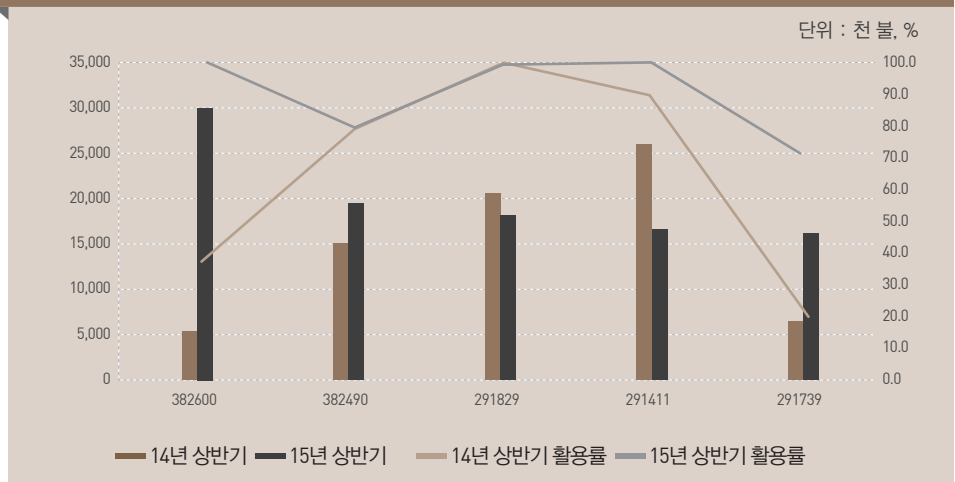
[그림 17]과 같이 제6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3826.00, ‘바이오티셀과 그 혼합물’이다. HS 3826.00은 제6부 對미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0.2%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3824.90, '기타(화학공업제품)'가 6.4%, HS 2918.29 '기타(정밀화학원료)'가 6.0%, HS 2914.11, '아세톤'이 5.9%, HS 2917.39 '기타' 5.2% 순으로 나타났다.

제6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7.8%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은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6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1.6%로 전년대비 6.6%p. 증가하였다. 특히 상위 5대 물품 중 HS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의 활용률이 52.7%('14.상반기)에서 100.0%('15.상반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7] 對미국 제6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382490	기타
291829	기타
291411	아세톤
291739	기타

• 한-터키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4%가 증가, 활용율은 전년과 유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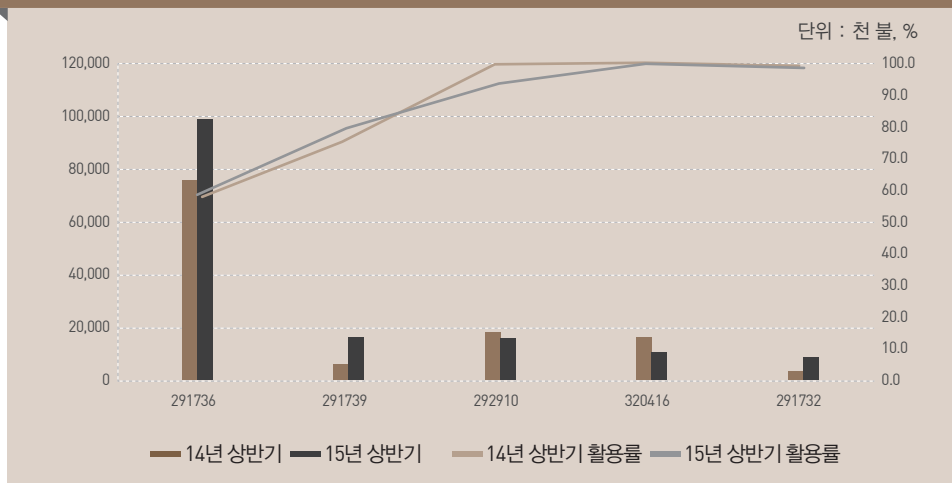
제6부(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6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6.8%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8]과 같이 제6부의 對터키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이다. HS 2917.36은 對터키 제6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4.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2917.39, '기타(석유화학제품)'이 11.5%, HS 2929.10, '이소시아네이트'이 10.5%, HS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가 8.8%, HS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7.5% 순으로 나타났다.

제6부의 對터키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4%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중 HS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HS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등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터키 제6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1.8%로 전년대비 1.2%p. 감소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은 큰 변동 없이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FTA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8] 對터키 제6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291739	기타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⑦ 방직용 섬유와 제품(제11부)

2015년 상반기 제11부(방직용 섬유와 제품)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6.5%) > EU(35.8%) > 터키(12.7%) > 호주(2.1%) > 칠레(1.3%) > 페루(0.7%) > 캐나다(0.5%) > EFTA(0.4%)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2.3%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14] 제11부(방직용 섬유와 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454	43.9	450	46.5
EU	420	40.6	346	35.8
터키	135	13.1	123	12.7
호주	0	0.0	20	2.1
칠레	15	1.5	12	1.3
페루	7	0.7	7	0.7
캐나다	0	0.0	5	0.5
EFTA	3	0.3	4	0.4
총합계	1,035	100.0	968	100.0

• 한-미 FTA :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FTA 활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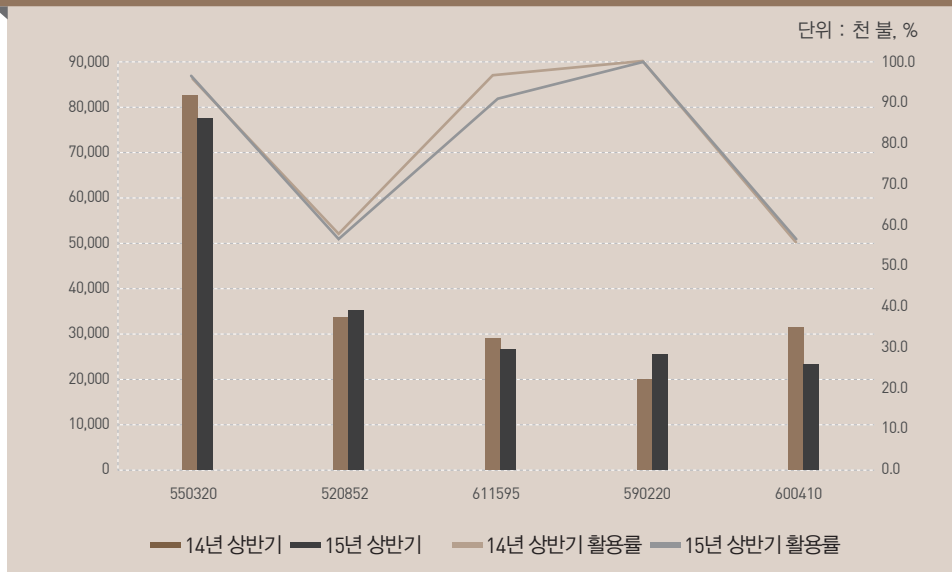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1부(방직용 섬유와 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은 46.5%를 점유한 한-미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19]와 같이 제11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이다. HS 5503.20은 對미 제11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7.0%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5208.52,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7.9%, HS 6115.95 '면으로 만든 것'이 5.9%, HS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가 5.9%, HS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5% 순으로 나타났다.

제11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0.8%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11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3%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6115.95 '면으로 만든 것'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활용을 보이고 있다.

[그림 19] 對미국 제11부의 HS 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520852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611595	면으로 만든 것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 한-EU FTA :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7.5%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역시 모두 전년보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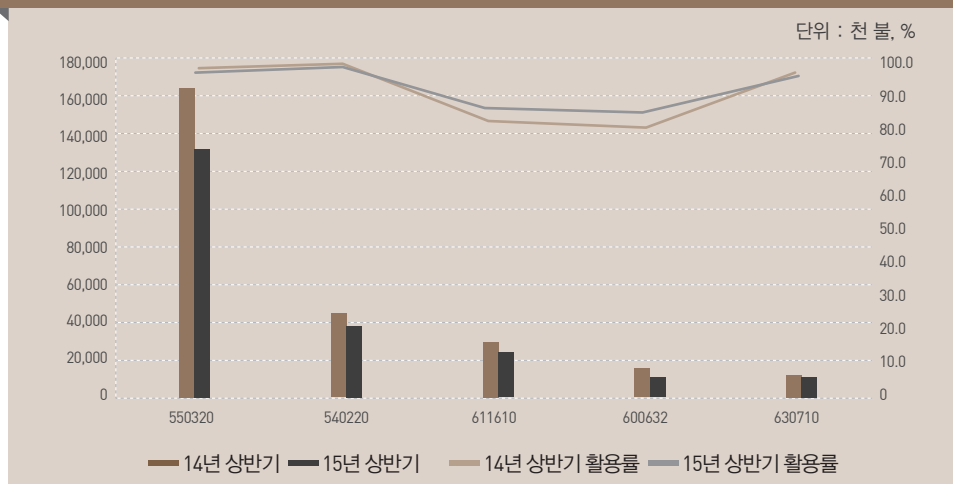
제11부(방직용 섬유와 제품)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1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5.8%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0]과 같이 제11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이다. HS 5503.20는 제11부 對EU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38.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10.6%, HS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이 7.7%, HS 6006.32, '염색한 것'이 4.3%, HS 6307.10, '마루뒤틀이포·접시뒤틀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제11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7.5%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역시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출 감소세와 더불어 2015년 상반기 對EU 제11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7.9%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제11부 상위 5대 물품의 활용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0] 對EU 제11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00632	염색한 것
630710	마루뒹이포·접시뒹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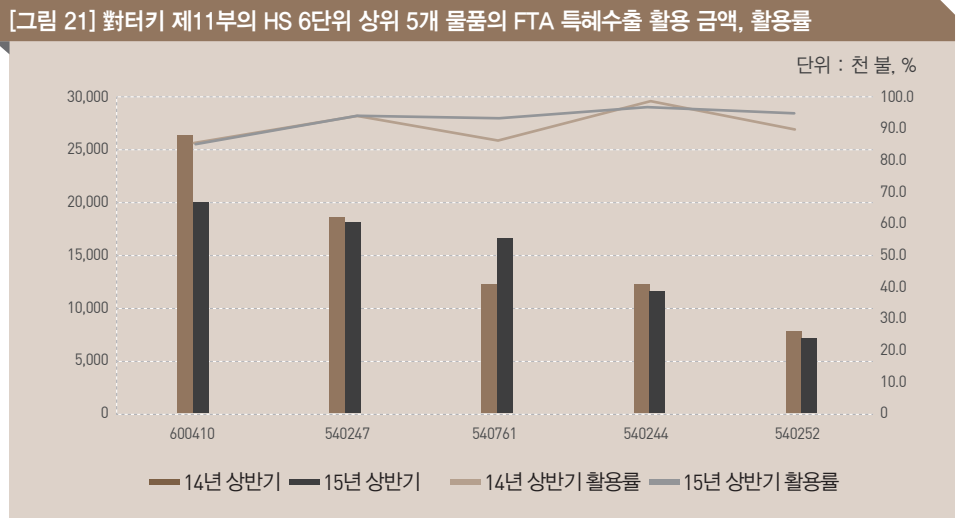
- 한 - 터키 FTA : 제11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3.0%로 전년대비 2.3%p. 증가, 활용률은 전년 동기와 유사

제11부(방직용 섬유와 제품)의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1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2.7%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1]과 같이 제11부의 對터키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이다. HS 6004.10은 제11부 對터키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16.1%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14.6%, HS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 13.9%, HS 5402.44 '탄성사'이 9.5%, HS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5.9% 순으로 나타났다.

제11부의 對터키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8.7%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중 HS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터키 제11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3.0%로 전년대비 2.3%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 중 활용률 상승 품목은 HS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전년대비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품목명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40244	탄성사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⑧ 정밀기기 등(제18부)

2015년 제18부(정밀기기 등)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6.1%) > EU(45.6%) > 터키(6.2%) > 칠레(1.0%) > EFTA(0.6%) > 호주(0.2%) > 순으로 나타난다. 對 EU와 對미국 점유율이 91.7%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15] 제18부(정밀기기 등)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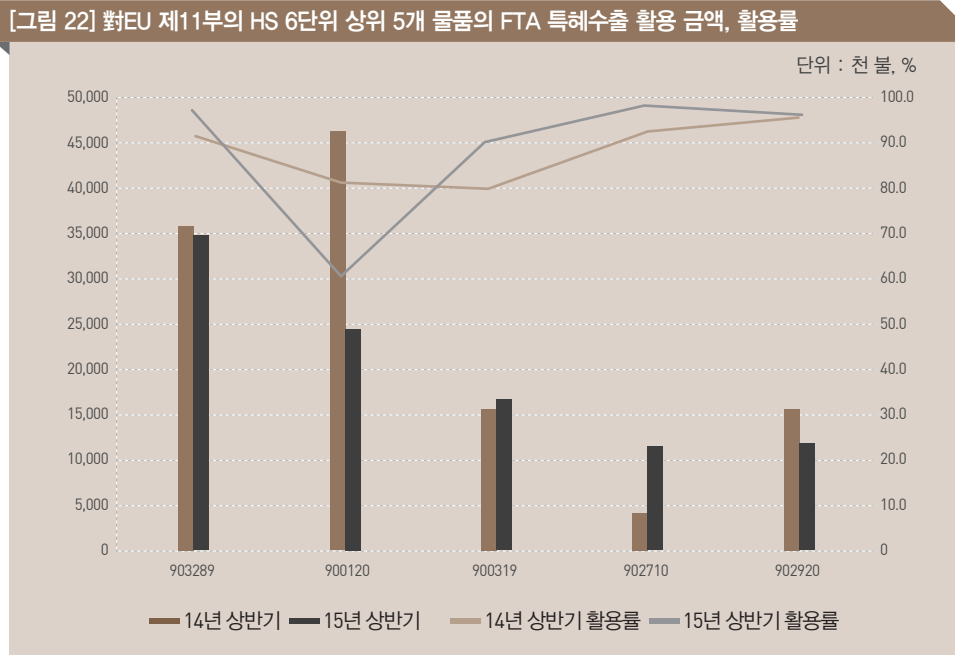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148	41.4	168	46.1
EU	185	51.8	166	45.6
터키	20	5.5	23	6.2
칠레	3	0.9	4	1.0
EFTA	1	0.4	2	0.6
기타	0	0.0	0	0.4
총합계	357	100.0	364	100.0

- 한 - EU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0.3%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가 약 3배가량 증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8부(정밀기기 등)의 1위 FTA 활용수출은 46.1%를 점유한 한 - EU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와 같이 제18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9032.89, '기타(항공기 부품·자동제어기 등)'이다. HS 9032.89은 對EU 제18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0.2%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이 14.1%, HS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안경테)'이 10.1%, HS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가 6.9%, HS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6.7% 순으로 나타났다.

제18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0.3%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가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2015년 상반기 對EU 제18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8.6%로 전년대비 7.3%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HS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안경테)'의 활용률이 79.3%(14.상반기)에서 92.2%(15.상반기)로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HS	품목명
903289	기타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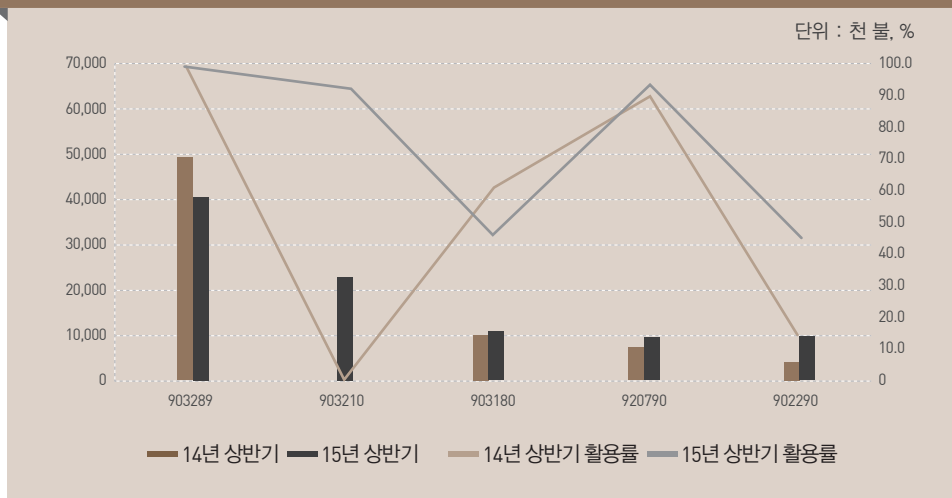
- **한 - 미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3.6%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중 HS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이 무려 81배가량 증가한 실적**
제18부(정밀기기 등)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미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18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5.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3]과 같이 제18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EU와 마찬가지로 HS 9032.89, '기타(항공기부품 · 자동제어기 등)'이다. HS 9032.89은 제18부 對미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8.7%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16.9%, HS 9031.80 '그 밖의 기기'가 7.9%, HS 9207.90, '기타(약기)'이 6.9%, HS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6.9% 순으로 나타났다.

제18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13.6%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중 HS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이 무려 81배 가량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18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9.5%로 전년대비 11.7%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의 활용률이 1.1%('14.상반기)에서 91.5%('15.상반기)로 활용금액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림 23] 對미국 제18부의 HS 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903289	기타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903180	그 밖의 기기
920790	기타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⑨ 잡품(제20부)

2015년 상반기 제20부(잡품)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54.8%) > 미국(34.3%) > 호주(5.3%) > 터키(2.4%) > 캐나다 (1.1%) > 페루(1.1%) > 칠레(0.8%) > EFTA(0.2%)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9.1%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16] 제20부(잡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211	73.2	133	54.8
미국	68	23.5	83	34.3
호주	0	0.0	13	5.3
터키	6	2.2	6	2.4
캐나다	0	0.0	3	1.1
페루	1	0.4	3	1.1
칠레	1	0.5	2	0.8
EFTA	1	0.2	1	0.2
총합계	288	100.0	242	100.0

• 한-EU FTA :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7.1%가 감소, HS 9405.10 전기식 조명기구 활용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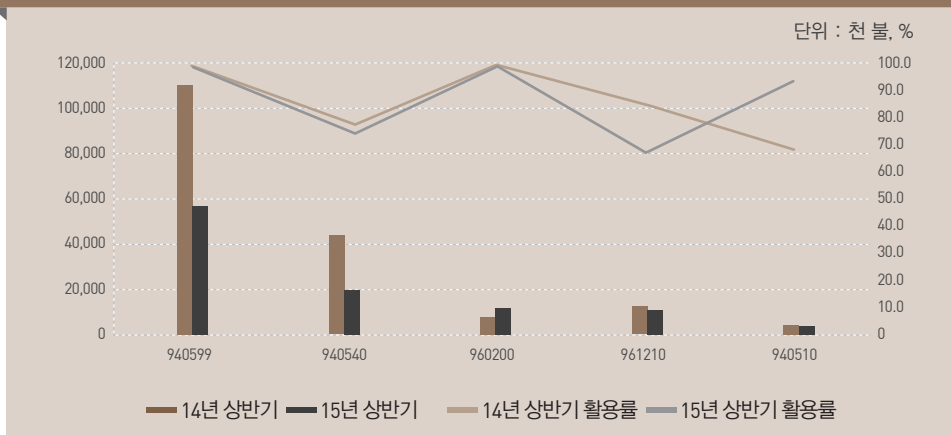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20부(잡품)의 1위 FTA 활용수출은 54.8%를 점유한 한-EU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그림 24]와 같이 제20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9405.99, '기타(조명기기 부품)'이다. HS 9405.99은 對EU 제20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46.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이 15.2%, HS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이 6.8%, HS 9612.10, '리본'이 5.5%, HS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2.9%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7.1%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9602.00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EU 제20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2.9%로 전년대비 2.6%p. 감소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의 활용률이 68.2%('14.상반기)에서 93.7%('15.상반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24] 對EU 제20부의 HS 6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940599	기타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961210	리본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 한 - 미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2.3%가 증가한 가운데, 조명기구
관련품목이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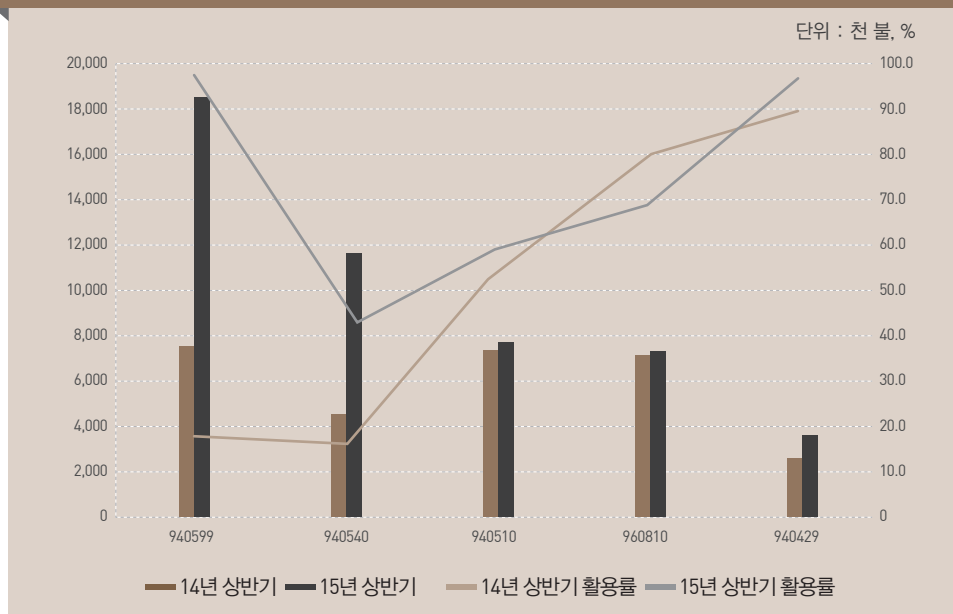
제20부(잡품)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미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20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4.3%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5]와 같이 제20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EU와 동일한 HS 9405.99, '기타(조명기기 부품)'이다. HS 9405.99은 對미 제20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2.2%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이 13.4%, HS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가 9.1%, HS 9408.10, '볼펜'이 8.6%, HS 9404.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침구 이불)'이 6.7%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2.3%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9405.99, '기타(조명기기 부품)', HS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등이 조명기구 관련품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20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6.0%로 전년대비 22.3%p. 증가하였다. 상위 5대 물품의 경우 HS 9405.99, '기타(조명기기 부품)', HS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등이 조명기구 관련품목이 활용금액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림 25] 對미국 20부의 HS 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940599	기타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10	상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
960810	볼펜
9404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⑩ 조제식료품 등(제4부)

2015년 제4부(조제식료품 등)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54.0%) > EU(29.9%) > 호주(7.6%) > 캐나다 (6.7%) > EFTA(1.0%) > 칠레(0.7%) > 터키(0.2%)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3.9%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표 17] 제4부(조제식료품 등)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불, %)

구분	2014년 6월 말		2015년 6월 말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116	72.1	72.1	54.0
EU	42	26.2	26.2	29.9
호주	0	0.0	0.0	7.6
캐나다	0	0.0	0.0	6.7
EFTA	1	0.9	0.9	1.0
칠레	1	0.5	0.5	0.7
터키	0	0.3	0.3	0.2
페루	0	0.0	0.0	0.0
총합계	160	100.0	100.0	100.0

• 한 - 미 FTA :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6%가 감소, 활용률도 평균 45.6%로
전년대비 5.7%p. 동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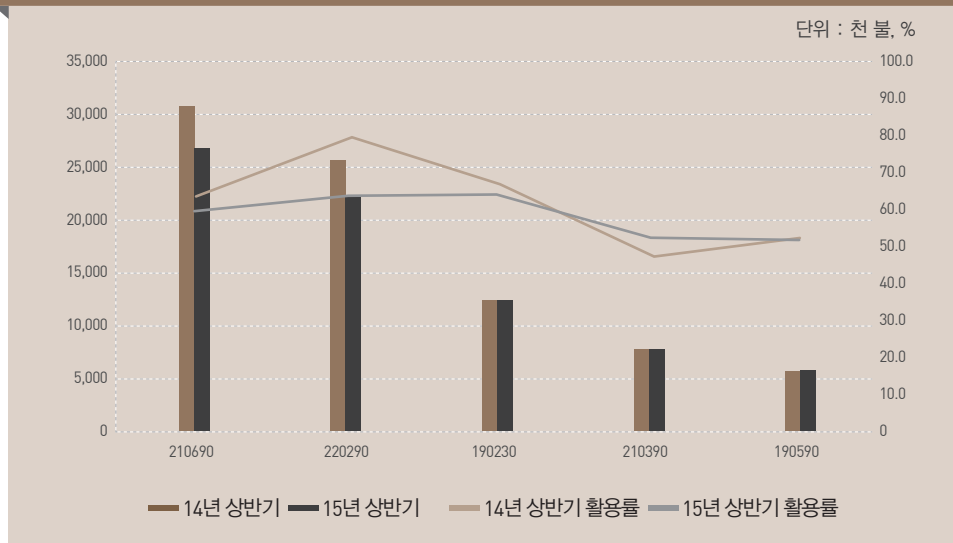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4부(조제식료품 등)의 1위 FTA 활용수출은 54.0%를 점유한 한 - 미 FTA 협정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 - EU FTA의 점유율이 29.9%로 제4부 역시 미국과 EU가 양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과 같이 제4부의 對미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2106.90, '기타(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다. HS2106.90은 對미 제16부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3.9%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2202.90, '기타(음료)'이 20.3%, HS 1902.30 '그 밖의 파스타'가 10.5%, HS 2103.90, '기타(소스류)'가 7.0%, HS 1905.90 '기타(빵, 비스킷 등 기타 농산 가공품)' 5.5% 순으로 나타났다.

제4부의 對미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3.6%가 감소한 가운데, 상위 5대 물품은 다소 감소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미 제4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45.6%로 전년대비 5.7%p. 감소하였다. 상위 5대 물품도 마찬가지로 HS 2103.90, '기타(소스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6] 對미국 제4부의 HS 단위 상위 5개 물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HS	품목명
210690	기타
220290	기타
190230	그 밖의 파스타
210390	기타
19059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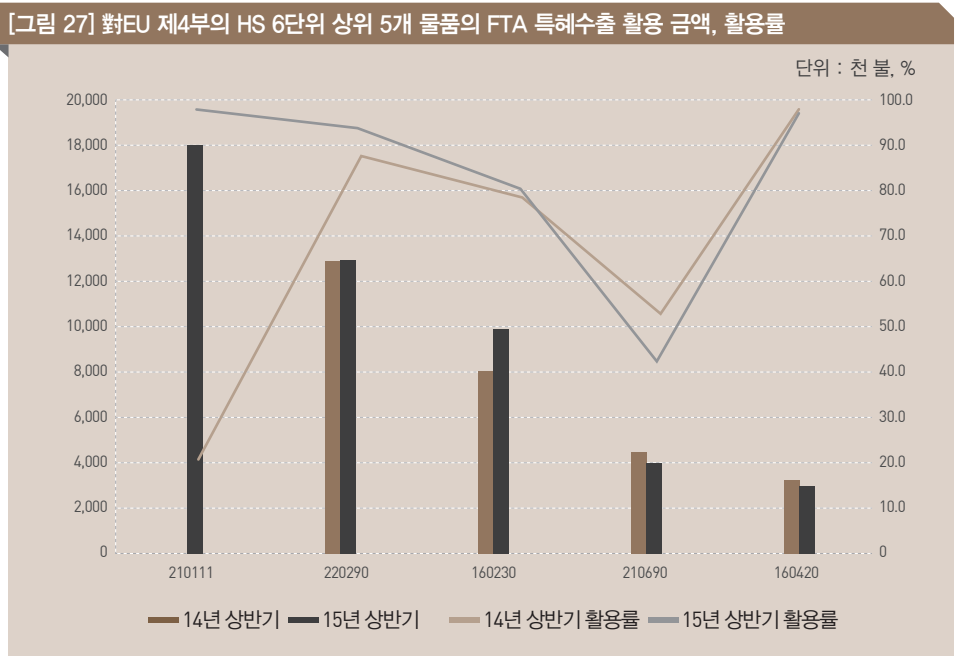
- 한 - EU FTA :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46.7%가 증가, 특히 HS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의 증가가 약 1,384 배로 큰 폭의 증가세

제4부(조제식품류 등)의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 - EU FTA 협정은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4부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9.9%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7]와 같이 제4부의 對EU 1위 FTA 활용수출 품목은 HS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이다. HS 2101.11은 제4부 對EU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약 25.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HS 2202.90, '기타(음료)'이 21.0%, HS 1902.30, '그 밖의 파스타'가 16.1%, HS 2106.90, '기타(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가 6.4%, HS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5.1% 순으로 나타났다.

제4부의 對EU FTA 활용수출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46.7%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위 5대 물품 가운데는 HS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의 증가세가 약 1,384배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상반기 對EU 제4부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5.2%로 전년대비 8.2%p. 증가하였다. 특히 상위 5대 물품 중 HS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이 활용금액과 더불어 큰 폭의 증가세로 나타났다. 활용률은 21.5%('14.상반기)에서 75.0%('15.상반기)로 크게 증가하였다.



HS	품목명
210111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농축물
220290	기타
190230	그 밖의 파스타
210690	기타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04 2015년 상반기 FTA 수출 활용과 시사점

이상에서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 현황을 21개 부 가운데 상위 10개 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사점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는 위축현상을 겪고 있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5%, 수입은 -15.5% 감소하였다. 그러나 對FTA 교역 실적은 이보다 양호하다. 對FTA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5%, 수입은 -10.3% 감소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무엇보다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성장률 둔화 환경에서 對FTA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 위축을 저지하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FTA 특혜무역활용통계의 정보 개시는 기업, 연구기관, 협회, 등에 FTA 중심의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FTA 활용률의 증가폭이 큰 국가는 주로 인도, 터키 등 신흥 경제국에 집중되어 있다.

수출 활용률의 경우 인도가 5.8%p., 터키 5.1%p., 아세안 3.3%p. 의 증가를 보였으며, 수입 활용률의 경우 인도 4.3%p., 터키 3.3%p. 등의 증가폭이 시현되었다. 미국, EU, EFTA 등의 선진 경제권의 FTA 수출 활용률은 78.8~86.7% 수준으로 높은 수준이나, 활용률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주요 선진 경제권에 대한 FTA 활용은 그간의 정부 교육, 컨설팅, 시스템 보급 및 홍보 등 지원 정책과 기업들의 활용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적정 활용률 최대치에 근접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FTA 활용 저조는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스파게티볼 효과에 의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난이와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전문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FTA 활용 애로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 특혜가 가능한 품목이라도 수입원재료의 가공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불충족으로 FTA 활용이 불가할 수 있어, 애초 모든 품목의 수출품목의 100% FTA 활용은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거대경제권과의 FTA 5년차 FTA 활용률 증가의 둔화는 FTA 환경의 국내 안정적 정착률을 의미하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FTA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산업별 FTA 활용률 분석은 물론 산업별 적정 활용률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FTA EXPERT

전문가 기고

— FTA EXPERT 1 _ 전문가 기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중남미의 자동차 통상환경

FTA EXPERT 2 _ 전문가 기고
한 - 중남미 FTA의 확대와 심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및 에콰도르

FTA EXPERT 3 _ 전문가 기고
중남미 4개국의 FTA 현황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중남미의 자동차통상환경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중남미(멕시코 불포함)는 자동차 생산과 수요가 전세계의 5~7%에 불과한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인데다 주요 몇 개국에 생산 및 수요가 편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013년 총 자동차 생산은 481만대였는데 브라질 374만대와 아르헨티나 79만대, 콜롬비아의 13만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40여개 중남미국가들은 자동차 순수입국이거나 겨우 몇 만대 CKD 조립생산하는 정도다.

자동차 수요는 605만대였는데, 브라질의 377만대, 아르헨티나 96만대, 칠레 40만대, 콜롬비아 30만대, 페루 19만대를 제외하면 역시 국별로 10만대가 넘는 국가가 없다.

이러한 수급의 차이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중남미 전체 자동차 수요의 20% 정도(약 120만대)는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거의 자급자족 수준의 통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중남미 자동차 생산국들은 그만큼 수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과 환율 절하 등으로 현지경기가 나빠지고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시장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중남미 국별 자동차 생산 및 판매대수(2013)〉

국가	생산(대)	판매(대)
브라질	3,736,629	3,767,370
아르헨티나	791,007	963,917
칠레	0	397,643
콜롬비아	129,547	299,320
페루	0	192,680
에콰도르	66,099	108,269
푸에토리코	0	99,400
베네수엘라	71,753	98,878
우루과이	0	61,217
볼리비아	0	35,070
파라과이	0	31,120
기타	15,946	n.a.
중남미 계	4,810,981	6,054,884

특히 MERCOSUR의 수입차에 대한 역외공동관세는 3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업체가 직수출로는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래서 현대차는 2012년 브라질에 20만대 공장을 건설하였다.

더욱이 관세 위에 높은 내국세가 추가되면서 수입차의 판매가격은 거의 배 이상으로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의 공산품세(IPI)이다. 브라질 정부는 2011년 9월 ‘더 위대한 브라질(Brasil Maior)’를 기치로 자국내 생산차량에 대해서는 공산품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수입차에 대해서는 30% 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 조치는 당초 201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하여 2017년 말까지 시행된다. IPI 인상조치로 차별받는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업체당 4,800대 한도의 IPI면제 수입쿼터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입자 쿼터인데다 제도의 불투명으로 인해 일부 우리업체의 경우 수출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승용차 배기량별 IPI 부과현황〉

구 분		공산품세 부과율(%)			
		종전 IPI	수입차량 IPI 30%p 인상		
			'13.4.1 - '13.12.31 [한시적 인하정책]	'13.1.1 - '13.12.31	
1,000cc 이하 (Flex/가솔린)	수입차량	7	32	37	
	국내생산		2	7	
1,001- 2,000cc	Flex / 에탄올	수입차량	11	37	41
		국내생산		7	11
	가솔린	수입차량	13	38	43
		국내생산		8	13
2,000cc 초과	Flex / 에탄올	수입차량	18	48	48
		국내생산		18	18
	가솔린	수입차량	25	55	55
		국내생산		25	25

칠레의 경우에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4년 4월 디젤승용차에 대해 대당 1,800~3,600 달러 수준의 높은 환경세 부과방침을 발표하였다. 우리업계의 대 칠레 수출의 22%가 디젤차이고 일부 업체의 경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중단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대해 우리협회는 주요국 자동차협회(칠레 ANAC, 미국 AACP, 유럽 ACEA, 일본 JAMA)와 공조하여 칠레 재무부 및 외교부, 주한 칠레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제출하였고, 결국 칠레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가솔린차와의 세율 차등을 줄이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초 환경세 : CLP540 / 연비(L/km) / 대

개정 환경세 : [(CLP35 / 연비(L/km)) + (60 x NOx 배출량 g/km)] x [판매금액 x 0.00000006] / 대

〈개정에 따른 추가 세부담 감소 예시〉

단위 : US\$

모델명	당초	개정후	감소액
Snata Fe DM 2.2 CRDi 2WD MT	3,190	1,022	2,168
Korando MT 4X2 KC2110	3,473	646	2,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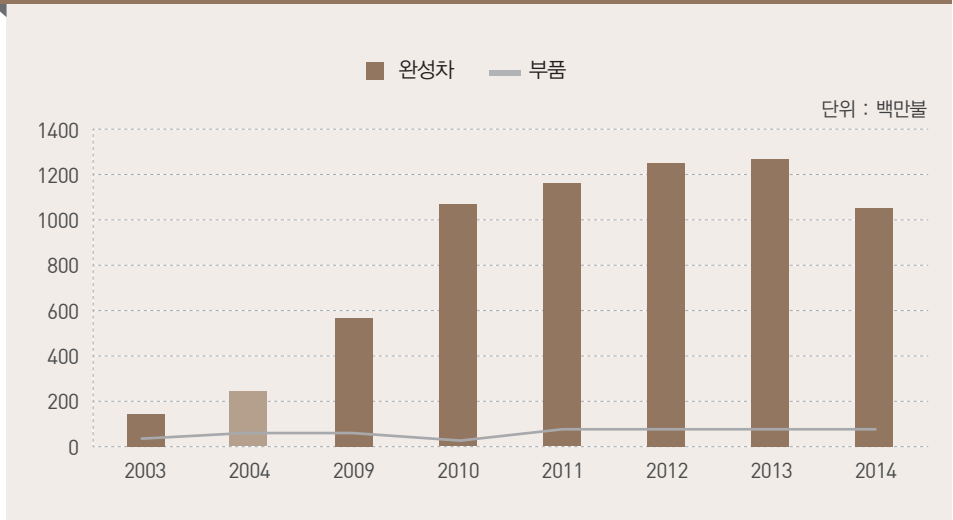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칠레와 2004년 FTA를 체결하여 우리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 효과로 우리 자동차업계의 현지 판매증가율은 경쟁국 일본을 앞지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시장점유율 1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칠레에서의 한·일 승용차 판매동향〉

대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17,689	24,968	25,841	35,863	50,756	48,634	70,442	78,944	70,475	82,479	75,055
일본	38,671	48,821	59,110	73,231	94,437	55,944	102,738	106,077	102,418	111,810	102,040
기타	56,326	61,351	58,066	63,943	94,642	67,466	116,100	149,031	165,933	183,951	160,499
합계	112,686	135,140	143,017	173,037	239,835	172,044	289,280	334,052	338,826	378,240	337,594

국산차의 대 칠레 수출은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수출이 한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품도 완성차 수출 증가에 따라 A/S부품 위주로 동반 상승하면서 '14년에 65백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 칠레 자동차(부품)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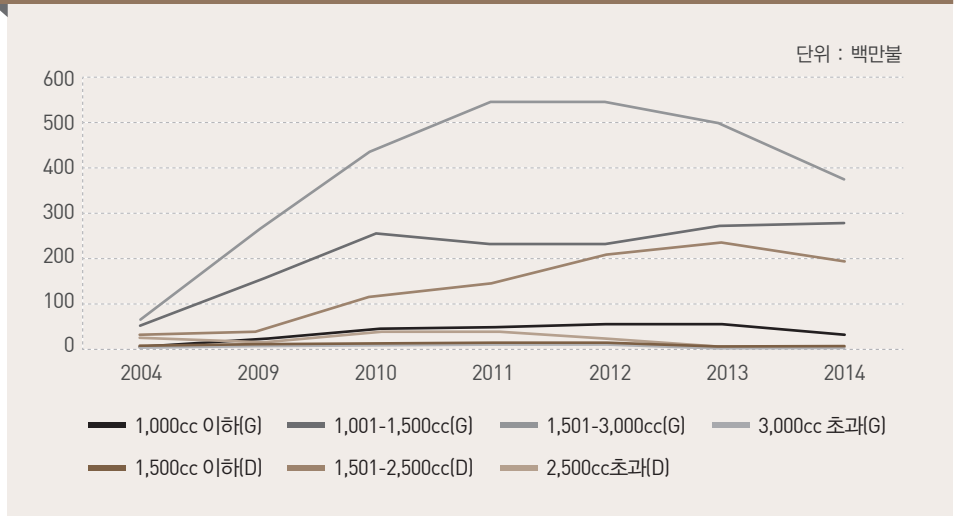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4(발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 동 차	완성차	수출	251	584	1,060	1,177	1,262	1,277	1,060
		수입	0	0	0	1	0	0	0
	부품	수출	25	34	0	59	64	77	65
		수입	0	0	0	0	0	0	0
	계	수출	276	618	1,060	1,236	1,326	1,354	1,125
		수입	0	0	0	1	0	0	0
수지		276	618	1,060	1,235	1,326	1,354	1,125	

주) MT1741, 742 기준

승용차 차급별 수출을 보면, '04년 FTA 발효 이후 1,000~2,500cc의 가솔린 및 디젤 중소형차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500~2,000cc의 중대형 가솔린 승용차는 2011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현지경기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칠레정부의 디젤차 환경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디젤 SUV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대 칠레 유종별 배기량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분		2004 (발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솔린	1,000cc 이하	4	20	40	44	50	50	31
	1,001~1,500cc	52	144	248	225	225	277	268
	1,501~3,000cc	67	260	442	540	536	486	369
	3,000cc 초과	3	6	12	10	4	4	4
	소계	126	430	742	818	815	817	672
디젤	1,500cc 이하	5	13	0	0	0	0	0
	1,501~2,500cc	29	37	108	143	203	222	196
	2,500cc 초과	27	13	32	40	20	5	3
	소계	62	63	140	183	223	227	199
합계		188	493	882	1,001	1,038	1,044	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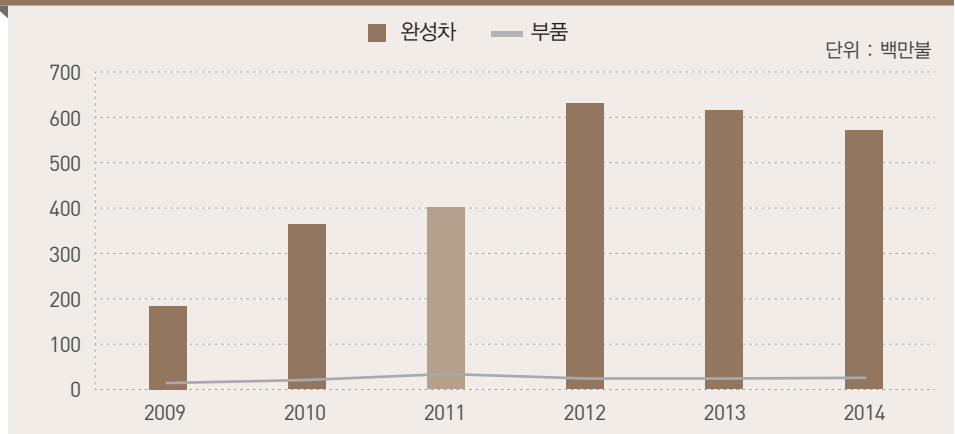
한편, 페루는 20만대 규모의 소규모 자동차시장으로서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12.3월) 및 EU(13.3월)와의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한-페루 FTA가 발효(11.8월)되어 우리업체들이 페루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는 시장점유율 28%로 수위를 지키고 있다.

〈한 - 페루 FTA 승용차 관세 양허 내용〉

품목명	기준세율	페루 측
1,500~3,000cc 가솔린	9%	5년
3,000cc 초과 가솔린		즉시
1,500~2,500cc 디젤		5년
나머지 품목		10년

대 페루 완성차 수출은 '0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는데, FTA 발효연도에 그 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수출이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부품도 완성차 수출의 증가로 A/S부품 위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 페루 자동차(부품)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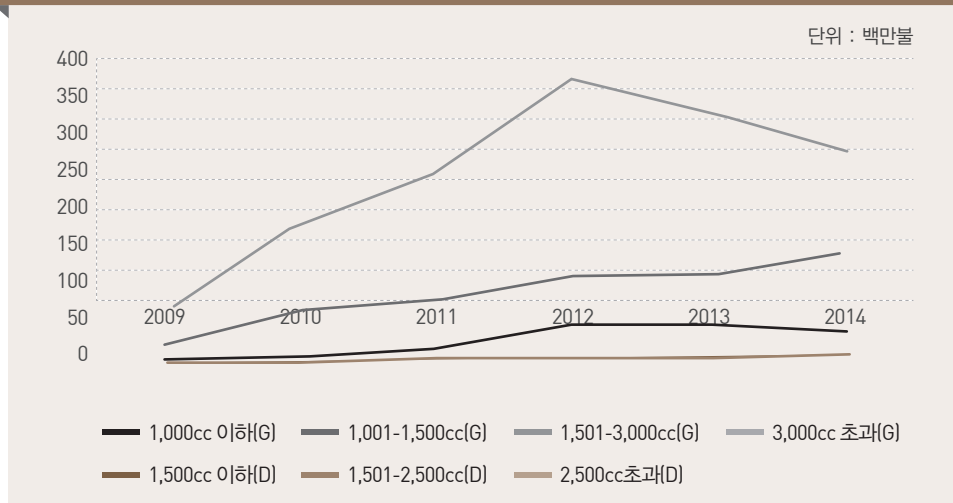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발효)	2012	2013	2014	
자 동 차	완성차	수출	182	372	500	629	621	568
		수입	0	0	0	0	0	0
	부품	수출	18	21	29	32	36	33
		수입	0	0	0	0	0	0
	계	수출	200	393	529	661	657	601
		수입	0	0	0	0	0	0
	수지	200	393	529	612	657	601	

주) MT1741, 742 기준

승용차의 차급별 수출을 보면, 페루는 가솔린 중 소형차 위주 시장이어서 '11년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된 3,000cc 초과 승용차의 수출은 미미한 증가를 보인 반면, 1,000~2,000cc 위주의 중 소형 가솔린 승용차는 단계적 관세인하에 따라 발효 이전 대비 '14년까지 76%의 큰 수출증가를 보였다. 또한 1,000cc 이하 경차의 수출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 페루 유종별 배기량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2011 (발효)	2012	2013	2014
가솔린	1,000cc 이하	4	8	15	38	39	35
	1,001~1,500cc	28	74	76	105	118	146
	1,501~3,000cc	81	177	257	361	339	296
	3,000cc 초과	1	3	3	4	3	5
	소계	114	262	352	508	499	482
디젤	1,500cc 이하	0	0	0	0	0	0
	1,501~2,500cc	2	2	1	1	2	3
	2,500cc 초과	1	2	2	2	2	2
	소계	3	4	3	3	4	5
합계		117	266	355	512	503	487

이에 따라 우리업계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페루내 승용차 시장 점유율 변화〉

업 체	현대		기아	
	'10	'13	'10	'13
연 도				
판매대수	5,584	20,807	6,186	18,837
시장점유율(%)	10.9	16.6	12.1	15.1
내수 순위	4	2	3	3

콜롬비아와의 FTA는 '12년 타결되어 콜롬비아 측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자국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꿈꾸며 한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현지업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한 - 콜롬비아 FTA의 합헌여부 투표결과 4 - 4 동수로 재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07), EU('11)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한국과의 FTA는 현재 보류상태이다.

콜롬비아와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업체들에게 기 체결한 미국, EU 등과 동등한 시장경쟁여건이 형성됨으로써 향후 국산차의 품질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 - 칠레 FTA('04 발효) 및 칠레 - 콜롬비아 FTA ('09 발효)를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완성차 수출 증대로 콜롬비아 측의 요구사항인 A/S부품의 조달 원활화 기반이 형성됨에 따라 현지 한국산 판매차량용 A/S 부품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동차업계는 한-콜롬비아 FTA가 조속 발효되기를 바라고 있다.

〈 콜롬비아, 메이커별 자동차 판매현황 〉

단위 : 대,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감률	비중
현지 조립 업체	COLMOTORES(GM)	85,171	105,823	86,242	74,032	82,021	10.8	25.2
	SOFASA	49,847	57,470	54,881	52,619	61,024	16.0	18.7
	Toyota	14,179	13,534	15,470	13,917	16,216	16.5	5.0
	Renault	35,668	43,936	39,411	38,702	44,808	15.8	13.7
	CCA	8,772	12,260	12,213	17,243	23,289	35.1	7.1
	Ford	6,964	10,669	11,212	16,200	21,314	31.6	6.5
	Mitsubishi	1,808	1,591	1,001	1,043	1,975	89.4	0.6
	합계	143,790	175,553	153,336	143,894	166,334	15.6	51.0
수입 업체	Hyundai	24,910	29,622	29,710	25,092	21,277	-15.2	6.5
	Kia	19,632	26,736	26,931	28,267	31,644	11.9	9.7
	Nissan	14,682	24,051	25,110	19,748	21,293	7.8	6.5
	Toyota	14,179	13,534	15,470	13,917	16,216	16.5	5.0
	Mazda	13,736	13,345	10,747	9,552	11,348	18.8	3.5
	VW	6,292	7,066	8,642	6,569	10,831	64.9	3.3
	Chrysler	2,866	3,805	4,178	4,040	6,533	61.7	2.0
	Mercedes Benz	2,622	4,111	3,131	5,578	5,631	1.0	1.7
	BMW	2,200	2,955	0	3,145	3,473	10.4	1.1
	Ssangyong	2,298	2,230	2,326	1,622	1,369	-15.6	0.4
	Honda	1,501	1,716	2,670	2,964	2,669	-10.0	0.8
	Dongfeng	1,102	1,555	2,065	2,227	3,049	36.9	0.9
	Audi	1,244	1,335	0	1,919	2,051	6.9	0.6
	Volvo	2,853	3,886	5,367	5,043	6,175	22.4	1.9
	기타	14,141	26,604	41,755	34,186	16,130	-52.8	4.9
	합계	110,079	149,017	162,632	149,952	159,689	6.5	49.0
총계	253,869	324,570	315,968	293,846	326,023	11.0	100.0	

그 외 MERCOSUR의 중심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의 FTA가 조속 체결되어야 우리 업계의 남미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브라질에 20만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국내로부터 다양한 차종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수입쿼터, 내국세, 현지조달률 규제, 차별적인 지원정책 등 높은 시장장벽뿐만 아니라 현지 경기가 최근 악화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업계의 중남미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 회복 시 다양한 모델 믹스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MERCOSUR와의 조속한 FTA 체결이 필요하다.

한 - 중남미 FTA의 확대와 심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및 에콰도르



정경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소장



이 도입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은 기존의 개별국가 차원 혹은 지역 내에서 벗어나 다른 많은 선진 산업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며 자국의 산업발전, 경제성장, 무역다변화 전략 등을 목표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를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 지역 태평양 유역 중심으로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해 내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2012)'과 같은 경우는 회원국(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간 협정 강화를 통해 미래 공동시장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는 역외 국가들인 캐나다와의 FTA를 시작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미국, 유럽연합(EU) - 등과 FTA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비준만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자유무역협정(2014년 9월 현재)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남미국가들과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페루,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중미지역과 에콰도르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FTA 가치사

슬 개념으로 보면 한국의 대중남미 FTA 확대와 심화는 그 파급효과가 한층 더 크다. 협력 대상국을 매개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지역공동체들과 글로벌 차원의 FTA 가치사슬 (value chain)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²⁾

특히 이들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어서 매우 희망적이다. 중남미 국가들의 주력 상품인 농산물 및 광물과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제조업 분야의 공산품의 교역을 통한 시장구축 및 확대라는 측면에서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 - 중남미 FTA 미래 가치사슬의 연계는 향후 이들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멕시코, 페루, 칠레가 참여, 콜롬비아는 유보 중)로 확대 발전해 가면서 무역관계는 더욱 심화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³⁾

02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리고 태평양동맹으로 심화발전

콜롬비아의 경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FTA 협상은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2015년 10월 현재 비준 대기중). 하지만 우리나라의 FTA 전략은 점차 양자 간 FTA에서 다자가 참여하는 경제공동체와의 FTA로 확대 발전해 가고 있다. 현재의 한-중미(6개국 참여) FTA(협상 중)를 포함하여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PA)과도 향후 FTA 가치사슬은 연결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⁴⁾ 태평양동맹(PA)은 회원국 간 장기적으로 FTA는 물론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비자면제)이 교류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목표로 하고 있

1) 수출입 구조에서 콜롬비아의 수출은 2010년 통계로 보면 미국 43.1%, 유럽연합 12.6%, 중국 4.9%, 에콰도르 4.6%, 베네수엘라 3.6%이며 수입은 미국 25.9%, 유럽연합 14%, 중국 13.5%, 멕시코 9.5%, 브라질 5.8%이다.

2) 가치사슬이란 기업의 국제무역 및 투자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생산요소를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생산 및 상업화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을 의미하게 됨(더불어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따라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국제적 거래활동의 애로요인이 완화된 것을 들 수 있다(KIEP 2013).

3)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상 P4 국가들에 의해 2006년 발효되었으나 이후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여 확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으며 또한 태평양 - 아시아 시장(ASEAN,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한 공동 접근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2000년대 들어 칠레, 콜롬비아와 함께 FTA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안데스-태평양 지역의 페루이다. 2006년-2011년 사이에 페루는 집중적으로 9개 국가 혹은 경제공동체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 남미 역내 국가들과의 FTA를 제외하고, 역외 지역으로는 태국(2005), 미국(2006), 싱가포르(2008), 캐나다(2008), 중국(2009),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10) 그리고 한국(2011) 등과 FTA를 확대 발전시켜 오고 있을 정도로 대외무역 개방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일본과는 경제파트너십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형태의 FTA가 진행되었고, 유럽연합(EU)과는 2009년 협상을 개시한 후에 2013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발효가 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의 협정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맺어진 사례이다.

페루의 이러한 FTA의 확대 전략은 전통적으로 페루의 수출입 구조의 개선 전략과 상당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의 개방무역 혹은 무역선다변화 전략은 중국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지역으로의 더 많은 무역 확대를 염두에 두고 FTA를 강화 중에 있다. 페루의 수출은 2010년 WTO 통계로 보면 유럽연합 17.8%, 미국 16.4%, 중국 15.5%, 스위스 11%, 캐나다 9.5% 등을 기록하는 등 수출다각화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페루는 이미 멕시코(1995년), 칠레(1998년) 그리고 페루(1999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안데스공동체(CAN)와 브라질 간 그리고 2000년에는 안데스공동체-아르헨티나 간 경제보완협정(ECA) 협정을 체결했으며 카리브 지역의 쿠바와도 2001년에 ECA를 맺은 바 있을 정도로 FTA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페루를 활용한 중남미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의 FTA 가치사슬 확대가 전망된다.

4) 2014년(현재) 기본 FTA 협정에 대한 한-콜롬비아 서명 완료와 함께 중남미 태평양 무역 4개국의 회원국(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과 옵저버국가들(34개국 : 호주, 벨기에,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공식 회원 가입 준비 중), 도미니카(잠재적 옵저버 국가),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몰도바(잠재적 옵저버 국가),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파나마(공식 회원 가입 준비 중), 파라과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한국, 스페인,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영국, 미국 그리고 우루과이가 참여하고 있다 (2014년 9월).

5) FTA 기본 협정의 내용은 상품의 92% 관세를 즉시 철폐, 농업 및 민감 품목 8%는 17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철폐해 간다는 협정안을 마련했다.

현재(2015년 10월)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FTA를 남미 역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산업국들(유럽과 미국 등)로 확대해 맺어오고 있으며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 모두 외부 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을 시행하는 수출 다변화 및 해외투자 유인의 일환이다.

또한 재정악화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FTA 전략을 선호한다는 지적도 있다. 적극적인 양자관계 무역협정을 체결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자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호무역주의를 제거해 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남미 역내 차원에서 특히 페루와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안데스공동체(CAN 관세동맹 수준)와 남미공동시장을 축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에는 태평양동맹(공동시장 수준)을 다른 축으로 삼아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FTA를 통한 지역통합의 정도와 속도는 역외 FTA에 비해 서비스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노동과 환경규제 등의 분야에서 상당히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03 한 - 중미 및 한 - 에콰도르 FTA 협상과 전망

중남미 지역에서 FTA 가치사슬의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FTA 협상이 에콰도르(적도국가)와 중미 6개국(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 SIECA 소속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post - 2015, SDGs)'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개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향후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의 촉매제가 되어 협상은 더욱 진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⁶⁾

6) 우리나라는 '2030년 기준 배출량(BAU) 대비 25.7% 감축'을 기본 안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매입해 상쇄하는 일종의 탄소배출권 신용제도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한 만큼 온두라스 진출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에 일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의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활용도도 검토가 필요하다.

중미 국가들은 오랫동안 지속 불가능한 발전 위기를 경험해 왔다. 특히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전력공급 문제 및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의 문제점을 경험해 왔다. 이들 공동체는 오랜 식민 유산, 20세기 들어 정치 불안정과 다양한 경제위기, 대외경제 취약성 등의 경험과 빈번한 자연재해 경험 등으로 정치경제 저발전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코스타리카 제외). 여타 이웃 국가들인 남미 에너지 대국들에 비해서도 경제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전력공급이나 에너지 생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왔으며 발전은 그만큼 뒤처졌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고체쓰레기 및 오폐수 수질관리 문제의 지속, 산업구조에서 농업비중이 크지만커피 공화국 혹은 바나나 공화국 정체성) 지속가능한 농업 및 산림관리 등에서 그동안 낙제점을 보여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ion)에서 예산이나 인력 혹은 인프라 부재로 인해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국(vulnerability, 코스타리카 제외)'들로 등장해 있으며 국제협력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지진, 화산, 태풍, 가뭄, 홍수 등에 대한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능력(state capacity)도 상당히 저조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 해외투자자 무역 다변화 전략은 이제 이 지역 시민들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했다. FTA는 이제 이 지역에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미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은 물론 역내 중남미 지역들과 자유무역 확대 및 경제통합에도 빠르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제는 그 방향과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 첫 번째 대상이다.

이들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주요 이유들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혹은 공동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상 대상국들인 중미 6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역내지역 통합을 견인해 줄 수 있다. 언급한 중미 6개국들은 식민 역사의 유사성, 비슷비슷한 사회경제적 저발전, 지리, 기후조건, 자연환경들, 심지어 정치저발전의 경험들을 서로 공유해 오고 있을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 중후반 지역 개별 국가들의 중미통합(1960년대 이후)의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별 국가들보다는 '중미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데에 익숙하다('커피공화국', '바나나공화국'). 향후 한-중미 FTA는 상품과 상품 그리고 투자 증가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각 개별 국가 수준보다는 중미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의 FTA 실현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더 큰 FTA 가치사슬 창출에 효과가 있어 보인다.

이 밖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지정학적으로 중미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다. 이 지역은 남미와 북미를 대륙으로 연결하는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상품의 운송과 무역에 있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고 있는 해양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파나마 운하). 더욱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양 지역 간의 무역 이익 차원의 평가에서도 Win-Win 효과가 긍정적으로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양 지역의 경제발전, 특히 무역과 투자(특히 투자 부분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원활한 자금이동과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 기대)에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지역은 또한 시장 잠재성도 우수하다. 지역 차원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5위(2,098억 달러 규모), 인구규모 3위(4,350만 명)의 시장 미래 잠재력이 크다.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공산품과 농수산물(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을 맞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 GDP는 0.026% 증가하고 중미 6개국 수출은 자동차와 석유 조제품, 섬유(의류), 기계·전자기기, 핸드폰 등을 중심으로 1억 4,000만 달러에서 7억 1,000만 달러까지 6-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김종섭 2015)기. 특히 중국, 일본과의 중미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높다. 미국 시장 우회 진출과 연계한 현지 생산 및 수출 중심지 역할(특히, 우리 기업들의 노동집약 산업인 섬유업에 대한 효율적 투자와 현지 안정적이고 저임금 노동인력 흡수, 중미 국가들은 새로운 신규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이 지역에 대한 FTA 효과를 키우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비단 경제적인 관점의 무역과 투자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 외교 관계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미지역으로부터 다자외교, 선린외교 그리고 현 정부의 외교 기조인 신뢰외교를 확대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미 6개국은 물론 이 지역과 밀접한 이웃 공동체인 카리브공동체로 관계 확대가 가능하다. 중미지역을 연결해 현재 국교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쿠바와의 외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미지역을 통한 경제관계를 통해 정치외교적 '스필오버(spill over :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 중미 6개국은 GDP 2,098만 달러 시장으로 우리나라와 교역액은 2004년 26억 7,3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50억 200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04 한 - 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전망

아시아 - 태평양 FTA의 확대와 더불어 중심에 있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의 FTA 효과 그리고 이를 좀 더 확대 심화한 한-중미 FTA에 더하여, 향후 한-에콰도르 FTA에 대한 전망도 밝은 편이다.⁸⁾ 특히 한-에콰도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역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등의 상품들 수출이 늘고 코코아, 커피, 열대과일, 수산물 등을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 에콰도르 FTA는 단순한 무역과 통상 분야를 넘어 에콰도르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자원외교를 강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환경(산림)외교 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에콰도르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아수니 ITT 지역 석유자원 개발과 아마존 산림보호)과 같은 분야에 우리나라와 지속가능한 산림협력(에콰도르는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포함)과 연계한 국제협력, 자연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응하는 친환경산업개발분야 협력, 생물다양성(단위 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 국가) 분야 공동보호(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연계된 갈라파고스 섬의 생태보호와 생태관광), 바이오연료, 풍력, 태양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원 개발사업 협력, 스마트그리드 등이 포함된 에너지효율화 산업 등에서 미래 협력이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자원협력 혹은 자원형 FTA 가능성 차원에서 한-에콰도르의 전망은 에콰도르의 자원 보유량과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에콰도르는 다른 남미의 산유국이나 자원 부국들처럼 석유 수출 의존적인 대외무역 구조와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특징으로 한다.

석유산업이 GDP의 15%, 총수출의 50%, 재정수입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화석연료(석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 및 국제유가 변동에 상당히 취약하며 제조업은 GDP의 12.3%,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나, 대부분 가공식품, 직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8) '적도(Ecuador)'라는 의미를 지닌 에콰도르 인구는 1,560만 명이며 GDP는 1,005억 달러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11억 5,400만 달러였다(2014년).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다(2012년 통계).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제조업 부문에 대한 협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특히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이후 정부의 사회인프라(SOC) 투자 강화, 경기부양(보조금)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 원유 생산 강화와 수출을 기반으로 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전 계획에 따라 생산기반 확충, 빈곤감축을 위한 인프라, 복지 등 공공투자의 확대로 GDP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까지 확대되고 있다(2013년).

풍부한 석유 매장량(아수니 ITT)과 구리, 금, 은 등의 광물자원 개발에 많은 해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석유개발기구(OPEC) 회원국으로 82.4억 배럴의 석유 확인매장량(2013년 통계)을 보유한 에너지 자원 부국이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광업법이 개정되면서 광산개발(2013년 말)이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광산개발에 대한 해외투자 및 허가 절차 간소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입찰과정 생략 등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에콰도르의 우리나라와의 FTA 구상은 이러한 자원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건설 그리고 자국의 제조업 발전에 대한 대상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된다. 특히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2006년 집권 시작 현재 3선으로 2017년까지 집권 예정) 좌파 정권이 들어서신 이후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새로운 통상 무역 시장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불러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안데스통상촉진법(ATPDEA)을 통해 그동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등 안데스 국가들이 수출하는 일반 작물에 대해 특혜 관세를 제공했으나 2013년 말 에콰도르에 대해 혜택을 종료한 바 있다. 이러한 혜택의 종료는 당장 에콰도르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쳐 적자 국면(2014년 에콰도르 상품수지 적자 14억 달러)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수출선 다변화는 필요하다.

특히 한-칠레(2004년), 한 - 페루(2010년) 그리고 최근 한 - 콜롬비아(2015년 발효 예정)와의 FTA 등 아시아 - 태평양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예를 들어, PA, TPP 등) 움직임은 지정학적으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위치한 에콰도르 입장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적극 동참하게 만들고 있다. 기존의 안데스공동체(CAN)의 내부적 한계(역내 회원국 간 교역량은 여타 다른 경제공동체에 비교해 최저 수준)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콰도르는 그 자체 내수시장(1,500만 명 인구)뿐만 아니라 향후 이 미 우리나라와 FTA 네트워크에 연결된 콜롬비아, 페루는 물론 베네수엘라, 카리브 등 인근 중남미 이웃국가들 진출기지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한-중미 및 한-에콰도르와의 FTA 구상은 이처럼 남미 및 중미 더 나아가 카리브 지역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좀 더 촘촘히 연결하는 동시에 기존에 형성된 FTA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 발전 시켜간다는 데에 상당한 의의와 전망이 있다. 경제적 이익이나 시장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과의 FTA 전략에서 양적 개념으로는 ‘확대(widening)’ 그리고 연결고리에서는 ‘심화(deepening)’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국제무역연구원(IIT),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 19개 경제권(69개국)을 중심으로”, Trade Focus, 13: 13, pp. 68-73.
- 임태균 · 이시은(2013), “태평양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3-14, p. 30.
- 하상섭(2015), “한 - 중미 FTA 및 한 - 에콰도르 FTA의 의미와 전망”, 함께하는 FTA August 2015 Vol. 39. pp.16-7.
- 최낙균 외(2013),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분석과 다자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KIEP, p. 1.
- Alan Fairlie Reinoso(2010), “Peru and Colombia: Similar Strategies, Contrasting Reactions”, Latin American Trade Network, N. 61.
- CAF(2012), “Free Trade Agreements in South America: Trends, Prospects and Challenges”, Public Policy and Productive Transformation Series N. 7.

웹 자료

- 외교부(<http://www.mofa.go.kr/>)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3732.html (2014. 8월 30일 방문).

중남미 4개국의 FTA 현황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소정운 KPMG 국제통상본부 이사

01 개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중남미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은 2012년 6월에 결성한 연합으로 현재 FTA 체결을 마치고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1_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태평양동맹 중남미 4개국의 인구는 2.1억만명으로 세계 9위권의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이들 회원국은 2013년 7월말에 상품교역의 91.8%를 즉각 무관세에 합의하였고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연계를 통해 아태지역과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태평양동맹 경제적 규모

회원국	경제적 규모(2012년 기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 총 GDP : 2.2조 달러 - 중남미 총 GDP의 35% - 중남미 총 교역액의 50% - 1인당 GDP : 9,978 달러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 : 약 710억 달러

중남미 4개국은 약 2% 정도의 낮은 물가상승률과 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남미 4개국 모두 아시아, 유럽, 북미의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할 정도로 개방적이다.

한국과는 멕시코를 제외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들 4개국은 우리나라 전체 對중남미 교역과 투자의 각각 40%, 20%를 차지하고 있다.

02 중남미 4개국 FTA 현황

2-1 멕시코 FTA

그림 2_멕시코 체결 협정 현황



발효 (16개 협정 / 51개 국가)	에콰도르, NAFTA(3),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니카라과, 칠레, 이스라엘, EU(28), Northern Triangle(3), EFTA(4), Mercosur(5), 우루과이, 일본, 페루, Central America(5)
타결 (2개 협정 / 4개 국가)	Pacific Alliance(4), 파나마

〈그림 2〉와 같이 16개 협정의 51개 국가와 발효하였고 2개 협정의 4개 국가와 타결되었으며 터키, 요르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파라과이와 협상중이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협상재개 여건조성 마련 중이고 에콰도르, FTAAP, 브라질과는 검토 중이다.

멕시코 FTA 전망은 중남미 4개국 중 FTA 협정국이 가장 많이 발효되었으며 미국과의 위치적 조건과 관세 및 부가세 혜택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멕시코의 저렴한 인건비 및 세금 혜택등을 이유로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미 천여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 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멕시코 몬테레이에 대규모 기아차 생산공장을 시작으로 여러 부품 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한 상태이다.

②-2 칠레 FTA

그림 3_칠레 체결 협정 현황



발효 (15개 협정 / 46개 국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Central America(5),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터키, EU(28)
타결 (2개 협정 / 4개 국가)	Pacific Alliance(4), 태국

〈그림 3〉과 같이 15개 협정의 46개 국가와 발효하였고 2개 협정의 4개 국가와 타결되었으며 TPP, 인도네시아와 협상중이다. 또한, FTAAP,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과 검토 중이다.

칠레의 우리나라 기업 진출은 매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칠레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전자, 자동차, 타이어, 플랜트, 의료 위주에서 광업, 에너지 등으로 진출 분야가 확대추세에 있다.

2-3 페루 FTA

그림 4_페루 체결 협정 현황



발효 (15개 협정 / 51개 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EFTA(4), CAN CU(4), MERCOSUR(5),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EU(28)
타결 (2개 협정 / 4개 국가)	Pacific Alliance(4), 과테말라

〈그림 4〉와 같이 15개 협정의 51개 국가와 발효하였고 2개 협정의 4개 국가와 타결되었으며 TPP, Central America(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터키와 협상중이다. 또한, 인도, 모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러시아, 홍콩,

CARICOM(카리브해 15개국), GCC, 이집트, 브라질, 러·벨·카 관세동맹과 검토중이다. 페루는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협상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선진국 전략시장, 둘째로는 고성장 개발도상국, 셋째가 광역시장, 넷째가 기자재 공급 광역시장 등으로 진행중이다. 과거에는 칠레, Mercosur 등 가까운 국가와의 지역 협정 성격의 FTA를 체결하였으나 이제는 원거리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②-4 콜롬비아 FTA

그림 5_ 콜롬비아 체결 협정 현황



발효 (9개 협정/47개 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CAN CU(4), 칠레, Northern Triangle(3), EFTA(4), MERCOSUR(5), 중국, EU(28)
타결 (5개 협정/7개 국가)	Pacific Alliance(4), 파나마, 코스타리카, 한국, 이스라엘

<그림 5>와 같이 9개 협정의 47개 국가와 발효하였고 5개 협정의 7개 국가와 타결되었으며 일본, 터키, 우루과이와 협상 중이다.

중남미 4개국 중 가장 소극적인 FTA 체결 협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 최상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FTA 체결을 통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는 중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한국정부 및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을 환영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물론 기업간의 교류 확대를 강력히 희망함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의 대 콜롬비아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03 중남미 국가의 FTA 특징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많은 멕시코를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의 FTA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자.

③-1 주요 부품에 대한 양허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완성차 사례를 기준으로)

a) NAFTA, 멕시코 - MERCOSUR 협정

대상품목	HS - Code	NAFTA(미국)			MERCOSUR(브라질)		
		현행	협정세율	특혜조건	현행	협정세율	특혜조건
		MFN	'15.1.1		MFN	'15.1.1	
완성차	870323	2.5%	0%	CTH+NC62.5 (신규차종 5년간50%)	35%	0%	BU35
엔진	840734	2.5%	0%	CTH+NC62.5		0%	BU35
변속기	870840	2.5%	0%	CTH or (Change from 8708.40 or 8708.99+NC62.5)		0%	BU35
브레이크	870830	2.5%	0%	CTH		0%	BU35
공조기	841590	1.4%	0%	CTH		0%	BU35

b) 멕시코 - 칠레, 페루, 콜롬비아 협정

대상품목	HS - Code	칠레	페루	콜롬비아
완성차	870323	BD32 or NC26	BD35	BD40
엔진	840734	CTH+(BD50 or NC40)	CTH+BD50	CTH+BD50
변속기	870840	CTH or (BD50 or NC40)	CTH or BD50	CTH or BD50
브레이크	870830	CTH or (BD50 or NC40)	CTH or BD50	CTH or BD50
공조기	841590	CTH	CTH (for the purposes of subheading 8415.90)	CTH

완성차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 규정 이외에 완성차 적용을 위한 자동차 협정이 별도로 관리된다. 북미 지역의 판정 방식(순원가법)과 유럽지역의 판정방식(거래가격법)이 혼용되어, 수출지역별로 복잡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

완성차의 순원가 방식의 경우에는, 협정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추적 부품(Traced material)을 관리한다(추적 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 역내 구매와 관계 없이 역내산으로 인정) 거래가격법의 경우에도 BU 및 BD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③-2 협정의 잦은 변동

중남미 지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협정의 내용 변동이 빈번하다. 예로 멕시코 - MERCOSUR (ACE55) 협정의 경우, 협정문 원문에 대하여 총 4차의 개정, 아르헨티나 / 브라질 - 멕시코 Appendix에 대하여 총 5차의 개정, 우루과이-멕시코에 대하여 총 3차의 개정을 진행하였다.

총 개정 횟수 및 최신 개정일자가 2015년 3월임을 고려하면, MERCOSUR 협정의 경우 향후에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멕시코 - MERCOSUR (ACE55) 협정 Appendix별 최신 개정 내역

개정일자	대상 Appendix	개정 프로토콜 타이틀
2015 - 03 - 17	멕시코 - 아르헨티나	Fifth Additional Protocol to Appendix I
2015 - 03 - 16	멕시코 - 브라질	Fifth Additional Protocol to Appendix II
2011 - 02 - 22	멕시코 - 우루과이	Third Additional Protocol to Appendix IV

③-3 기관발급 프로세스

기관발급 프로세스를 확인해보면, 기관발급 시 기관발급 대상 물품의 사전 등록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이 2-3일 소요된다.

또한,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어서 기관발급 시 입력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부담이 된다. 즉 모든 투입물품에 대한 정보(BOM 및 가격 정보 등)가 신고되어야 한다. ALADI 연합(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의 경우, 해당 협정문의 원산지 기준이 NALADISA코드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기관 발급 시 물품에 대하여 NALADISA 코드를 별도로 입력 해야 한다.

③-4 수입쿼터의 존재

중남미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물량의 관리를 하고 있다. 예로 멕시코-MERCOSUR (ACE55) 협정의 경우, 협정에서 규정하는 완성차 (Item a, b, c) 물품에 대하여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쿼터 적용을 위해 업체별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a) 멕시코 - MERCOSUR (ACE55) 협정의 멕시코 - 브라질 적용 쿼터

적용기간	연간 적용 쿼터	쿼터 배분 주체
2015년 3월 19일부터 2016년 3월 18일	US\$ 1,560,000,000	수출국 정부 70% 수입국 정부 30%
2016년 3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8일	US\$ 1,606,800,000	
2017년 3월 19일부터 2018년 3월 18일	US\$ 1,655,004,000	
2018년 3월 19일부터 2019년 3월 18일	US\$ 1,704,654,000	
2019년 3월 19일부터	자유무역	

b) 멕시코 - MERCOSUR (ACE55) 협정의 멕시코 - 아르헨티나 적용 쿼터

적용기간	연간 적용 쿼터	쿼터 배분 주체
2015년 3월 19일부터 2016년 3월 18일	US\$ 575,000,000	수출국 정부가 배분 및 관리, 수입국 정부 검증
2016년 3월 19일부터 2017년 3월 18일	US\$ 592,250,000	
2017년 3월 19일부터 2018년 3월 18일	US\$ 612,978,750	
2018년 3월 19일부터 2019년 3월 18일	US\$ 637,497,900	
2019년 3월 19일부터	자유무역	

c) 멕시코 - 우루과이의 경우, 2011년 4월 1일부로 협정 당사국은 부록 IV 제 1 조에 명시한 품목 a) 및 b) 자동차 제품에 대하여 쿼터 제한 없이 상호 무관세 (0%) 무역을 허용한다.

04 중남미 국가 진출 시 기업체 고려사항 및 결론

복잡하고 변경이 많은 중남미 국가로의 진출 시, 원산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표 3〉 FTA를 활용하여 중남미 국가에 진출 시 고려사항표

구분	내용
원산지 충족 여부	원산지 충족을 위한 사전분석
원재료 구매 최적화	1. FTA 특혜 및 물류비용 고려한 구매 최적화 2. 거대 경제권역의 FTA를 고려한 물류 다변화 검토
공장입지 최적화	1. 국내 공장 증설, 해외공장 진출의 의사결정 2. 원산지 충족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해외 생산법인 최적화	1. 완제품 수출 및 부품단위의 수출에 대한 의사결정 2. 각국의 FTA 협정의 특징을 고려한 의사결정
FTA로 인한 변화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역할	거대 경제권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기업의 선제적 의사결정 검토

첫 번째, 생산 물품에 대한 수출 국가로의 원산지 충족 가능 여부에 대하여 투자 결정 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 결정 없이 진출 시, 관세 부담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재료 구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국내 공장 및 해외공장 등 기존의 원재료 구매 방식에서 제품의 원산지 및 관세비용을 고려한 원재료 구매 최적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공장입지 최적화를 위해서는 해외공장입지의 의사결정시, 국내 및 해외공장의 수출국과의 FTA협정에 따른 혜택과 수출국으로의 공장 건설에 따른 손익을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 해외 생산법인 최적화를 위해 수출국으로의 원산지 충족을 위한 완제품 및 부품 단위의 수출에 대한 검토, 완제품 수출 시 혜택이 없으나, 부품단위 수출 후 추가 공정에 따른 수출은 원산지 혜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로 인한 변화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역할을 아래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 거대 경제권역과의 FTA의 특징 및 산업별 체결 방향에 대한 연구
- 산업별 협정의 체결에 대한 유리/불리를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원재료구매, 공장입지, 해외생산법인 등)
- 전/후방 산업의 움직임에 따른 Supply Chain의 이전전략도 고려

앞서 확인하였듯이, 중남미 국가의 경우 낮은 임금, 북미 및 남미 지역의 경제 규모 및 접근성과 향후 예정되어 있는 TPP 등 Mega FTA를 고려할 때 투자를 위한 매력은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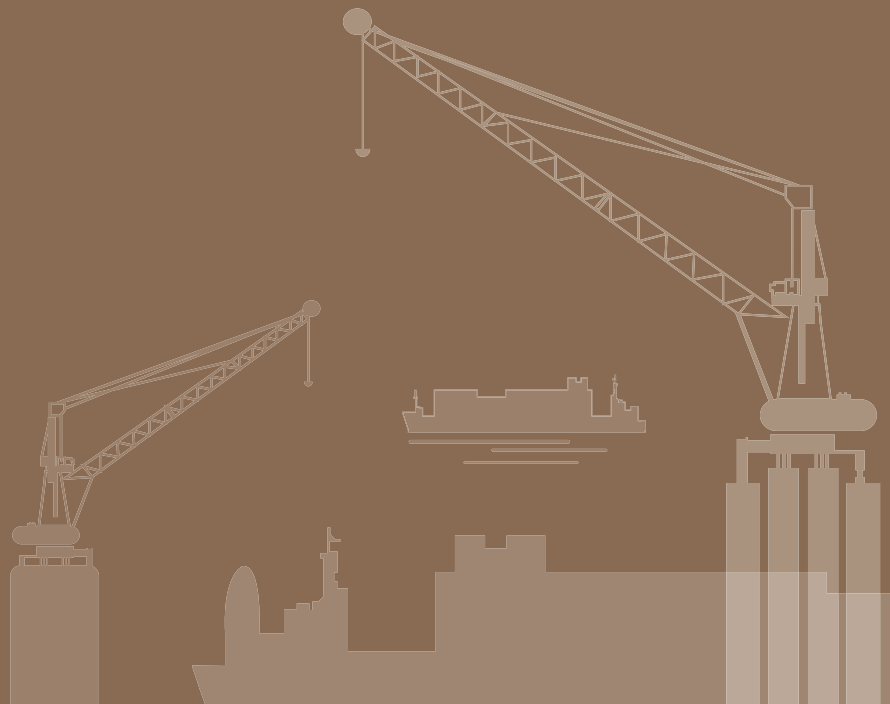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도 이미 멕시코, 브라질 등 다수의 중남미 국가에 진출하였으며, 향후에도 중남미 지역을 주요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FTA가 체결 되어 있지만(FTA 체결 기준으로 세계 2위), 복잡하고,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업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대해 진출하기 전 세무 고려사항, 통관제도 등이 충분히 분석되어야 한다.

FTA와 품목분류

한-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해설

— 오수교 관세사 |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한 - 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해설



오수교 관세사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우리나라 전체수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FTA발효 전에 우리기업들의 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한 - 중 FTA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최소공정 또는 가공'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이러한 공정 또는 가공이 수반되는 무역거래 형태가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 개요

일반적으로 FTA협정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대상국가로부터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때 원산지상품인지의 확인방법은 크게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 세번변경(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¹⁾이 적용되는 상품은 그 상품의 제조에 비원산지인 원재료나 부분품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경우에도 HS 품목분류표의 2단위인 류(Chapter) 또는 4단위 호(Heading)나 6단위 소호(Sub-Heading)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HS Code의 변경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한 형태로 불완전 생산품에 대해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원재료나 부분품이 사용되거나 또는 제조공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무역생산패턴을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전체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진행된 완전생산품에 대해서만 FTA특혜세율이 적용된다면 특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체약국 간 경제교류증대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FTA의 실질적 혜택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공정이나 가공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의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협정에서는 최소공정 또는 가공(‘불인정공정 또는 가공’이라고도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상품 결정시 품목별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 이하 ‘PSR’이라 한다.)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행공정이 최소공정 또는 가공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상품은 원산지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는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체계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면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세톤(제2914호)을 매니큐어 제거용으로 조그마한 용기에 포장만 하더라도 화장품(제3304호)으로 변경된다. 즉, 포장공정만을 거친 것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다음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세번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자국산 원재료나 부분품 사용을 유도하거나 또는 역내공정이나 가공을 촉진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

(표 1) 가공공정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변경되지 않는 경우



02 최소 공정 또는 가공 해설

한 - 중 FTA 협정 제3.7조(최소공정 또는 가공)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이 부속서 3 - 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최소한으로 기여하는 다음의 공정이나 가공은 그 자체만으로 또는 조합(combination)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부속서 3 - 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일부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가공이나 공정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경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 - 중 FTA에서 최소공정 또는 가공으로 지정한 다음 19개 공정이나 가공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일반적으로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으로 예를 들면 충격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우레탄폼과 같은 충진물 또는 실리콘겔과 같은 습기제거제를 넣은 경우라도 이러한 공정으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첨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이 운송이나 보관 중에 굳어지거나 부패 또는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화학물질 등을 첨가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품의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경우라도 제28류의 주 제1호와 제29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설령 이와 같은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상품의 세번이 변경이 되어 PSR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나.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²⁾

다음 (사례 1)과 같은 경우에는 HS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가목에 따라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들을 완전한 상품으로 조립하는 것 또는 상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더라도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번의 변경이 없다. 즉, 이러한 상품은 완전한 상품과 같은 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례 1) 승용자동차의 부분품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경우의 세번의 변화



그렇지만 다음 (사례 2)와 같이 조립 등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 9108호의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는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지만, 조립되지 않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것은 제9110호로 분류한다.

(사례 2)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의 부분품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경우의 세번의 변화



[사례 2]는 조립되지 않은 것(제9110호)을 조립하여 제9108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한 조립이나 분해가 아니라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한'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조립이나 분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포장의 변경만으로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념할 사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통칙 제5호에 따라 포장용기나 케이스는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 세번이 결정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예 : 신발이나 모자 등)이 벌크포장된 것은 제6309호로 분류하는데, 이를 낱개로 포장한 경우에는 신품(의류는 제61류나 제62류, 신발은 제64류, 모자는 제65류의 해당하는 호)과 같이 분류한다.

또한 드럼에 담겨 있는 아세톤(제2914호)을 매니큐어 제거용으로 조그마한 유리용기에 소매 포장한 경우에는 매니큐어용 제품으로 간주되어 제3304호로 변경된다.

라.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일반적으로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공정을 거친 경우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중고품이나 재생품은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고 신품과 같이 분류되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원피(제41류)나 모피(제43류)의 경우에도 불순물이나 지방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세척·세탁한 경우라도 세번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마. 방직용 섬유외 다림질 또는 압착

일반적으로 품목분류 원칙상 이런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가공

원칙적으로 자동차나 가구 또는 각종 구조물 등에 페인팅을 하였다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에는 불완전

하거나 미완성된 제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페인팅을 하지 않은 것은 미완성된 것으로 취급되며, 중고품에 페인팅을 하거나 광택가공을 한 경우라도 신품과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고품인 경우에는 페인팅을 하기 전에 앞의 라항의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마’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신품과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

다만, 플라스틱이나 유리 또는 철강 등의 재료에 페인팅을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세번이 변경되면 “단순한” 공정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유리거울을 만들 목적으로 투명 유리판의 한쪽 면에 금속을 피복하고 피복된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니시를 칠한 경우에는 단순한 페인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재료 표면의 광택가공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표 2] 페인팅 및 광택가공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사례

원재료 플라스틱판 (제3920호)	→	페인팅	→	최종 상품 플라스틱판(페인팅도포) (제3921호)
원재료 유리판 (제7003호)	→	페인팅 광택가공	→	최종 상품 유리거울 (제7009호)
원재료 철강판 (제7208호)	→	페인팅	→	최종 상품 철강판(페인팅) (제7210호)

사.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곡물은 제10류에 분류되는데, 쌀을 제외하고 곡물을 탈각하거나 표백, 연마 및 도정을 한 경우에는 제11류에 분류토록 제10류 주 제1호나목³⁾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공정이나 가공을 거쳐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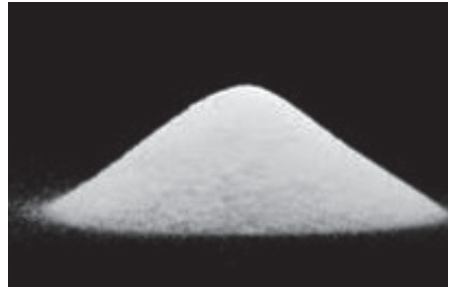
아.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당류는 제17류(제1701호나 제1702호)나 제2940호로 분류한다. 우선 제17류에 속한 당류중에서 고체 상태인 것은 착색이나 향을 첨가하였다 하여 세번이 변경되지는 않는다.⁴⁾ 그러나 제1702호의 당 시럽이나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착색하거나 향을 첨가하면 제2106호로 변경되지만, 이 경우에는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제2940호의 당류를 착향한 경우에는 통상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제2106호로 분류된다.⁵⁾ 원산지상품의 지위의 인정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인정된다. 결정당을 제분 공정을 거쳐 부분적으로나 전체를 가루로 만든 설탕분말의 것이라도 세번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정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결정당(crystal sugar)(제1701호)



설탕분말(sugar powder)(제1701호)

자.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제8류의 식용 과실과 견과류의 해당 호에서 탈피 여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라도 4단위 호의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3) 제10류 주 제1호나목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4) 다만, 제1701호 내에서는 착색을 하거나 향을 첨가한 것인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변경된다.

5) 제29류 주 제1호사목에 따르면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도 제29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류는 화학적으로 독성이나 위험한 물질이 아니므로 이러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질로 여겨진다. 그렇게 때문에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에서 식용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8류 이외의 과실과 견과류(주로 제1211호나 제1212호 등)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1) 연마

이 규정에서 연마는 주로 제25류의 토석류나 제14부의 귀금속(貴金屬)과 제15부의 비금속(卑金屬)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채취한 자연 상태의 대리석(제2515호)을 분쇄하거나 절단한 것은 같은 호로 분류하지만, 최종 제품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을 연마한 경우에는 제6802호로 분류한다.

2)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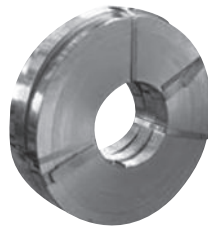
곡물(제10류)을 분쇄하면 제1104호로, 신선한 고추(제0709호)를 분쇄하면 향신료(제0904호)로 분류한다. 그리고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이나 반귀석(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에 분류한다)을 절단한 것은 같은 호로 분류하지만, 분쇄한 것은 제7105호로 분류한다.

귀금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정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비금속(卑金屬) 판을 절단하여 봉이나 선으로 가공하면 아래(그림 1)과 같이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스테인리스강판의 절단 가공에 따른 생산품의 세번의 변경



스테인리스강판(제7219호)



스테인리스 스트립(제7220호)



스테인리스 봉(제7222호)

이때 단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쇄된 것을 체로 쳐서 입자의 크기가 일정하게 분리하여 규격화한 경우이거나⁶⁾ 또한 정밀 절단기로 폭이나 두께·길이를 좁거나 얇게·짧게 절단한 물품이 의도된 것과 같이 전체가 폭·두께·길이 동등하다면 단순 절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하지 않은 절단의 사례

평판압연제품의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제7225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여 다시 코일모양으로 감은 것(제7226호)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절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1) 감별(sifting)ㄱ, 체질(screening), 선별, 분류, 등급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종자나 곡물 또는 광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공정을 거치더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록 이러한 가공이나 공정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품의 예를 들면 제25류(예 : 수정)나 제26류의 광물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공정을 통하여 얻은 원석 상태의 귀석이나 반귀석은 제71류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비록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2)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매칭(상품의 배열)을 통하여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물품의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러한 사례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HS 품목분류표의 특정한 호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가정해 볼 수 있다. 우선 공구인 톱(제8202호), 플라이어(제8203호), 수동식 스패너(제8204호)가 세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8206호로 분류된다.

또 다른 예로는 신발용 광택제(제3405호), 솔(브러시 제9603호), 클리닝용 직물(주로 제 6307호)로 구성된 상품의 매칭을 통하여 개인용 여행세트(제9605호)로 만든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비록 PSR의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6) 체로 치는 것이 다음의 카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이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항의 조건이 "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산지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천연다이아몬드(제7102호)나 합성다이아몬드(제7104호)를 분쇄하여 특정 용도에 적합한 연마 재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자크기를 균일하게 분쇄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분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협약문 영어원문 'sifting'을 감별(잘 살펴보고 알아서 구별함 또는 잘 살펴져 알게 되어 구별되다)로 번역하였는데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번역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단어인 'screening'과 연계하여 체질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2)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에 따라 세번이 변경하는 사례



공구세트(제8206호)



개인용 여행세트(제9605호)

3)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예를 들면 대나무나 갈대 등을 돗자리나 세공품 제조에 적합하도록 쪼개거나 구부리는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비록 세번이 변경되어 PSR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실이나 금속선을 감거나 푸는 경우라도 이와 같다.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공정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원칙으로 보아 이와 같은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지만, 제6부(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이 해당된다)의 화학품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중에서 특별히 규정한 상품인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향생제(제2941호)를 치료나 예방용의 의약품용으로 일회용 병에 소매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로 분류한다. 그리고 제3101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비료를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105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포장공정이 단순한 공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앞의 향생제 사례와 같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적합하도록 활성성분인 향생제를 일정한 투여량으로 계량하여 유리병에 넣은 것이라면 단순한 포장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비료의 중량만을 계량하여 일정 중량 단위로 포장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포장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원칙으로 보아 이와 같은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또 다른 예로는 여러 종류의 향신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일반적으로 'recipe'라 한다)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카레분말(소호 제0910.91호)을 만들고 이 상품이 PSR에 충족된다면 '단순한 혼합'이 아니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참고적으로 향신료는 그 종류에 따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로 분류한다.

하.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⁸⁾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1)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혼합은 같은 종류를 균질하게 섞는 경우(예: 품종이나 품질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도 있고 다른 종류를 균질하게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종류의 혼합은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쟁점이 될 여지는 없으나, 다른 종류의 혼합은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혼합의 대표적인 예는 제28류의 무기화학품이나 제29류의 유기화학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물품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혼합하게 되면 적정한 용도 등에 따라 주로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아세톤(제2914호)와 에틸알코올(제2207호)을 혼합하여 매니큐어 제거용(제3304호)으로 만든 상품이다. 중요한 것은 PSR의 조건에 충족될 때 이 둘의 혼합이 '단순한 혼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 둘의 혼합이 매니큐어 제거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량장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이라면 '단순한 혼합'이 아니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8) 원전이 "simple mixing of products"이므로 "생산품(또는 물품)의 단순한 혼합"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은 기체·액체·고체 상태인 재료나 물질을 섞는 것이지만, 제품(article)은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혼합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어떤 재료에 당류가 혼합될 때에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삼추출물(제1302호)에 당류를 혼합하여 인삼차로 만들면 제2106호로 변경되며, 의약품 원료(주로 제29류로 분류한다)에 당류를 혼합한 경우에 제30류의 의약품이 된다. 밀크(제0401호)에 당류를 혼합하면 제0402호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당류와의 혼합의 경우는 세번이 변경되어 PSR의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분말 밀크(제0402호)나 주스(제2009호)와 같이 당류를 첨가하여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거. 시험 또는 측정

상품의 품질이나 작동 상태 등을 시험하거나 측정한 것이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⁹⁾이 규정도 단순 희석과 단순하지 않은 희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하항의 '단순한 혼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순하지 않은 희석은 예를 들어 살균력이나 살충력이 강한 화학물질(주로 제29류로 분류한다)을 계량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한 양의 메탄올로 희석하여 살균제나 살충제(제3808호)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농도를 맞춘 경우로서 PSR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단순한 희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의 자연생산물(예 : 육류, 어류, 채소, 과일 등)을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동한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을 건조하거나 염장 또는 냉동한 것도 모두 제0307호로 분류한다)도 있다.

신선한 것을 냉장하는 경우, 신선한 것과 같이 분류하므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9) 다만, 혼합과 희석이 구분되는 것은 혼합이란 각각의 물질의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섞여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희석이란 농도가 다른 두 기체 또는 액체나 고체가 섞여 전체적으로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물질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희석제라고 하는데, 주로 물이나 알코올 또는 전분 등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정이나 가공을 거쳐 세번이 변경되어 PSR에 충족되는지에 상관없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표 3] 자연생산물의 신선·냉동·염장(염수장)·건조에 따른 세번의 변화

원재료 / 공정	신선(냉장)	냉동	염장(염수장)	건조
쇠고기	제0201호	제0202호	제0210호	제0210호
어류	제0302호	제0303호	제0305호	제0305호
감자	제0701호	제0710호	제0711호	제0712호
사과	제0808호	제0811호	제0812호	제0813호

러.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도살’이란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와 돼지와 같은 동물은 살아 있을 때에는 제1류로 분류하지만, 죽은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류로 분류하며,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번이 변경되어 PSR에 충족되는지에 상관없이 도살의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도살한 후에 요리나 판매를 위하여 특정한 부위별(갈빗살·안심·등심 등)로 절단한 것(경우에 따라 ‘도축’이라 한다)도 원산지상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머. 가호부터 러호까지 규정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¹⁰⁾

예를 들면 곡물의 껍질을 제거하고 도정하여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련의 공정을 거친 경우라도 이들이 단순한 공정에 해당한다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03 결론

한 - 중 FTA 협정 제3.7조(최소공정 또는 가공)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중 FTA협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어 FTA가 발효되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참고적으로 ‘공정(operation)’이란 껍질제거·도정·선별·포장과 같이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면, ‘가공(posses)’란 앞에서 설명한 둘 이상의 공정이 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상품에 따라 각각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 대안으로는 여러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함으로써 각 FTA 협정의 통일적 적용으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의 정의에 대해서 한 - EU FTA협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 - EU FTA(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간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간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형식상 한 - 중 FTA에서 지정한 19개 항 중에서 한 - EU FTA¹¹⁾와 동일한 것이 17개 항이고 너항과 더항은 한 - 중 FTA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항과 더항에 관하여는 한 - EU FTA에서도 PSR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 중 FTA의 최소공정 또는 가공이 실질적으로 더 엄격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끝으로 최소공정 또는 가공에 관하여는 충분한 유권해석과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므로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최소공정 또는 가공’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FTA협정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 한 - 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제6조 “불충분 작업 또는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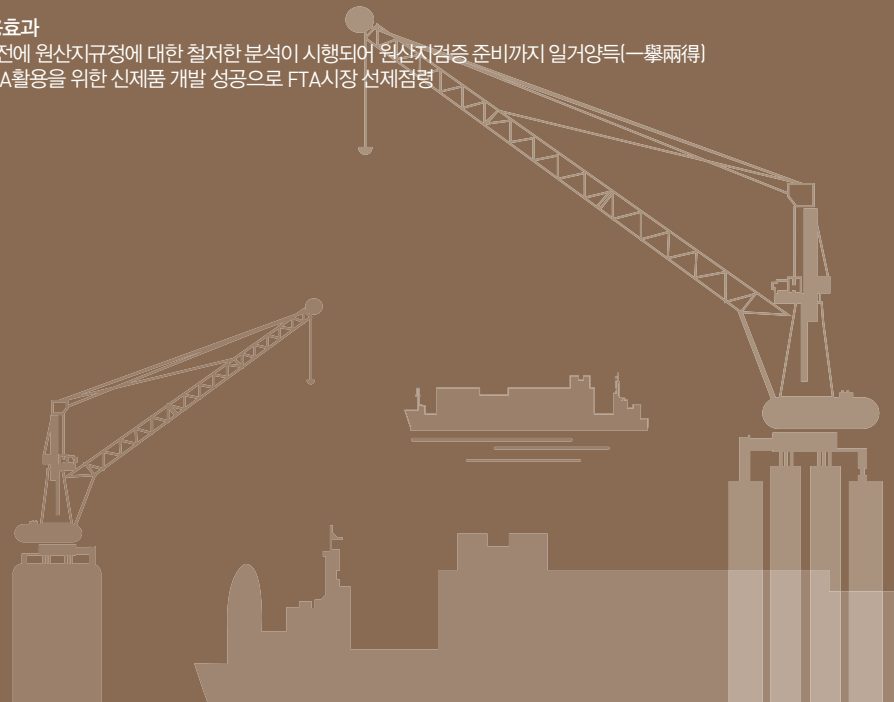
※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은 관세청이나 국제원산지정보원 또는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 ① FTA 특혜적용 신제품 개발모델(섬유)
- ② FTA 수출 가능형 모델(가공식품)
- ③ 원산지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델(농산물)
- ④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신발, 안경)
- ⑤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모델(자동차)
- ⑥ 품목분류 상이 극복모델

— FTA 특혜적용 신제품 개발모델(섬유) ①

- 개요
 -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복잡한 원산지규정이 FTA 원산지 물품으로 수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됨
 - 원산지규정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특혜적용이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극복
-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직물은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가 상이하므로 관세가 즉시 철폐 되는 품목이 되도록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원재료의 함량을 높여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 활용효과
 - 사전에 원산지규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시행되어 원산지검증 준비까지 일거양득(一舉兩得)
 - FTA활용을 위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FTA시장 선제점령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 (활용사례1)



01 배경

-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지역 섬유업계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EU, 미국, 터키 등 섬유 수출국과 FTA가 체결되어 FTA 활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
 - 과거에는 유행을 잘 활용하거나 염색기술 등 품질로 중국과 경쟁력이 있었지만, 후발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원가 무한 경쟁시대 돌입
 - FTA 활용을 위해 타 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함
- *한 - 미 FTA : yarn forward rule(원사규정)

02 장애 요소

- 어렵고 복잡한 섬유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 상이, 품목별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
- 한 - 미 FTA의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 미리 포기
 -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yarn - forward rule)을 적용함에 따라 역내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편직하고, 역내에서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원산지 인정
- 섬유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로 FTA 활용 및 특혜대상 신제품 개발 여력 절대적 부족

03 극복 방안

- 섬유업계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세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섬유업체 대상 FTA 실무교육 및 컨설팅 상시지원체제 가동
 - 주요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 품목분류 'HS 해설서' 발간
- 섬유생산기술활용 FTA 지원사업 실시(경상북도 등 예산 2억 유치)
(대구세관 - 경상북도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FTA 체약국별 양허조건 분석, 관세 즉시철폐 및 기간단축 품목 발굴
 - 생산기술과 FTA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관세혜택 품목 신제품 연구·개발

04 활용 효과

④-1 원사 혼용률 조정을 통한 특혜대상 품목 개발로 미국시장 진출(Y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 - 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 생산품)	합성필라멘트 직물 (※장섬유)	5407.52	10년 단계적 철폐 (2014년10.4%)	•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 (100%)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합성스테이플 섬유직물 (※단섬유)	5512.19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원가상승분 상쇄) • 품질 우수
		[원재료] ① 합성스테이플 섬유사(85%) ② 합성필라멘트사 (15%)		

- Y사의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5407.52)은 한 - 미 FTA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 → 미국시장 진출 애로

*HS5407.52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14년 10.4%)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 - 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에 해당하는 신제품 개발(HS5512.19)
- 합성스테이플섬유사는 합성필라멘트사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 수출제품(직물)이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시켰으며, 합성필라멘트직물보다 품질이 고급화되어 미국시장 공략 성공
 - ◀ 미국 M사와 연 12만 yards(48만볼) 계약 성사 등 향후 10년간 500만볼 이상 對미 수출 파급 효과 창출

4-2 한 - 미 FTA 예외원사를 사용하여 'yarn-forward rule'극복(T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 - 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 생산품)	합성필라멘트 편직물	6006.32	10년 단계적 철폐 (2014년 7%)	• 원재료 상대적으로 저렴
		[원재료] ① 합성 필라멘트사 (원산지 : KR)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레이온 편직물	6006.42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 인체친화형 고품질 니트
		[원재료] ① 비스코스레이온사* (원산지 : CN)		

*비스코스레이온사(HS5403.31, HS5403.32)
 '비스코스레이온사'는 펄프(나무)로부터 생산되는 천연원사로 촉감이 견과 아주 흡사하여 인간이 만든 비단(인견)으로 불리며, 천연섬유에 가까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땀흡수 및 통풍성이 뛰어나.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가공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사

- 한 - 미 FTA 섬유품목은 'yarn-forward rule'이 일반적이어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한 - 미 FTA 관세철폐 스케줄이 10년이므로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품목 개발 시급
- '비스코스레이온사'는 한 - 미 FTA 'yarn-forward rule' 제외품목인 것을 확인(비원산지 원사 사용 가능), 역외산을 수입하여 편직물품 생산
 - *단,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레이온사만 가능하고 합성스테이플 비스코스레이온사(HS 제5510호)는 'yarn-forward rule' 적용

- 또한, '비스코스레이온사'로 편직한 'HS6006.42' 품목은 한 - 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
 - ➔ 한 - 미 FTA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미국시장 진출 성공 및 향후 10년간 300만불 이상 수출 예상

④-3 전략적 신제품 개발로 특정시장(터키, 미국) 공략(D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 - 터키 수출	한 - 미 FTA
FTA 활용 전 (기존 생산품)	FABRICS (PET직물)	5407.69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40%)	관세철폐스케줄 - 10년(2014년 10.4%)
		[원재료] ① Poly(96%) ② Span(4%)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FABRICS (PET/Modal 교직물)	5516.22	반덤핑관세 없음	관세철폐스케줄 - 즉시철폐[0%]
		[원재료] ① Poly(49%) ② Modal(51%)*		

* '모달'이란 재생섬유의 하나로, 만드는 방법과 기능은 비스코스 레이온과 거의 같으며,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섬유로 21세기 꿈의 섬유로 일컬어짐

-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5407.69)은 터키 수출시 최고 40% 반덤핑관세 부과됨
- 한 - 미 FTA에서는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
 - * HS5407.69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14년 10.4%)
- ➔ 터키 및 미국 시장 진출 애로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 - 터키 및 한 - 미 FTA 동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HS5516.22)
- 신제품인 Poly / Modal 교직물은 Modal사를 사용하여 Poly 직물보다 원가가 조금 높아졌지만, 한 - 미 FTA 즉시 관세철폐 및 한 - 터키 반덤핑관세 부과 제외 대상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상쇄시키고, 기존 직물보다 품질이 향상되어 터키 및 미국시장 공략
 - ➔ 반덤핑관세 회피 및 즉시 특혜관세 혜택으로 향후 200만불 수출 효과

05 시사점

- FTA 교육 및 컨설팅 등 일반적인 FTA 활용지원이 아닌,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품목분류 및 기술개발·연구 등 실질적인 지원
- 체약국별 양허 조건 분석, 관세 즉시철폐 품목 발굴 및 투입된 원사의 혼용률 조정 등 생산기술과 접목한 적극적인 FTA 활용
- 수출시장에서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을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도약의 발판 마련
 - ➔ 15개 업체 FTA 활용 신제품 개발, 매출증가 100억원(평균 9.1% 신장), 고용창출 3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지역의 근간산업인 섬유업계에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
- 협정별 / 품목별 철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철폐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품질의 한국산 신제품 개발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향상
- FTA 활용으로 8 ~ 32%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중국산과의 가격 차이를 거의 상쇄하며, 유사 제품일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납기를 준수하는 한국산 선호
-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를 위해 민 - 관 -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 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손바닥 크기의 안경달이 포 세계를 휘감다 (활용사례2)



01 기업 및 제품소개

- T사는 2010년 설립되어 초극세사 클리너 및 프로모션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외 100개국(약 1,000여 업체) 시장 개척으로 매출의 97% 이상을 수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업
- 제품소개 : 안경달이 포(HS)



02 FTA 활용 전 상황

- '10년부터 매해 30회 이상의 해외전시회 참여, 해외시장 개척으로 초극세사 클리너를 판매할 바이어를 발굴하였으나, FTA 활용 관리 미흡
 - 한-EU,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FTA 체약국 바이어들의 원산지증명서 요구가 쇄도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또는 미발행 등 원산지 관리체계 미흡
 - ◉ 해외 바이어의 클레임 다수 발생
 - FTA 시대 개막과 동시에 상품 품질에 대한 경쟁력은 갖추었으나,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국과의 우위를 위해 FTA 활용이 필수

03 장애 요소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불확실
- 외주임가공 생산 의존도가 높아 BOM 관리 미흡
-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04 극복 방안

- (사전진단) 원산지관리 문제점 진단
 - 원산지 관리의 기초지식, 원재료 관리방법 맞춤형 컨설팅 실시

- * 한 - EU FTA 원산지기준 “MC 40%”- 비원산지 재료비 관리 필수
 - ⇒ 국내가공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 문제 컨설팅
- * 한 - 미 FTA 원산지기준 “원사 기준(yarn - forward)”
 - ⇒ 편직물에 사용된 원사의 원산지관리 방안 컨설팅

- (솔루션 제공) FTA 원재료 관리 솔루션 제공
 - 한 - EU(MC40%) 및 한 - 미(yarn-forward) FTA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원재료 원산지 검토
 - 안경뿔이 포 원재료 구성내역

원재료	원산지		원산지
YARN	미상	➔	KR
염료	미상		미상
전사지	미상		KR
잉크	미상		KR

- * 임가공업체가 구입한 원사(Yarn)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징구를 위해 공급업체에게 원재료 원산지관리 등 컨설팅 지원
 - 비원산지 비율 감소로 원산지기준 충족
- * 편직물을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나(원산지 미상) 편직기 8대를 도입하여 역내산 Yarn으로 직접 편직
 - 부가가치 상승 및 'yarn-forward' 규정 충족

- (원산지 검증) 프랑스에서 날아온 FTA 원산지 검증 완벽 대응
 - '13. 2월 프랑스로 수출한 안경뿔이 포에 대해 원산지검증 실시 → 무혐의 종결

05 활용 효과

- 對EU 24%, 對미 21% 수출 금액 증가
 - 한 - EU FTA 발효전 수출은 약 3백만불(1,316건)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약 4백만불(1,737건)로 금액기준 24%, 건수기준 31% 증가
 - 한 - 미 FTA 발효전 수출은 약 1백만불(623건)이었으나, 발효 후에는 약 2백만불(791건)로 금액기준 21%, 건수기준 26% 증가
- 직원수 대비 136% 고용 창출 효과 발생
 - '13년 하반기 수출량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사무직 15명, 생산직 49명을 추가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후검증 대비 완료 및 새로운 판로개척 기대
 - 전사적인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가능해져 향후 FTA 원산지 검증 불안 해소

06 시사점

- 동사의 FTA 활용사례는 EU, 미국 등지의 당사 바이어를 통해 FTA 체결국가에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술우위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Microfiber 세계시장에서 1위로 우뚝 선 사례

FTA 활용 성공기업 ②

FTA 수출 가능형 모델(가공식품) ②

• 개요

- FTA 최대 피해산업으로 인식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식품의 FTA 활용 방법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의 변화 필요
- 우리 농어업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여 농업강국과의 FTA에 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계기 필요

•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농산물인 배, 차, 김, 김치 등의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의 기회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의 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제공



• 활용효과

- FTA 피해산업으로 인식되던 농수산물 가공업을 FTA 수혜산업으로 이미지 전환
- 국산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해외 수출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속이 짝 찬 한국만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활용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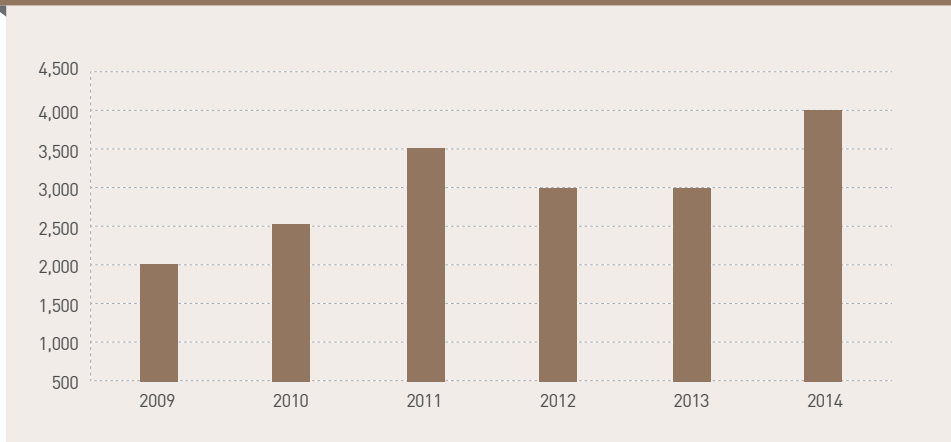
01 기업 및 제품소개

- Q사는 '95년에 설립되어 만두, 국수, 음료수 등 한국식품을 제조하여 '08년부터 세계 2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금액(3,262천불)의 60% 이상 차지

품명(HS)	적용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미소기준	기본세율	협정세율
만두(1902)	한·미	CC	10%(가격)	6.5	0

02 FTA 활용 전 상황

(주)지엠에프 해외 만두 판매량(예상)



- 서양인, 한국만두 맛에 감탄하다!
 - 대한민국 No.1 만두공장인 A사는 서양인 입맛에 맞는 식물성 콩고기 만두소를 개발하여 유럽진출에 성공

03 장애 요소

(위기의 시작)
만두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라고?

- 한·EU FTA활용을 위한 인증수출자 획득 실패
 -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30%)이 가장 높았던 A사는 '11년 한·EU FTA 발효 전 세관을 찾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신청하였으나, 협정에 제11류의 원재료는 역내산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역외산 밀가루(제11류)를 사용한 A사 만두는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하여 인증수출자 획득에 실패

(두 번째 위기)
미국
시장에서도 원
산지를
의심받다!

- 만만치 않은 미국시장, 만두의 원산지를 의심하다
 - '12년 한·미 FTA 발효로 재도약을 꿈꾸지만, 미국시장에 수출판로가 많지 않았던 A사는 미국 거래처 확보에 고민
 -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시장에 많은 거래처를 두고 있던 무역업체 B사를 통해 수출하였고 B사는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미국 거래처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요구하며 원산지를 의심
 - 만두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CC)을 검토한 결과, 만두의 원재료인 중국산 당면과 만두가 HS 2단위 세번이 제19류로 동일하여 원산지기준 불충족임을 확인
-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과 협력사로의 원가공개 위기!
 - 원산지관리 능력이 없던 A와 B사는 민간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였고, A사는 컨설팅 업체와 B사로부터 수입산 당면의 미소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위한 원가공개 요청을 받게 됨
- 미국 거래처의 거래중단 통보!
 - 예상치 못한 컨설팅 비용과 타업체로의 원가공개 위기에 FTA 활용을 고민하게 되고, 미국 거래처는 답변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중단을 통보

04 극복 방안

- 서울세관은 만두의 20여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
- 수입산 당면의 가격이 한·미 FTA 미소기준(제품 가격기준 10%)을 충족하여 만두를 한국산으로 인정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의 무료 제도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을 통해 컨설팅비용 절감 및 타업체로의 원가공개 위기 극복
- 세관차원의 원산지판정으로 수출자 발행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거래 중단 위기였던 미국 거래처 확보

[과정 2] 「YES FTA 센터*」를 통한 세관의 지속적인 컨설팅!

*FTA활용 단계에 따라 상이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

- [준비단계] ① 원산지관리 종합시스템인 FTA-PASS의 설치 및 방문 컨설팅으로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② 서울세관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는 FTA 상설교육 수강 ⇒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 [활용단계] ①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사전검증 실시 ②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사전심사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지원
- [해결단계] 원산지관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FTA 인력 연계 요청(서울세관 하반기 구인·구직 연계행사 참여 예정) ⇒ 원산지전담 인력 보충으로 FTA 활용 지원

[과정 3] 한·EU 인증수출자 획득 실패를 수출 거래선 변화로 극복!

- 한·미 FTA 발효 이후 유럽 → 미국으로 수출 거래선 변경
 - 수출의존도가 높은 A사는 한·EU 인증수출자 지정 실패 이후 손실 절감을 위한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자구책 마련
 - '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 수출 거래선을 변경하여 6.5%의 관세혜택 공유(한·EU FTA 관세혜택 미활용 금액 상쇄)

05 활용 효과

- (관세절감) 한·미 FTA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 연간 약 3,200만원
- (수수료절감) 통관단계 물품취급수수료* 절감 효과 연간 약 800만원
*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 Fee) 미국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최소 25달러-최대 485달러)
- (가격경쟁력) 관세 및 수수료 절감을 제품 원가에 반영하여 가격 인하
- (수출증대) '13년(상반기) 대비 '14년(상반기) 미국수출액 150% 증가
- (거래처확보) 미국의 유기농 식품매장인 Whole Food Market에 유통 시작
- (마케팅효과)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물품을 마케팅으로 활용
- (FTA활용 및 검증대비)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으로 향후 발효될 FTA협정에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고, 검증에 사전 대비
- (노하우공유) 무역업체를 통한 수출 마케팅 노하우 공유로 독자 수출판로 개척

06 시사점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을 통한 생산 - 수출의 Win-Win 전략
 -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미비한 업체와 수출 시장 확대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제품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이 다수 존재
 - 생산기업과 무역기업의 특화영역 간 결합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을 통한 원산지의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
- 농수축산가공품도 FTA를 활용하면 경쟁력 확보 가능

달콤한 한국산 유자차, 세계를 마시다 (활용사례2)



01 기업 및 제품소개

- R사는 '96년에 설립되어 전통 차(茶)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세계적 유통기업인 월마트에도 입점
- 제품소개
 - 유자차(HS2008.30)는 유자를 재료로 만든 차를 말하며, 신맛이 많고 신경통, 관절염 등에 유효하며 주독을 풀거나 소화에 좋다고 알려짐

02 FTA 활용 전 상황

- 한 - EU FTA를 활용하여 내수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유럽인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유자차를 만들어 한국의 전통 차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으나 직수출 경험이 없어 FTA 활용상 애로를 겪음
- 서울세관 YES - FTA센터를 통해 '원산지 사전 확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고자 함

03 장애 요소

[위기 1]
우리 농산물인데
한국산임을 증명
하라고?

- 쉽지 않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
 - 세관에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하여 심사받는 중 유자차가 생유자가 아닌 설탕에 절인 당침유자를 공급받아 제조되면서 원산지기준 충족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위기 2]
수출하는데
있어,
설탕가격이
중요하다고?

- 직접 유자 산지를 찾아가다



[유자차 (HS 2008.30) 원산지결정기준]

사용된 제7류, 제8류 및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과일, 견과류 및 채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한 - EU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유자차는 당침유자에 포함된 설탕(제17류)의 가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결정되므로 직접 유자 산지를 찾아가 구입한 설탕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
- 당침유자에 포함된 설탕가격이 공장도가격의 30%가 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한국산임을 증명함

04 극복 방안

- 서울세관은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을 받고 직접 A사 해외영업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FTA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 실시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료 제도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을 통해 컨설팅 비용 절감 및 FTA 활용방법 이해
- 세관차원의 원산지 판정으로 한 - EU FTA 원산지증명서에 신뢰성을 높여 유럽 수출길 원활하게 확보

- A사의 대표품목인 유자차에 대해 품목분류에서부터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 판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안내
- 한국산 유자차 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설탕가격 정보가 중요함을 알고 당침유자에 들어간 설탕가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확인

05 활용 효과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FTA활용 수출의 길 활짝
 - 납품을 통한 수출 외에도 독자적인 생산·수출기업으로 성장
 - 한 - EU FTA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으로 유럽으로의 수출판로 확보 및 미국, 아세안으로까지 판로 확대
 - 대표품목 외에도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수출 추진
 - 정확한 원산지 판정으로 까다로운 검증을 사전에 대비

06 시사점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을 통한 생산·수출기업으로 성장
 - 기술력과 생산력은 갖추고 있으나 수출에 대한 정보 및 역량이 부족하여 납품만 하던 상황에서 직접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 EU 뿐만 아니라 FTA를 체결한 다양한 나라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판로 개척의 시발점
- 설명회, 교육 등으로 자체적인 역량 개발
 - 세관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지원 및 활용의 일환으로 실시한 각종 설명회 및 교육 참여를 통해 자체적인 역량 개발 및 검증 대비 효과

FTA 활용 성공기업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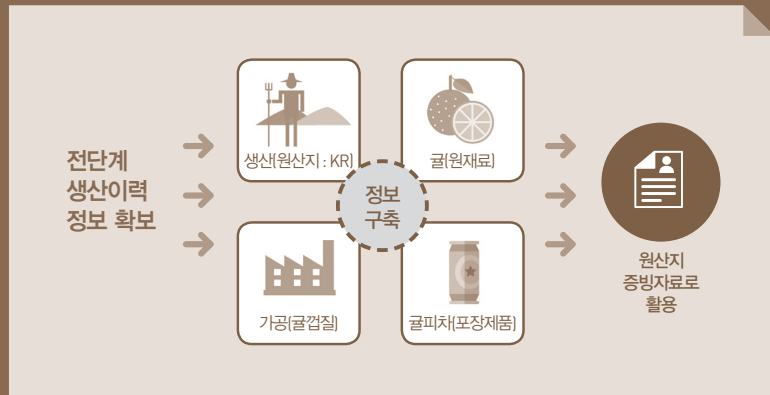
원산지정보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모델(농산물) ①

• 개요

- 대부분의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농산물은 원산지확인을 위한 방법과 절차가 어려운 상황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에 이르는 전단계를 일지(日誌)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원산지증명의 증빙자료로 활용

•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세계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농산물인 배, 차, 김, 김치 등의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의 기회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의 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제공



• 활용효과

- 원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져 제품의 신뢰도 제고
- 원산지검증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FTA활용의 자신감 확보

귤껍질, FTA를 품고 한국을 알리다 (활용사례1)



01 기업 및 제품소개

- S사는 2005년에 설립되어 대부분의 원재료를 우리나라에서 획득하여 각종 한방차를 제조하는 식품제조 중소기업으로, 우리나라 한방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후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현지 반응으로 수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품질개발로 지속적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기업

• 제품소개



- 1 제주 유기농 감귤 재배농장에 방목된 흑돼지
- 2 제주의 기운을 받으며 자라나고 있는 감귤
- 3 유기농 감귤의 수확
- 4 유기농 감귤의 세척과 선별
- 5 유기농 감귤의 껍질까기(진피작업)
- 6 진피를 건조시키는 과정

02 FTA 활용 전 상황

- 국내 최고, 한류를 타고 세계 최고를 바라보다
 - 한방차 특성상 투명한 유통관리가 중요하기에 D사는 클린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사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진실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한방차 1위 브랜드로 도약
 - * '클린체인시스템'이란 한약재 이력추적시스템으로, 원료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
- 대장금 이후 시작된 한류(韓流) 열풍으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한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발맞추어 D사는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

03 장애 요소

- (위기1) '13년부터 거래한 미국 바이어가 한 - 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기한 내에 발급이 안되면 거래를 끊겠다고 통보
 - '클린체인시스템'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통관리 시스템으로 한 - 미 FTA 원산지 증명 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음
- (위기2) D사는 한 - 미 FTA 발효 전까지 자체 상품개발에만 주력할 뿐 한 - 미 FTA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상태였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을 받게 된 업체담당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함
- (위기3)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한 중국의 한방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 - 미 FTA를 적용하여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했고 만약 적용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뒤처져 수출길이 막힐 상황
- (위기4) 서울세관 FTA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FTA를 적용하려면 먼저 물품의 HS세번을 파악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
 - 업체담당자는 '세번'이라는 용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업체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

04 극복 방안

- **(해결1) 혼자 하기 힘든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의 도움을 받다**

- '13. 8. 26 서울세관의 도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 굴피차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분류원으로부터 정확한 세번을 회신받음으로써 한 - 미 FTA 적용 시 정확한 세번에 기초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 **(해결2) FTA 상설교육에 참여하다**

- D사는 FTA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인식하고, 서울세관이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원산지관리 상설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FTA의 기초적인 지식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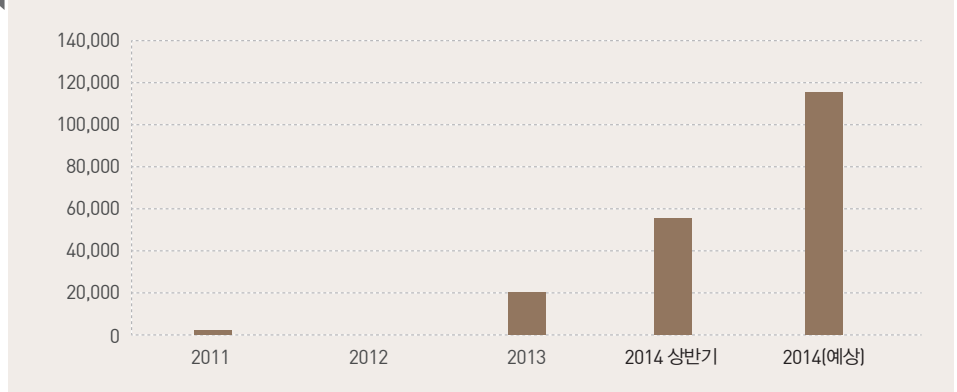
- **(해결3) 만만찮은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서울세관과 함께**

- 서울세관에서 이메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D사는 서울세관의 'YES FTA 센터'에 문을 두드렸고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하여 굴피차에 대한 한 - 싱가포르, 칠레, 페루, 인도, EFTA, 터키 FTA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신청

05 활용 효과

- 한 - 미 FTA 적용 후 D제약회사의 수출금액 비약적 상승

D사 수출액 변화 그래프



- 한 - 미 FTA 적용을 통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림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상승
- 서울세관의 철저한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을 받음으로써 한 - 미 FTA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벽히 차단

06 시사점

- 한류를 타고 세계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방 문화가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을 만나 서로 상생의 힘을 내게 됨

FTA 활용 성공기업 ②

— 지역특화산업 FTA 수출형 모델(신발, 안경) ④

• 개요

- FTA의 혜택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물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소득창출 및 고용확대 필요
- 쇠퇴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이 FTA를 활용하여 재도약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

•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세관의 전방위적 지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소득 창출의 기반 마련



• 활용효과

- 지역특화물품의 수출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창출 효과 발생
- 국내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물품으로, 국내 업체들간의 경쟁이 필요 없는 이른바 '블루오션' 전략 가능

한 - 미 FTA로 “중국산 신발 비켜~!” (활용사례1)



01 기업 및 제품 소개

- U사는 신발을 생산하여 중국, 일본,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종업원수 11명, 수출금액 297천불('11년 기준)임
- 제품소개 : 신발(HS 제64류)
 - 수출물품인 신발은 갑피를 포함한 부분품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며, 중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에 비하여 다소 고가의 물품

02 장애 요소

- 한 - 미 FTA 발효 전까지 미국으로 소량 수출되고 있었으며, 미국 바이어가 동 업체의 신발에 대하여 관심은 있었으나 중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서(20%정도) 계약 성사에 어려움 발생
-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저가 신발 제조국들과의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

03 극복 방안

- 정부기관,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용
 - 한 - 미 FTA 발효 전부터 CEO가 큰 관심을 갖고 부산세관 “한 - 미 FTA 1 : 1 맞춤형 컨설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닥터 컨설팅 사업” 등 정부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활용하여 한 - 미 FTA 활용 기반 마련

-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 “FTA 닥터 컨설팅” 신청(11년 12월)
- * 부산세관 “한-미 FTA 1 : 1 맞춤형 컨설팅” 제공(12년 4월)
- * 관세청 주관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신청(12년 6월)

- FTA - PASS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 PASS)을 사용하여 수출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미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한 - 미 FTA 신발 원산지결정기준 완벽 충족
 - 신발에 사용되는 갑피가 모두 한국산(국내에서 갑피 제조)이므로 민감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 한 - 미 FTA에서 신발은 17개 품목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민감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피가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갑피제작 및 신발 주요 생산 공정을 국내에서 모두 수행

04 활용 효과

- 모델별로 4.3 ~ 10%의 관세철폐로 對미 수출 58% 증가
- 한 - 미 FTA를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 EU FTA를 활용하여 프랑스 수출을 확대하고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05 시사점

-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신발보다 2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인한 미국 진출의 어려움을, 한 - 미 FTA의 체계적인 준비와 완벽한 원산지 증명능력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 고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하여 FTA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
- 한 - 미 FTA로 약 10%의 체세(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 등) 절감혜택을 美바이어에 제시하여 신규 수출계약 체결

한 - 미 FTA는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활용사례2)



01 기업 및 제품소개

- R사는 이미 대형 안경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내수시장보다는 넓은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설립한 젊은 기업으로, 안경업계에서는 드물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전세계 2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제품소개 : 안경테(HS 제9003호)
 - 안경테는 안경에 사용되는 장착구와 부분품과 함께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비(卑)금속제 · 귀금속제 ·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 · 플라스틱제 · 귀갑제 또는 진주모패각제의 것이 있음

02 FTA 활용 전 상황

- 국내 거대 안경브랜드에 막혀 내수시장 확장 한계
- 국가브랜드 인지도 약세로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수출

03 장애 요소

- 안경테의 실행관세율이 낮아 안경업계 전체가 FTA에 대해 무관심
 - ※ EU : 2.2%, 미국 : 2.5%의 실행관세율

- 부분품과 완제품의 HS 4단위 동일(HS9003호), 원자재 가격 및 노동비 상승으로 부품 제조업체의 중국이전 등으로 원산지기준 충족 곤란

※ ① 한 - EU FTA : CTH 또는 MC45%,

② 한 - 미 FTA : CTSH(HS 제9003.90호 제외) 또는 BU 35% 또는 BD 45%

04 극복 방안

- 제품신뢰도 향상을 위한 QR코드 활용으로 브랜드의 부가가치 상승
 - ※ 원산지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안경테 BRIDGE부분에 QR코드 삽입
 - 원산지기준 충족 문제 해결(세번변경기준 대신 부가가치기준 적용)
-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 생산공장 운영으로 원재료의 90%를 국산화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문제 해결(세번변경기준)
- 대구세관 및 전문 FTA 컨설턴트를 활용한 FTA 정보 습득 및 원산지 학습

05 활용 효과

- 한 - EU FTA 발효 5개월 만에 EU지역 수출국 5배 확대(1개 → 5개)
- 한 - 미FTA 발효 3개월 만에 수출금액 2.5억원 증가
 - ※ 2011년 대미수출액 0원 → 2012년 FTA발효이후 3개월 2.5억원
- 내수를 넘어 세계 2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표 안경 수출기업

06 시사점

- ‘미국 대형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에 따른 안경산업 쇠퇴’라는 한 - 미 FTA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가진 대부분의 국내 안경업체와는 달리 ‘FTA를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성과 도출

FTA 활용 성공기업 ②

— 순원가법 활용을 통한 FTA 활용모델(자동차) ⑤

• 개요

- 한-미 FTA에서 최초로 소개된 자동차의 순원가법은 NAFTA에서 도입되어 미국에서는 일반화된 원산지규정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생소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활용하는 기업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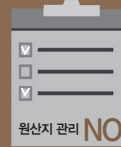
$$\text{순원가법 부가가치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 00\%$$

•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순원가의 산정은 제품가격과 이윤 및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제조원가에서 산정이 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공제법보다 간단
- 또한 산정값의 변동 요인이 적어 정확도가 높으므로 한-미 FTA 자동차 수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모델
- (유의사항) 비원산지재료 사용면에서는, 제품가격대비 순원가의 비중이 69.2% 이상인 경우 순원가법이 공제법 보다 비원산지재료 허용치가 높아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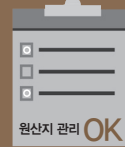
No.15

자율점검 전



원산지 요건 불충족 등 오류 발생

자율점검 후



원산지 관리 정확성으로 검증 대비

• 활용효과

- 제품가격 산정보다 순원가 산정이 실무적으로 간편하여 FTA 활용이 용이하며, 정확도가 높아 원산지 검증 대응에도 유리

순원가법 연구를 통한 자동차기업 경쟁력 강화 (활용사례1)



01 연구 배경

- 한 - 미 FTA 발효로 순원가법 등장
 - 우리 자동차 기업의 순원가법 활용 실적 전무
 - 우리 기업의 순원가법 미활용 원인 분석 필요성 제기
- 체계적인 순원가법 연구 필요성 제기
 - 현재까지 연구는 한 - 미 FTA 규정을 근거로 순원가법 이론적 분석에 치중
 - 미 자동차 기업에 대한 검증으로 순원가법에 대한 실질적 정보 입수
 - 획득된 정보를 검증종결과 함께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 필요

02 연구 과정의 장애 요소

- 체계적 연구자료 부족
 - 협정문 규정에 근거한 기본적인 지식만 제공되어 있고, 순원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가 부재
- 순원가법에 대한 두려움
 - 기업의 이윤 및 판관비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하기 때문에, 방대한 업무량과 영업 비밀 노출에 대한 두려움 상존

- 판관비를 협정에 규정된 공제요소로 재해석 및 정의 필요하고, 판관비 중 공통비용 (예 : 전기세)은 공제비용에 대한 추가 작업필요

- 순원가법 판정 역량 부족

- 대부분 자동차 기업은 공제법 기준으로 시스템 설계되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순원가 산정 및 원산지판정 불가능

03 연구 내용

- 순원가법의 도입배경

- 1989년 미국과 캐나다간 체결된 FTA에서 제품가격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자동차 기업은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데 애로 발생
- 또한 제품가격은 마케팅전략, 이전가격정책 등 여러 요인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제품가격을 과대계상하면 부가가치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자동차기업이 먼저 순원가법 도입 주장

- 순원가법의 효용성 분석 결과

- 순원가법의 단순함과 적용 용이성

- 순원가법의 계산 방식은 제품가격과 이윤 및 공제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제조원가에서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론보다 상당히 간단함
- 또한 이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내역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마케팅, 로열티 등 기업이 민감해 하는 비용이 검증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적음

- 순원가법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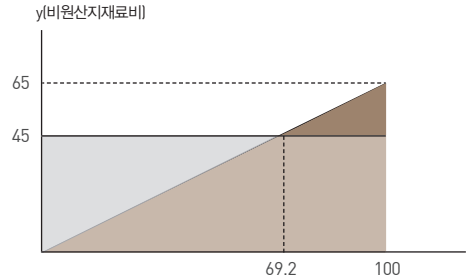
- 공제법(제품가격)은 마케팅, 이전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가 악의적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부가가치비율을 높게 산정할 있는 반면
- 순원가법(제조원가)은 그 구성요소가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되는 등 조작이나 변동이 여지가 적음

- 부가가치계산 방법과 비원산지재료비의 상관관계 비교분석

- 제품(조정)가격대비 순원가의 비중이 69.2% 이상인 기업은 비원산지재료 사용 측면에서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하다는 사실 확인

부가가치
계산 방법과
비원산지
재료비의
상관관계 분석

- 한 - 미 FTA
 - 공제법 55% 이상
 - 순원가법 35% 이상
 - 제품가격 : 100원 가정



비원산지재료
허용범위

- 공제법 : $(100 - y)100 > 55 \rightarrow y < 45$
- 순원가법 : $(x - y) / x > 35 \rightarrow y < 0.65x$

공제법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제품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제품가격}} \times 100 > 00\%$$

순원가법

$$\text{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순원가} - \text{비원산지재료비}}{\text{순원가}} \times 100 > 00\%$$

- 포괄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우리 자동차 제조기업의 순원가(제조원가) 비중 확인결과 모두 70% 이상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기업에게는 순원가법이 공제법보다 유리할 수 있음

04 연구결과 활용

- 자동차 업체 대상 순원가법 설명회 개최
- 관세학회 하계 학술대회 논문 발표

05 시사점

- 완성차 기업 대상 심도 깊은 순원가법 기법 전수
 - 개별 완성차 기업에 대한 최적화된 컨설팅 실시
 - 공제법과 순원가법 비교하여 원산지판정 시뮬레이션 실시
- 미국 원산지 검증 효과적 대응 가능
 - '16년 관세 철폐 이후 미국측의 본격적인 원산지검증 예상
 - 미국 및 캐나다 세관 원산지검증 대비 순원가법 활용이 유리

FTA 활용 성공기업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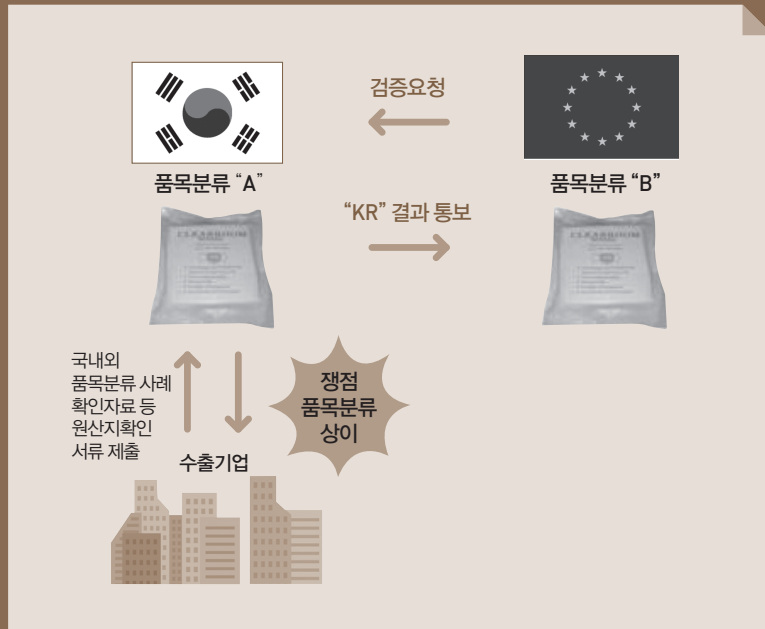
— 품목분류 상이 극복모델 ⑥

• 개요

- 국가간 품목분류의 해석과 의견 차이로 동일 물품에 부여되는 HS코드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면 원산지 충족여부도 변동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하나의 제품 또는 원재료에 대해 계약상대국간 품목분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사전 해결
-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세번 뿐 아니라 계약상대국 수입세번으로 원산지 충족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



• 활용효과

- 상대국 품목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 품목분류를 통해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신뢰를 얻고, 향후 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효과적 대처 가능

까다로운 검증! 약이 되는 건강검진입니다! (활용사례1)



01 기업 및 제품소개

- S사는 PVC GLOVE를 필두로 POLYESTER WIPER 등 다양한 종류의 세계 각지의 반도체 공장에 청정용품을 공급하는 세계 선도 기업

02 FTA 활용 전 상황

- 반도체 클린룸용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분류되나, 수출입 및 FTA활용 등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부족한 중견기업
- 수출물품을 소량으로 빈번하게 EU국가에 수출하면서 불필요한 물류비용과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발생

03 장애 요소

- Wiper에 대한 프랑스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요청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품목분류 의견이 상이함을 인지

폴리에스테르사로 원단을 Kintting 후 정사각형상으로 Thermal Cutting, 초순수 세탁 거친 반도체 클린룸용 와이퍼(가로세로 30cm 이내, 1개의 비닐팩에 100장씩 소매포장)의 품목 분류 의견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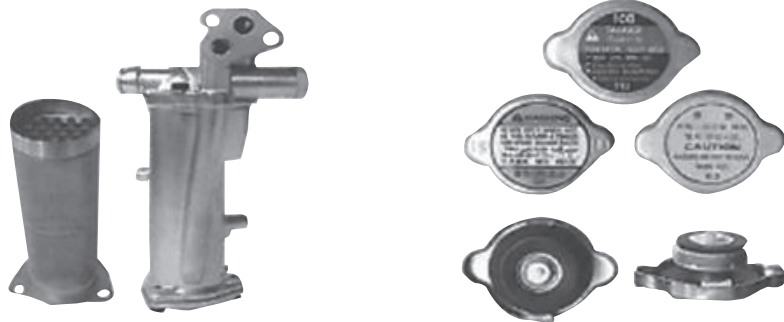
* 한국 HS 6307.10 인증, 프랑스 HS 6003.30 → 각 HS 별 PSR 상이

적극적인 검증 대응, 900만불 사수하다 (활용사례2)



01 기업 및 제품소개

- C사는 자동차, 공작기계 오일쿨러 전문 생산기업으로 1986년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20억원)의 33%를 인니 2개 자회사에 수출
- 제품소개 : 자동차, 산업용 오일쿨러, 부분품 등 60여종 (HS 제8708호)
 - 국내에서 부품 수출 (총 생산량의 90%) : 인니에서 현지조립



02 장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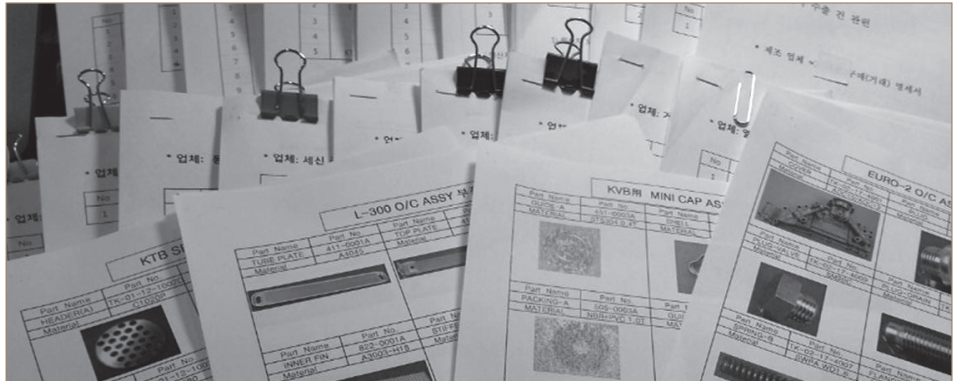
- 인니 수입자는 그동안 오일쿨러 부분품을 제8708.99호(자동차 부품), CAP을 제 8708.91호 (방열기 부품)로 일괄신고하여 인니에서 FTA 특혜를 계속적으로 적용
- 그러나 원칙적으로 각각 개별물품을 구분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함 (HS 통칙1, 16부 주 2, 17부 주2)

[HS CODE : 8708.99-9000(HS2007)]OIL COOLER PARTS 1 GT 312.596 EA & 760 KG N/WGT : 8,037, 10 KG G/WGT : 8,841 KG EURO-2, L-300, KTB SPC Manufacturer : SARIC CO.,INC.	RVC45%	8,841 KG FOB 86,993 USD
[HS CODE : 8708.91-0000(HS2007)] PARTS OF RADIATORS 1 PK 263,000 EA N/WGT : 390.40 KG G/WGT : 429. 40 KG MINI CAP (KVB)	RVC40%	429.40 KG FCB 10,525 USD

- 이에 대하여 인니 세관당국은 우리나라 세관에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총족확인을 요청해 옴

03 극복 방안

- VC 자료확보 (18社, 62종) ⇒ 검증세관 설득(3차방문) ⇒ 印泥통보
 - (원인파악) ① 품목분류 오류 ② OCP 무시 ③ 잘못된 관행
 - (대안마련) 세관검증팀과 끝없는 소통(미팅·전화·이메일 등)
 - (자료확보) 18개社 62품목(BOM, 구매내역서, 공정도,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현지확인) 제출자료의 정확성 검증차 세관검증팀 2곳 현지실사 = → 모두적정
 - (Expert활용) 당사 원산지관리사 자격소유자인 W대리가 주도(K0이사지원)



04 활용 효과

- 인니 수출한 900만불의 한-ASEAN FTA 원산지 地位 유지!
 - (원산지지위) 당해 검증건의 적극적 대응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가격경쟁력) FTA 협정세율 적용분 가격 경쟁력 확보(10% 우위)
 - (기업신뢰도) 당사의 對인니 관세당국 신뢰도 제고→ 대외경쟁력 확보

05 시사점

- FTA는 기본기 + 소통, 열정이 동반되어야!
 - (기본에 충실) 자사물품의 품목분류(HS), 협정문의 의정서, 결정기준 등
⇒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 협정에 충실하게 절차에 맞도록 업무진행
 - (소통과 열정) 소통으로 검증당국 설득, 전문가적 열정으로 역경 극복 등
⇒ 본부세관 Yes FTA센타에 문의, 해결방안 공동 모색(정부 3.0추진)

06 극복 방법

- EU역내인 네덜란드 보세창고에서 BWT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잦은 선적 등 물류 비용은 감소시키면서 원산지 오해 소지는 제거

- 원산지신고서에 인증 / 비인증품목 명백히 구분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는 “한국”
- 직접운송 요건 확인을 위해 네덜란드에서 단순히 보관만 함을 입증하는 계약서 또는 보증서 수령
- 검증수행 중 Wiper에 대한 프랑스와 아국의 품목분류 의견이 상이하였으나 정확한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제공으로, 향후 다른 협정의 검증에 대비하여 각 품목분류별 PSR 및 품목분류 이견 해소방안 제시

07 활용 효과

- 정확한 품목분류 및 PSR 적용으로 100% “한국산” 충족 검증대비
 - 매년 약 2억 4천만원 관세절감 및 사후검증 불안감 완전 해소
-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기업의 FTA 중요성 인지가 미흡하였으나, 검증과정에서 기업의 검증 대비 능력과 중요성 제고
 - 향후 업체별인증수출자로 전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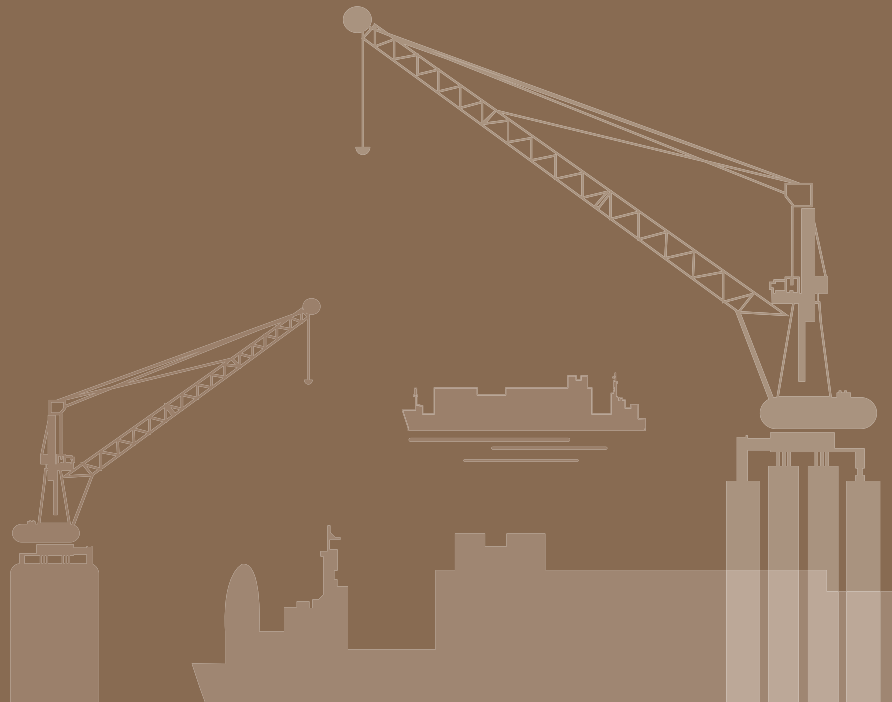
08 시사점

- 소량 빈번 수출거래시, 물류비용 절감토록 역내 BWT 거래 활용
- 정확한 품목분류 및 PSR 적용으로 검증위험 요인을 사전 대비 필요

FTA TRADE REPORT

FTA 전문인력 e-채용관 원산지관리사 합격자수기

—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FTA 전문인력 e - 채용관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이태백 · 칠포시대 등 청년실업과 관련된 신조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취업포털 사이트 조사에서는 올 상반기에는 구직자 17%만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은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기피현상과 이에 맞는 구인 · 구직 시스템이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음도 한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관세청은 '15년 7월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 아카데미 내에 “자유무역협정 전문인력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http://www.ftaedu.or.kr). FTA e - 채용관은 FTA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 지역, 영세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시스템이다.

특히, 기존의 취업 사이트의 경우 채용공고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원하는 채용이 이루어질 경우 응시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였다. FTA e - 채용관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뿐 아니라 비자격증 소지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01 구인

FTA e - 채용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은 “구인메뉴”에서 등록된 구직자를 검색할 수 있고, 채용을 원하는 인재에게 채용 제의가 가능하다. 해당기능을 이용하려면 기업 정보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회사명, 대표자, 기업형태, 상장여부는 필수정보로 등록되어야 한다. 기업회원으로 승인받으려면 보통 1일 정도 소요되고, 기업회원신청을 승인 받은 회원에 한해 채용공고를 올릴 수 있다. 회원으로 등록된 기업은 채용정보현황에서 채용공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구직자 검색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선택한 후 구직자 검색 또한 가능하다.

1 구인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

원산지관리사
구인서비스



- ⚙️
기업회원 신청/수정
 구인 관련 메뉴를 사용하기 위한 기업회원 신청 및 수정 메뉴입니다.
- 📈
채용정보 현황
 채용정보 등록 및 채용정보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
구직자 검색
 구직자 검색 및 구직자에게 채용제의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
채용 제의
 채용제의를 한 구직자를 확인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 📁
관심인재정보
 관심 등록한 이력서를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
맞춤 인재정보
 맞춤 검색을 지원하는 맞춤 인재정보 메뉴입니다.

② 구직자검색

기업회원은 구직자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요건의 인재를 근무자격, 연봉,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다.

구직자검색

HOME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자검색

1 구인/구직

구인

- 기업회원신청/수정
- 채용정보현황
- 구직자검색
- 채용계좌
- 관심인재정보
- 맞춤인재정보

구직

- 이력서관리
- 입사지원현황
- 구인/구직관리
- 채용계좌
- 관심채용정보
- 이력서알림가입

고객상담: 031) 6000-743~4
 고객센터: 031) 6000-734~5
 도시번호: 031) 6000-713

영업: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오후 12시~오후 1시
 고객센터: 24시간 상담

2 근무조건

귀사의 근무 조건을 선택하세요.

근무지역

전국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 충청 대전 강원

연봉: [선택] - [선택]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파견직 헤드헌팅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명예직

3 인적 및 이력

보고자 하는 인재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선택하세요.

성별: 남 여

연령: [선택] - [선택]

학력: [선택] 이상 이하

경력: 신입 경력 [선택] - [선택]

키워드: [입력란] **2** **3** **4** **5** **6** **7** **8** **9** **0** **이력서 검색**

3 구직 인재정보 | 총 3건의 인재정보가 있습니다.

회사/사업장명	이력서 제목	경력/채용연봉	취업근무지	수정일
전면인사수용입용문	신입 / 회사내규계약직	총남	2015.07.02	
전면인사수용입용문	신입 / 회사내규계약직	총남	2015.07.02	
해외영업도 스포츠화계	경력 / 4000 - 5000만원	서울, 경기, 해외, 해외, 특	2015.06.23	

③ 관심인재등록 및 채용제의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대해 스크랩 또는 채용제외가 가능하여 다른 인재채용 사이트와 유사한 기능을 FTA e - 채용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구직자검색

HOME > 구인/구직 > 구인 > 구직자검색

1 구인/구직

구인

- 기업회원신청/수정
- 채용정보현황
- 구직자검색
- 채용계좌
- 관심인재정보
- 맞춤인재정보

구직

- 이력서관리
- 입사지원현황
- 구인/구직관리
- 채용계좌
- 관심채용정보
- 이력서알림가입

2 이력서 검색

이력서 제목

3 이력서 소재지

이력서 내용

2 **3** **4** **5** **6** **7** **8** **9** **0** **스크랩** **채용제외** **목록**

02 구직

구인자의 경우 이력서 관리, 입사지원 현황, 구인기업 검색, 채용제의 관심채용정보, 이력서 열람기업 등을 볼 수 있다. 구직란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력서 관리와 구인기업 검색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그림과 함께 확인해보겠다.

① 구직



좋은 일자리, 믿을 수 있는 일자리!

원산지관리사
구직서비스

JOB MATCHING SYSTEM

- 이력서 관리**
이력서 등록 및 수정, 대표이력서 설정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 입사지원 현황**
구직자가 입사지원한 현황이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구직기업 검색**
구인기업 검색 및 입사지원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채용 제의**
기업으로부터 채용제의를 받은 목록들이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관심채용정보**
관심 등록한 채용정보들을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이력서 열람기업**
등록된 대표 이력서를 열람한 기업들을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② 이력서 관리

이력서의 경우 총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대표이력서는 한 개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력서 관리에서는 기본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기본인적사항, 지원 및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력서를 등록할 때, 기본인적사항 중 기본정보와 학력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사진의 경우에는 등록은 해야 하나 비공개로 선택도 가능하다. 기본인적사항 중 취업우대사항에서 특성화고졸 인재선택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자는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및 경력사항에서는 입사지원 정보와 경력정보가 필수 항목이며, 경력사항이 없는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력서 관리에서 마지막 단계는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자기소개서 작성란에는 총 27개의 자신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5개 까지 선택할 수 있다. 완성된 이력서는 대표이력서로 등록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구분	세부내용	
기본 인적사항 작성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학력사항	최종학력, 학력사항, 학점 등
	이력사항	어학능력, 어학시험, 해외연수 및 해외경험, 자격증, 면허증, OA 능력 및 보유기술, 교육이수 내용, 공모전 수상내역
	취업 우대사항	보훈여부, 병역사항, 특성화고졸인재
지원 및 경력사항 작성	입사지원 정보	구직 / 재직. 고용형태, 희망급여, 희망 근무지 (5개까지 선택 가능)
	경력사항	경력유무, 근무지(회사명, 근무기간 및 부서명 직무내용, 수행 프로젝트 및 경력사항 등)
	주요활동 및 사회경험	활동기간, 기관 / 장소, 활동내용
자기소개서 작성	나의성향	꼼꼼한, 신중한, 인내심있는, 이성적인, 화합적인, 강인한, 책임감있는, 친절한 등 원하는 총 27개의 성향 중 최대 5개 선택 가능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작성 가능

③ 구인기업검색

구입기업검색에서는 원하는 근무조건, 인적 및 이력사항, 기업형태, 키워드 등으로 원하는 기업 검색이 가능하다.

구분	세부내용
근무조건	근무지역 및 연봉,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인턴직 등)
인적 및 이력	인적 및 이력(성별, 연령, 학력, 경력)
기업형태	기업형태 (중소기업, 국내 공기업, 대기업) 및 상장여부 (비상장,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해외상장)
키워드	키워드 검색 가능

이외에도 구직자는 관심채용정보와 이력서 열람기업을 활용할 수 있어, 좀더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기업과 자신을 원하는 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정보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빨리 활용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데, 현재 FTA e - 채용관은 구직자와 원하는 인재와 구인자가 원하는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FTA e - 채용관을 사용해보지 않았던 기업과 구직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원산지 관리사 합격자 수기



원산지 관리사 합격자

지속적으로 타결되는 FTA로 인해 기업체 및 무역관련 업체 등에서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관리사는 FTA 시대에 유망자격증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원산지 관리사 수요처는 크게 대기업, 무역 및 물류회사,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구매 및 해외영업전략부서, 생산경영전략부서에서 무역 및 물류회사에서는 AEO 인증, 원산지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는 회원사 및 중소기업 지원, FTA 활용 전략기획업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난번 국제원산지 정보원 기획총괄팀에서 2010년부터 2014년 합격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사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우수작 2편 외에 아쉽게 실리지 못한 수기 중 4편(원산지 관리사 6회, 7회, 8회, 13회 합격자)을 재엄선하여 실제적인 업무에서 어떻게 원산지 관리사가 활용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원산지 관리사 6회 합격자 이순옥

안녕하세요? 저는 원산지 관리사 6회 합격자 이순옥입니다. 현재 Attipas라는 브랜드로 세계 30여개 국에 수출하는 아기신발 제조, 무역거래 회사에서 해외영업과 마케팅 실장

을 맡고 있습니다. 유럽과, 터키, 인도 그리고 동남아 각국 등 실로 다양하게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소 10년간은 FTA가 무역의 총아가 될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50이 넘는 적지않은 나이에 해외영업파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남과는 다른 스펙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이 자격증이 필요했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강좌를 수강하고 6회 시험에 응시, 합격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국가고시로 바뀌면서 다음해 대전에서 다시 한번 시험을 치러야 하는 비운도 겪었습니다.

인증수출자를 따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 신청서를 냈는데, 담당자가 FTA원산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플러스요인이 되어 쉽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관마다 FTA과가 따로 운영될 만큼 FTA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크고, 지방의 조그만 회사에서 FTA원산지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를 두고 있다고 우대해 줍니다.

30여개국에 수출을 하는 제품이다보니 원산지증명서도 다양합니다만, 크게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서류와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향후 사후검증을 받게 되면 고생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정도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이 협정을 맺는 국가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끊임없이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원산지 관리사 7회 합격자 김경민

안녕하세요? 저는 (주) 서원인텍 지원업무팀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및 수출입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제가 관세사무소 재직 중 관심을 가지고 있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사 업무 특성상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서류 및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취득 후 관세사무소가 아닌 일반 수출입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출입 업체에서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 관리사로서의 원산지 증빙 서류발급 및 사후관리, 품목분류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가 일하고 있는 (주) 서원인텍은 다양한 품목과 더불어 내수기업에 규정에 맞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원재료 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수취 시 잘못된 점과 미비한 점 등 원산지 증빙 서류에 대한 발급규정을 설명할 수 있어, 타 업체에서도 신뢰를 가지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취득 후, 실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원재료 업체 및 기타 거래처에서 FTA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으로 FTA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는 바 FTA 특례법 및 관세법등의 규정을 더욱 많이 접하게 되었으며, 이 같이 FTA 업무에 생소한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취득을 하지 않았다며, 아마 지금의 저는 (주) 서원인텍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을 지도 모릅니다.”



원산지 관리사 8회 합격자 고동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신 구매기획팀 고동완입니다. 경신은 차량용 Wiring Harness(이하 W/H) 및 전자박스를 생산하는 회사로 현대 기아자동차, 모비스, 만도 등 완성차 및 관련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의 주 생산품인 W/H는 수많은 BO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약 14,000여 품목을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러한 부품, 즉 협력사의 원산지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고 정합성을 관리합니다. 원산지확인서를 협력사가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 방문지도 등 육성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100여개의 협력사 중, 원산지관리 대상 50개사를 선정하여 매년 2회 집체교육과 실사평가를 진행하며, 집중 지도가 필요한 협력사를 별도 선정하여 방문 지도를(월3개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평가하는 항목에 원산지관리사 자격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가 어떤 자격증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웹 검색을 통해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니 국제 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FTA 전문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및 육성활동을 담당하는 저에게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자격취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가장 업무에 도움이 된 점은 '자신감'이라 생각합니다. 협력사를 상대로, 때로는 고객사를 상대로 업무 추진 및 협의를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유를 바탕으로 산업 및 환경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 회사 내부에선 'FTA 전문가'라고 인정받으며 자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력사 FTA 원산지관련 육성활동 관련하여 담당자인 제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산업자원부 주관 FTA활용 성공사례에서 저희 회사가 수상을 할 수 있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대기업)가 협력사(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 시작되었던 '세관장 사전심사제' 제도를 저희 회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협력사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당사로 인천 본부세관장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기 보다 자격증을 보유하기 위해 공부하며 배운 지식들을 실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 13회 합격자 한동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동관세법인 인천지점에서 재직중인 한동완입니다. 지금 수출입통관부서 대리로서 수출입 통관 및 환급, FTA 전략팀 업무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FTA 업무를 하면서 생기는 부족한 지식으로 인하여 관련업체의 문의 및 미팅시 자료준비를 하면서 부족함을 느꼈고 이에 대해 자기개발을 생각하다 멘토의 추천으로 인해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란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다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이 최근에 전환되었고 관련과목들이 저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와 FTA관련 사이트들의 자료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공부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일과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노력으로 13회 자격 취득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저에게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잘 몰랐던 나라별 FTA협정에 대한 내용이나 HS통칙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개인능력이 향상되었고 자격증 취득 후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음으로써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자신감있게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업체 컨설팅이나 응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갖춰진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해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분야가 취득 전보다 넓어져 FTA에 대한 전문지식 고도화를 도모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자격에 맞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더욱 더 해야겠다는 다른 동기 부여도 생겼습니다.

지금 공부를 시작 하시는 분들이나 준비중이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관련업종 종사자라 다른 분들에 비하여 접근이 비교적 쉬웠고 시험과목들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나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FTA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앞으로 늘어나는 FTA체결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술을 갈고 닦아 취업 및 직무향상에 많은 도움됨을 느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노력을 바탕으로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 - PASS

한-중 FTA 관세 혜택 확인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

—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한 - 중 FTA 관세 혜택 확인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추가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면서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FTA가 지난 6월 정식서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이 개발하고 국제원산지 정보원이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 PASS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기능은 한 - 중 FTA 활용 시뮬레이션과 원산지 관리현황 모니터링 기능이다. 이로써 기업사용자가 사전에 한 - 중 FTA를 대비할 수 있으며, 원산지 판정부터 서류발급까지한 눈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된 내용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다.

01 추가기능 1 : 한 - 중 FTA 활용 기능

품목번호(원산지) *	한국 품목명	중국 품목명
1 01012100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Pure-bred breeding horses
2 0101210010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종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한탄다	Endangered wild horses, pure-bred breeding
3 0101210090	기타 말,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한탄다	Other horses, pure-bred breeding
4 01012900	기타	Other
5 0101290010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종 배양용마 교종 제외한다	Endangered wild horses, not for breeding
6 0101290090	기타 말, 배양용마 교종 제외한다	Other horses, not for breeding
7 01013010	순종교 배양용마 교 당나귀	Pure-bred breeding asses
8 0101301010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종 당나귀,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한탄다	Endangered wild asses, pure-bred breeding
9 0101301090	기타 당나귀,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한탄다	Other asses, pure-bred breeding
10 01013090	기타	Other
11 0101309010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종 당나귀, 배양용마 교종 제외한다	Endangered wild asses, not for breeding
12 0101309090	기타 당나귀 노새, 배양용마 교종 제외한다	Other asses mules, not for breeding
13 01019000	기타	Other
14 01021000	순종교 배양용마 교	Pure-bred breeding
15 01029000	기타	Other
16 01031100	순종교 배양용마 교	Pure-bred breeding
17 0103110010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종 물소,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한탄다	Endangered wild buffaloes, pure-bred breeding
18 0103110090	기타 물소, 순종교 배양용마 교종 한탄다	Other buffaloes, pure-bred breeding

먼저 한 - 중 FTA 활용 기능은 한 - 중 FTA 발효를 대비해 협정 활용정보에 대해 품목조회, 특혜관세율 조회, 원산지기준 조회, 원산지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기업에 대한 서류발

급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FTA 발효전까지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 중 FTA를 활용예정인 기업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세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FTA - PASS 가입자는 원산지관리 현황을 통해 사용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02 추가기능 2 : 원산지 관리현황 모니터링 기능



원산지 관리현황 모니터링은 원산지확인서 수 · 발신,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현황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기존 기능을 개선하였다. 해당 기능은 FTA - PASS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하다.

03 원산지 정보원 FTA - PASS 정기교육 및 현장지원 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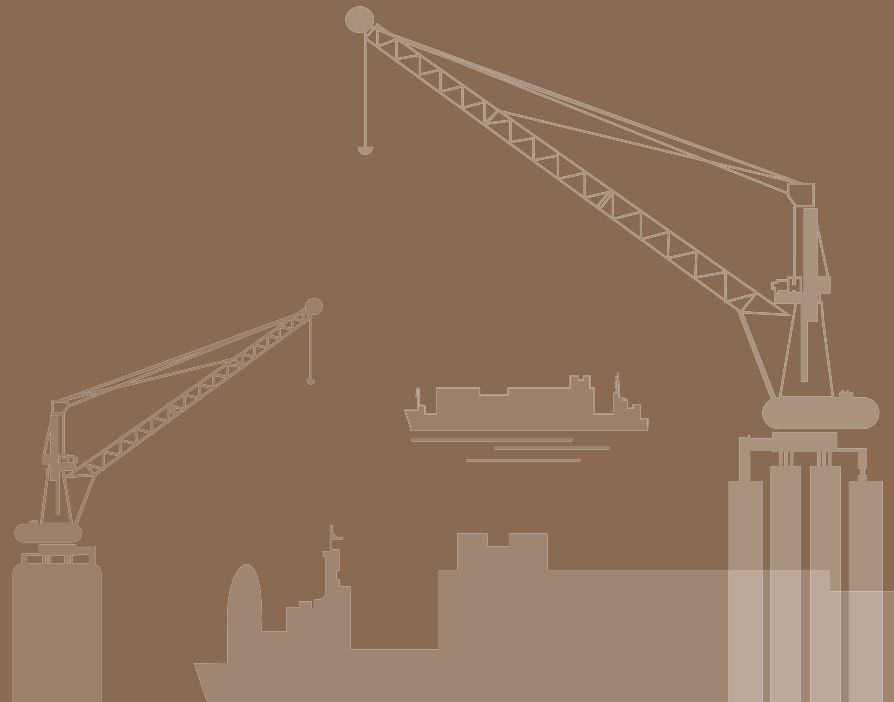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FTA - PASS 사용에 관한 정기교육과 현장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이며, FTA - PASS 이론과, FTA - PASS 자료등록부터 증빙서류 발급하는 방법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사항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FTA - PASS 사후관리팀(031 - 600 - 0770)을 통해 가능하다. 기업에서 FTA - PASS에 대해 현장지원을 원하는 경우는 방문을 원하는 일자보다 최소 2주전 접수하면, 무료로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방문교육 신청서는 홈페이지 상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중점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명시하면 된다.

FTA 100% 활용하기

캐나다의 통상·통관환경에 대한 이해

— 박정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FTA 100% 활용하기

캐나다의 통상·통관환경에 대한 이해¹⁾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은 2005년 1월 25일 제 1차 예비협의를 개최한 지 정확히 10여년 만인 지난 2015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다만, 오랜 정치외교적 관계와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북미시장은 곧 미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아 캐나다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의 정도는 미국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곧 다가올 한-캐나다 FTA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캐나다의 통상 현황, 그리고 통관환경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절차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없다.



01 한국 - 캐나다 교류사 I : 19세기 조선 말기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의 시초는 19세기 조선 말기로 1888년 고종시대다. 캐나다 출신의 기독교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 한국명: 기일 승-, 1863~1937)은 당시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 밴쿠버,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1888년 12월 12일 부산에 도착했고 이것이 한-캐나다 관계사의 시작이었다. 지금은 국제통상의 선도국가

1) 본 원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작한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에 기반하여 작성하였다.

라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서양을 배척하고 대외통상과 교역을 거부하는 쇠국양이정책(鎖國攘夷政策)을 고수해오던 조선은 대외개방에 대한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고종 13년인 1876년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개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불과 12년만에 캐나다와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그 외에도 캐나다는 광복 직후라고 할 수 있는 1947년 한국의 선거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UN한국임시위원단에 참여했고, 1949년 대한민국이 공식국가임을 인정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도 역할 했다.

이어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에는 외국참전군으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인 26,791명(516명 전사)을 파병한 바 있다. 한국은 1954년에 이미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에 대사관을 설치하였고, 이후 양국은 1963년 공식 수교했으며, 73년에는 서울에도 캐나다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02 한국 - 캐나다 교류사 II : 무역

석탄, 목재, 알루미늄, 철강, 농수산물 등이 주요 수출 상품인 캐나다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계, 철강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는 한국은 이론적으로는 자원의 분배를 고려할 때에 상호보완적인 통상환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서로간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설립되기도 전인 1989년 미국과의 양자 FTA(CUSFTA), 1994년 멕시코를 추가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매개로 하여 캐나다는 미국과의 교역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인접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힘썼던 것이 원인이다.

다만 1984년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캐나다에 첫 수출하였고, 89년 7월에는 한 주에 2,000대의 '소나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캐나다 퀘벡주 브로몽(Bromont)에 준공하는 등²⁾ 양국교역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였으며 한 - 캐나다 FTA가 발효된 현재 한

2) Jung-Yong, Lee, "Korea-Canada Economic Relations: Korean Perspectives", CANADA AND KOREA PERSPECTIVES 2000 (Edited by R.W.L. Guisso & Young-sik Yoo) 참고.

국은 캐나다의 7번째 무역국이자 중국, 일본에 이은 아시아 3위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 했다.

03 세계통상체제에서의 캐나다와 한 - 캐나다 FTA

캐나다는 WTO 설립의 초석이 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1986~1994)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쿼드국가(The Quad;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4개국 중 하나로 서 역할 한 바 있고, WTO 분쟁해결제도 내 제소국 3위, 피소국 6위에 위치하는 등 세계통상체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³⁾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인 동시에 에너지 공급국이고, 반대로 미국은 캐나다 최대의 수출상대국(2008년 기준 캐나다 전체 수출의 77.7% 기록)이다.

캐나다는 2015년 3월 기준 총 11개의 FTA를 발효하였는데 미국과 FTA정책이 매우 흡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캐나다가 발효시킨 11개의 FTA중 10개는 이미 미국과도 앞서 FTA를 발효시킨 바 있으며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도 양국은 함께 참여 중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 멕시코와의 NAFTA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캐나다는 NAFTA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경제협력대상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신(新) FTA전략을 추진 중이며 한-캐나다 FTA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 - 캐나다 FTA를 통해 의료, 콘텐츠, 자동차, 항공 분야 등에서의 협력이 기대되며 캐나다 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부족했던 아시아의 사업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기타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 역시 한 - 캐나다 FTA를 통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영연방 3개국과의 트라이앵글식(式) FTA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3) WTO 체제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제소국 1, 2위는 각각 미국과 유럽연합이며 피소의 경우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가 캐나다에 앞서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무역분쟁은 미국, 멕시코와 연루된 경우가 많은 편이며 그 외에도 유럽연합과 많은 분쟁해결절차를 거쳤다. 한국과 캐나다의 첫 무역분쟁은 이른바 1995년 '생수분쟁'으로 DS20 : Korea, Republic of - Measures concerning Bottled Water로 기록되어 있다.

04 캐나다의 통관제도 I : 조직, 절차 및 품목

캐나다 통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 이하 CBSA)이다.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상업용 제품은 일단 CBSA를 거쳐야만 정식 수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신속한 통관절차의 마무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⁵⁾, 특히 과거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주기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이나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과의 관련성이 적은 품목, 또는 과거수입 규정 위반 전력이 없는 수출입업자에 한해서는 통상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물품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반면, 초기 수출품목이나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 Act; SIMA)에 의해 지정된 품목을 포함하여 농수산물, 의료기기, 의약품, 식료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른바 ‘불규칙선택검사(Random Sampling)’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정식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는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다.⁶⁾ 이 과정에서 제출된 수입서류와 제품의 부합여부, 위생 상태 및 제품의 안전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고 확인 후 수입적격여부 판명이 나오게 된다. CBSA에서는 서류 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추가서류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4) 캐나다 CBSA는 국내에서 캐나다 관세청, 국경관리국 / 청, 국경서비스국 / 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주소는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Ottawa, Ontario, Canada이고 우편번호는 K1A 0L8, 전화번호는 1-800-461-9999이며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http://www.cbsa-asfc.gc.ca/>

5) 이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및 그 근간인 GATT 제 5조 통과와 자유(Freedom of Transit), 제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Fees and Formalities connected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제 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of Trade Regulations) 등의 철학에도 부합한다.

6) 일반적으로 상기 내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CBSA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Cargo Control Document (CCD),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anada Customs Coding Form (CCCD) 각 2부씩과 원산지 증명서 1부다.

〈캐나다 통관절차〉⁷⁾

순서	절차	내용
1	상품 선적보고	CBSA에 상품의 선적 보고함
2	상품 양도	상품 양도시 각 상품 운송단위 별로 총 14자리의 번호 (Transaction Number)를 부여함
3	선적상품 검사	캐나다 관세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세무국(Canada Customs and Revenue; CCRA)에서 임의로 상품을 검사함
4	상품 선적 회계보고	수입에 관련된 총 경비를 보고함(Accounting Package)
5	상품보관	상기 절차를 완료한 후 보관창고로 상품을 운반함

전세계적인 경향이 그러하지만, 캐나다 역시도 최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을 통해 별도의 검사장에서 실시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실제로 과거 한국산 배나 감과 같은 과실류가 캐나다로 수출되는데 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여전히 젓갈 등 어류에 대한 수입 불허조치가 증가하고 있다.⁸⁾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캐나다 CFIA가 미국 식약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CFIA 또는 FDA 중 단 한 곳이라도 수입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리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시장 판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⁹⁾

상기 언급한 수출입허가법과 관련하여, 수입허가(Import Permit)가 요구되는 품목군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주관하여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를 갱신하고 있는 바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작한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에서 캐나다 CBSA 자료를 인용한 것을 필자가 재인용하였다.

8) 국제무역에서 위생 및 검역에 대한 사안은 매우 중요하데, 실제 젓갈, 김치, 막걸리, 조미김, 인삼, 흰 우유, 삼계탕 등이 비슷한 이유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삼계탕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삼계탕은 미국의 위생 검역 장벽에 수출길이 가로막혀 있었던 바 있다.

9) 실례(實例)로 2012년 5월 1일 미국 FDA가 한국산 냉동굴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입허가업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CFIA 역시 약 16일 뒤인 5월 17일 같은 조치를 취했던 사례가 있다. 이후 2013년 6월 미국 FDA는 한국산 냉동굴을 다시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는데, CFIA는 아직까지도 해당 금수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수입규제품목〉¹⁰⁾

품목(분야)	내용
군용품	총기부품 및 총기류(라이플, 카빈, 리볼버, 피스톨, 자동소총 등) 대량살상무기(총, 유탄포, 캐논, 박격포, 탱크지뢰, 군용연막, 가스 및 화공품) 탱크 및 자가추진력에 의한 각종 군용품 폭탄, 어뢰, 로켓 및 비유도탄 및 해당 부품 수출 관리품목(Export Control List)에 해당되는 군용품
철강	탄소강 관련 제품(철판, 코일, 철도관련 제품, 기초 골재, 파이프 형 등) 특수강(철판, 봉강, 파이프, 튜브, 코일, 합금, 주석 등)
의류제품	멕시코와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 및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된 면화, 수제직물사 등
무기류	수입금지 무기류
낙농제품	암달, 수탉(185g이상), 닭고기(냉동 여부 불문), 닭고기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칠면조(185g이상), 칠면조 고기(냉동 여부 불문), 칠면조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등 소, 송아지, 소고기 등(NAFTA국가 및 칠레산은 제외) 각종 유제품(우유, 크림, 유지분유, 버터)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 및 기타 성분 함유) 계란 및 계란을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마가린 치즈(체더, 블루 베인드, 카망베르, 브리, 브로볼롱, 구다, 모차렐라, 스위스, 그뤼에르, 하바티, 파마잔, 로마노 및 기타 각종 종류의 치즈) 요거트 버터 및 각종 유지방 제품 통밀, 메슬린, 밀분 등 파스타, 면 등 밀을 주 재료로한 각종 제품(시리얼, 비스킷, 러스크, 쿠키, 프레첼 등) 보리, 보리가루 등 보리를 주재료로 한 각종 제품
기타제품	이스라엘산 장미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작한 「캐나다의 통관 및 운송제도」에서 캐나다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것을 필자가 재인용하였다.

05 캐나다의 통관제도 II : 종류와 요건

캐나다의 통관제도와 관련해선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필요서류나 요건, 방식에 따라 분류한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이하 RMD),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이하 RFD), 그리고 우편통관이 그것이다.



1) 최소서류통관제도(RMD)

명칭 그대로 최소한의 서류만 가지고 약식통관절차를 완료한 뒤,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서류에 대한 요구가 최소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우선 해당 업체가 통관과 관련하여 위반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 기록을 통해 향후에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통관시키고자 하는 품목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는 품목이 아니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위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해서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전년도 월 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면 RMD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총 3종인데 Cargo Control Document 1부와 Invoice 2부,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부가 그것이다.

2) 일반서류통관제도(RFD)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식통관제도다. 따라서, RMD와는 달리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는데, 대신 요구되는 서류의 양과 종류가 늘어난다. Cargo Control Document, Invoice, Canada Customs Coding Form이 각 2부씩 필요하며 그 외에도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Origin(필요 시)가 각각 1부씩 요구된다.

3) 우편통관

제품이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이 20달러 미만의 가치일 경우에는 관세도 소비세, 심지어 취급비용(Handling Cost)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품목의 경우엔 해당 우편물에 CBSA E14양식(CBSA Postal Import Form E14)가 부착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수취인이 수령 시에 관세와 소비세¹¹⁾

(HST 또는 GST와 PST)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캐나다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취급비용 9.95달러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때 수취인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06 캐나다의 통관제도 III : 주요 필요서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앞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선 반드시 상업송장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화의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거나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상품, 또는 HS코드 9810.00 해당 제품¹²⁾인 경우에 한해서는 상업송장외에도 다른 증빙서류가 대체 될 수 있으나 그 외 경우는 반드시 상업송장 또는 Canada Custom Invoice¹³⁾가 필요하다.

2) 원산지 증명서

캐나다로의 물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서로 Certificate of Origin으로 불리며, 또 다른 하나는 보다 작성이 간편한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로 Exporter's Statement of Origin이라고 불린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가 기존 원산지 증명서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의 작성이 더 간편하고 동시에 캐나다 CBSA에서 예전과는 달리 원산지 증명서 상에 선적지 세관의 직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는 메모 형식으로 간단히 작성하는데, 상업송장이나 CI1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별도의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서 상에 연

11) 여기서 HST는 Harmonized Sales Tax의 약자로 통합판매세를 의미하고, PST는 주 판매세 Provincial Sales Tax, GST는 상품용역세로 Goods and Services Tax를 일컫는다.

12) 참고로 앞서 언급한 HS코드 9810.00 해당제품은 Chapter 98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 NON COMMERCIAL에서 다루고 있는 상품들을 말하는데 HS코드 9810.0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품을 분류해놓고 있다. Arms, military stores, munitions of war and other goods the property of and to remain the property of a foreign country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Goods consigned to military service agencies and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where the goods are for the personal use of or consumption by nationals of countries designated under this item who are employed in defence establishments of those countries in Canada.

13) Canada Custom Invoice는 상업송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다. 이 서류는 캐나다 CBSA가 발행한 CI(Canada Custom Invoice)양식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해당 양식은 총 25개의 빈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양식이 아닌 상업송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 2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상업송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관 상업송장 및 CI1의 문서보호를 기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업자 원산지 신고서 양식은 다음 링크의 부록 C(Appendix C)에서 확인 가능하다(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1/d11-4-4-eng.html#_a15/).

참고로 과거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캐나다 관세법 상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대상국으로 분류함에 따라 일반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관세보다 낮은 일반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한국 무역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로 해당 대상에서 제외, 더 이상 원산지 증명을 통한 일반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07 캐나다의 통관제도 IV : 기타 주요 사항

1) 물품의 검사, 보류, 보관 및 압류

캐나다 CBSA는 통상적으로 선택적 샘플조사로써 물품검사를 시행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경우 그 빈도와 강도는 과거 검사 기록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고 서류를 오류 없이 잘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신고 내용과 실제 통관하는 물품이 정확히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⁴⁾

특히, 해당 재화가 식품검역, 국민위생보건 및 농수산물 관리 법률에 관련된 경우, CBSA는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 보류, 압류, 폐기, 재이용(Reuse)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동 법률 하에 부여받고 있다. 또한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캐나다 통관 법률(Canada Custom Act)가 검사, 보류, 압류, 폐기 및 재이용에 대하여 CBSA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캐나다로 수입되는 전 품목이 철저한 법률적 관리 하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¹⁵⁾

14) 표본조사를 시행함은 통관절차에서의 시간 및 비용절감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세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것처럼 신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동시에 통관 이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세관조사라 함은 상업송장 또는 Canada Custom Invoice와 해당 수입 물품의 비교를 뜻하며, CI1양식 내용과 수입 물품의 동일성이 그 핵심이다. 상품 정상품의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한다.

15) 캐나다 CBSA와 긴밀한 협력 관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기타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정보는 이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cbsa-asfc.gc.ca/import/reflist-listeref-eng.html/>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SA와의 협력 하에 2003년 이후부터 CFIA에서는 일반 상품의 검역과 동시에 동식물과 그 가공품, 관련제품 및 사료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고유한 검역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련 검역 요건은 품목마다 다르며 내용도 복잡하므로 CFIA의 웹사이트(<http://www.inspection.gc.ca/>)를 통하여 이른바 자동 수입 참고 시스템(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AIRS) (http://airs-sari.inspection.gc.ca/airs_external/english/decisions-eng.aspx)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식용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요건,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은 국가 수입 서비스 센터(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 NISC)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⁶⁾

이후 보관된 상품은 CBSA의 통보 이후 40일 이내에 수취인이 수령토록 한다. 관세 및 소비세 등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하게 되며, 보관기관에도 일정한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화에 대한 수령의사를 CBSA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만약 40일 이내에 세관에서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CBSA 창고로 옮겨지게 되며, 그 이후 30일이 추가적으로 지나도 수령되지 않은 물품은 CBSA의 판단 하에 폐기 처분될 수도 있다.

2) 통관본드(Custom Bond)

통관본드라는 것이 있다. 수입자 측에서 관세 및 소비세 등 각종 의무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세관에 제공하는 일종의 담보를 말한다. 이를 통해 빠른 통관이 가능해지는데, 보통 통관본드 예치에는 현금이나 수표, 캐나다 연방정부의 국채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통관본드 D120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 캐나다 식품관련 검역 정보와 법규 및 규제¹⁷⁾

캐나다로 수출되는 식품 및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있는 만큼 그 법규와 규제가 특히 까다로운 바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법규 및 규제(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는 캐나다 내 생산 및 수입되는

16) 캐나다 국가 수입 서비스 센터는 미국과 캐나다 동부 시간 기준 오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는 1 - 800 - 835 - 4486으로, 지역 내 또는 외국에서는 1 - 289 - 247 - 4099로 문의할 수 있다. 팩스를 이용할 경우는 1 - 613 - 773 - 9999를 이용하면 된다.

17) 이 부분은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고 (주)이씨이십일에서 수행한 「Mini Market Report」- 캐나다 축취 해소음료 관련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로서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식품의 구성요소, 라벨링, 가공, 유통 그리고 판매까지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며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위 법규를 기반으로 그 외에도 육류, 어류 및 채소류의 생산 및 유통 규제를 위한 Meat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 Fish Inspection Act and Regulations, 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and Regulations가 각각 존재하며 이에 더하여 식품 판매자로 하여금 제품의 열량, 영양소, 질량 등의 식품정보를 반드시 포장 앞에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가 있다.

최근 한국산 김치, 젓갈, 기타 가공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문제와 관련한 라벨링 불량 문제 등으로 한국산 식품들이 무더기 리콜된 사례가 있고, 캐나다 내 수입업체 및 유통회사들 간에 한국기업 제품이 라벨링 및 영양분석표에 취약하다고 인식한다는 사실, 또한 한국 식품 수출업자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라벨링 방식을 비슷하다고 이해하지만 실제 두 국가의 표기 언어(캐나다의 영어와 불어가 국가 공식 공용어이므로 두 가지 언어로 표시)와 형식이 다르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식품 수출 시에는 화물통제문서(Cargo Control Document) 2부, 반입된 물품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송장(invoice) 2부, B3양식 문서 2부, 수출 및 수입 허가증, 자격증, 그 외 CBSA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보통 원본)가 필요하다.

4) 캐나다의 물류 시스템

캐나다의 물류 구조는 항공, 해상, 철도, 트럭, 화물운송업자, 통관사, 창고, 택배 등의 공급자와 제조 업체, 도소매업자의 수요자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캐나다의 물류 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산화 시스템과 더불어 GPS 기술을 활용한 집배송 체제가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재고를 최소로 유지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물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첨단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광활한 국토 면적 및 이에 따른 태생적인 지리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배송시간의 최소화 및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했다.

5) 국가별 통관 규정 사항 : 캐나다¹⁸⁾

코드	국가	가치 상한	서류 & 특례 조항
CA	캐나다		Commercial invoice, Canada Schedule이 없을 경우 HKG T/S로 발송, 한 Con당 최대 300kg가능, Invoice작성 시 Samples, Gifts, Parts, Clothing, Tools, Machinery - 은 불가하며 사용 용도와 원산지를 표기, Connote와 System상에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수취인 이름도 full name으로 명기. 그렇지 못할 경우 서비스 지연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
CA	캐나다		<p>제한품목 : 개인건 발송 시 물품이 (USD40이하, New Product)만 발송가능하며 수취인이 Broker 통관, Used Item은 발송 불가, 화장품일 경우 무게 제한없이 샘플 발송 가능(GST의 6% 관세 부과)</p> <p>음식류 : CFIA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통관 및 핸들링) 발생 시, 수취인에게 청구,</p> <p>육류 : 상업적인 수입만 허용되며 역시 CFIA의 승인이 필요함. 개인 거주 지역으로의 비상업적인 수입은 불가하며 발견 시 처분,</p> <p>유가공품 : 대부분의 유가공품의 예 : 치즈 - 비상업적인 수입은 20kgs, CAD20 이내일 경우 큰 제약 없이 가능하나 상업적일 경우엔 CFIA의 승인이 필요,</p> <p>제약품 : 사전에(신고 전) Health Canada로부터의 승인이 필요,</p> <p>화장품 : 사전에(신고 전) Health Canada로부터의 승인이 필요,</p> <p>동물 가죽 제품류 : CFIA의 승인이 필요, Gift일 경우 CAD60 이상의 선물에는 세금, 관세, Brokerage 비용 등이 추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취인에게 청구될 것임. 선물의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p> <p>캐나다에서 알코올류의 통관은 최종도착지가 속한 주(province)의 세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기타 주를 경유할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송 국가로 청구되며 통관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물품 발송 전 TNT CA에 문의,</p> <p>금지품목 : 여권</p>

18) 표는 http://www.tntexpress.co.kr/brochure2008/country_info.pdf에서 인용하였다.

6) 수입금지품목 : 캐나다

캐나다의 관세표(또는 관세양허표; Customs Tariff)에서 98류(Chapter 98)로 분류하는 금지조항(Prohibition Provision)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관세표(Canadian Customs Tariff)법 제136조¹⁹⁾에서는 금지조항에 규정된 품목(HS코드 9897.00.00, 9898.00.00, 9899.00.00)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캐나다 수입금지 품목 〉²⁰⁾

품목(분야)	내용	관련 HS코드
동물	몽구스과에 속한 동물 : Galidia, Galidictis 등 양식용, 연구용, 관람용의 것으로 Canadian Wildlife Service로 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고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9897.00.00
금속	위조 지폐 및 동전	9897.00.00
침구	HS코드 9806, 9807, 9808, 9810에 의한 침대 매트리스나 중 고 매트리스 중 살균 처리된 것을 제외한 모든 중고 매트리스	9897.00.00
인쇄물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9897.00.00
일반제품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이 죄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 캐나다 인증법(Trade-marks Act)이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불 허하는 지역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9899.00.00 및 9897.00.00
연막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막(smoke screen)	9897.00.00
자동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 HS코드 9801.10.00, 9807.00.00, 9808.00.00, 9809.00.00, 9810.00.00품목 - 통관 관련 법이나 혹은 다른 캐나다 각 지방정부 법령 등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몰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NAFTA 조항에 따라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되고 특정 조 건에 부합하는 경우	9897.00.00

19) 해당 법령은 본 웹사이트(<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54.011/page-68.html#h-69>)에서 찾을 수 있으며 원문은 아래와 같다: PART 5 PROHIBITED GOODS Prohibited imports 136. (1) The importation of goods of tariff item No. 9897.00.00, 9898.00.00 or 9899.00.00 is prohibited. Subsection 10(1) does not apply (2) Subsection 10(1) does not apply in respect of good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20) 표는 <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54>에서 인용하였다.

〈캐나다 수입금지 품목〉계속

품목(분야)	내용	관련 HS코드
자동차	미국에서 수입된 경우 2009년에서 10년 사이 :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2011년에서 12년 사이 :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2013년에서 14년 사이 :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2015년에서 16년 사이 :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2017년에서 18년 사이 :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2019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중고차	9897.00.00
비행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 - HS코드 9803,9809,9810에 의해 수입된 경우 민간 및 화물 수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9897.00.00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	9897.00.00
무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탄, 무기 제조 기기 및 관련 기기 -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 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비시민권자가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하여 수입하는 경우나 캐나다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반되는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35조에 의해 자동화기 수입이 가능한 비 시민권자나 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가를 취득한 경우	9898.00.00
출판물	그림, 사진, 책, 프린트물 등 각종 인쇄물 중 Criminal Code 에 의거, 인종차별, 범죄, 반역, 학대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범죄나 폭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은 포스터나 전단,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물	9899.00.00

08 캐나다의 주요 공항 및 항구

1) 주요 공항

캐나다 내에는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에서 국제공항으로 지정한 주요 공항이 13개 정도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토론토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몬트리올 국제공항, 오타와 국제공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이 중 한국 방문객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공항은 토론토와 밴쿠버 국제공항이다.

각 공항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p>토론토 국제공항²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명칭 : Toronto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공항코드 : YYZ • 웹사이트 : http://www.torontopearson.com/ • 주 소 : 3111 Convair Drive, Toronto AMF, Ontario, Canada • 우편번호 : L5P 1B2 • 전화번호 : 1 - 416 - 776 - 3000(관리공단), 1 - 416 - 247 - 7678(제1터미널), 1 - 416 - 776 - 5100(제3터미널)
<p>밴쿠버 국제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명칭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 공항코드 : YVR • 웹사이트 : http://www.yvr.ca/ • 주 소 : 3211 Grant McConachie Way, Richmond, British Columbia, Canada • 우편번호 : V7B 0A4 • 전화번호 : 1 - 604 - 207 - 7077
<p>몬트리올 국제공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명칭 : Montreal Pierre Elliot Trudeau International Airport • 공항코드 : YUL • 웹사이트 : http://www.admtl.com/ • 주 소 : 975 Romeo-Vachon Blvd. North, Suite 317, Motreal, Québec, Canada • 우편번호 : H4Y 1H1 • 전화번호 : 1 - 514 - 394 - 7377, 1 - 800 - 465 - 1213

21) 1970년대 초 토론토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대한 승객 증가로 1972년 6월 제2터미널이 문을 열었지만, 이후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단장한 제1터미널로 인하여 기존의 제2터미널은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해체되었다.

오타와 국제공항

- 정식명칭 : 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Airport
- 공항코드 : YOW
- 웹사이트 : <https://yow.ca/>
- 주 소 : 1000 Airport Parkway Private, Ottawa, Ontario
- 우편번호 : K1V 9B4
- 전화번호 : 1-613-248-2000

2) 주요 항구

캐나다의 주요 무역항은 몬트리올(퀘벡 주), 핼리팩스(노바스코샤 주), 밴쿠버(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3곳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몬트리올과 핼리팩스는 대서양에, 밴쿠버는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데 특히 몬트리올의 경우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캐나다 최대의 무역항으로서 목재, 밀, 버터, 모피, 밀가루, 치즈 등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주요 루트로서 활용되고 있다. 핼리팩스는 캐나다 태평양철도 및 내셔널철도의 기점으로서 겨울철에는 세인트로렌스 수로가 얼어붙음에 따라 대체항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끝으로 캐나다 서쪽 끝에 위치한 밴쿠버의 경우, 태평양으로 통하는 캐나다 주요 무역항으로써 항구에는 대규모 부두와 곡물엘리베이터 등 우수한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다.

각 항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몬트리올 항구

- 웹사이트 : <http://www.port-montreal.com/>
- 주 소 : 2100 Pierre-Dupuy Avenue, Wing 1, Montreal, Québec, Canada
- 우편번호 : H3C 3R5
- 전화번호 : 1 - 514 - 283 - 7011

핼리팩스 항구

- 웹사이트 : <http://www.portofhalifax.ca/>
- 주 소 : Halifax Port Authority, P.O.Box 336, Halifax, Nova Scotia, Canada
- 우편번호 : B3J 2P6
- 전화번호 : 1 - 902 - 426 - 8222

밴쿠버 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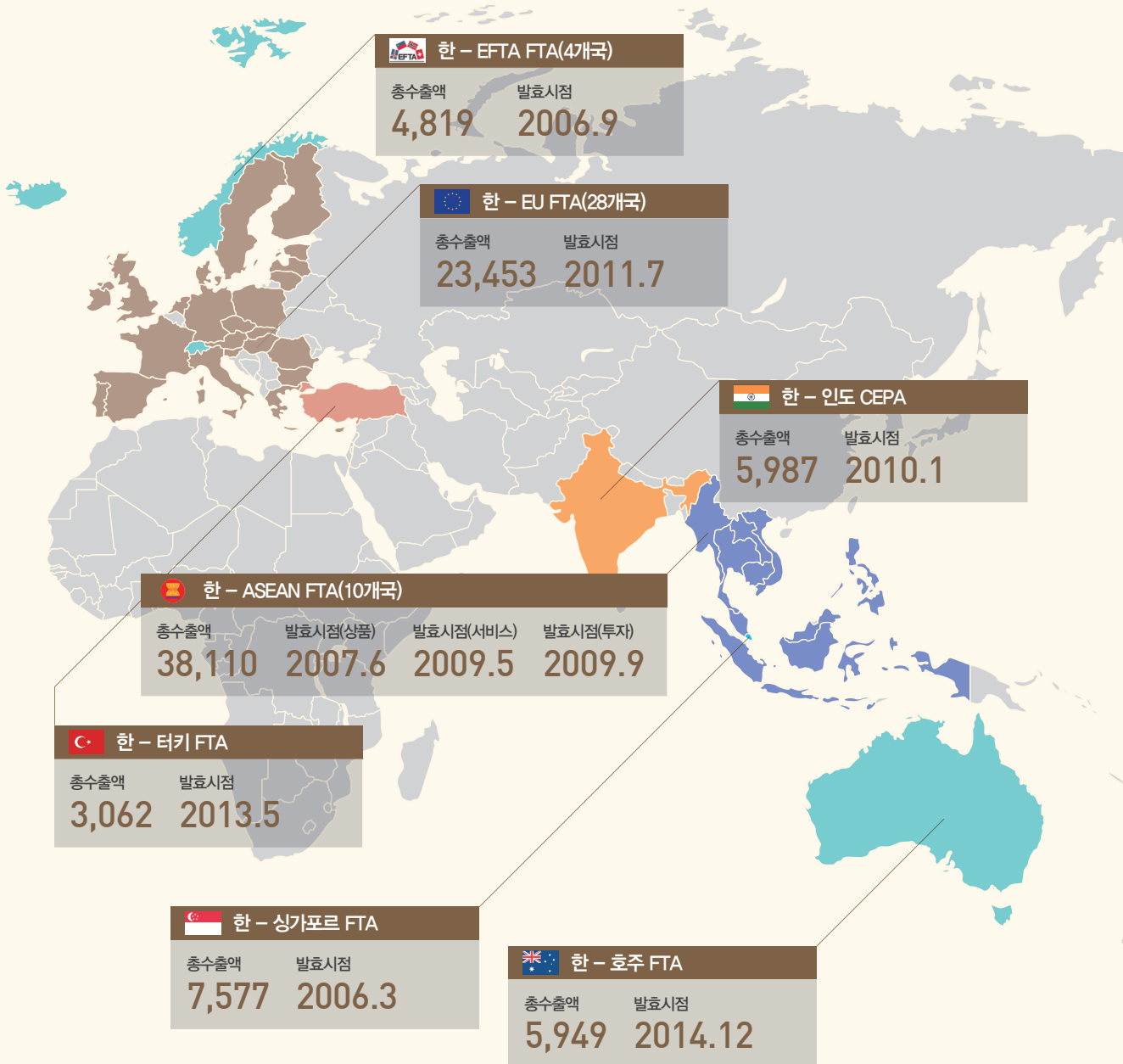
- 웹사이트 : <http://www.vfpa.ca/>
- 주 소 : 100 The Pointe, 999 Canada Place,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 우편번호 : V6C 3T4
- 전화번호 : 1 - 604 - 665 - 9000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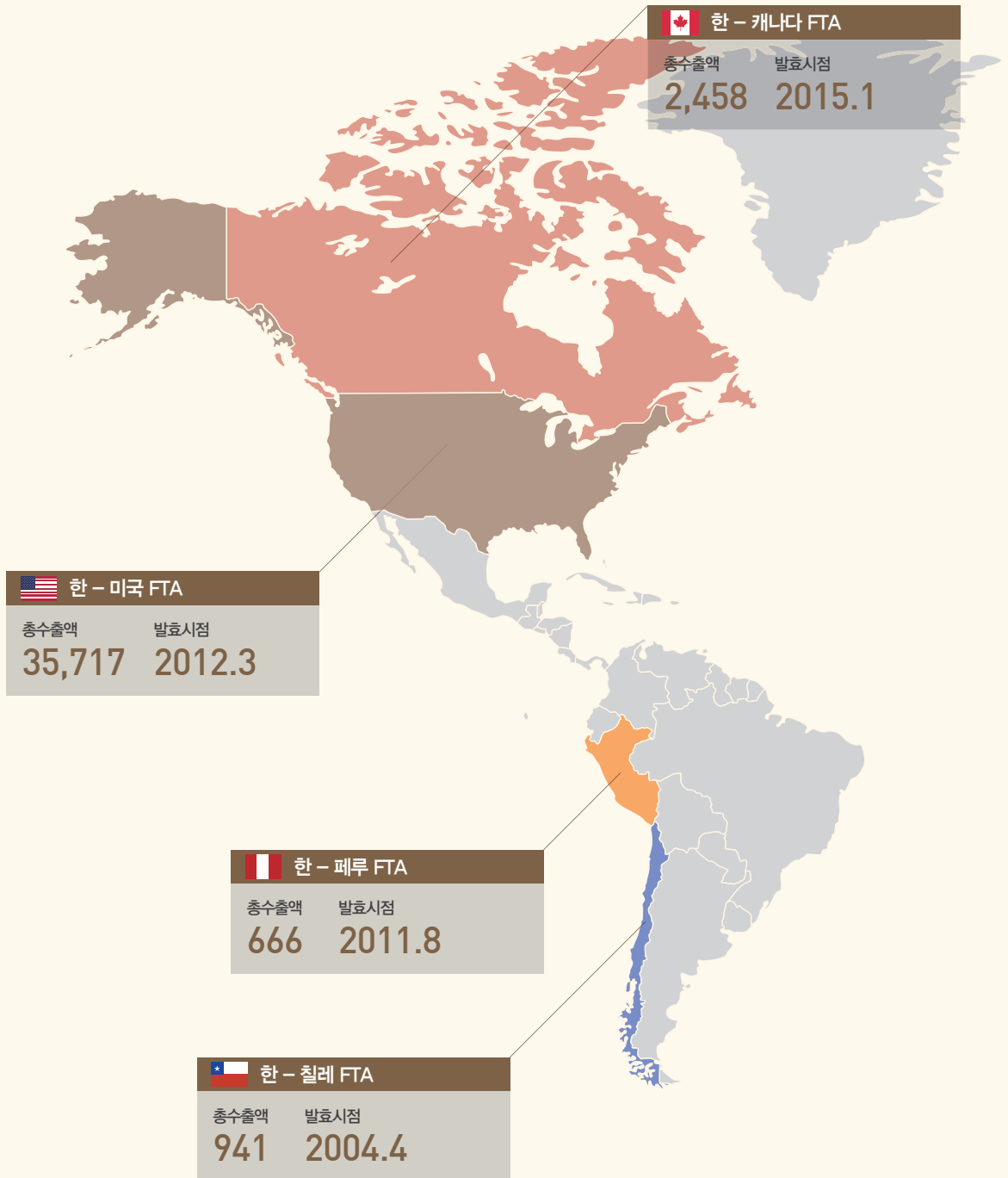
-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2015년 상반기)
- 지도로 보는 2015 상반기 특혜 수출입실적



우리나라 FTA 체결국 현황(2015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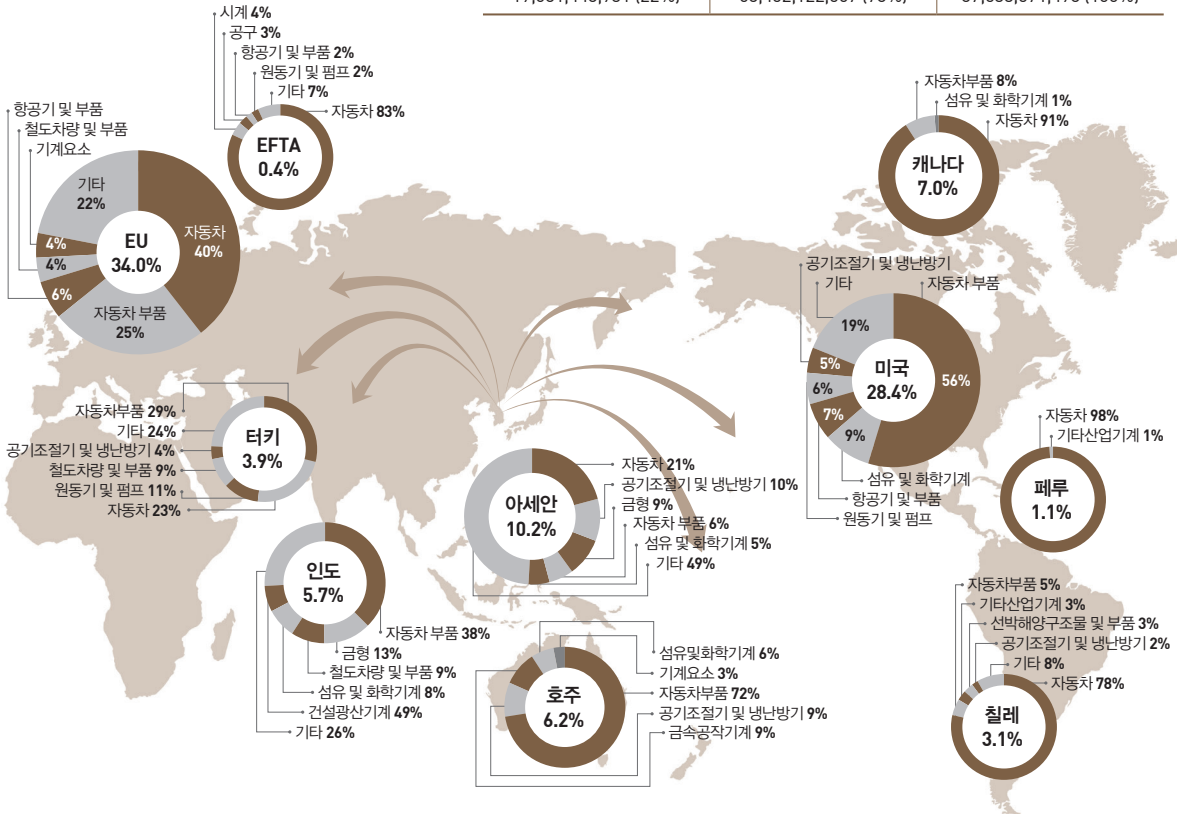



시점 : 2015년 10월 1일 기준
단위 : 백만달러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9,081,448,931 (22%)	68,452,122,567 (78%)	87,533,571,498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기계류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9,081,448,931

국/지역	금액
EU	6,486,231,658
미국	5,419,637,272
아세안	1,949,602,877
캐나다	1,337,047,873
호주	1,176,290,357
인도	1,086,503,674
터키	736,040,899
칠레	594,543,178
페루	213,409,225
EFTA	82,14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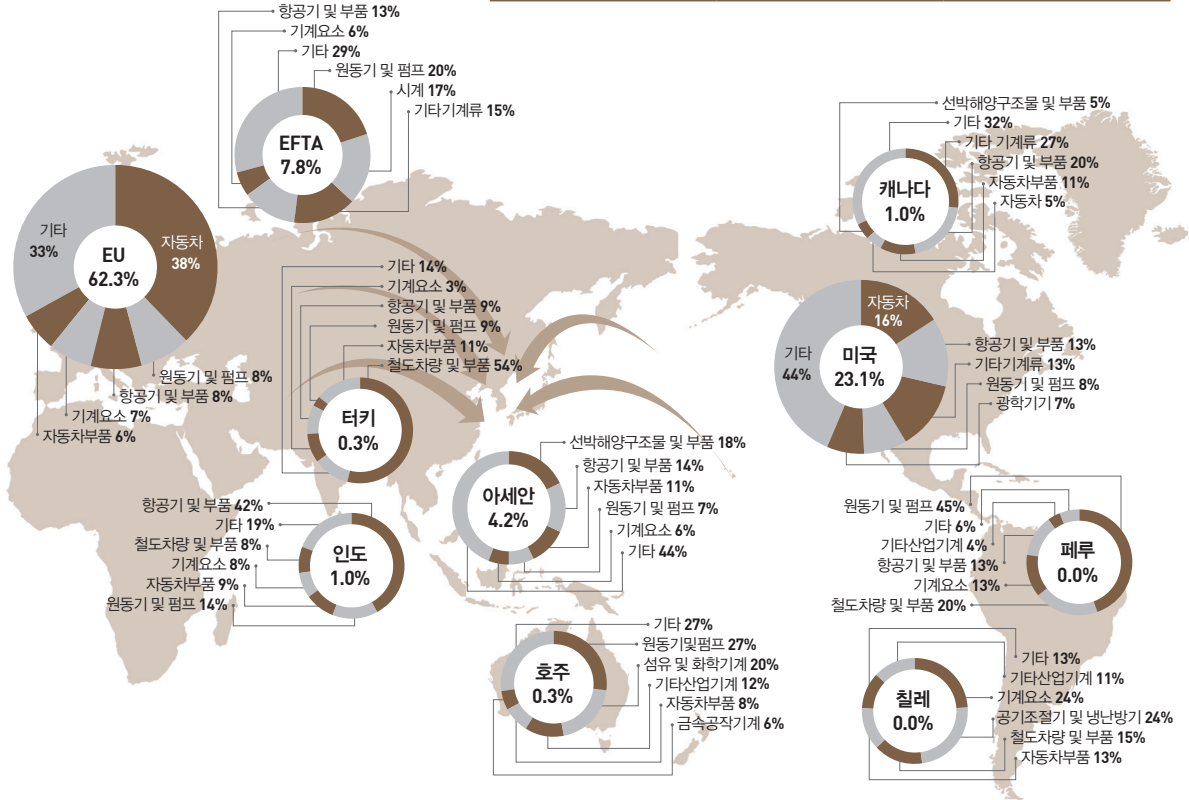
기계류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6,113,139,821	32.0
2	자동차부품	5,595,954,763	29.3
3	항공기 및 부품	883,272,125	4.6
4	섬유및화학기계	876,742,177	4.6
5	원동기 및 펌프	745,184,539	3.9
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00,284,952	3.7
7	금형	687,676,760	3.6
8	기계요소	590,596,156	3.1
9	금속공작기계	570,685,004	3.0
10	철도차량 및 부품	472,332,981	2.5
총계		19,081,448,931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6,870,278,359 (50%)	17,053,749,175 (50%)	33,924,027,534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기계류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6,870,278,359

	EU	10,510,108,447
	미국	3,890,919,697
	EFTA	1,316,905,581
	아세안	713,125,576
	캐나다	163,975,262
	인도	160,983,871
	터키	57,914,084
	호주	56,149,642
	페루	183,048
	칠레	13,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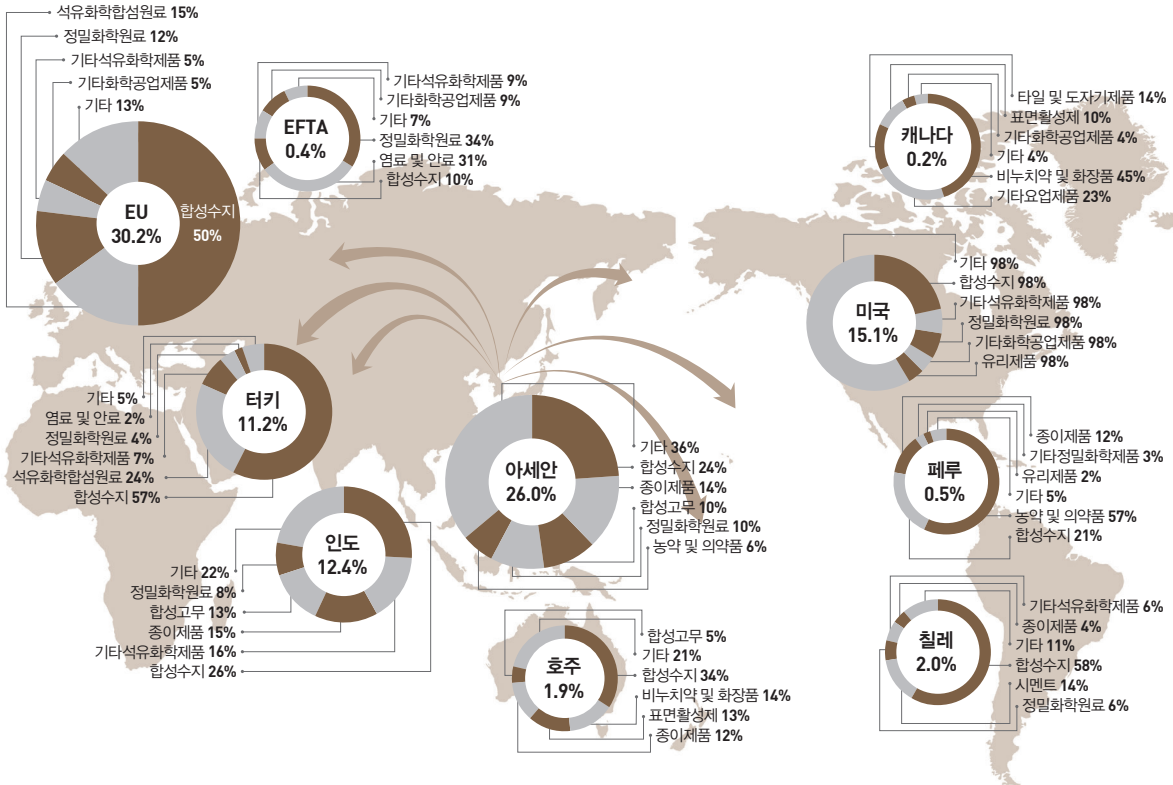
기계류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4,634,256,181	27.5
2	항공기 및 부품	1,686,475,137	10.0
3	원동기 및 펌프	1,503,623,215	8.9
4	기타기계류	1,196,447,226	7.1
5	기계요소	1,153,812,842	6.8
6	자동차부품	973,839,555	5.8
7	섬유 및 화학기계	955,077,400	5.7
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24,567,904	4.3
9	광학기기	496,449,576	2.9
1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493,523,070	2.9
총계		16,870,278,359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5,869,266,505 (19%)	25,393,394,919 (81%)	31,262,661,424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5,869,266,505

협정	수출금액
EU	1,769,922,851
아세안	1,527,033,186
미국	887,125,555
인도	727,009,464
터키	659,922,602
칠레	116,663,270
호주	113,752,838
페루	32,250,473
EFTA	22,037,457
캐나다	13,548,809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2,322,683,928	39.6
2	정밀화학원료	560,875,734	9.6
3	석유화학합성원료	451,183,761	7.7
4	기타석유화학제품	426,495,830	7.3
5	종이제품	351,660,319	6.0
6	합성고무	254,763,855	4.3
7	기타화학공업제품	234,499,714	4.0
8	기타정밀화학제품	203,022,250	3.5
9	농약 및 의약품	174,761,131	3.0
10	유리제품	139,368,042	2.4
총계		5,869,266,5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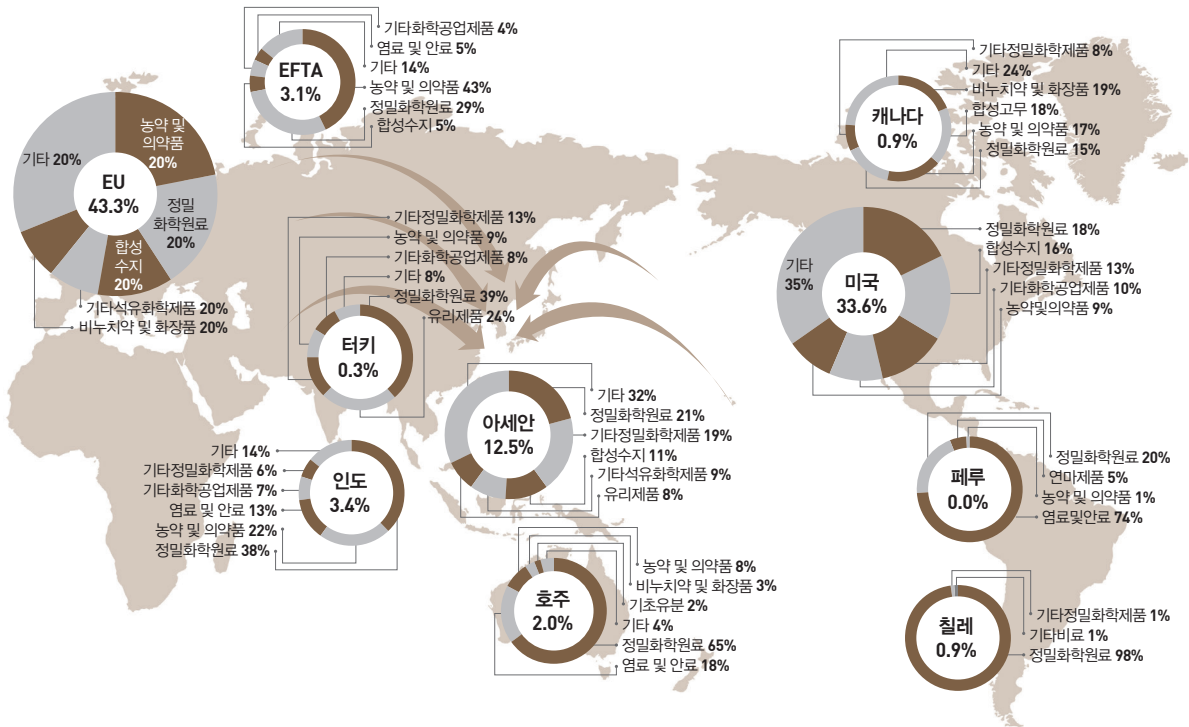
수입

화학공업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8,949,691,298 (37%)	15,354,748,510 (63%)	24,304,439,808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8,949,691,298

협정	수입금액
EU	3,874,701,945
미국	3,890,919,697
아세안	1,119,754,363
인도	303,240,154
EFTA	280,639,316
호주	178,798,758
캐나다	79,018,009
칠레	76,757,231
터키	28,108,144
페루	1,186,462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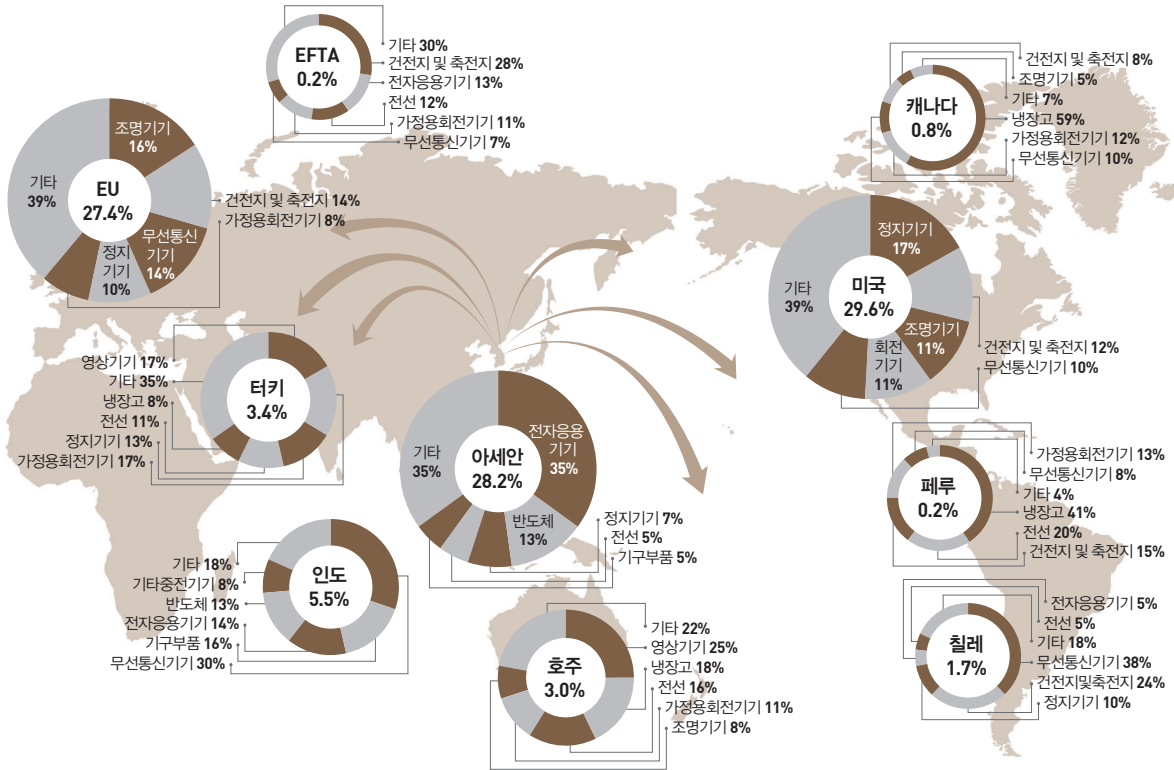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밀화학원료	1,921,247,379	21.5
2	농약 및 의약품	1,399,945,662	15.6
3	합성수지	1,102,220,248	12.3
4	기타정밀화학제품	941,413,246	10.5
5	기타화학공업제품	649,216,671	7.3
6	비누치약 및 화장품	584,142,030	6.5
7	기타석유화학제품	579,820,342	6.5
8	염료 및 안료	326,020,544	3.6
9	유리제품	295,259,382	3.3
10	타일 및 도자기제품	185,217,700	2.1
총계		8,949,691,298	100.0

03 수출

전기전자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5,319,940,186 (6%)	83,633,866,468 (94%)	88,953,806,654 (100%)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5,319,940,186

국가	금액
미국	1,573,969,692
아세안	1,501,879,504
EU	1,456,548,150
인도	292,306,488
터키	179,087,495
호주	161,377,123
칠레	90,196,491
캐나다	43,547,703
페루	12,647,998
EFTA	8,379,542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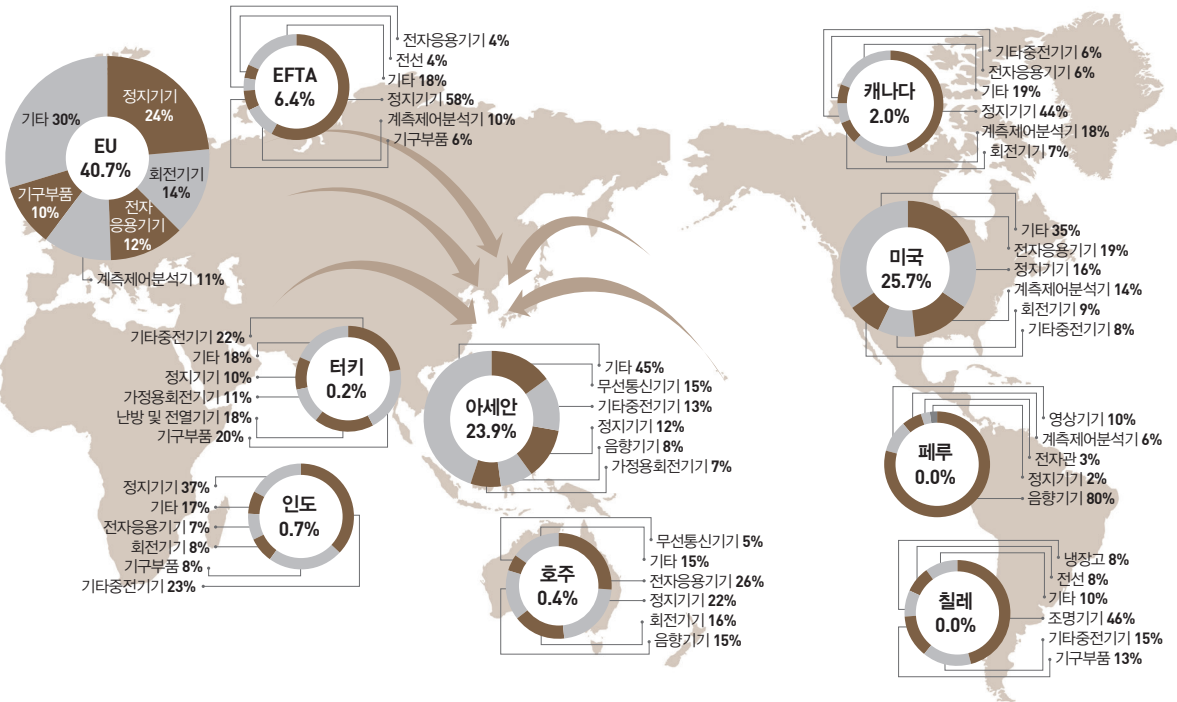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전자응용기기	640,355,364	12.0
2	무선통신기기	557,850,932	10.5
3	정지기기	553,693,605	10.4
4	조명기기	474,382,370	8.9
5	건전지 및 축전지	466,723,549	8.8
6	가정용회전기기	346,073,404	6.5
7	회전기기	308,239,143	5.8
8	기구부품	245,357,916	4.6
9	반도체	243,267,033	4.6
10	전선	237,115,666	4.5
총계		5,319,940,186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5,344,407,648 (11%)	43,375,589,241 (89%)	48,719,996,889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5,344,407,648

국/지역	수입금액
EU	2,173,909,793
미국	1,373,042,808
아세안	1,276,115,558
EFTA	342,906,690
캐나다	107,689,844
인도	39,627,850
호주	20,485,918
터키	10,582,695
칠레	40,783
페루	5,709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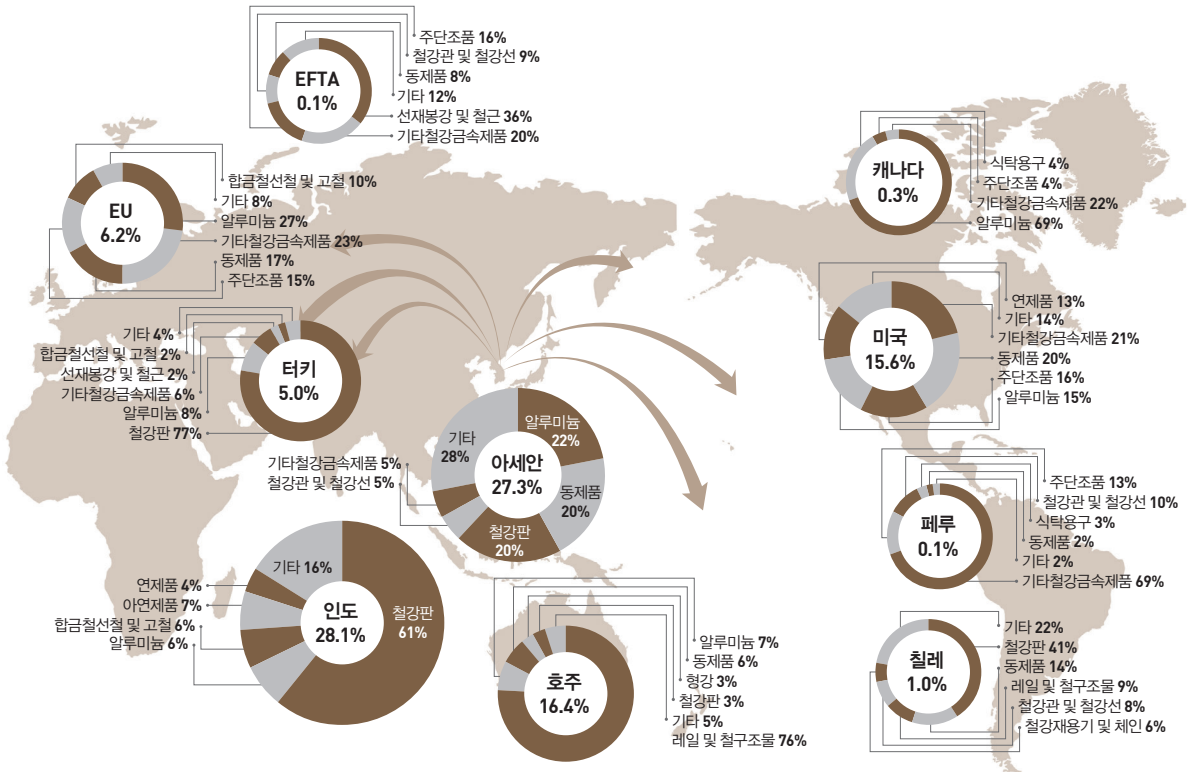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정지기기	1,139,403,470	21.3
2	전자응용기기	559,895,895	10.5
3	계측제어분석기	553,530,334	10.4
4	회전기기	491,583,134	9.2
5	가구부품	392,721,693	7.3
6	무선통신기기	381,330,983	7.1
7	기타중전기기	357,145,562	6.7
8	전선	210,778,350	3.9
9	음향기기	166,086,445	3.1
10	가정용회전기기	157,299,045	2.9
	총계	5,344,407,648	100.0

04 수출

철강금속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202,814,148 (19%)	17,452,835,623 (81%)	21,655,649,771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4,202,814,148

	인도	1,179,108,244
	아세안	1,146,720,281
	호주	687,921,113
	미국	657,723,638
	EU	260,536,540
	터키	209,697,306
	칠레	43,287,694
	캐나다	11,729,591
	페루	3,700,854
	EFTA	2,388,887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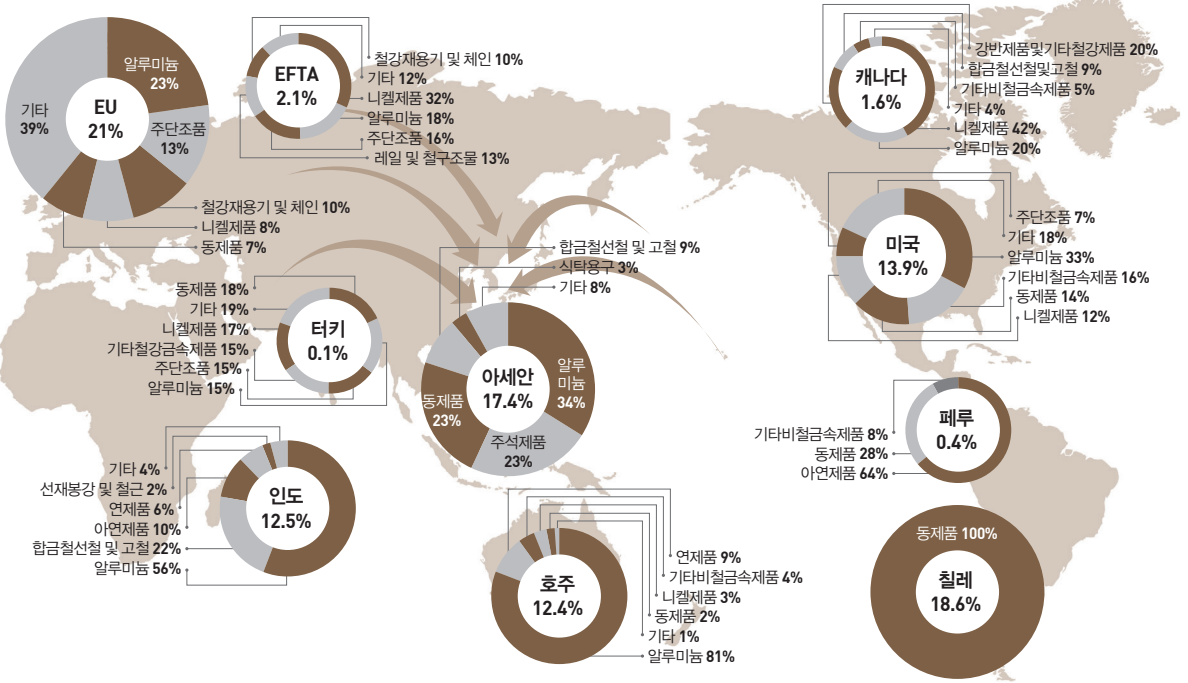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관	1,151,944,023	27.4
2	레일 및 철구조물	566,420,589	13.5
3	알루미늄	565,998,526	13.5
4	동제품	480,915,512	11.4
5	기타철강금속제품	304,040,455	7.2
6	주단조품	220,499,040	5.2
7	합금철선철 및 고철	184,204,537	4.4
8	연제품	168,160,002	4.0
9	아연제품	117,223,510	2.8
10	철강관 및 철강선	112,382,949	2.7
총계		4,202,814,148	100.0

수입

철강금속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3,450,215,122 (17%)	16,600,492,455 (83%)	20,050,707,577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3,450,215,122

협정	수입금액
EU	724,850,706
칠레	642,560,135
아세안	600,288,139
미국	478,883,902
인도	431,431,162
호주	426,398,715
EFTA	73,047,514
캐나다	56,745,784
페루	13,137,205
터키	2,871,860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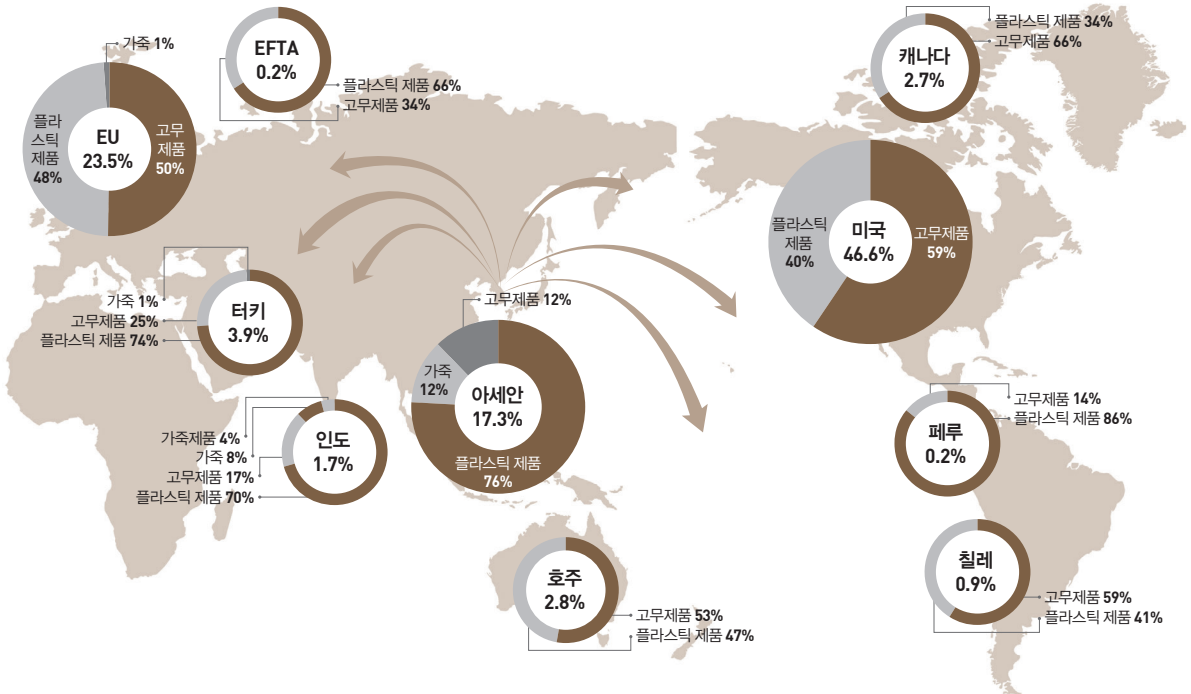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알루미늄	1,145,041,637	33.2
2	동제품	910,918,191	26.4
3	합금철선철 및 고철	182,835,958	5.3
4	니켈제품	175,136,551	5.1
5	주단조품	147,701,642	4.3
6	주석제품	144,615,657	4.2
7	기타 비철금속제품	144,070,127	4.2
8	철강재용기 및 체인	108,502,973	3.1
9	아연제품	93,662,806	2.7
10	기타 철강금속제품	83,985,560	2.4
	총계	3,450,215,122	100.0

05 수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3,010,892,503 (41%)	4,423,406,114 (59%)	7,434,298,617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3,010,892,503

국기	FTA	금액
	미국	1,401,755,095
	EU	706,758,204
	아세안	522,307,593
	터키	117,029,095
	호주	85,268,138
	캐나다	82,257,016
	인도	50,067,054
	칠레	27,128,962
	EFTA	12,492,065
	페루	5,829,28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1,518,027,967	50.4
2	고무제품	1,412,035,087	46.9
3	가죽	77,446,116	2.6
4	가죽제품	3,289,154	0.1
5	모피	94,179	0.0
6			
7			
8			
9			
10			
총계		3,010,892,5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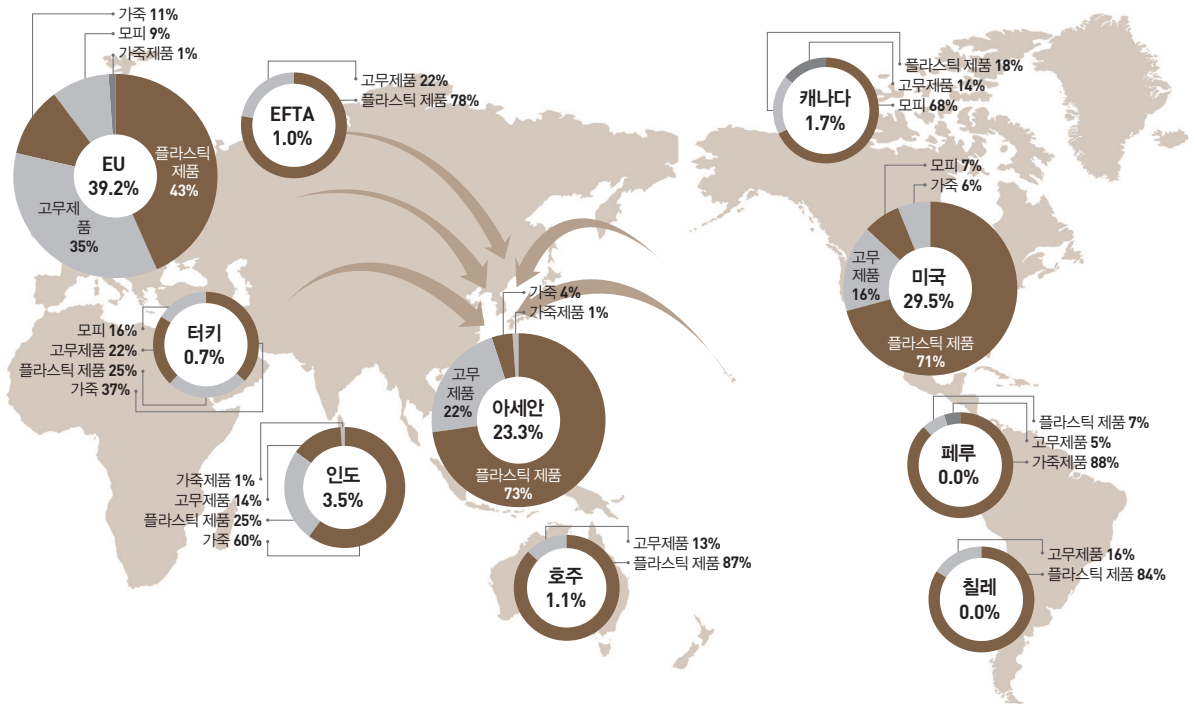
수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239,545,417 (31%)	2,718,329,939 (69%)	3,957,875,356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239,545,417

국가	수입금액
EU	485,409,380
미국	365,106,086
아세안	288,925,135
인도	44,002,254
캐나다	20,985,765
호주	13,080,926
EFTA	12,424,400
터키	9,110,006
칠레	483,017
페루	18,448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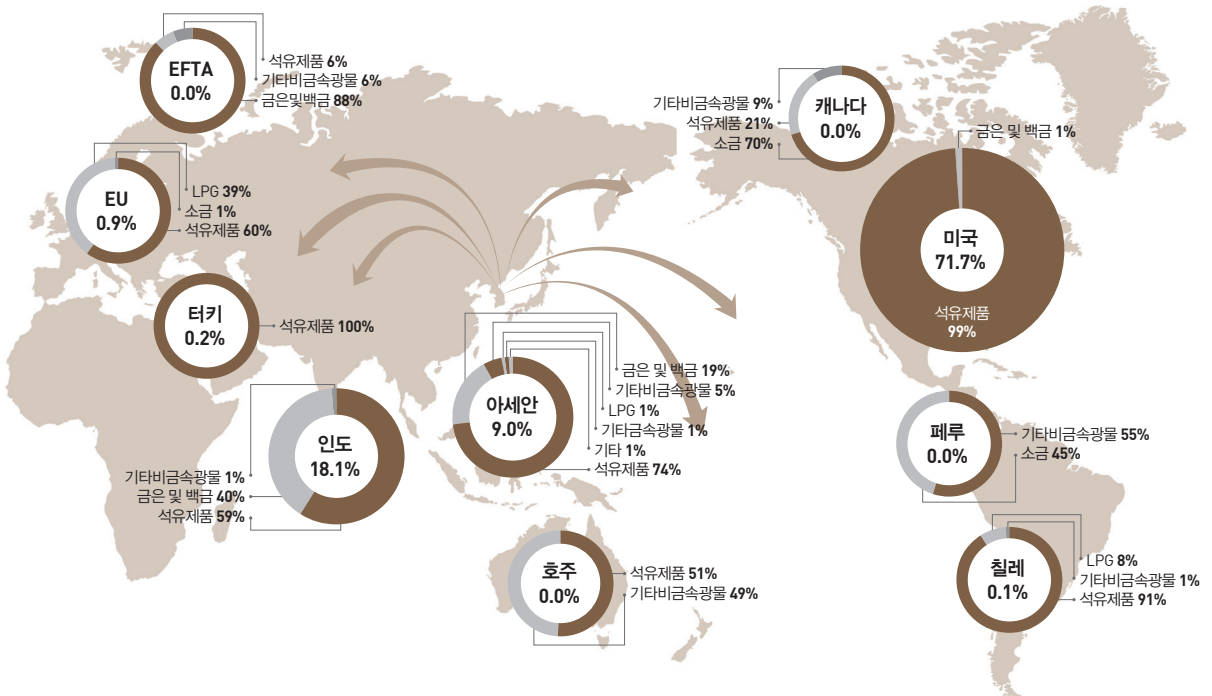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721,323,891	58.2
2	고무제품	309,056,970	24.9
3	가죽	118,105,459	9.5
4	모피	85,240,914	6.9
5	가죽제품	5,818,183	0.5
6			
7			
8			
9			
10			
총계		1,239,545,417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377,855,935 (13%)	15,903,933,794 (87%)	18,281,789,729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광산물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2,377,855,935

국가	수출금액
미국	1,703,797,283
인도	429,243,366
아세안	213,595,443
EU	21,868,253
터키	5,699,052
칠레	3,489,949
캐나다	134,398
호주	19,684
EFTA	5,154
페루	3,353

광산물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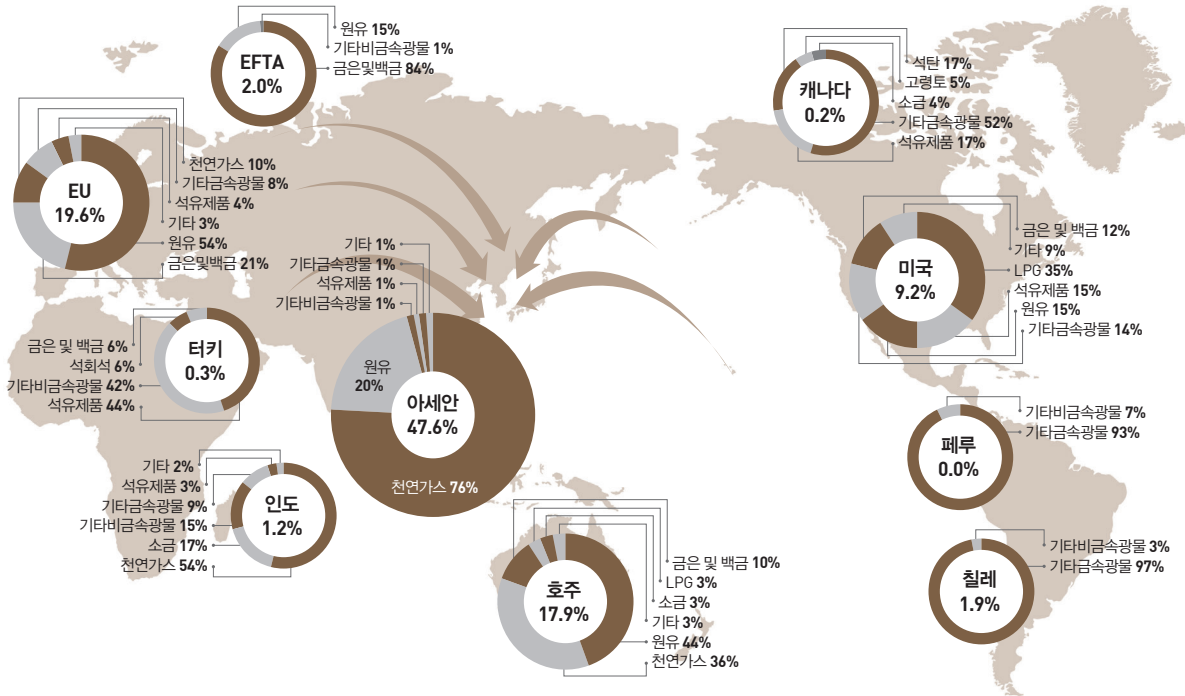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석유제품	2,121,916,548	89.2
2	금은 및 백금	226,558,281	9.5
3	기타비금속광물	13,415,648	0.6
4	LPG	10,795,918	0.5
5	기타금속광물	3,523,692	0.1
6	소금	776,893	0.0
7	기타광산물	655,305	0.0
8	동광	121,066	0.0
9	고령토	36,868	0.0
10	석회석	27,660	0.0
총계		2,377,855,935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6,484,227,777 (10%)	56,830,472,222 (90%)	63,314,699,999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광산물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6,484,227,777

협정	수입금액
아세안	3,086,011,474
EU	1,274,053,795
호주	1,161,588,405
미국	599,353,747
EFTA	128,636,922
칠레	125,273,279
인도	78,979,606
터키	16,719,214
캐나다	10,616,529
페루	2,994,806

광산물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천연가스	2,948,079,859	45.5
2	원유	1,938,923,001	29.9
3	금은 및 백금	567,722,607	8.8
4	기타금속광물	355,391,826	5.5
5	LPG	258,659,921	4.0
6	석유제품	186,826,412	2.9
7	기타비금속광물	139,961,397	2.2
8	소금	52,070,659	0.8
9	고령토	22,022,305	0.3
10	석탄	8,661,836	0.1
총계		6,484,227,7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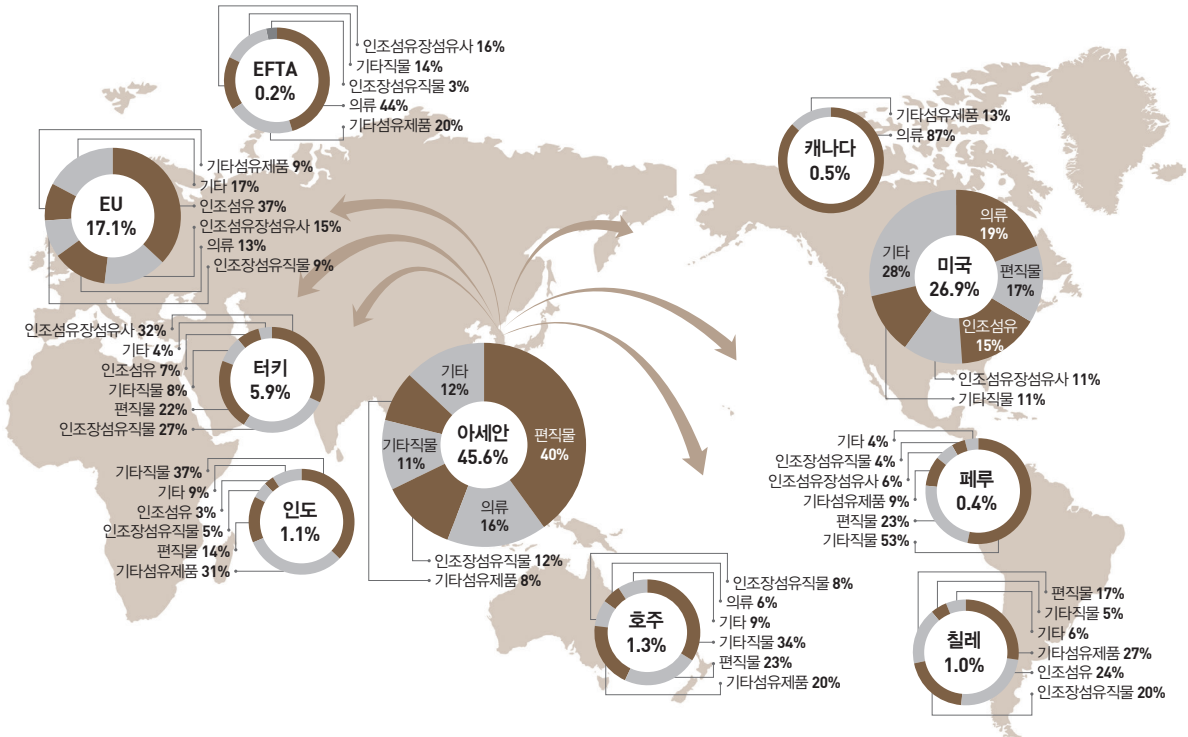
07 수출

섬유류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2,327,500,437 (32%)	4,874,968,461 (68%)	7,202,468,898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섬유류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2,327,500,437

국가	금액
아세안	1,062,403,423
미국	626,647,908
EU	397,274,088
터키	136,933,617
호주	30,907,587
인도	24,607,900
칠레	24,037,684
캐나다	11,541,511
페루	8,738,984
EFTA	4,407,735

섬유류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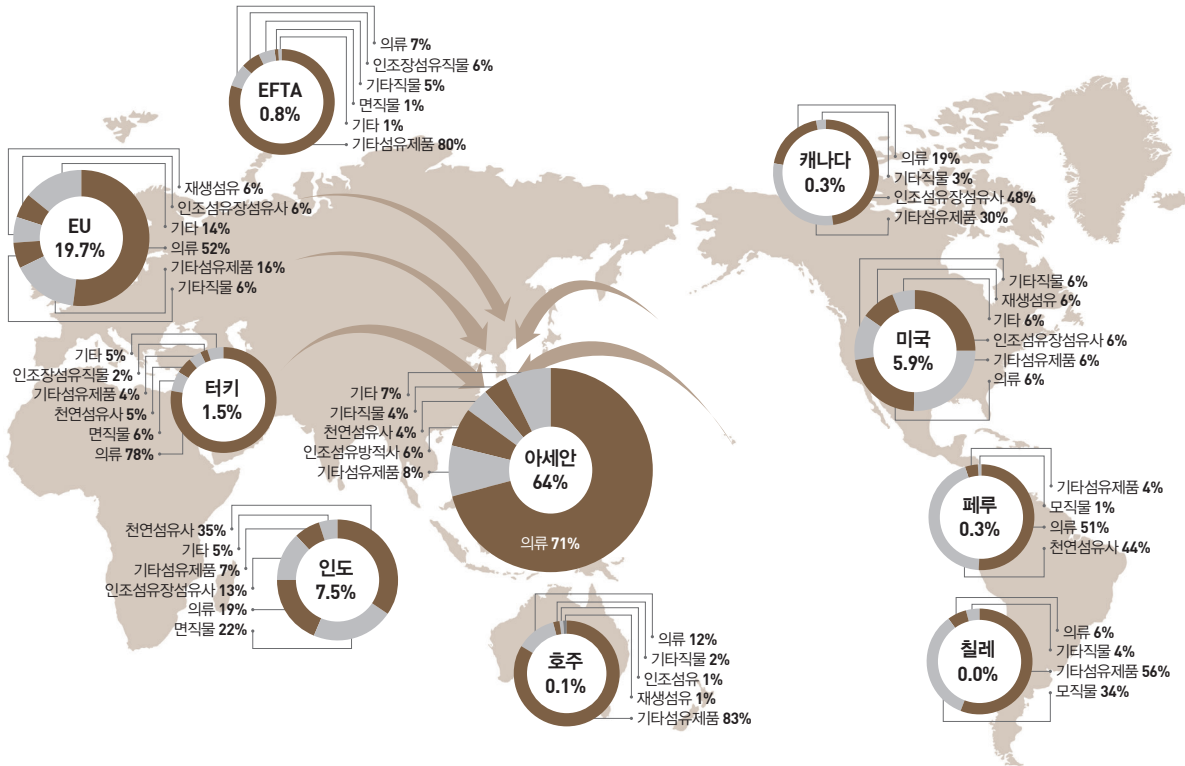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편직물	610,516,665	26.2
2	의류	358,211,367	15.4
3	인조섬유	279,690,292	12.0
4	인조장섬유직물	252,509,966	10.8
5	기타직물	244,658,511	10.5
6	인조섬유장섬유사	203,469,993	8.7
7	기타섬유제품	187,576,215	8.1
8	면직물	94,570,405	4.1
9	인조단섬유직물	32,065,400	1.4
10	천연섬유사	28,395,115	1.2
총계		2,327,500,437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2,628,047,870 (41%)	3,835,213,854 (59%)	6,463,261,724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섬유류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2,628,047,870

협정	금액
아세안	1,681,464,829
EU	516,495,305
인도	195,843,375
미국	154,340,641
터키	40,621,832
EFTA	21,588,683
캐나다	7,639,742
페루	7,140,010
호주	2,854,536
칠레	58,917

섬유류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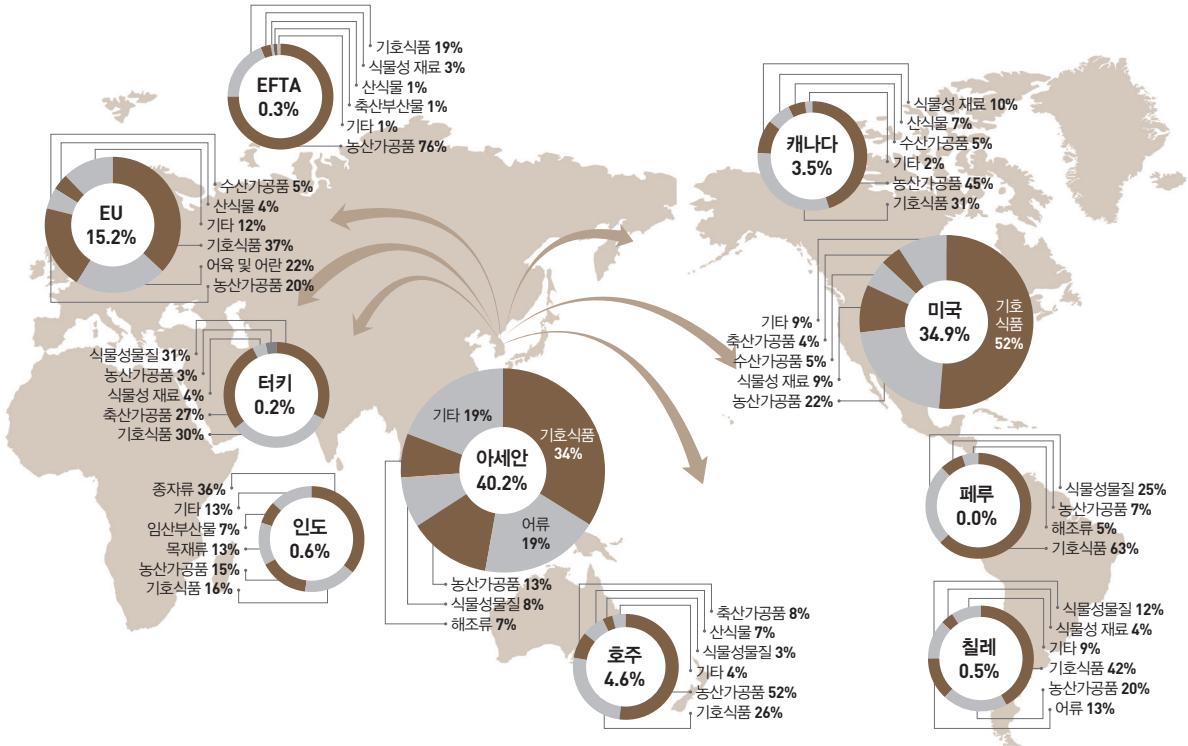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의류	1,567,338,441	59.6
2	기타섬유제품	295,492,675	11.2
3	인조섬유장섬유사	160,451,053	6.1
4	천연섬유사	153,847,019	5.9
5	기타직물	122,178,461	4.6
6	인조섬유방직사	111,114,729	4.2
7	면직물	65,249,074	2.5
8	재생섬유	48,911,897	1.9
9	인조단섬유직물	26,875,401	1.0
10	모직물	23,570,471	0.9
총계		2,628,047,870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799,965,041 (23%)	2,734,527,187 (77%)	3,534,492,228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799,965,041

협정	금액
아세안	321,945,487
미국	278,973,962
EU	121,467,809
호주	36,495,436
캐나다	28,038,967
인도	4,889,869
칠레	4,034,698
EFTA	2,493,692
터키	1,441,211
페루	183,910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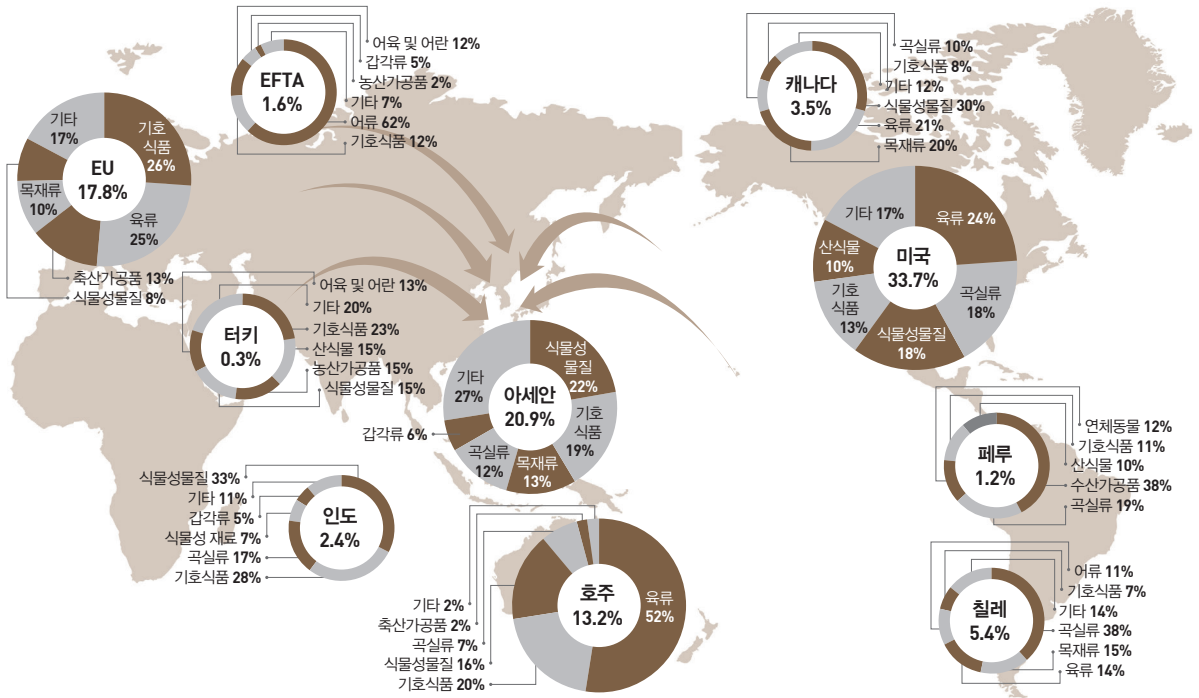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319,653,332	40.0
2	농산가공품	163,751,734	20.5
3	어류	63,594,065	7.9
4	식물성 재료	41,898,189	5.2
5	식물성물질	32,806,240	4.1
6	어육 및 어란	28,333,149	3.5
7	수산물가공품	24,983,435	3.1
8	축산가공품	23,459,735	2.9
9	해조류	22,362,267	2.8
10	산식물	19,902,606	2.5
	총계	799,965,041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8,392,531,435 (52%)	7,830,088,764 (48%)	16,222,620,199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8,392,531,435

국/지역	수입금액
미국	2,827,816,202
아세안	1,752,453,101
EU	1,494,330,892
호주	1,111,702,130
칠레	450,810,907
캐나다	291,342,986
인도	200,713,122
EFTA	135,186,134
페루	100,920,590
터키	27,255,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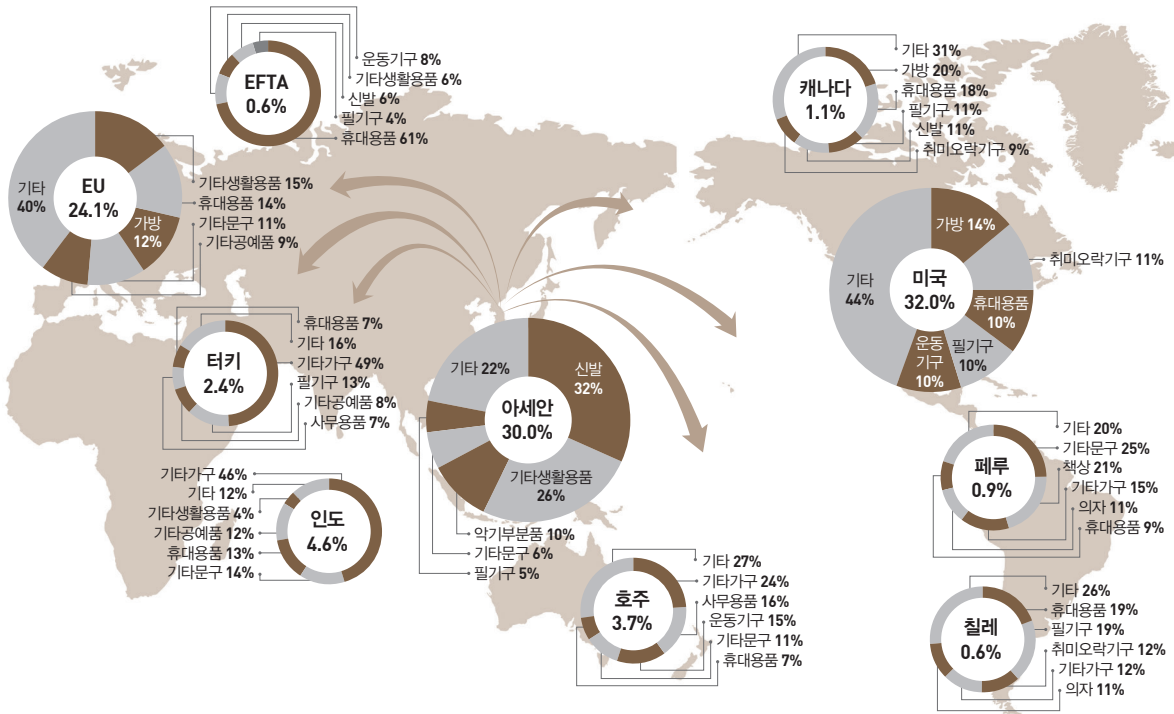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육류	1,790,321,727	21.3
2	기호식품	1,468,650,144	17.5
3	식물성물질	1,353,453,832	16.1
4	곡실류	1,108,523,025	13.2
5	목재류	542,733,828	6.5
6	축산가공품	428,096,523	5.1
7	산식물	411,278,720	4.9
8	농산가공품	284,176,132	3.4
9	수산가공품	218,004,323	2.6
10	어류	202,370,594	2.4
총계		8,392,531,435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470,678,532 (29%)	1,133,780,152 (71%)	1,604,458,684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470,678,532

국/지역	금액
미국	150,680,886
아세안	141,413,281
EU	113,551,441
인도	21,627,657
호주	17,310,983
터키	11,279,242
캐나다	5,133,063
페루	4,253,267
EFTA	2,784,322
칠레	2,644,390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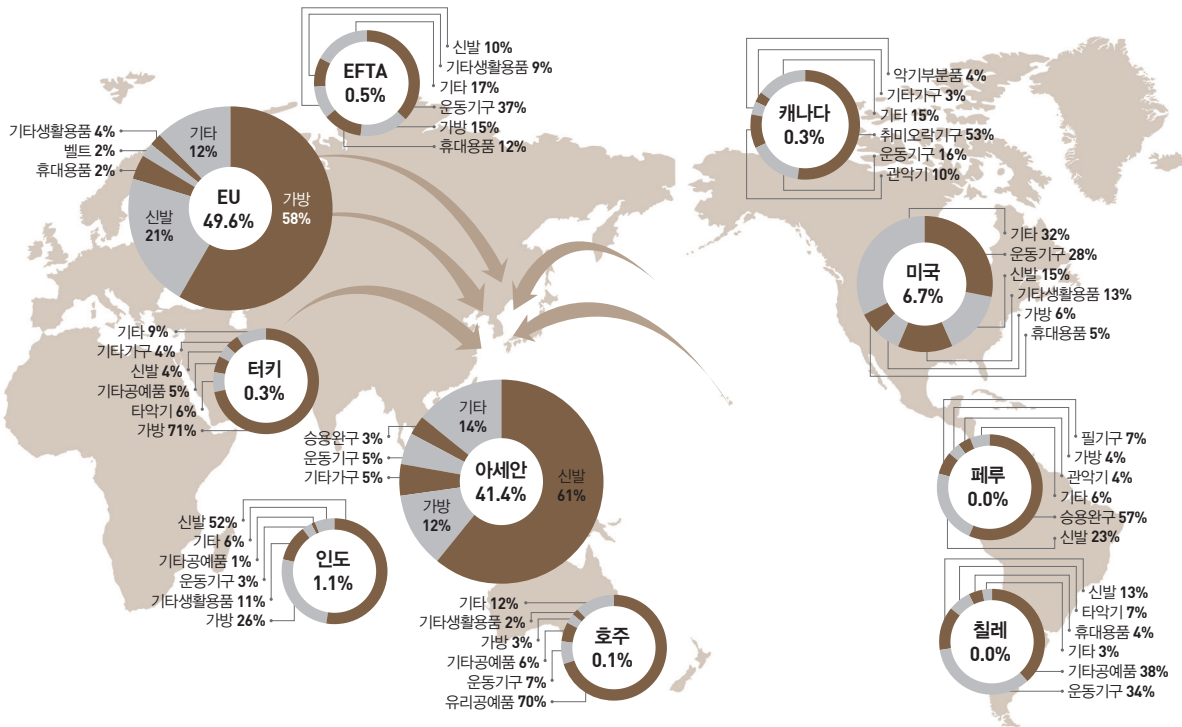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생활용품	66,530,975	14.1
2	신발	62,663,052	13.3
3	휴대용품	44,693,165	9.5
4	가방	40,642,359	8.6
5	기타문구	34,705,139	7.4
6	취미오락기구	33,344,004	7.1
7	필기구	30,155,172	6.4
8	기타공예품	27,793,976	5.9
9	운동기구	27,136,251	5.8
10	기타가구	24,866,986	5.3
총계		470,678,532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1,647,858,974 (39%)	2,582,042,828 (61%)	4,229,901,802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1,647,858,974

	EU	816,811,226
	아세안	682,353,747
	미국	110,802,141
	인도	17,867,348
	EFTA	7,618,608
	캐나다	5,521,345
	터키	4,640,226
	호주	2,085,658
	페루	153,928
	칠레	4,747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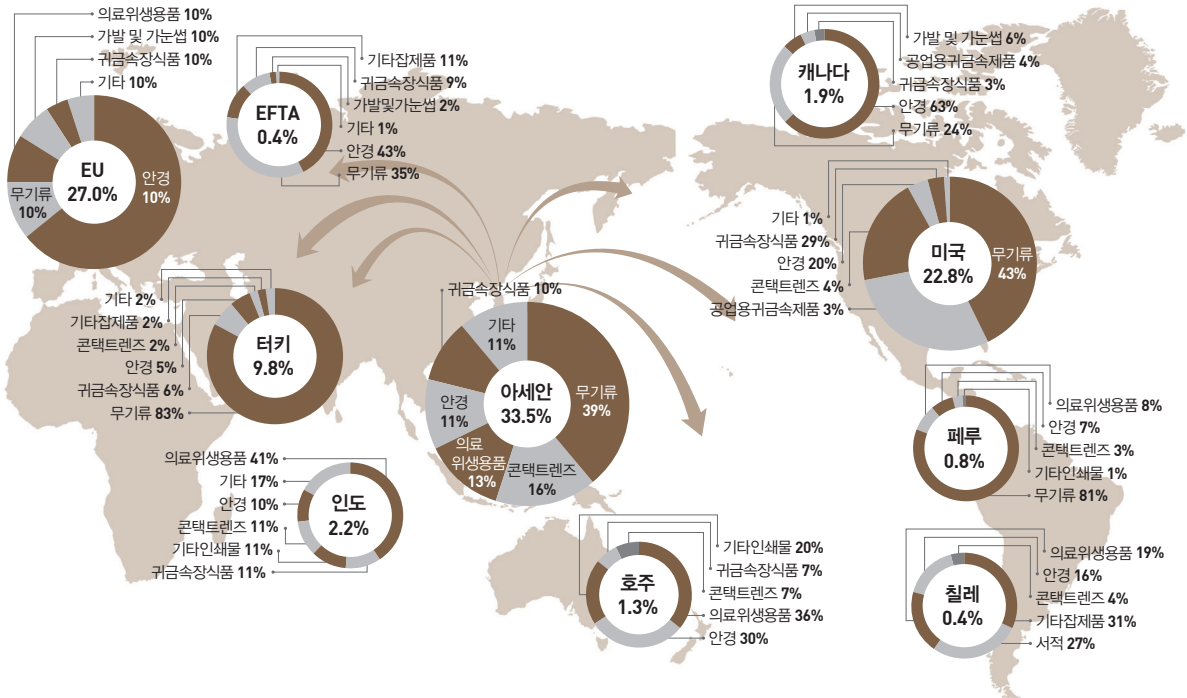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619,457,154	37.6
2	가방	570,322,568	34.6
3	운동기구	86,557,408	5.3
4	기타생활용품	72,838,765	4.4
5	기타가구	53,423,275	3.2
6	승용완구	32,826,823	2.0
7	휴대용품	31,358,559	1.9
8	필기구	21,815,769	1.3
9	식탁	21,573,464	1.3
10	벨트	20,792,783	1.3
총계		1,647,858,974	100.0


10 수출

잡제품

단위 : 달러

FTA특혜수출	일반수출	총계
159,334,892 (14%)	956,369,758 (86%)	1,115,704,650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잡제품 특혜대상수출금액

총액 159,334,892

FTA	수출금액
아세안	53,328,614
EU	43,029,282
미국	36,346,350
터키	15,582,705
인도	3,486,251
캐나다	3,053,755
호주	2,140,743
페루	1,213,140
칠레	585,676
EFTA	568,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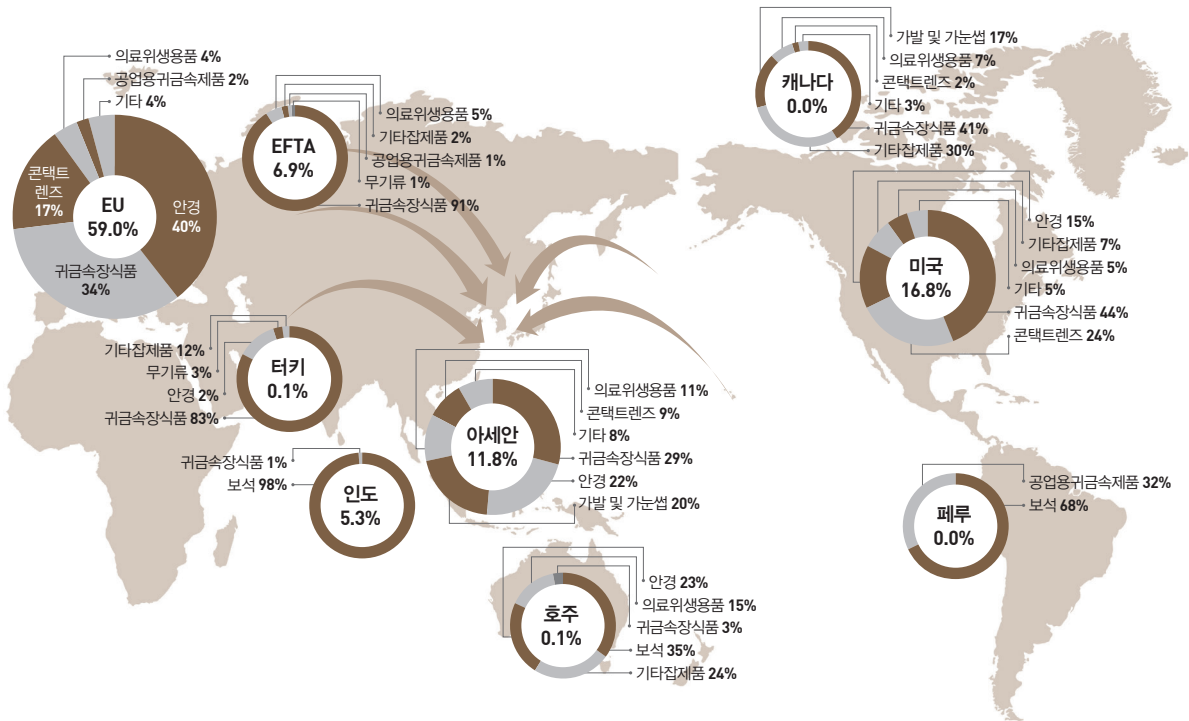
잡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무기류	55,920,080	35.1
2	안경	45,173,346	28.4
3	귀금속장식품	19,317,339	12.1
4	의료위생용품	13,106,721	8.2
5	콘택트렌즈	10,997,285	6.9
6	가발 및 가눈썹	3,566,515	2.2
7	기타잡제품	3,510,078	2.2
8	공업용귀금속제품	2,952,656	1.9
9	기타인쇄물	2,710,276	1.7
10	서적	1,455,539	0.9
총계		159,334,892	100.0

단위 : 달러











FTA특혜수입	일반수입	총계
458,329,549 (38%)	740,343,489 (62%)	1,198,673,038 (100%)



 % : FTA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잡제품 특혜대상수입금액

총액 458,329,549

	EU	270,450,554
	미국	77,047,490
	아세안	54,059,185
	EFTA	31,723,460
	인도	24,100,819
	호주	488,618
	터키	302,673
	캐나다	155,980
	페루	770
	칠레	0

잡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10 품목

단위 :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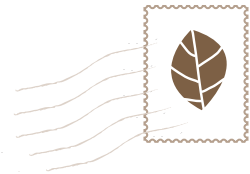
순위	구분	금액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귀금속장식품	171,400,990	37.4
2	안경	131,333,779	28.7
3	콘택트렌즈	70,098,889	15.3
4	보석	33,632,199	7.3
5	의료위생용품	21,432,285	4.7
6	가발 및 가늌셋	11,027,892	2.4
7	기타잡제품	10,624,087	2.3
8	공업용귀금속제품	5,305,426	1.2
9	기타인쇄물	1,716,599	0.4
10	무기류	1,679,371	0.4
총계		458,329,549	100.0

FTA TRADE REPORT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읽고 느낀 점이나 편집실에 바라는 “독자의 소리”를 통해 소개해드리며, 앞으로 [FTA 무역리포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fta-report@origin.or.kr)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FTA 무역 리포트

Vol.03 October 2015

〈비매품〉

발행일	2015년 10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